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이행평가(요약)

2023. 5.

국가인권정책협의회

목 차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평가 ◎

.....	1
I. 추진 배경	2
.....	2
II. 추진 경과	2
.....	2
III. 향후 추진계획	2
.....	2
IV.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총괄	3
.....	3
V. 분야별 주요 이행평가	4
.....	4
1.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4
.....	10
2.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13
.....	19
3.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21
.....	32
4.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41
.....	44
5.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	
6.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	
7.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	
8. 인권 친화적 기업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평가

I

추진 배경

- 2022. 1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종료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수립에 앞서 제3차 기본계획 정책과제 이행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4차 기본계획 수립 시 발전적으로 고려할 필요 있음

II

추진 경과

-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방안 검토 등('22. 2~3.)
- 외부 인권분야 전문 연구기관에 의한 평가(연구용역) 실시('22. 4~8.)

※ 이행평가의 내용 구성

- 주요 추진 성과
 - ①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② 정책·관행·인식의 변화, ③ 시설, 예산, 수혜인원 등 실질적 개선 내역, ④ 기타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 종합 평가
- 향후 과제

III

향후 추진계획

- '23. 5.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이행평가 결과 보고
- '23. 5. 제3차 기본계획 이행평가서 공개(법무부 누리집)
- 제4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료로 활용

-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총 272개 과제 중 완료과제 21개 및 '정상추진' 중인 과제 246개를 포함한 이행률은 98.16%

* 평가기간 : 2018~2021년(이행평가를 실시하는 '22년은 이행상황 미반영)

- 유관기관 반대^{①~②}, 사회적 논의 필요^③ 등으로 '추진지연' 과제는 3개*

* 피고안피의자 권리 보호증진^①, 인신보호법제 활성화^②,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③

< 제3차 NAP 이행상황 현황(전체) >

추진과제	이행상황				
	소계	과제완료	정상추진	추진지연	기타
272	272	21	246	3	2

※ 기타 : 환경변화 사정변경 등으로 추진이 곤란하여 삭제 또는 변경 필요한 경우('18년부터 이행상황 미제출)

-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강화(교육부),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여가부/고용부)

< 제3차 NAP 이행상황 현황(분야별) >

분 야	추진 과제	이행상황				
		소계	과제 완료	정상 추진	추진 지연	기타
합 계	272	272	21	246	3	2
■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25	25	2	21	2	-
■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12	12	-	11	1	-
■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23	23	7	16	-	-
■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8	8	-	8	-	-
■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93	93	9	84	-	-
■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69	69	1	68	-	-
■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32	32	2	29	-	1
■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10	10	-	9	-	1

※ ‘주요 이행평가’ 는 외부 전문 연구용역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종합적인 내용은 뒷부분 참고

1.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 추진과제 이행상황 총괄

- 인권 보호와 증진의 기초가 되는 생명 존중과 신체의 자유 및 안전 보장을 위한 분야. 생명권, 신체의 자유, 안전권으로 구성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1. 1. 생명권			
1	사형제도 개폐 검토	법무부	정상추진
2	자살예방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3	생명존중 문화 확산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1. 2. 신체의 자유			
4	인신구속제도 개선	법무부	정상추진
5	피고인·피의자 권리보호 증진	법무부	추진지연
6	대용감방 시설개선	법무부	정상추진
7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법무부	정상추진
8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프로그램 다양화 및 개선	법무부	정상추진
9	재범위험성 평가 개선	법무부	과제완료(19)
10	보호·위탁소년 인권 및 처우 개선	법무부	정상추진
11	성충동 약물치료의 인권침해 소지 개선	법무부	정상추진
12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정 인권보호 강화	법무부	정상추진
13	외국인 보호 장기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법무부	정상추진
14	인신보호법제 활성화	법무부	추진지연
1. 3. 안전권			
15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법무부	정상추진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16	범죄피해구조 및 형사조정제도 개선	법무부	정상추진
17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리 확대 및 강화	법무부	정상추진
18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안전 강화	법무부	정상추진
19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정비 및 강화	법무부	정상추진
20	시설·서비스 소비자 안전 확보	행정안전부 문체부	정상추진
21	재해에 강한 국토기반 조성	국토교통부	정상추진
22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	과제완료(18)
23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안전 해결 추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상추진
24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행정안전부	정상추진
25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 대응 역량 강화	행정안전부	정상추진
종합	과제완료 2개, 정상추진 21개, 추진지연 2개		

※ 과제완료 : 재범위험성 평가 개선,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
추진지연 : 피고인·피의자 권리보호 증진, 인신보호법제 활성화

- **(이행상황 요약)** ① 25개 과제 중 사형제도 폐지 검토 등 21개 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 ② 다만 피고인·피의자 권리 보호 등 2개 과제는 유관기관 반대의 사유로 과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논의 경과 등에 따라 개정 재검토할 예정임

□ 주요 이행평가

생명권 관련

【보건복지부】자살예방 체계 강화

-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은, 생명권 및 건강권 실현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고위험군에 속하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자살은 정신건강상의 문제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원인(직장

내 괴롭힘, 디지털성폭력, 사이버폭력, 알코올 사용 장애, 장애, 성적지향, 빈곤 등)에 의해 발생하므로,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점에 기초한 자살 예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생명권과 건강권의 실현 수단인 자살예방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자살에 대한 경각심이나 생명 존중의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는데, 이행내용에서는 이를 위한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됨

신체의 자유 관련

【법무부】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프로그램 다양화 및 개선

- 교정·교화를 통한 재범의 위험성 감소는 사회 일반을 위한 것임은 물론이고 수형자가 형 집행 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므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수형자의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인권실현의 책무에 해당함
- 과제명과 과제목표에는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존에 실시되고 있었던 교육이나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돋보이지 않는다고 지적됨
- 그동안 실시된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은 수형자 개개인의 인격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탓에 원만한 사회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수용자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이 제안됨

【법무부】보호·위탁소년 인권 및 처우 개선

- 과제목표와 이행내용이 소년보호시설의 소규모 생활실 조성, 소년보호시설의 신축 등 물리적 공간의 확보에 집중되어 있어, 과제명과 다소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소년원의 과밀상태를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정책들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처우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소년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소년보호시설에서 실시되는 교육, 훈련, 체험활동 등은 예전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사회적응력을 기르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됨

【법무부】 외국인 보호 장기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외국인 보호 장기화 방지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직권 보호일시해제 신설), 훈령 개정(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사회적 약자에 대해 보호조치 없이 출국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은 주요 추진성으로 볼 수 있음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구금의 상한, 구금의 적법성과 필요성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절차가 부재하며,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아닌 법무부장관의 보호명령서만 있으면 구금이 가능한 점에 대하여 절차적 개선 필요성이 지적됨
-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불승인이 2021년 기준 987건 중 93건, 2020년 기준 764건 중 44건으로, 대다수가 계속해서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매해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심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보호 장기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지적됨
- 최근 5년간(2017~2021) 법무부장관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심사를 받은 총 2,740건 중 216건(7.8%)만 연장 승인이 기각되었고, 법무부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에서 1년 이상 구금된 외국인 대상 연장 심사가 불허된 건수는 현재까지 단 3건에 불과하여 보호기간 장기화 방지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됨

안전권 관련

【법무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리 확대 및 강화

- 이전에 비해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편이며,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각 단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됨
- 다만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충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권리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 이후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증인신문 방식에 대한 법적 지식이나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진술조력인이나 국선변호사의 업무 강도도 높아졌으나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질적 하락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지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나 국선변호사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불성실, 연락 두절, 금품요구, 합의강요 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실태점검이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됨

【법무부】 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 안전 강화

- 신변보호조치는 피해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예산, 인력의 한계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됨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형사합의를 이유로 한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수사나 공판단계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피해자의 인권과 2차 피해의 폐해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됨
-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담당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함과 함께 수사담당자에 대한 징계 등 엄정한 대응 마련이 제안됨

2.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 추진과제 이행상황 총괄

-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원리 중 하나인 평등원칙을 실현하고, 누구나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로서 사회의 각 영역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분야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Ⅱ. 1. 차별금지

1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법무부	추진지연
2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3	성별 임금차별 해소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4	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5	성평등 교육 확대 및 문화확산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6	장애인 고용 개선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7	국어사전의 성차별내용 개선	문체부	정상추진
8	인권 및 문화 차별·혐오적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	방통위원회	정상추진
9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 및 성차별 개선 심의 기반 마련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10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방통위원회	정상추진
11	양성평등 문화 확산	교육부	정상추진
12	장애인 교육권 보장	교육부	정상추진
종합	정상추진 11개, 추진지연 1개		

※ 추진지연 :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 (이행상황 요약) ① 12개 과제 중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등 11개 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 ② 다만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과제는 차별금지 사유·영역 등에 관한 논의 필요 등의 사유로 과제 추진이 지연됨

□ 주요 이행평가

차별금지 관련

【고용노동부】 성별 임금차별 해소

- 여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을 내실 있게 실행하였으나,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내역 및 분석이 미비함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세부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남녀고용평등사업장 지도 감독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부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임금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직접적인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됨

【여성가족부】 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

- 사업의 결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위원회 여성 참여율, 상장법인 여성 임원 비율 등이 통계적으로 증가하였음
 - * 중앙 : ('18년) 41.9% → ('21년) 42.4%
 - * 광역 : ('18년) 44.4% → ('20년) 44.9%
 - * 기초 : ('18년) 39.1% → ('20년) 41.4%
-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컨설팅, 지역 중심 거점 기관 운영을 통해 여성의 의사결정적 참여에 대한 사회적 역량 및 개별 여성에 대한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향후 과제로 제시된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인식확산은 여성 리더를 발굴·양성이 함께 되어야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됨

【방송통신위원회】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정책은 국가의 인권보호 및 존중의무에 부합함

- 다만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는 사후 구제로 차별·혐오적 방송 내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은 미흡함
- 또한 차별·혐오적 방송내용에 대한 시민의 민감도 등이 상승하는 사회여론 속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건수는 줄어들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심의제도 구현이 필요하다고 지적됨

3.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 추진과제 이행상황 총괄

- 누구나 국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인격적 존재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분야.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등으로 구성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Ⅲ. 1.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1	「국가보안법」의 남용방지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	법무부	정상추진
2	「보안관찰법」상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요소 개선	법무부	과제완료(18)
3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검토	국방부	과제완료(20)
Ⅲ. 2. 표현의 자유			
4	공적 데이터 민간개방 확대	행정안전부	정상추진
5	소외계층 방송 향유권 보장	방통위원회	정상추진
6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접근성 개선	과기통신부	정상추진
7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방통위원회	정상추진
8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공개	환경부	정상추진
Ⅲ. 3. 결사·집회의 자유			
9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강화	경찰청	정상추진
10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의 적법성 제고	경찰청	과제완료(20)
11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의 책임성 제고	경찰청	과제완료(18)
12	집회시위 일반교통방해죄 미적용 원칙	경찰청	과제완료(18)
13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 기회확대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Ⅲ. 4. 사생활의 자유			
14	보안관찰제도 운영 합리화	법무부	정상추진
15	수사과정에서 통신비밀침해 방지	법무부	정상추진
16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정상추진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17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인권침해 소지 개선	법무부	정상추진
18	영상정보 오남용에 의한 사생활 침해방지 법제 정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상추진
19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기 대응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제완료('19)
20	생체정보의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통위원회	과제완료('18)

Ⅲ. 5. 거주·이전의 자유

21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국토교통부	정상추진
22	도서주민의 이동권 증진	해양수산부	정상추진

Ⅲ. 6. 인격권

23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제도의 인권침해 소지 개선	법무부	정상추진
종합	과제완료 7개, 정상추진 16개		

※ 과제완료 : 「보안관찰법」상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요소 개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검토,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의 적법성 제고,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의 책임성 제고, 집회시위 일반교통방해죄 미적용 원칙, 사물인터넷·웨어러블 기기 대응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 생체정보의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 (이행상황 요약) ① 23개 과제 중 「보안관찰법」상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요소 개선 등 7개 과제는 이행 완료되었고 ② 「국가보안법」의 남용방지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 등 16개 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됨

□ 주요 이행평가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검토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은 그 자체로서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의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임
- 다만 대체복무의 기간, 장소, 방식 등이 징벌적 형태로 추진되는 것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대체복무자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혐오가 발생할 수 있기에 대체복무제 운영에 있어서 대상자들

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됨

표현의 자유 관련

【방통위원회】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심의는 불법정보나 그에 준하는 정보와 내용으로 제한하고, 명확한 판단기준과 절차적 엄격성을 갖추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국제사회에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보매개자에게 책임을 부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합의 추세가 있는바, 한국의 임시조치제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열·규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재고 필요성이 제기됨
-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활동 지원, 임시조치의 악용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의 일방적인 임시조치에 대한 반론권을 규정하고, 분쟁조정 기능을 활성화하는 법률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정책과제에 부합함

결사집회의 자유 관련

【경찰청】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의 적법성 제고

- 차벽 설치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으나 지난 3년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차벽이 설치된 경우가 있었고, 이에 대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음
- 차벽 설치의 의견 표현 자체를 차단하는 것으로서 집회·시위의 의의를 희석하고 대중들에게 집회·시위 자체가 불온한 것으로 인식되게 하므로, 차벽 설치를 금지하고 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집회·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제한과 사고를 발생시킨 차벽 설치와 살수

차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정책과제 설정은 바람직함. 다만, 법집행의 적법성 문제를 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안전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 제안됨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의견표명 기회 확대

-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에 대한 높은 수용률은 긍정적이라 할 것이나,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및 피드백 절차도 의견표명권 보장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제안 정책 수용률 모니터링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됨
- 실무에서는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만 이루어질 뿐, 청소년 참여기구 정책 계획 및 추진방안 수립 등에도 청소년의 참여가 보장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청소년 참여기구는 청소년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획 수립 단계와 운영 전반에 청소년의 참여가 필요함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통해 소수자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성별, 경제적 상황(차상위계층), 재학 여부(학교밖청소년), 다문화가정 등만 고려되고 있을 뿐, 장애, 이주 맥락, 거주지역, 가정밖청소년, 보호대상아동 등 다양한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 마련 및 이들의 참여기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가 불충분하다고 지적됨

사생활의 자유 관련

【법무부】 수사과정에서 통신비밀침해 방지

- 통신비밀보호법의 1, 2차 개정은 201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로서, 개인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적 요소가 다소 제거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위헌 결정 이후 침해적 요소 제거까지 장기간 소요된 것은 비판적으로 볼 여지가 있음
- 또한 일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이나 국제규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바, 추가 개정을 통한 통신비밀의 자유의 침해요소 제거를 검토할 필요성이 지적됨

- 아울러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이 수사실무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정보 오남용에 의한 사생활 침해방지 법제 정비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영상 촬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인권보호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과제의 주요내용은 SNS, 인터넷 등을 통한 사진·동영상 유포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한다는 것인데, 실제 이행된 내용은 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제여서, 과제와 이행내용이 다소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음
- 영상정보는 오남용될 경우 다른 유형의 정보에 비해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가 심각하고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다 강화된 보호조치가 수반될 필요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21.9. 국회제출)은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CCTV로 촬영된 영상을 수집, 저장, 이용하는 이상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함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됨

【개인정보위·방통위원회】 생체정보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의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규범적·기술적 보호 수칙을 제시한 것은 인권보호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유일성, 불변성을 내용으로 하는 생체정보의 특성상 유출 시 사생

활 침해가 심각하고, 수칙 준수에 대한 사업자의 동기가 약할 경우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규율함은 개인정보보호대책으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최근 국제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원격 생체인식 기술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안됨

거주 이전의 자유 관련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 저상버스 도입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나, 도입으로 인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자체는 제고되었음. 또한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제고함

*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 2021년 저상버스 보급대수(보급률) 목표치는 15,178대(전국 시내버스 42.1%)이나, 2021년 9월 기준, 실제 보급대수는 10,382대로 30.4%로 머물렀음(국가인권위원회, 2022)

-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되는 노선버스의 종류에 광역급행버스와 시외(고속)버스 등이 제외되어 있어 구간별 공백이 많고, 지역간 자유로운 이동에 한계가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22)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증진은 이동방식, 모든 지역, 모든 교통수단, 보행로 정비 등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설계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하나, 현재는 특별교통수단 중 일부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됨
- 이동권 보장 정책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였다고 지적됨

4.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 추진과제 이행상황 총괄

- 권익 침해에 대해 국가에 구제를 요청하고, 입법·사법·행정 영역의 정의 실현을 위한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분야.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참정권(공무담임권)으로 구성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IV. 1. 권익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1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법무부	정상추진
2	군장병 인권보호 및 교육 강화	국방부	정상추진
3	집단민원의 효과적 조정 및 민원처리 역량 강화	국민권익위	정상추진
IV. 2. 참정권			
4	직무외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원칙적 보장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정상추진
5	공직내 여성대표성 제고의 체계적 보장	인사혁신처	정상추진
6	장애인의 공직진출 기회 보장과 지원	인사혁신처	정상추진
7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 보장과 지원	인사혁신처	정상추진
8	지역인재의 공직진출 기회 보장과 지원	인사혁신처	정상추진
종합	정상추진 8개		

- (이행상황 요약) 8개 과제 전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됨

□ 주요 이행평가

권익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관련

【국방부】군장병 인권보호 및 교육강화

- 군장병 인권보호 및 교육 강화는 규모의 측면에서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장병의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과 여성 군인의 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제

도 개선 또한 주요 추진 성과라 볼 수 있음

- 다만, 군장병 인권보호 제도는 사후 구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사건처리 시스템 또한 지역별·군별 편차가 발생함. 그중에서도 성 관련 문제의 경우 시스템이 존재함에도 계속해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기존의 구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내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또한 군대 내에 존재하는 여성, 성소수자, 경제적 곤궁, 채식인, 소수 종교 신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의 내용이 부재하거나 미흡하고, 장병 사생활의 보장과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다고 지적됨

참정권 관련

【인사혁신처】 직무 외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원칙적 보장

- 직무 외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하려는 노력은 시민(공무원 포함)의 인권보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함. 그러나 직무 외 영역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관련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상 규정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됨
- 입법적 변화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행정부의 가이드라인,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직무 외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됨

5.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 추진과제 이행상황 총괄

- 인간다운 생활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보장하고자 하는 분야. 노동권,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등으로 구성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V. 1. 노동권			
1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2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3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4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	과기부	정상추진
5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여성가족부 등	정상추진
6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지도·감독 및 개선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7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 해소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8	사내하도급 노동자·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9	산업안전보건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10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강화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11	평생직업능력개발 강화 및 훈련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12	신중년근로자 등 장기근속 및 전직 지원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13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가부	정상추진
14	노사정 간 대화를 통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15	근로자 이해대변기구 제도 개선 및 미조직 노동자 의견참여 통로 확대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16	임금체불근절 및 체불노동자 보호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17	공정임금체계 확립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18	장시간 근로 개선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19	일·생활 균형 근로문화 확산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V.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20	공공부조 혁신	보건복지부	과제완료(21)
21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22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23	고용산재보험 보호 수준 강화*	고용노동부	과제완료(21)
24	수돗물 수질기준 관리 및 개선	환경부	정상추진
25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강화	환경부	정상추진
26	안전한 물환경을 위한 물관리일원화	환경부	정상추진
27	물환경 위해관리체계 강화	환경부	정상추진
28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상추진
29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림부,해수부	정상추진
30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정상추진
31	급식관리 공공성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상추진
32	주거권에 대한 인식 및 국가 역할 정립을 위한 노력 지속	국토교통부	정상추진
33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	국토교통부	정상추진
34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	국토교통부	정상추진
35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정상추진
36	저소득층 주거 안정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정상추진
37	안전과 편리성을 갖춘 노인주거 여건 마련	국토교통부	정상추진
38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	정상추진

V.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39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40	비급여 진료관리체계 개선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41	지역균형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복지부,해수부	정상추진
42	치매에 대한 대응과 국가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43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지표 개발·보급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44	희귀 질환 치료제 등 필수약품의 특례 공급 지속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상추진
45	군 장병 의료접근권 향상	국방부	정상추진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46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	교육부	정상추진
47	학교 성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	교육부	정상추진
48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정상추진
49	마약류 유통관리 및 오남용 예방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상추진
50	환경보건 기반 구축 지원	환경부	정상추진
51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환경부	정상추진
52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개선	환경부	정상추진
53	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안전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상추진
54	기후변화 적응법제 및 대응역량 강화	환경부	정상추진
55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정상추진
56	생활소음 대책 마련	환경부	정상추진
57	국토 및 환경보전계획의 지속가능 발전기반 확보	환경부	정상추진
58	진료비 정보공개 확대	보건복지부	과제완료(18)
59	필수·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60	의료서비스 이용 차별개선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V. 4. 교육을 받을 권리

61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	교육부, 복지부	정상추진
62	성취평가제 실현	교육부	정상추진
63	저소득층 가정 자녀 교육 지원	교육부	정상추진
64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	교육부	정상추진
65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 보호 강화	교육부	정상추진
66	고교 교육제도 개선	교육부	정상추진
67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68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교육부	과제완료(20)
69	석·박사 학생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과기정보통신부	과제완료(18)
70	출연연 석·박사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	과기정보통신부	과제완료(18)
71	청년과학기술인의 연구실 안전을 위한 보장 강화	과기정보통신부	과제완료(18)
72	청년과학기술인의 발명자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과기정보통신부	과제완료(18)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V. 5.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73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74	청소년 주도 문화활동 확대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75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76	노인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77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상추진
78	지역문화기반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79	지역문화 균형발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80	문화다양성 존중 정책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81	예술인 창작기반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82	콘텐츠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 및 실효성 제고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83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	특허청	정상추진
84	불법복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85	국민 스포츠 향유환경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V. 6.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86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87	결혼·출산 친화적 세제 개선	기획재정부	정상추진
88	보육취약지역 대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89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90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91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생활안정 지원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92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93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법무부	과제완료(18)
종합	과제완료 9개, 정상추진 84개		

* 해당과제 소관부처에서 '20년 이행상황 제출 시 "과제완료"로 제출하였지만, '21년도 제출 시 "과제완료"로 수정하여 제출하여 '21년 과제완료 과제로 판단

※ 과제완료 : 공공부조 혁신, 고용산재보험 보호 수준 강화, 진료비 정보공개 확대,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석·박사 학생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출연연 석·박사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 청년과학기술인의 연구실 안전을 위한 보장 강화, 청년과학기술인의 발명자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 (이행상황 요약) ① 93개 과제 중 공공부조 혁신 등 9개 과제는 이행 완료되었고 ②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등 84개 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됨

□ 주요 이행평가

노동권 관련

【고용노동부】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 여성들의 임신, 출산, 양육권 보장을 위한 근로감독, 직장내 성희롱 예방,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없는 제도 이용을 보장하고 있음. 또한 법·제도적 개선 사항이 가장 두드러지는 사업으로 사업 이행 및 개선이 우수하다고 평가함
- 고용형태, 돌봄 유무에 상관없이 노동권을 존중받고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확장하였음.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저임금 여성 노동자, 사회적으로 저평가된 가사 돌봄 노동에 대한 공식성 부여 등 시민의 여성 노동 인권 제고에 기여하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
- 성별 임금격차를 정확한 통계로 확인하여 차별적인 임금구조를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의 대상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이 제안됨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지도·감독 및 개선

-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 지침 강화 및 기숙사 정보 제공 고시 개정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으로 긍정적이며, 이를 위한 인권교육 의무화 등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조치로 평가됨
- 다만 기숙사를 제공하기 어려운 농어업 등 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침고시 개정은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나 제보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됨

- 국제사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나 강제노동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업장변경허가 제도’의 재검토가 제안됨

【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노동자·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 고용구조와 일의 형태 차이, 쟁점이 상이한 ‘사내하도급’과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의 문제를 하나의 과제에 포함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일정한 한도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나, 각 분야별 특수성 반영이 미비하다고 지적됨
- 파견·사내하도급의 문제에 있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하의 근로자 보호대책 수립이나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에 대한 성과는 미비하다고 지적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제도개선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감정노동 종사자 정신건강 보호강화 및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일부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중소기업의 노동자 안전대책은 미비하다고 지적됨
- 사업장 내 산업재해 보호를 위한 예산집행은 단순히 지역별 안전체험교육장 신설 및 노후시설 개선에만 집행되었을 뿐, 각 사업장 내 위해요소제거에 대한 지원은 없어 실질적인 보호는 미비하다고 지적됨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인 미만 고용 농업 등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필요 의견

【환경부】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강화

- 수계 내 유역특성을 고려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32개 중 권역별 적합한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물환경관리 계획의 이행평가 등 점검을 실시하고 수질측정망 및 유량조사망 측정자료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였음
- 저감시설 설치 효과에 대한 정량적 기준 마련 등 정책효율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물환경관리계획의 이행평가 기준 점검 등이 제안됨

【국토교통부】 저소득층 주거 안정지원 확대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 다만, 신청주의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됨
-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주거급여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협력과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함
- 주거급여가 실질적으로 적정하고 쾌적한 주거지에서 살 권리 보장의 방향으로 이어지기 위한 적정한 주거공간 기준 설정과 그에 따른 비용 책정, 장기적인 주거 수준 향상이 제안됨
- 현재의 주거급여는 주 대상이 청년과 신혼부부로 제한되어 있어 모든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므로,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구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 대책 강구가 제안됨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관련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 지역 간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병원의 필수 의료 서비스 역량 강화를 추진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함

- 그러나 신종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함
 - 공공병원의 비율은 2020년 기준 5.4%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제공의 71.3%, 코로나19 입원환자 중 68.1%를 치료(통계청)
 -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의료취약계층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었음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포함한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공공병원이 전담하지 않고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제안됨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유통관리 및 오남용 예방 강화

-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진행, 팬데믹 상황을 반영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것은 긍정적임
-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있어 20-30대의 마약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됨
- 예방 활동의 결과를 교육 횟수, 콘텐츠 제작 수 등이 아닌 인식변화, 효과성으로 평가하여 예방 체계를 보완·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환경부】 기후변화 적응법제 및 대응역량 강화

-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과 정부대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는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 탄소포인트제도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한 가입자수의 증가는 긍정적이나, 시민인지도 확산을 위한 캠페인 사업 등의 고려도 필요함. 비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저감유도 방안으로 기존의 캠페인, 컨설팅 등의 간접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구체적인 참여 프로그램의 제시가 필요함

교육을 받을 권리 관련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 의무교육 밖에 있는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지원을 위한 정책은 포괄적인 내용을 아우를 필요가 있음. 다양한 위기·갈등 상황에서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심리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안내와 지원 연계를 위한 인프라 확장과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 청소년증, 무상급식, 대입지원 등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있어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지원에 있어 지원센터의 프로그램과 종사자의 개별적 역량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진로탐색 과정에서 예외적 선택지만 제공됨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이 위축되었으며, 현재 주요 프로그램은 10대 중후반기를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과 노동권익 지원에 초점을 둔 한계가 있음. 다양한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 및 온라인 접근성·이용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 마련 필요성이 지적됨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존중 정책 실시

- 무지개다리 사업을 비롯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그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은 국가의 인권보호 및 실현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각 참여 주체들의 확장과 교육 프로그램 설계 운영 중심으로 인해 꿈다락사업이나 지역특성화 사업과의 차별성을 상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더욱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지역매개자에 대한 교육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됨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관련

【보건복지부】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양육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여 안심하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함
- 보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은 현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체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나, 이주아동은 배제되어 있음. 이주아동을 포함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도록 개선 필요성이 지적됨

【교육부】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 각종 지원에 있어 신청주의 등으로 인한 접근성의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홍보 및 신청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와 같이 특별 정책 등에 대한 안내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준비될 필요 있음
- 돌봄교실 환경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인하기 위한 운영 매뉴얼이 제시되어 있음.
 - 다만, 아동보다는 주로 보호자의 욕구에 기반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되어 아동으로 하여금 돌봄 이용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하거나,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위화감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됨
 -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이용 아동에 대한 낙인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여성가족부】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 돌봄교사와 아이돌보미의 돌봄역량(아동에 대한 이해 등)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적절한 노동환경 확보에 부족함이 있어 역량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됨

-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돌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었으나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하였고, 향후 유사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 한국은 2013년 5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법 개정을 이유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입양허가제 도입, 지자체의 입양 초기상담을 통해 아동보호절차 일원화 등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이며, 동 협약 가입은 아동보호체계 개편 및 입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6.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 추진과제 이행상황 총괄

- 사회적 약자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인권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아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보장하고자 하는 분야.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따라 구성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VI. 1. 여성 분야

1	여성 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여성가족부 경찰청	정상추진
2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3	학교 내 여성 폭력 방지	교육부	정상추진
4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5	여성건강 증진 강화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6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익 향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정상추진
7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8	모·부성권 강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VI. 2. 아동·청소년 분야

9	학교 체벌의 금지	교육부	정상추진
10	아동·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교육부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11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교육부	과제완료(20)
12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개선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13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풍토 조성	교육부	정상추진
14	위기 아동 지원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교육부	정상추진
15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교육부	정상추진
16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피해 아동 보호·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17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증진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18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19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20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21	가출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22	위기청소년 비행예방 강화	법무부	정상추진
23	인터넷중독 청소년 치료·재활 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24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정상추진
25	학생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부	정상추진
26	아동유기, 불법입양 대책 강화	통계청,법무부	정상추진
27	아동양육 및 보호의 국가책임 강화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VI. 3. 장애인 분야

28	보호시설 내 수용인의 인권보호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29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30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 개선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31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및 급여 내실화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32	장애인 교육권 보장	교육부	정상추진
33	장애인 시설이용편의 및 사법접근성 보장	보건복지부 법무부	정상추진
34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35	장애인 건강권 보장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36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37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정상추진
38	학대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VI. 4. 노인 분야

3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40	노인학대 예방 및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41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42	노인 건강권 보장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43	단체·문화 활동, 사회공헌 활동 참여 강화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44	노인 소득 보장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45	농지연금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정상추진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VI.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46	방문취업 동포 지원·관리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47	중국 및 구소련 동포 지원	법무부	정상추진
48	재외동포 사회통합 지원	법무부	정상추진
49	재외동포 인권 개선	법무부	정상추진
50	국외입양인 인권 개선과 지원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51	방문취업 해외동포 자녀에 대한 교육권 보장	교육부	정상추진
5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 수립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평가	법무부	정상추진
53	이주민 실태조사 및 정책수요 반영	법무부	정상추진
54	이주민 사회통합 지원제도 활성화	법무부	정상추진
55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장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56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제도 개선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57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정상추진
58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59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60	이주민 문화교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추진
61	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	교육부	정상추진
62	외국인 입국규제제도의 합리적 운영	법무부	정상추진
63	난민심사 제도기반 개선	법무부	정상추진
64	난민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	법무부	정상추진
6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제개선	통일부	정상추진
66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지원 강화	통일부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67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	통일부	정상추진
68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의 탈북민 인권보호 강화	국가정보원	정상추진
69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통일부, 교육부	정상추진
종합	과제완료 1개, 정상추진 68개		

※ 과제완료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 **(이행상황 요약)** ① 69개 과제 중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과제는 이행 완료되었고 ② 여성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등 68개 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됨

□ 주요 이행평가

여성 분야 관련

【여성가족부】 여성 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 여성폭력 방지법 제정 및 정책 전문기관 특수법인화를 완료하고, 7개 광역시·도에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등 제도적·정책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음
-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신종 여성 대상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사회초년생과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폭력 발생 매커니즘에 개입할 수 있는 방향의 교육이 진행됨
- 이행실적이 정량에 대한 기록에만 치중되어 있음. 여성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 마련의 정책적 방향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됨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다각화가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예산 및 국비지원 상담소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1개소당 1명에 대한 인건비만이 지원되는 한계 및 보호시설 종사 인력에 대한 처우 점검 필요성이 지적됨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 과도한 행정적 처리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피해자 ‘보호시설’ 명칭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 시설 환경 개선 및 자립지원의 현실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 확충 사업의 일반회계 편성 등이 제안됨

아동·청소년 분야 관련

【교육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 교육부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과제는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면서 ‘완료과제’로 보고되었으나, 교육자치의 범위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비차별과 참여권 보장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함
- 학생참여 등 학생인권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추진과 더불어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교육부의 역할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장애아동, 학교밖청소년, 가정밖아동·청소년, 빈곤가정 아동·청소년 및 보호대상아동 등 소수자 아동·청소년의 참여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태 파악, 참여율 제고를 위한 특별한 고려 마련 필요성 지적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공적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그간 민간에 일임되었던 아동보호체계가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을 통해 각각의 아동복지·지원 사업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기회가 마련되었음
-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협력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형사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업무체계와 절차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및 협력이 필요함(국가인권위원회, 2022)
- 즉각분리 제도('21. 3. 시행)와 관련하여, 아동 중심적 판단과 개입을 통한 아동의 원가정 보호 강화 및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됨

【여성가족부】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처벌하기보다는 피해자로 규정하고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매매 재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육, 상담, 재발방지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초 유입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는 “예방”과 “조기개입”, 사후개입에 따른 안정적인 “사후관리”가 주요한 과제인데, 해당 사업의 예산은 정해진 인건비와 운영비 외 교육 및 수퍼비전, 모니터링, 구조적 인프라 확충 등이 고려되지 않았음. 예방과 지속적 개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할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됨
-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 유형이 포함되므로 관계부처·기관의 전문적 협업이 필요하고, 학교밖, 보호대상아동 지원 시스템을 통한 업무연계와 신속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매뉴얼, 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됨

장애인 분야 관련

【교육부】 보호시설 내 수용인의 인권보호

- 시설생활인의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운영,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장애인당사자가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과 침해구제 상황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인권교육 실시가 제안됨

【법무부】 장애인 시설이용편의 및 사법접근권 보장

- 「장애인복지법」 개정(‘21. 6. 시행)으로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이 가능하게 되어 장애인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상 진술권 및 사법접근성이 향상됨
- 진술조력인의 규모 확대는 물론, 피해자의 장애유형별 특성 및 개인별 특수성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진술조력인에 대한 교육 충실화 필요

노인 분야 관련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 과제 이행내용이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한정되어, 과제 목표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지적됨
- 시설에서의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대신고자에 대한 보호, 불시점검, 분리 공간 마련, 노인학대매뉴얼 배포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고용노동부】 노인 소득 보장 대책 마련

- 취업상담·직업능력 향상·취업알선 등 개인별 특성 및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시민취업지원제도의 목적은 타당함.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세스 개선, 지원대상 확대 등은 고무적이며, 시민취업지원 참여 대상자가 증가한 것은 유의미한 결과임
- 다만, 동 제도는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 일반을 위한 제도로써 노인에 특화된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노동능력이 없거나 70세 이상인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이 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국가가 노인 인권 실현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노인빈곤에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고 노인이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공공일자리 제공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4차 산업 대비 직업훈련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주민 지원과 사회통합 관련

【고용노동부】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장

-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기숙사 정보제공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확립한 것은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토대임
-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의 내용 중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개선사항이 확인되지 않음이 지적됨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설립의 법적근거가 미흡하고 직원 처우도 열악한 가운데 예산이 감소되었음. 적극적인 활동 및 전문성을 갖도록 법령에 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원 등 직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법무부】 난민심사 제도기반 개선

- 난민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난민위원회와 자문단을 구성하고, 난민전담 공무원 전문성 향상 방안 용역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함
- 난민심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여 일부 난민의 공항 체류가 장기화되거나, 심사과정에서 난민의 알권리와 참여(본인 및 통역인 또는 조력자 등)가 충분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지적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

-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잘 구축되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의 교육, 훈련, 취·창업 정책과 함께 지역주민 역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쌍방향적 노력의 필요성이 지적됨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화하고, 시혜적 대상으로 삼는 관점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소통·통합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의해야 함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실질적 정착에 실패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가족을 단위로 한 지원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음

7.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 추진과제 이행상황 총괄

- 인권 보호와 증진의 저변 확장을 통해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관련 국내·외 협력과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으로 구성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Ⅶ.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1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비준	법무부	정상추진
2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노동부	과제완료(21)
3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4	국제인권조약상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	법무부, 외교부 여가부, 복지부	정상추진
5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강화	교육부	기 타
6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조치	법무부	정상추진
7	국제사회 인권협력 및 역할 강화	외교부	정상추진
8	국제인권기구와 교류 협력 강화	외교부	정상추진
9	인권기반 공적개발협력 추진	외교부	정상추진
10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행정안전부	정상추진
11	인권시민단체 및 사업 지원	행정안전부	정상추진
12	북한인권 증진 방안 추진	통일부, 법무부 외교부	정상추진
13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통일부, 외교부, 복지부 농림부, 질병청	정상추진
14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통일부	정상추진

Ⅶ.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15	인권교육 진흥 추진	법무부	정상추진
16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법무부, 통일부	정상추진
17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교육부	정상추진
18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교육부, 여가부	정상추진
19	일반학교의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강화	교육부	정상추진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20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교육부	과제완료(20)
21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교육부	정상추진
22	사회적 소수자 인권 교육 지속	경찰청	정상추진
23	국가·지방 공무원 인권교육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정상추진
24	법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법무부 경찰청 통일부	정상추진
25	군 장병 인권교육	국방부	정상추진
26	변호사 인권교육	법무부	정상추진
27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인권교육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28	사회적 약자 및 보호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정상추진
29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보건복지부 여가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30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31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여가부, 문체부	정상추진
32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여성가족부	정상추진
종합	과제완료 2개, 정상추진 29개, 기타 1개		

※ 과제완료 : ILO 핵심협약 기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기타 :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강화

- (이행상황 요약) ① 32개 과제 중 ILO 핵심협약 기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과제는 이행 완료되었고 ②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비준 등 29개 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었으며 ③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강화 과제는 사정변경 등으로 과제추진 곤란(기타로 분류)

□ 주요 이행평가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관련 국내·외 협력 관련

【법무부】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조치

-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하는 차원에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제출하고, 국가보고서 작성 시 국가인권 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협의절차를 정례화한 것은 해당 부처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다만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이행되지 않은 사안들이 지적됨

8.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 추진과제 이행상황 총괄

-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 수행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에 기여

구분	추진과제	추진부처	추진현황
Ⅷ. 기업과 인권			
1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외교부,노동부	정상추진
2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정상추진
3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조달청	정상추진
4	생활제품 소비자안전 확보	산업통상자원부	정상추진
5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기 타
6	다자 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	외교부,노동부 법무부,여가부	정상추진
7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노력	고용노동부	정상추진
8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환경부	정상추진
9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영	산자부,환경부 국토교통부	정상추진
10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정상추진
종합	정상추진 9개, 기타 1개		

※ 기 타 :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 (이행상황 요약) ① 10개 과제 중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등 9개 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었고 ② 다만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과제는 사정변경 등으로 과제추진 곤란(기타로 분류)

□ 주요 이행평가

기업과 인권 관련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기업의 인권 존중책임 확보

- 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의 인권존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을 중심으로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 수립, 현지 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해왔으나, 외교부 차원의 과제 이행내역이 미비하다고 지적됨
- 개발협력사업의 인권존중 책임의 확산에 있어서 인권영향평가 워크숍 참여 기관이 '20년 19개, '21년 46개에 그쳐 참여가 저조하다는 평가
- 모든 개발협력사업 수행 기관이 현지 주민 인권보호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등 인권보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폭넓은 참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이행평가

2023. 5.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이 자료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행평가 및 제4차 NAP 제시과제」 연구용역 보고서 중 이행평가 관련 내용입니다.

- 연구용역 기간 : '22. 4. 28. ~ 8. 28.
- 연구 수행기관 :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목 차

I . 모든 사람의 생명 · 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1
☐ 이행상황 총괄	3
☐ 과제별 이행평가	4
 II .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54
☐ 이행상황 총괄	56
☐ 과제별 이행평가	57
 III .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회	78
☐ 이행상황 총괄	80
☐ 과제별 이행평가	82
 IV .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122
☐ 이행상황 총괄	124
☐ 과제별 이행평가	125

V.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139

☐ 이행상황 총괄 141

☐ 과제별 이행평가 145

VI.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337

☐ 이행상황 총괄 339

☐ 과제별 이행평가 342

VII.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477

☐ 이행상황 총괄 479

☐ 과제별 이행평가 481

VIII. 인권 친화적 기업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548

☐ 이행상황 총괄 550

☐ 과제별 이행평가 551

I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1. 생명권 2. 신체의 자유 3. 안전권

□ 이행상황 총괄

< 총괄표 >

구 분	계	과제완료	정상추진	추진지연	기타
합 계	25	2	21	2	-
1. 생명권	3	-	3	-	-
2. 신체의 자유	11	1	8	2	-
3. 안전권	11	1	10	-	-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진과제	추진상황
【생명권】			
1	I -1-①	사형제도 개폐 검토	정상추진
2	I -1-②	자살예방 체계 강화	정상추진
3	I -1-③	생명존중 문화 확산	정상추진
【신체의 자유】			
4	I -2-①	인신구속제도 개선	정상추진
5	I -2-②	피고인·피의자 권리 보호증진	추진지연
6	I -2-③	대용감방 시설개선	정상추진
7	I -2-④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정상추진
8	I -2-⑤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프로그램 다양화 및 개선	정상추진
9	I -2-⑥	재범위험성 평가 개선	과제완료('19.)
10	I -2-⑦	보호·위탁소년 인권 및 처우 개선	정상추진
11	I -2-⑧	성충동 약물치료의 인권침해 소지 개선	정상추진
12	I -2-⑨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정 인권보호 강화	정상추진
13	I -2-⑩	외국인 보호 장기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정상추진
14	I -2-⑪	인신보호법제 활성화	추진지연
【안전권】			
15	I -3-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정상추진
16	I -3-②	범죄피해구조 및 형사조정제도 개선	정상추진
17	I -3-③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리 확대 및 강화	정상추진
18	I -3-④	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안전 강화	정상추진
19	I -3-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정비 및 강화	정상추진
20	I -3-⑥	시설·서비스 소비자안전 확보	정상추진
21	I -3-⑦	재해에 강한 국토기반 조성	정상추진
22	I -3-⑧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	과제완료('18.)
23	I -3-⑨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추진	정상추진
24	I -3-⑩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정상추진
25	I -3-⑪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정상추진

□ 과제별 이행평가

2-1	I -1-②	자살예방 체계 강화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	1. 생명권	② 자살예방 체계 강화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과제목표	자살예방 체계 구축 및 강화		
주요 내용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 추진 -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적극적 개입을 통한 자살 위험 제거 -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 확산 방지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국가자살동향시스템 구축 및 이용자(17개 시·도 자살예방 담당 공무원) 대상 활용 교육 - 최근 자살사망자 동향 분석자료 제공(연 12회) - 우울증 국가검진 대상 확대(40세 → 20·30세) - 생명지킴이 양성(이·통장 등 지역풀뿌리 조직 및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문간호사 등 위험군 접점 직업군 등) -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개통 - 코로나19로 인한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 건 급증에 따른 대응 강화 1393 대기 1분 경과 시 1577-0199로 전환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투입,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자살상담 경험 인력 등 자원봉사자 투입 - 약 500명을 비대면 상담(1577-0199) 인력으로 배치 -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18년 52개소 → '19년 63개소 → '20년 69개소 → '21년 77개소) - 자살시도자에 대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치료비 지원 ('18년 521백만 원 → '19년 303백만 원 → '20년 500백만 원 → '21년 405백만 원) -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전국 확대 - 자살유족 지원 -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서비스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3개 광역·권역 및 13개 기초)

- 자살유족 상담 홈페이지 개설('18년 9월)
- 자조모임 운영(72개소) 및 홍보
- 치료비 지원(1,251명, 약 10억 원)
- 자살 유족 온라인 자가관리 프로그램 운영(453명 등록)
- 아동·청소년 유족 대상 학업 및 생활 지원금 지원(119명)
- 조직 내 자살사건 발생 시 자살 사후대응 현장서비스 지원(51개 기관, 4,248명) 및 헬프라인 운영
- 자살 사후대응 전문 콘텐츠 9종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13회 572명)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생명지킴이 '21년 기준 259,546명 양성(누적인원 1,729,386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은, 생명권 및 건강권 실현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춘 자살예방 프로그램만으로는 자살예방에 한계가 있음
- 자살은 정신건강상의 문제 외에도, 예컨대 직장 내 괴롭힘, 디지털성폭력, 사이버폭력, 알코올 사용 장애, 장애, 성적지향,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적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점에 기초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생명권과 건강권의 실현 수단인 자살예방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자살에 대한 경각심이나 생명 존중의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는데, 이행내용에서는 이를 위한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향후 과제

- 사회적 관점에 기초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 의료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자살자의 사회적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및 근거기반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예방정책의 주요 대상을 선정,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실시
- 자살 관련 인권의식 증진 사업 실시 : 자살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자살은 사회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유가족에 대한 낙인이나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	1. 생명권	② 자살예방 체계 강화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과제목표	•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체계 강화로 청소년 자살 예방		
주요 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상담채널 등을 통해 자살·자해 시도 청소년에게 상담 및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 청소년지도자들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도록 교육 실시 – 지도자 양성교육으로 양성된 지역 내 자살예방 전문가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등에서 자살예방 교육 실시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청소년지도자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 (‘18년) 752명 → (‘19년) 842명 → (‘20년) 854명 → (‘21년) 954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동반자 운영 확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8년) 226개소 → (‘21년) 238개소 – 청소년동반자 : (‘18년) 1,261명 → (‘21년) 1,354명 •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292명 • SNS 등 온라인매체에 전문상담원이 방문하여 상담하는 ‘사이버 아웃리치’ 활동을 통한 자살위기·자해 청소년 조기발견 및 지원 강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청소년 상담 1388 정신건강 상담실적 – (‘18년) 150,229건 → (‘19년) 156,220건 → (‘20년) 190,330건 → (‘21년) 205,373건 • 청소년안전망 자살 관련 지원서비스 실적

- ('18년) 71,214건 → ('19년) 84,368건 → ('20년) 87,458건 → ('21년) 97,691건
- '사이버 아웃리치' 활동 실적
 -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상담) ('20년) 8,484건 → ('21년) 18,032건
 - (유관기관 연계) 상담복지센터, 일시보호소·쉼터, 112 및 119 등 ('20년) 316건 → ('21년) 694건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정신건강 상담 등을 지원한 것은 생명권 및 건강권 실현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춘 자살예방 프로그램만으로는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자살은 정신건강상의 문제 외에도, 예컨대 학교 폭력, 빈곤 등 사회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적 관점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속한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게이트키퍼를 양성함에 있어서도 그 교육내용에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사회적 관점에 기초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 의료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및 근거기반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예방정책의 주요 대상을 선정,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실시
- 청소년 게이트키퍼의 인권적 역량 강화 : 자살예방 교육 등 청소년 게이트키퍼의 활동 내용 중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	1. 생명권	③ 생명존중 문화 확산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과제목표	• 시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주요 내용	•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구성 •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시민 참여형 자살예방 ‘괜찮니? 캠페인’ 확대 – ‘괜찮니 에어키스’ 캠페인, 우체통 캠페인(’20년 전국 47개 기관) • 자살예방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 유튜브, 네이버 포스트, 카카오톡 플러스 등 중앙자살예방센터 운영 SNS 채널에 게시 • 인스타툰 작가 협업 브랜드웹툰 10회 진행, 약 73만명에게 콘텐츠 도달 • 2030 여성 대상 기획 영상 4편, 자살유족 인식개선 영상 4편 •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세계 자살 유족의 날 행사 개최 • 한국교육방송공사, 네이버, 트위터, MBC 라디오 등 민간기관 협력을 통한 홍보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 사항 없음

❸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홍보를 전개함으로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울감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경제적 어려움, 돌봄의 부담 등으로 가족 전체가 자살에 이르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에 의해 죽음에 이른 자녀의 생명권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는 생명권이 있어야 함. 생명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권적 가치가 강조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 등이 원인이 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자살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문제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도록 사회구성원의 인권적 역량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향후 과제

-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구성원의 인권적 역량 증대 방안 마련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	2. 신체의 자유	① 인신구속제도 개선
추진부처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형사1과 형사정책담당관실
과제목표	-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인권 보장 - 인신구속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위법·부당한 인신구속 방지 - 부당한 인신구속 사례 증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주요 내용	‘구속영장 청구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 - 전국 고·지검(지청 포함)에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운영 - 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장소에 대한 철저한 감찰 ‘수사지휘 전담검사제’ 운영으로 위법·부당한 인신구속 차단하고 운영상황을 수시 점검함으로써 지휘의 적정성 제고 - 수사 담당자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가혹행위 엄단 - 영장전담 검사제 운영, 인권보호부 신설·운영 등을 통해 위법·부당한 인신구속 가능성 차단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검정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 「시정사건 처리지침」 등의 대검예규를 제정·시행함으로써 엄정한 사법 통제를 위한 업무체계 마련

□ 정책·관행의 변화

-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한 ‘구속영장 청구 등 적정성’ 심의
- 체포·구속 장소 감찰 실시
 - 검사에 의한 체포·구속 장소 직접 점검 및 면담 실시(‘18년 3,721회, ‘19년 3,484회, ‘20년 2,354회, ‘21년 104회)
- 사법경찰관 신청 체포·구속영장 엄격 심사
 - ‘18년 체포영장 기각 5,696건(전체 건수 중 13.5%), 구속영장 기각 5,871건(전체 건수 중 18.5%)
 - ‘19년 체포영장 기각 5,583건(전체 건수 중 13.6%), 구속영장 기각 5,688건(전체 건수 중 17.7%)
 - ‘20년 체포영장 기각 5,277건(전체 건수 중 14.3%), 구속영장 기각 5,260건(전체 건수 중 18%)
 - ‘21년 체포영장 기각 5,650건(전체 건수 중 17.7%), 구속영장 기각 6,172건(전체 건수 중 22.8%)
- 수사기관의 독직폭행·가혹행위 엄단 조치

- 인신구속 과정에서의 사법통제 관련 역량 강화 및 제도개선
 - 인신구속 관련 일선의 사법통제 업무 수시 지원
 - 사법통제 우수사례를 정기적으로 취합·관리·전파
 - 각 청별로 자체 제도개선안 마련·시행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전국 고·지검(지청 포함)에 검찰시민위원회 설치(2022년 1월, 기준 총 65개)
 - ‘구속영장 청구 등 적정성’ 심의대상 추가
 - 정례화(매월 1회 이상)
 - ‘구속영장 청구 등 적정성’ 안전에 대한 심의 실적(‘18년 ~ ‘21년)
총 554안전 심의(구속취소 2, 영장청구 489, 재청구 63)
- 수사기관의 독직폭행·가혹행위 엄벌
 - ‘18년 ~ ‘21년 17건 기소
- 인신구속 과정에서의 사법통제 관련 역량 강화 및 제도개선
 - 사법통제 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우수청 등 매년 각 6개청 선정
 - 사법경찰관의 인신구속에 대한 사법통제 우수검사 매년 각 8~10명 선정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인신구속’ 관련 심의 건수 및 비율 지속적 감소
 - 형사사건에서 구속사건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 코로나19로 인하여 심의건수 대폭 감소

2020년		⇒	2021년	
총 심의건수	인신구속 관련(%)		총 심의건수	인신구속 관련(%)
701	39(5.6%)		347	16(4.6%)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위법·부당한 인신구속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은 인권존중 책무의 이행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전국 고·지검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시민이 단순한 인권존중 책무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의 주체로서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로써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를 예방 감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임
- 다만,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는 권고적 효력만 있다는 한계가 있고, 심의 내용의 비공개, 위원 선정의 공정성 여부, 심의기간의 적정성 여부, 악용 가능성 등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향후 과제

- 검찰시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	2. 신체의 자유	② 피고인·피의자 권리 보호 증진
추진부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과제목표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침해 방지 및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 실질화를 위해 국선변호제도를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주요 내용	(대상범위)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출석요구 받은 피의자 중 ①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② 「시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상 필요적 국선), ③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한 자(이상 신청에 의한 국선) (운영방식) ① 형사변호공단에서 국선변호인 명부작성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② 공단 이사회의 이사는 법원·법무부·대한변협이 각 3인, 학계에서 2인 추천한 총 11명으로 구성,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출 (선정절차) ① 필요적 국선의 경우, 수사기관이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체포할 경우 형사공공변호공단에 통지, 공단이 국선변호인 선정하고, ② 신청에 의한 국선의 경우, 피의자가 형사변호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이 경제적 요건 등을 심사 후 선정 (독립성·중립성 보장) ① 이사의 임기 및 연임, ② 이사의 직무상 독립 ③ 이사 해임 시 법원, 대한변협의 사전 의견 청취 등 규정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 유관기관의 반대로 제도 도입 지연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 정책·관행의 변화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19년 5월)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19년 3월)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 배포('19년 4월)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대상범위, 선정절차 등을 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19년 6월)

-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내용 반영한 법률구조법 개정안 재입법예고('19년 9월)
-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안 국회 제출('19년 11월)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포함한 법률구조제도 통합을 위한 사법지원일원화 추진 착수('20년 5월)
- 법무부 사법지원일원화 TF 구성 운영('20년 9월 ~), 5차 회의까지 개최
- 형사공공변호인 관련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7차 회의 안건 보고('21년 7월)
- 전자공청회 개최('21년 8월)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유관기관 반대로 인해 제도 도입 지연
 - (기재부) 과도한 재정 소요로 인해 공단 설립 반대
 - (대한변협) 운영주체인 공단의 법무부 산하 설치 반대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형사 피의자 또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경제적 형편 등 현실적인 이유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인권실현의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에 의한 조력을 받을 경우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 및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도입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더구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수사에 관한 한, 경찰 단계가 피의자로서는 사실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되었음. 이러한 점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은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국선변호인, 피해자국선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등 기존 제도와의 관련성, 운영 주체의 독립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된 만큼 관련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¹⁾

□ 향후 과제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보완 및 도입 지속 추진

1) 대한변호사협회.(2018. 10. 24).보도자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신중한 도입을 촉구한다”

<https://www.koreanbar.or.kr/pages/news/view.asp?category=&page=1&seq=8946&types=3&searchtype=contents&searchstr=%EA%B3%B5%EA%B3%B5%EB%B3%80%ED%98%B8%EC%9D%B8>. (최종검색일 : 2022. 8.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2021. 4. 29).논평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바람직한 방식으로 신속히 도입하여야”

<http://minbyun.or.kr/?p=48158>. (최종검색일 : 2022. 8. 19)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	2. 신체의 자유	③ 대용감방 시설 개선
추진부처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
과제목표	노후화 되고 협소한 경찰서 대용 구치시설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 소지 우려에 따라 전국 20개소의 대용구치시설을 1989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소		
주요 내용	- 교정시설을 단계적으로 신축하여 대용구치시설로 인한 논란 불식 － 사업 추진 중 (2개소) : 거창, 남원 － 사업 계획 수립(1개소) : 영동 － 조치완료(17개소) : 천안·울산·평택·논산·여주·서산·충주·통영·밀양·영월·해남·정읍·상주·의성·영덕·제천·속초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교정시설 신축으로 대용감방 단계적 해소 - 속초교도소 신축 사업 － '18년 1월 ~ 신축공사 정상 추진 － '20년 4월 12일 준공 -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 － '19년 10월 16일 주민투표 결과, 현위치 찬성(64.75%)으로 결정 － '19년 10월 31일 공사 재착수 － 공사 정상 추진 중(준공예정일 '22년 10월 8일) - 남원교도소 신축 사업 － '20년 4월 21일 남원시, 남원교도소 신축 후보지 건의(제출) － '20년 11월 5일 남원교도소 신축 후보지 실무 답사 － '21년 5월 17일 남원교도소 부지선정 및 신축계획 보고 － '21년 8월 18일 남원교도소 신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 '21년 12월 7일 남원교도소 신축 사업비 반영('22년, 1,177백만 원) － 정상 추진 중(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시행 중)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속초교도소 신축 완료
- 거창교도소, 남원교도소 공사 정상 추진 중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르면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어야 함(제10조). 또한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은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공간, 조명과 환기, 위생, 의류와 침구, 급식 등 물적 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피구금자가 건강을 보존하도록 설계된 인도적인 시설 속에 구금되어야 함을 명문화하고 있음
- 이처럼 미결수용자라 하더라도 숙식이나 운동, 위생, 의료 등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된 교정시설에 구금될 권리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대용감방의 폐지는 인권존중의 책무 이행으로서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교정시설의 신축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주거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신축 과정 중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함. 또한 미결수용자의 인권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교정시설의 지속적 신축으로 대용감방 해소 완료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	2. 신체의 자유	④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추진부처	법무부		교정혁신추진단
과제목표	•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통한 수용자 인권 보호		
주요 내용	• 수용공간 확보 및 현대화 - 교정시설 신축 및 증 개축을 통한 수용능력 확충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교정시설 과밀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
- 강원북부(교) 신축, 대구(교) 이전신축 사업 및 경북북부제3(교) 수용동 증축, 군산교도소 리모델링 사업완료
- 법무부 과밀수용해소 T/F팀 운영
 - 과밀해소 관련 수용거실 확충 예정기관 현장 점검 및 관련 법률 개정
 - 교정시설 현대화 및 과밀 해소 등 개혁 요소를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출범('20년 9월 25일)
- 후문정책(가석방)을 통한 과밀수용 완화
- 과밀수용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이전·신축 등을 지속 추진
 - 신축(7개 기관) : 화성여자·태백·남원(교), 경기북부·거창·대전·광주(구)
 - 이전·재건축(7개 기관) : 안양·전주·원주·창원·대전·부산(교)·부산(구)
 - 수용동 증축(5개 기관) : 청주·여주·경북3·군산(교)·논산지소
- 여성수형자 과밀상태 해소 및 처우 강화를 위한 천안개방교도소 기능전환 추진
- 유희부지 수용공간 확충을 위한 '수용공간 확충 실무 추진단' 구성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강원북부(교) 신축, 대구(교) 이전신축 사업 및 경북북부제3(교) 수용동 증축, 군산교도소 리모델링 사업완료
- '21년 수용동 리모델링 16,630백만 원, 울산(구)·제주(교) 수용동 증축 526백만 원, 태백·남원(교)

신축 6억 원 예산안 반영

- 천안개방교도소를 여성수형자 개방시설로 기능 전환하여 240명 수용공간 확보
- 교정본부 수용공간 확충 실무 추진단 운영을 통한 영월(교) 등 20개 기관 수용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 파악
- '21년 가석방 누적 인원 : 9,390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일부 교정시설 민원발생 등으로 이전사업 추진 연기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형벌의 집행이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는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사항임. 재소자의 건강권을 해치는 처벌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과밀수용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²⁾이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³⁾에 의해 이미 확인되기도 하였음.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의 신축과 증 개축은 국가의 인권존중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시급히 이행되어야 할 정책임
- 특히 과밀수용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적절한 교정 공간의 확보는 재소자의 건강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1인당 최소면적 기준은 유엔피구금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의 건강에 필요한 면적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협소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2022a : 90-91), 1인당 최소면적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상향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교정시설의 신축과 증 개축은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권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재소자의 인권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

□ 향후 과제

-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 1인당 최소면적의 상향 조정
- 불구속 수사원칙의 준수, 가석방 제도의 활성화 등 기관별 수용률 저하를 위한 인신구속제도 탄력적 운영

2) 헌법재판소 2016. 12. 29.자 2013헌마142 결정

3) 예컨대, 부산고등법원 2017. 8. 31. 2014나50975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	2. 신체의 자유	⑤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프로그램 다양화 및 개선
추진부처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지과
과제목표	수용자 스스로의 내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교화 프로그램 도입 및 다양한 문화·가족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수용자의 건전하고 안정된 사회복귀를 도모		
주요 내용	- 맞춤형 교육·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준법정신, 친사회성, 자기통제 등 학습참여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집중인성교육 운영 - 귀휴, 가족만남의 집 이용 등 사회적 처우프로그램과 가족접견, 가족사랑캠프 운영 -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구축으로 미성년 자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형 접견 실시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인성·감성교육 및 가족·대인관계 회복 등을 위한 집중인성교육 시행
 - (‘18년) 9,909명, (‘19년) 11,566명, (‘20년) 4,917명, (‘21년) 7,176명
- 가족 해체를 막고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시행
(단, ‘21년은 COVID-19로 일부 프로그램 중단)

세부사업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실적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가족만남의 날	8,891	9,004	59	0
	가족만남의 집	1,913	1,908	27	0
	가족접견	4,144	4,295	75	859

- 수용자 자녀(가족) 지원

생계지원	학자금지원	상담·멘토링	물품지원
15,620만 원(429명)	20,946만원(420명)	382명	8,759만 원(704명)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구축

기관	설치완료	설치예정	미설치
53	47	1	5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2021년은 교정시설에 코로나19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자 외부강사 위주였던 집중인성교육, 가족과의 만남을 지원하던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등을 제한하거나 중단함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교정·교화를 통한 재범의 위험성 감소는 사회 일반을 위한 것임은 물론이고 수형자가 형 집행 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므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수형자의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인권실현의 책무에 해당함
- 과제명과 과제목표에는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실시된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실시되고 있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임. 그동안 실시된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은 수형자 개개인의 인격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탓에 원만한 사회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이에 대응하여 수용자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실시나 외부 강사에 의한 교육 등이 제한되었으나,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가족과의 접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재소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 또한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는 교정의 근본으로서 감염병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단될 수 없는 것이므로, 코로나 19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현 시점에서 비대면 프로그램의 실현 방안을 고안해내야 함
- 또한 코로나 19 집단 감염에 따른 코호트 격리 등으로 우울증을 겪는 재소자나 교정직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향후 과제

-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한 수용자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 비대면 방식에 의한 프로그램 실시 방안 마련 : 접견 방식의 원격화 또는 전자화 등
- COVID-19 집단 감염에 대비한 건강권 보장 방안 마련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	2. 신체의 자유	⑥ 재범위험성 평가 개선
추진부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과제목표	-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행동변화를 반영, 평가할 수 있는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PRAI-D)*를 개발, 과학적 대상자 분류·지도감독 체계 마련 * KPRAI-D (Korea Probation Risk Assessment Inventory-Dynamic)		
주요 내용	- 기존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PRAI, 정적 항목이 다수) 평가 문항 적절성 여부 및 성과를 분석하여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보완 - 보호관찰 대상자의 행동변화, 취업, 가족, 교우관계 등 동적인 제반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문항 등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18년 1월 KPRAI-R 보호관찰기관 의견 조회 및 매뉴얼 수정, 보완
- '18년 2월 보호관찰정보시스템 상 평가시스템 개선
- '18년 3월 일선 시달 및 직원 직무교육 실시
- '18년 4월 보호관찰기관 전면 실시
- '19년 12월 KPRAI-R 예측 타당도 검증
- * 초기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PRAI-D)의 명칭을 연구 개발 단계에서 KPRAI-R로 변경함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신체적 자유의 제한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험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과학화하여 판단에 정확성을 기한 것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평가 도구에 의한 평가결과가 절대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향후 지속적인 검증과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함

□ 향후 과제

-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에 대한 지속적 검증과 보완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	2. 신체의 자유	⑦ 보호·위탁소년 인권 및 처우 개선
추진부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과제목표	• 소규모 생활실 조성을 통한 개별처우 기반 강화 및 인권친화적 처우 개선		
주요 내용	• 수도권 위탁소년 수용과밀 해소를 위한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신설 추진 • 부산소년원 위탁생활관 개별실 확충 리모델링 추진 • 의료재활소년원 개청을 통한 정신질환 보호소년 의료처우 강화 • 안양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리모델링 • 코로나 19 대응 방역 강화를 위한 격리실 확충 공사 • 소년원생 1일 급식비 인상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1년 4월 21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지침 등 개정으로 인권처우 개선 근거 마련

□ 정책·관행의 변화

- 소년원생 1일 급식비 인상 추진(‘18년 5,409원→’19년 5,680원→’20년 5,680원→’21년 6,242원)
- 소년원생 독도탐방, 가족캠프 등 다양한 개방처우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교육 확대 시행
- 친인권적 보호장비(벨트형 족쇄 100개) 제작 및 전국 기관 보급
-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 수용실태점검
- 외부 호송 최소화를 위해 ‘검찰청 원격화상조사시스템’ 구축
- 고위험 정신질환자 조기 선별 및 사전개입을 위한 소년원생 정신건강증진 프로세스 구축
- 소년원생 의료처우 향상을 위한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 수립 및 기준 제정
- 소년원학생 인권처우 환경 개선
 - 면회시간 30분→40~50분으로 연장, 온수공급 6개월 내외→연중으로 확대 등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정신질환 소년원생 집중 치료·관리를 위한 의료재활소년원 신축(정원 80명) 및 의료진 확보
- 서울소년원, 안양소년원, 제주소년원 등 소규모 생활실 증설
 - 안양소년원 : 8인실 3개 → 3인실 6개, 공동화장실 1개 → 3인실 1개
 - 제주소년원 : 도서실 개조 → 2인 생활실 3개, 공동 목욕탕 개조 → 개별 샤워실 부스 20개 설치

- 부산소년원 : 위탁생활관 개별실 확충 리모델링 공정률 35% 달성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격리실(10개) 확충
-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신축 설계비 확보(1,417백만 원)
-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설계비 확보(3.55억 원)
- 소년원학생 1일 급식비 전년대비 9.9% 인상('20년, 1일 5,680원 → '21년, 1일 6,242원)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신축 부지의 그린벨트 미해제에 따른 공사 지연
-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리모델링 설계비용 초과에 따른 진행 차질 발생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외부 체험활동 중단으로 개방처우 미 실시
- 생활관 소규모화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보호소년의 타 기관으로 분산 수용에 따른 일부 기관의 수용 과밀 초래 및 면회 보호자 불편 호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의 기본원칙은 보호소년 등이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에서, 안정되고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기르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소년원의 과밀상태를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정책들은 이와 같은 보호소년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소년보호시설에서 실시되는 교육, 훈련, 체험활동 등은 예전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사회적응력을 기르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하기는 어려움
- 보호소년 등은 여전히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고 중간처우를 담당하는 시설도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교정·교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봉사, 직업교육, 운동 등 자기개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코로나 19로 인하여 가족 접견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의 실시가 제한되기도 하였는데, 가족 접견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보호소년 등의 인권 존중과 실현은 감염병을 이유로 침해될 수 없는 가치이므로 비대면 방식을 통해 접견 등을 실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아울러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가 인권의 충분한 존중과 실현이라고 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은 자칫 소년범죄의 양산으로 보호소년 등을 심각한 인권침해적 환경에 노출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문제는 그것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반드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인권적 처우개선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보호·위탁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 개선
-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등 대안적인 교육의 실시
- 코로나 19에 대비한 비대면 방식의 접견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방안 마련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	2. 신체의 자유	⑧ 성충동 약물치료의 인권침해 소지 개선
추진부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과제목표	불필요한 약물치료를 최소화하고, 약물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등 치료대상자의 인권보호		
주요 내용	-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개선 - 약물치료 부작용 최소화 - 치료명령 임시해제 적극 실시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18년 1월 1일 시행)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집행면제 신청 근거 마련

□ 정책·관행의 변화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면제 신청 제도 마련
 -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전 12개월전부터 9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성충동 약물치료 부작용 검사 실시
 - (‘18년) 집행인원 21명 대상 총 34회 실시
 - (‘19년) 집행인원 39명 대상 총 72회 실시
 - (‘20년) 집행인원 33명 대상 총 64회 실시
 - (‘21년) 집행인원 40명 대상 총 73회 실시
- 치료대상자의 인권침해 예방 교육 과정 개설 및 실시
 - (‘19년) 성충동 약물치료 전담직원 30명 대상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부작용으로 인한 약물치료 일시중단자 '19년 1명, '20년 1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가 재범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 하더라도 치료 대상자가 재범 방지의 목적을 넘어 과도한 부작용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 혹은 이를 방치하는 것은 인권 보호의 책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치료 대상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부작용에 대한 검사는 그 전제로서 철저히 이행될 필요가 있음
- 약물치료는 치료 대상자의 건강권 외에도 인격권,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상당히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치료 대상자로서는 약물치료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심각할 수 있음. 약물치료를 시행할 경우 심리 치료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할 것임
- 그러나 근본적인 시각에서 볼 때 성충동 약물치료는 그 목적에도 불구하고 치료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기능을 훼손하고, 신체기능 통제를 통해 인간개조로 이끌어내려는 시도로서 동물이나 물건과 구분되는 인간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측면이 상당함⁴⁾. 한편 본인의 치료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치료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치료 대상자가 상쇄약물을 복용할 경우에는 그 효과가 전혀 없게 되나 그 복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약물치료의 적정성이나 실효성에 상당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음.⁵⁾ 제도 시행 후 10년이 넘는 만큼, 약물치료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그것이 재범 방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적정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함

□ 향후 과제

- 성충동 약물치료로 인한 부작용 검사 강화 및 심리치료프로그램의 병행
-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분석 및 제도의 실효성 검토

4) 헌법재판소 2015. 12. 23.자 2013헌가9 결정 중 반대의견

5) 국가인권위원회.(2010. 12. 27). 보도자료 “성범죄자 약물치료시 ‘동의’ 요건 포함해야” - 인권위, 법무부에 성범죄자 약물치료법 개정 권고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boardtypeid=24&boardid=600238>. (최종검색일 : 2022. 8. 19.).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	2. 신체의 자유	⑨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정 인권보호 강화
추진부처	법무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과제목표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시 인권 보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준수 철저		
주요 내용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철저 이행으로 단속 담당 직원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권의식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강화 -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사전제도 및 적극적인 자진출국 유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개정('19년 9월 1일)

□ 정책·관행의 변화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개정('19년 9월1일) - 직무수행 기본원칙에 사고예방 노력 추가 - 단속 공무원 6개월마다 1회 이상 인권 교육 실시, 신규 배치 시 법무연수원 등에서 인권교육 이수 - 사전답사 결과, 안전요원 배치 계획 등 구체적인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단속계획 수립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으로 단속방식 개선 방안 시행('19년12월 11일~'20년 6월 30일) - 자진출국 유도 기간 중에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방지 사전제도 실시(1·2차 제도 → 단속) - 출입국사범 단속 시 영상촬영 등 채증활동 매뉴얼 마련('20년 6월 29일) - 초상권 침해 등의 논란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단속 시 영상녹화 실시 및 영상 관리 -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한 불법고용 범칙금 상향 및 불법고용 알선자 등 처벌 강화('20년 9월 25일) - 상한을 2천만 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양벌규정 대상에 외국인 불법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 추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 총 32,870명 자진출국신고 후 28,998명 자진출국 및 자진출국 유도 제도 활동 강화 - 감염병 심각단계 발령 이후 매뉴얼에 따라 대규모 단속활동 자제 및 특별방역활동기간 단속 유예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유예, 코로나 검진 및 백신접종 독려 및 통보의무 면제제도 제도 활동 - 코로나 검진 시 단속 유예 및 불법체류 통보의무면제 제도 등 30,376건* 단속제도 활동

* 별집촌·외국인 밀집시설, 외국인고용사업장 등 방역계도 25,812개소 포함

- 백신접종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인센티브 제도 시행
 - 국내에서 '21년 12월 31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안심하고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21년 8월 28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접종 완료율이 5.7%에 불과했으나, '21년 12월 31일 1회 이상 백신 접종률 87.2%, 완료율(2차) 83.4%로 향상, 방역사각지대 예방에 기여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출입국사범 단속 시 영상촬영 등 채증활동 매뉴얼 마련('20년 6월 29일)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21년도에도 코로나 확산 방지 및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은 자제하고 중대 위반사범 및 방역위해 등 시민안전 위협, 서민 일자리 잠식 분야 등 제한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으로 단속활동이 크게 위축
- 특히, '21년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어 단속활동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변이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활동 어려움 상존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시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준칙을 개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확인됨. 다만 해당 과제목표 자체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로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
-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것은 형사범죄보다 행정범으로 다루는 것이 합당함에도,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을 형사범죄와 유사한 수준으로 처리하고 단속하는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국제사회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체류자격이 만료된 외국인을 미등록 이주민,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데 반해 우리 정부가 그들을 여전히 불법체류자라 명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체류만료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다고 여겨짐

□ 향후 과제

- 해당 과제의 목표 및 이행내용과 관련하여,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로서 적절한지 여부를 전면 재검토 하고, 불법체류 단속에 앞서 불법체류 요인을 감축할 방안을 마련
- 국제인권규범 및 권고에 따라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을 '미등록체류자' 또는 '체류자격 위반자' 등으로 정정
- 체류자격 위반을 형사범죄가 아닌 행정벌로서의 전환을 검토
- 인권보호 준칙 등 범형식적 대응 이외의 실제 단속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법집행 시 문제점 (인권침해)에 대해 재검토
- 단순히 불법고용에 대한 사용자 또는 알선자 처벌 강화에 앞서, 국내 노동시장의 외국인노동자 고용의 필요성과 공식적 취업체류 정책을 연구
- 입국규제 유예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근거를 제시하여 홍보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	2. 신체의 자유	⑩ 외국인 보호 장기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부처	법무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과제목표	외국인 보호 장기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 내용	- 보호기간의 장기화 방지를 위한 승인심사 강화 - 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3개월마다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인도적 사유를 고려한 보호일시해제 적극 검토 - 신병치료, 체불임금, 피보호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사망 및 치료 등 인도적 사유를 고려하여 보호일시해제 적극 검토 - 신속한 난민인정 심사절차 진행 -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기간 단축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보호기간 장기화 방지를 위한 승인심사 강화 ‘(18년) 보호기간 연장 승인심사(총 320건 중 불승인 44건, 1인당 평균 보호기간 10.1일) ‘(19년) 보호기간 연장 승인심사(총 278건 중 불승인 17건, 1인당 평균 보호기간 9.6일) ‘(20년) 보호기간 연장 승인심사(총 764건 중 불승인 44건, 1인당 평균 보호기간 16.9일) 「보호외국인 장기보호 방지 방안」 마련, 시행(‘19. 12. 16.) * 주요내용 : 보호기간 연장 단계별 승인절차 강화(보호외국인 직접면담 포함), 보호소장의 보호일시해제 관련 의견수렴절차 마련 등 ‘(21년)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실적 : 총 987건 중 불승인 93건(* ‘20년 764건 중 불승인 44건) - 단순 불법체류외국인 출국명령 제도 적극 활용(‘21년 10월 22일 시행) - 형사범이 아닌, 질병 치료가 필요하거나 노약자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강제퇴거명령 최소화 (강제퇴거대상 외국인 1,728명 중 출국명령 755명)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보호기간 장기화 방지를 위한 승인심사 강화 -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심사 ‘18년 총 320건 중 불승인 44건 → ‘19년 총 278건 중 불승인 17건 → ‘20년 총 764건 중 불승인 44건 → ‘21년 총 987건 중 불승인 93건

- 인도적 사유를 고려한 보호일시해제 적극 검토
- 보호일시해제 허가 '18년 107건 → '19년 104건 → '20년 188건 → '21년 461건 ('20년 대비 2.5배 증가)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COVID-19 장기화로 인한 각국의 항공편 중단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호기간 장기화 발생
-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검사 및 입국시 격리호텔 예약 등 퇴거집행 업무 가중
- 난민신청자의 보호기간 단축 관련, 이민조사과 과제에서 삭제 필요
- 보호 중인 난민신청자의 심사 주체가 보호소장에서 거점기관인 청(사무소)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민조사과 과제에서 삭제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구금의 상한, 구금의 적법성과 필요성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절차가 부재하며, 법원에 의한 영장제도로써 구금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의 보호명령서만 있으면 구금 집행이 가능한 상태로 이에 대한 절차적 개선이 필요
-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불승인이 2021년 기준 987건 중 93건, 2020년 기준 764건 중 44건으로, 대다수가 계속해서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매해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심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보호 장기화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보호외국인에 대한 건강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로서 적정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건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보호소에 수용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보호외국인이 건강권을 행사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시설의 보호실뿐만 아니라 화장실 및 탈의공간에 CCTV를 설치·운영하여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CTV 설치 등에 대한 고지나 안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국가인권위원회, 2022c)
- 또한 보호기간 장기화 방지를 위한 연장 승인 심사에서 최근 5년(2017~2021)간 법무부 장관의 보호기간 연장 심사를 받은 사례는 총 2,740건이며 이 중 216건만 연장 승인이 기각. 즉, 3개월 후 풀려나는 사람이 7.8%에 불과하고, 법무부는 별도의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이상 구금된 외국인 대상 연장 심사도 진행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기간 연장이 불허된 건수는 현재까지 단 3건에 불과하여 해당 제도 자체의 실효성 매우 낮음

□ 향후 과제

- 법무부가 구금(외국인보호소 보호처분)의 개시, 지속, 종료까지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 법무부장관의 보호기간 연장 심사를 받은 2,740건 중 단 7.8%만이 장기보호 대상에서 해제된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보호 장기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등 개인 지병이 있는 보호대상 외국인에 대한 건강권 보장 방안 마련
- 건강문제 등으로 특별 보호일시 해제한 대상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 및 사회보장 제도 마련
- 구금(외국인보호소 보호처분)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이들의 사회 적응 대책을 고안할 필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	2. 신체의 자유	⑪ 인신보호법제 활성화
추진부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
과제목표	• 인신보호제도 활성화를 통한 인신의 자유 보장		
주요 내용	•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 -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인신보호법」 개정 추진 - 제도 도입 이후 활성화 방안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 및 인력 문제 등으로 추진 지연됨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 추진

□ 정책·관행의 변화

• ‘ 「인신보호법」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인신보호제도 도입 의견 발표(’18년) • 「인신보호법」 적용대상이 되는 수용시설 현황, 인신보호청구 및 재판현황 등 확인(’19년) • 「인신보호법」 관련 의원입법안 주요 내용 검토(’20년) • 현실적인 「인신보호법」 개정방향 검토(’20년) - 고지의무 및 서류비치의무 등 부과, 구제청구 이후 임의 이송 또는 수용해제금지,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된 개정은 지속 추진 - 전국 수용시설의 개수와 수용인원, 개정안이 상정하고 있는 인신보호관제도의 규모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실효적인 대안(국선대리인 또는 지자체 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위법·부당한 수용을 사전점검·예방하고, 인신보호 청구재판을 조력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 확인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이견* * 인신보호관의 성격과 기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고, 이로 인한 혼란 등 문제가 우려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신보호관 인력 대비 과다한 전국 수용시설과 수용인원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위법·부당하게 수용된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인신보호관 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는 타당하고, 이는 국가의 인권보호 책무에 부합함
- 다만 현재 인신보호관의 역할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역할을 서로 다른 기관이 담당할 경우 상이한 기준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인신보호관에게 필요한 정신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판별능력을 어떻게 갖추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됨⁶⁾

□ 향후 과제

- 인신보호관 도입과 관련한 문제점 해소 방안 마련

6) 법률신문.(2016. 3. 24).“인신보호관 도입 싸고 법조계·학계 의견만 분분”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368>. (최종검색일 : 2022.08.19)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	3. 안전권	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추진부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과제목표	• 국가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		
주요 내용	• 범죄피해자를 위한 긴급 상담 및 구조체계 확립 • 응급 위기지원 역량 강화 • 범죄피해자 심리치료 전문성 강화 •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및 피해가정 영·유아, 청소년 보육 지원 확대 • 범죄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시민인식 개선 지속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관리 및 집행지침」 개정

□ 정책·관행의 변화

-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전문성 강화 및 스마일센터 확대
 -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 및 스마일센터 확대 설치
 - ‘범죄피해자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표준 평가 프로토콜 및 치료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스마일센터 학술심포지엄’ 개최(매년)
 - ‘스마일센터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및 표준화 연구’ 개발
- 범죄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 다량행사 개최(매년)
 -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매년)
 - 라디오, 지하철 등 광고(‘19년 ~ ‘21년)
 - 범죄피해 극복 희망수기 공모전 및 범죄피해자 작품 전시회 개최(‘19년 ~ ‘21년)
- 범죄피해 보호·지원 제도 개선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강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 길잡이’ 책자 및 ‘구조금 업무편람’ 발간
- 주거지원 확대
 - 보복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아동학대, 장애인·아동·청소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실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포함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 설치
- 스마일센터 추가 설치(청주, 울산, 창원, 제주, 목포)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COVID-19 대응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대면상담 및 출장업무가 제한됨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은 단기간의 보호와 지원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범죄피해자지원제도는 법률, 경제,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해자나 범죄의 유형에 따라 법무부, 경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담당 부처가 분산되어 있고 그에 따라 지원기관도 세분화되어 있어 빠르고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⁷⁾ 2022. 4.부터 원스톱 신청제도가 시행되어 신청 자체는 한번에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지원은 각 기관으로부터 받게 되어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간기관을 포함하여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결여된 기능을 보완해야 함
- 최근 범죄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22a : 193)

□ 향후 과제

-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책 마련
- 통합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네트워크 구축
-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방안 마련

7) 한겨레(2022. 3. 31) “법무부, 4월부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서비스’ 운영”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36977.html> (최종검색일 : 2022. 8. 19)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https://d4u.stop.or.kr/support_consulting (최종검색일 : 2022. 8. 21)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	3. 안전권	② 범죄피해구조 및 형사조정제도 개선
추진부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대검찰청		형사4과
과제목표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적·경제적 지원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배상명령제도 홍보 및 안내 강화 - 형사조정제도의 내실화 -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 '18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추진 - 과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결혼이민자 구조금 지급,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 신설, 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등

□ 정책·관행의 변화

- 피해자에 대해 배상명령제도 안내 등 법률상담 3,243건 실시 - 형사조정 집행력 확보를 위한 공증 연계 및 공증 수수료 지원 633건 - 형사조정위원 역량 강화교육 실시 : '18년 543명, '19년 642명, '20년 1,138명, '21년 811명 - KICS 피해자지원시스템의 형사조정 관련 정보 전산화(조정위원 및 조정횟수 등 관련 자료 입력, 수당 자동 계산 등)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21년 형사조정 실적

의뢰건수	처리건수	성립건수	성립률(%)
60,217	50,173	28,550	56.9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 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중요한 책무에 해당하는바, 일련의 사업들은 형사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형사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범죄피해자는 비교적 간이한 방법으로 손해를 보전받는 대신 가해자는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당사자에게 권리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등의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자칫 피해자나 가해자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정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그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함
-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구조금, 생계비,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도 피해자가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오히려 기금에서 관련 법인, 시설 등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이는 간접비가 훨씬 많아 기금의 운용 효율성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임)⁸⁾

□ 향후 과제

- 조정위원에 대한 인권 교육 강화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지속적 확대

8) 내일신문.(2021.08.18.).“[범죄피해자지원기금법 시행 10년] 운영비·수당이 74%인데 피해자 직접 지원은 17% 불과”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96213. (최종검색일 : 2022.08.19).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	3. 안전권	③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리 확대 및 강화
추진부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과제목표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아동·장애인 등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상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 및 2차 피해 방지		
주요 내용	- 전문가 조력권의 확대 및 내실화 - 진술조력인 제도의 지원범위 및 양성 확대를 통해 진술조력 사각지대 해소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및 피해자 변호사의 권리 확대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이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장애인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 정책·관행의 변화

-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실시('21년 2회)
- 진술조력인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회의 실시(매월)
-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기본보수 지급)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교육 실시('21년 총 477명, 기존 1일 5과목 8시간 → 2일 8과목 12시간으로 강화)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제도 실태조사 실시('21년 7월 ~ 11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진술조력인 증원
 - 상근 : '18년 2명, '19년 4명, '20년 1명, '21년 1명 등 총 8명
 - 비상근(신규) : '18년 13명, '19년 15명, '20년 15명, '21년 15명 등 총 60명
 - 진술조력인 인원 현황

구 분	해 당 임 무	검 직 여 부	인원(명) ('21.누 계)
상근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을 위해 수사·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의사소통 중개·보조	불가	14
비상근		가능	137

- 진술조력인 지원 실적 지속 증가
 - ('18년) 1,722건, ('19년) 2,226건 ('20년) 2,684건, ('21년) 4,184건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 '19년 4명, '20년 2명, 등 총 6명
 - 피해자 국선변호사 인원 현황

구 분	해 당 임 무	검 직 여부	인원(명) ('21.누계)
전 담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지정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의 법률조력을 통해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익 보호	불가	23
비전담		가능	598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실적 지속 증가
 - ('18년) 22,755건, ('19년) 25,487건 ('20년) 26,007건, ('21년) 38,446건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 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이전에 비해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편이며,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각 단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됨
- 다만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충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피해자가 증인신문 방식에 의하지 않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상 증인신문 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어 모순 충돌됨(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 피해자는 범죄 사실의 인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진술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에 의한 조력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를 받은 후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 헌법재판소의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증인신문 방식에 대한 법적 지식이나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진술조력인이나 국선변호인의 업무 강도도 높아졌으나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질적 하락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아울러 국선변호사의 불성실, 연락두절, 금품요구, 합의강요 등이 문제되는 등 지원 과정에 있어 진술조력인이나 국선변호사의 인권침해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실태점검이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향후 과제

-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확대 강화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으로 증인신문 방식에 의하지 않은 진술을 허용하고 의견진술의 대상에 범죄사실 인정과 관련한 사항 포함
- 형사절차 참여권 고지 강화 : 수사기관에 의한 제1회 조사 전 국선변호인의 선임권 고지 의무화
- 진술조력인의 역량 강화 : 증인신문 방식에 대한 법률적 지식 교육 등
- 진술조력인 및 국선변호사의 보수 현실화
- 진술조력인 및 국선변호사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	3. 안전권	④ 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 안전 강화
추진부처	대검찰청		형사4과
과제목표	-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정보보호 강화 -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주요 내용	- 형사절차상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대면차단, 피해자 증인신문 시 신문방식 및 내용의 제한으로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 형사사법기관의 피해자 정보공개 금지 및 정보공개 가이드라인·매뉴얼 수립 - 피해자 심리안정·신체안전을 도모하기에 충분하도록 피해자 보호시설 안전성 확보 - 수사기관 및 법정 출석·귀가 시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가해자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검찰청 전 직원 대상 여성범죄 2차 피해 방지 온라인 교육 실시 - 성폭력, 가정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및 아동학대 수사매뉴얼 제정 ‘5대 강력 범죄 사건 기소 시 피해자 의사확인 및 피해자 지원 안내 의무화’, ‘배상명령 대상 사건의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제도 안내하는 자동문자 발송’ 등 KICS 기능 개선 -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 시행 - 성범죄 사건 대질조사 시 가림막 설치, 형사조정 시 여성위원 필수 배치, 분리 조정 실시, 형사조정실에 CCTV 설치 172대 구형 위치확인장치를 신형으로 전면 교체 - 일선 청 여성·아동 전용 조사실 추가 설치 및 리모델링 - 이전비 신속 지원 및 활성화를 통한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상 권리 고지 및 통지가 신속하고 누락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찰 KICS상 사건접수 및 조사단계에서 입력하는 피해자 인적사항(연락처 포함)에 대한 정보가 검찰 KICS와 공유되어야 하나, 경찰과 협의가 되지 않고 있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신변보호조치는 피해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예산, 인력의 한계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음. 예산과 인력의 한계는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공판단계 전까지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피의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의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음. 신변보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필요가 있음
- 최근 들어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피의자의 형사 합의 시도 등으로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 특히 피의자에 의한 2차 가해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더욱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합의를 이유로 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수사나 공판단계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피해자의 인권과 2차 피해의 폐해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인식개선 사업을 병행해야 함
- 2차 피해는 해당 사건의 범죄자, 가족, 친구, 언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았다는 사례가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으므로, 수사담당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함과 함께 징계 등 조치를 엄히 하여 2차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시켜야 함

□ 향후 과제

- 인력과 예산의 확충을 통한 신변보호조치의 확대 실시
- 공판단계 전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의자 인적 사항 고지 제도 마련
- 2차 피해 예방 및 구제 대책 강화 :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제도 신설,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2차 가해에 대한 불이익 부과, 피해자의 인권 및 2차 피해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확산,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등
- 수사담당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	3. 안전권	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정비 및 강화
추진부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과제목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개발과 추진 기반인 기금의 안정적 운영		
주요 내용	- 정책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정책관련 담당자 대상 교육 - 형사사법기관 실무자의 담당 업무별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시행 - 민간단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정기적인 교육 실시 - 정책추진 기반의 정비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추진 현황의 파악 및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안정성 제고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개정 - 벌금 전입비율 상향(6% → 8%)

□ 정책·관행의 변화

- 범죄피해자 실무자 및 민간단체 종사자 교육 실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18년 79명, '19년 68명)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등 온라인 교육 실시('20년 120명, '21년 120명)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2. ~ '26.) 수립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매년 수립(9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자체 참여)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개최(매년 2회)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확보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로 이관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향후 재정상황을 고려한 기금 개편 및 증액 지속 검토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과제명, 과제목표와 달리 이행내용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적어, 과제명, 과제 목표와 이행내용이 다소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
- 최근 잇따른 강력 범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피해자의 범위 확대, 피해자보호 관련 법제의 정비, 형사사건의 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한 통지 등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전반에 관해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인데 최근 기금이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또한 직접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간접지원에 비해 그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기금의 운용과 더불어 집행에 대해서도 개선방안 마련되어야 함

□ 향후 과제

-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정책의 개발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자원 감소 문제 해결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	3. 안전권	⑥ 시설·서비스 소비자안전 확보
추진부처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
과제목표	-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대시민 안전 확보 -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 작성 및 훈련에 대한 현장 컨설팅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 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주요 내용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많은 판매시설 등에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 실시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현장 맞춤형 컨설팅 운영으로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 - 전문가들의 시설별 현장 방문 컨설팅으로 재난 시 대처요령 등을 실효성 있게 훈련함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전국 17개 시·도의 민간 다중시설 컨설팅 추진 : - ('18년) 200개소 → ('19년) 207개소 → ('20년) 250개소 → ('21년) 233개소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해당사항 없음

❸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민간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컨설팅 운영으로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꾀함 -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시설별 현장을 방문하여 재난 시 대처요령 등을 현장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컨설팅 함으로써 시설 관리자의 만족도가 향상됨

□ 향후 과제

'22년부터 다중이용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훈련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추진 - 컨설팅 전문가 섭외 및 사전회의('22년 4월) → 컨설팅 대상시설 선정('22년 5월) → 컨설팅 추진('22년 5월 ~ 11월)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	3. 안전권	⑥ 시설·서비스 소비자안전 확보
추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스포츠산업과
과제목표	• 문화·체육 분야 시설, 서비스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시민의 생명·신체 보호		
주요 내용	• 관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 • 다중이용 문화시설·체육시설에 대한 기준 개선으로 안전 확보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년 12월 8일)
- 체육시설 안전점검 관련 법령 개정
-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인공암벽장) 신설(체육시설법 개정, '20년 12월 8일)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조항 신설(법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 정책·관행의 변화

<관광시설 안전관리 강화>

- 유원시설
 - '20년 관리 현황 : 주기적 안전관리 실태점검(10회) 및 검사기관 부실검사 제재 근거 마련,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 검사 주기 단축 시행 등 제도 개선,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구축 완료
 - '21년 관리현황 : 안전정보망(www.apa.or.kr)을 통한 유원시설업체의 안전관리현황 정보제공(상시), 유원시설 사업자 안전관리 교육 신설 및 신규 안전관리자 3개월 내 교육이수 의무화('21년 1월 1일 시행),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4회) 및 코로나19 방역실태 현장점검(매주 1회 이상), 유원시설 방역 및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21년 12월~)
- 야영장업
 - '20년 관리 현황 : 주기적 안전점검(연 3회) 및 야영장 보험가입 의무화, 야영장 내 먹는 물 수질 검사 의무화, 사업주 외 관리요원까지 안전교육 확대 등 안전관리 제도 개선,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사업 시행('20년 ~)
 - '21년 관리 현황 : 여름철(5월 ~ 6월) 및 겨울철(11월 ~ 12월) 야영장 안전 및 방역 점검 실시,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 실시(8월 ~ 9월, 74개소), 안전 야영문화 정착 온라인 캠페인(5월 ~11월) 및 공익 광고 추진(9월 ~)
- 관광숙박시설
 - '19년과 '20년 관리 현황 :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국가안전진단 2월 ~ 4월, 여름철 안전점검 5월 ~ 6월, 콘도 위생 및 안전점검 9월 ~ 10월 등), 가족호텔업 및 한옥체험업 안전·위생 수준 제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소규모 숙박업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규정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 복지부-농림부-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 불법숙박 단속('19년 2회, '20년 1회)
 - '21년 관리현황 : 문체부-지자체 합동 전국 관광숙박업소 대상 화재 안전성 등 안전관리 실태

집중점검(5월 ~ 10월), 연말연시 관광숙박시설 특별안전점검('21년 12월 18일 ~ '22년 1월 2일), 관계부처 합동 불법숙박 단속 및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 여부 확인(11월 ~ 12월), 불법숙박 근절 광고 제작 및 송출(12월), 관광숙박업소(호텔, 콘도 2,301개소) 대상 코로나 19 대응 방역비용 지원('21년 133억 원)

<체육시설 안전기준 개선>

- 법률 제·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8년 9월 18일*/'20년 5월 19일** ***/12월 8일****)
 - * 체육시설의 정의에 '가상체험 체육시설' 내용 포함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추가
 - ** 체육시설의 정의에 '체육교습' 내용 포함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 추가
 - *** 최근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습이 증가하고 있지만,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바, 체육교습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 신고체육시설업 범위에 인공암벽장업 추가
 -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조항 신설(법 제4조의 3(체육시설 안전점검))('20년 12월 8일)
 - 체육시설 안전점검 관련 법령 개정('21년 6월 8일*)
 - *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반기별)으로 실시하도록 함
 -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인공암벽장) 신설(체육시설법 개정, '20년 12월 8일)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1년 6월 8일)
 - ** 인공암벽장업의 영업 범위를 인공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여 등반을 할 수 있는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업으로 정하고 인공암벽장업의 안전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등 관련 정보 일체를 체육시설알리미를 통해 공개('19년 4월 17일 시행)
 - 합기도장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에 포함('19년 12월 26일 시행)
 - 반기별 1회 정기 안전점검 실시, 취약 시기 긴급 안전점검 실시(여름·겨울)
 - 국가안전대진단 실시('19년 2월~4월 / '21년 5월~'22년 3월)
 -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19년 5월~'20년 3월 / '21년1월~'21년 12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관광숙박업소(호텔, 콘도 2,301개소) 대상 COVID-19 방역비용 지원('21년 133억 원)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지속적인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한 유원시설 및 숙박시설의 잠재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함
- 정기적인 체육시설 안전점검으로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고 체육시설업 확대에 이용자 안전 제고 도모 대응의 실효성이 제고됨

☐ 향후 과제

- 사업자 및 안전관리자 등 유원시설 관련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안전에 취약한 중소규모 유원시설 대상 안전관리 컨설팅·교육 및 안전용품 지원
- COVID-19 관련 유원시설 방역 지원 및 현장점검(주 1회)
- 관광숙박업소(호텔, 콘도) 대상 방역비용 지원
- 민박업 사업자 대상 안전·위생 교육 실시로 실질적 안전 제고
- 체육시설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및 반기별 1회 정기 안전점검 실시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	3. 안전권	⑦ 재해에 강한 국토기반 조성
추진부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건축안전과 교통안전정책과
과제목표	- 재난·재해 대응력을 제고하고, 사고예방 체계 강화 - 지진·화재에 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SOC·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교통·시설안전 예방체계 구축 * SOC 내진 보강 및 설계기준 강화, 건축물 취약부분 내진설계 기준개선,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강화		
주요 내용	- 지진에 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SOC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추진 - 지진 발생 시 피해 최소화과 사회기능 조기 회복이 가능토록 우리부 소관 SOC 내진보강 - 건축물 취약부분 내진설계 기준개선 -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강화 - 사업용 차량에 첨단안전장치 보급을 통한 줄음운전 사고 예방 - 사고 발생 운수회사 교통수단 안전점검 강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건축물관리법』 제정('19년 4월) - 화재안전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제도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21년 12월)

□ 정책·관행의 변화

- 주요 SOC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 「건축안전전담조직」 신설 - 지진대응체계 개선 - 실무 매뉴얼 및 행동매뉴얼 관리실태 점검 실시 -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 높은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 의료시설·노유자시설, 3층 이상 건축물 및 필로티 구조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화재 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 -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강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SOC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 * '18년 ~ '20년 : 총 26,340개소 중 25,741개소(97.7%) 확보, 미확보(2.2%)
 - * '21년 : 총 27,644개소 중 27,281개소(98.7%) 확보, 미확보 363개소(1.3%)
- 6개소 내진보강공사 완료, 22개소 성능평가 실시('20년)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 * '18년 ~ '20년 : 총 목표 384건, 사업 접수 638건(목표대비 160%)
- 교통사고 사망자수 사업 기간 중 감소
- 사업차량 안전관리 -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분기별)
 - * (1분기) 운수회사 57개, (2분기) 운수회사 95개, (3분기) 운수회사 65개, (4분기) 운수회사 100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의 강화로 2019년에 이어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900명으로 전년 대비 181명(6.2%) 감소한 것은 성과적임
- 주요 SOC·건축물 등 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 강화 및 건축물 취약부분 내진설계 기준개선으로 지진 발생 시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건축물관리법 제정 시행에 따라 체계적 건축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노후건축물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관리 강화가 기대됨
-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 및 아동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통해 화재로 인한 시민생명 보호 및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됨

□ 향후 과제

-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운수회사 교통수단 안전점검 지속적 추진 및 차량의 첨단안전장치 보조지원 사업의 지속 추진
- '21년 ~ '25년도까지 수행하는 3단계 내진 보강 기본계획 및 '21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SOC 시설물 내진 설계강화 및 보강의 정상 추진
 - * '21년~ '23년 내진보강고사 및 내진성능평가 이행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	3. 안전권	⑧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제목표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 피난 안전 설비 기준 강화 - 시설 장애인 재난대책 마련		
주요 내용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 피난 안전 설비 기준 강화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의 신속한 화재 인식 및 대피를 위해 화재발생 시 점멸 음성출력 -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설치 의무화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 의무화('18년) - 장애인 화장실에서의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18년) - 영화관, 공연장 등의 관람석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토록 의무화('18년) - 시설 장애인 재난대책 마련 - 자연재해·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응사항을 지침에 반영하여 시설별로 이행하도록 조치, 장애유형별 피난 매뉴얼을 시설별 보급 - 모의훈련(소방서 등 전문기관 합동 1회 이상) 2회 이상 실시 - 연중 소방시설, 전기 및 가스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개정('18년 1월 30일)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18년 2월 9일)

□ 정책·관행의 변화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 강화 - 시설장애인 안전 및 재난대책 마련

-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지침) 반영
- 소방시설, 전기 및 가스시설 등 장애인거주시설 안전점검(민관합동) 연2회 실시(장애유형별 매뉴얼 마련)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애인 공동주택에 경보피난설비 설치,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설비, 화장실 비상벨 설치, 공연장 및 영화관 안전손잡이를 바닥에서 0.8m에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면서 공동주택 거주 장애인들의 안전 개선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로 시·청각 장애인들의 이동 등 일상생활 시 안전 도모의 기반을 마련함
- 『장애인등 편의법』의 관련 규정의 개정은 장애유형별,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각 유형별 당사자의 의견수렴과 그에 따른 규정의 보완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예컨대 휠체어로 이동하는 지체장애인은 평소에는 건물의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 이동이 불가하여 시설대피의 대안이 필요함. 이런 각 장애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여 규정의 개정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하면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인 등 재난약자들의 피해가 가장 큼. 형식적인 훈련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인들에게 재난훈련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지침에 안내하고 실전처럼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함. 특히 장애유형별 피난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재난 시 안전체계 구축에 배제되는 장애유형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향후 과제

- 장애인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등 편의법』 관련규정 지속적 보완 추진 예정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 시설의 안전, 소방시설 등 우선 지원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	3. 안전권	⑨ 과학기술을 통한 시민 생활문제 해결 추진
추진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술기반팀
과제목표	-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실증 포함) 및 적용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및 예방 - 공공 서비스 혁신을 통한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을 위해 우수 R&D 결과를 대상으로 실증, 인증 및 공공조달 연계 등 패키지 지원		
주요 내용	- 긴급한 현장대응이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수요가 있을 경우 즉각적 대응을 위한 R&D 추진 - 기존연구 성과 중 시민생활문제 해결이 가능한 주제를 Bottom-up으로 발굴, 기술고도화, 리빙랩 기반 실증, 시험·인증 및 제도개선 등 지원 - 현장 적용 가능한 우수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 실효성 있는 평가 추진 및 상시 전문가 컨설팅,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 성과관리 확산·체계 구축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시급한 연구 착수를 위해 행정 절차 및 양식 최소화 등 관련 규정 개선('19년 3월 개정)

□ 정책·관행의 변화

- 시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기관 간 협업시스템 마련
- 2021년 시민생활과학기술포럼 운영은 총 9회 진행
- 행정 절차 및 양식 최소화 등 관련 규정 개선
- 공공조달연계형 시민생활연구 실증·사업화 지원을 통해 평가등급 '우수' 이상인 경우 우수조달물품 등록 신청 시 자격조건 완화 및 서류 간소화
-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에 기반하여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히 연구개발을 착수하여 실제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는 R&D 수행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공공조달연계형 시민생활연구 실증·사업화 지원」 지원('19년 1월 ~) : 11개('19년 9개, '20년 2개) 과제 선정 및 리빙랩 기반 실증, 시험·인증 계속 지원. 이 중 2019년 4개 과제 종료 및 평가
- 「시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 14개 신규과제 선정 및 현장 적용 성과 도출. ASF 대응('19년), 코로나19 신속진단제 개발·도로살얼음·과수화상병 대응('20년) 등 23개 과제 긴급대응 착수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R&D 기획 뿐 아니라 전 과정에 수요기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성과의 실질적인 현장 적용과 확산까지 이어지도록 확대 지원하고, 시민 대상 만족도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시민생활연구 수요조사 시 사업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이 필요함
- 시민생활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 및 확산 등을 위해 수요기관(부·처·청, 지자체)의 적극적 성과 활용 의지 제고 및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수요기관과 함께 휴대용 성범죄 약물(GHB 등) 신속 탐지 키트 개발 등 10개 과제를 기획하고 지원하는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수요에 기반하여 재난과 안전 관련 연구개발을 신속히 착수하여, 기술개발, 현장적용 등을 통해 R&D 전 과정에 걸쳐 관련기관들과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함. 이를 위해 행정 절차 및 양식 최소화 등 관련 규정 개선으로 실질적인 공고기간, 계획서 항목, 평가단계를 단축 및 축소함으로써 시급한 연구의 진행에 장벽을 없앴. 이로써 시민의 재난·안전 문제를 과학기술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함

□ 향후 과제

- 예상하지 못한 재난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상시적인 긴급대응연구 수요 발굴 및 추진
- 「시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	3. 안전권	⑩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추진부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지진방재관리과
과제목표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보행자, 어린이, 노인 등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절반 수준 이하로 감축(2,000명 수준) - 선진국 수준의 지진방재 기반 구축 - 국가 내진율 향상 - 지진방재 연구기반 확대 - 지진 및 지진해일 대응역량 강화		
주요 내용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안전 환경 지원의 근거 마련 - 보행안전 제도 운영, 어린이 노인 배려 중심의 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운영,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 내진보강대책 추진 - 한반도 활성단층 조사·연구 - 지진대비 교육·훈련 확대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21년 7월 행정규칙 제정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 정책·관행의 변화

-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지진 교육 기반 마련 및 교육과 시민참여형 홍보 진행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 전국 활성단층 조사 - 지진발생 대비한 상시 위기 징후 관리 및 대비태세 확립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 * '19년 성과 : 33종 공공시설물 188,880개소 중 126,994개소 내진성능 확보 내진율 67.2% 달성
 - * '20년 성과 : 33종 공공시설물 193,075개소 중 135,623개소 내진성능 확보, 내진율 70.2% 달성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 * '20년 성과 : 총 151건(공공 69, 민간 82) 인증 완료
 - * '21년 성과 : 총 239건(공공 85, 민간 154) 인증 완료
- 한반도 단층구조선 조사 및 표준절차 마련
 - * '21년 성과 : 동남권 100개 구역 중 15개 단층 조사 및 단층 조사 표준절차서 마련
-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지진교육
 - * '21년 실적 : 총 67개교 실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지진 교육 기반 마련 및 교육, 시민참여형 홍보 등을 통해 지진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함. 특히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특수학교 학생 등 안전취약 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자발적 지진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고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대피행동요령 등의 균등한 지진교육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함
- 주기적 지진 대피 훈련의 추진으로 지진대응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진 대피요령의 노출빈도가 많아짐에 따라 지진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향상됨. 이는 지진 대피훈련의 참여자 확대에 이어졌고 정부 및 시민의 지진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함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및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으로 공공시설물 등의 지진 안전성을 강화하고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유도함

□ 향후 과제

-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의 상시적인 운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시적인 홍보 추진
 - * 인터넷, 유관기관 정기간행물, 옥외 및 역사 전광판, 편의점 계산대 등
- 지진대비 안전취약계층 훈련, 교육 및 지진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	3. 안전권	⑪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추진부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재난대응정책·훈련과, 재난안전산업과, 재난안전연구개발과,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 등	
과제목표	•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으로 국가재난관리 역량 강화 • 재난 예·경보 예측 및 분석 시스템 고도화 등 재난상황정보 신속·정확 전파로 재난 피해 최소화		
주요 내용	• 범정부 코로나19 총력 대응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역량 강화 – 중대본 공동차장제 운영을 통한 범정부 COVID-19 총력 대응 – 재난관리평가 대상 확대 및 국가재난대비훈련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 – 재난안전관리의 과학화를 위한 안전산업 육성 기반 마련 – 국가 안보를 위해 정부의 비상 대응능력 강화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재난 예·경보 시스템 고도화 – 전국 단일 PS-LTE 방식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 – 재난문자방송을 통한 대응능력 제고 및 대시민 정보 전달력 강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방재 및 안전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개정('20년 5월) - 범정부 재난심리지원 협업체계 구축 및 총괄 대응을 위해 재해구호법 개정('20년 6월)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 -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 완료('21년 6월), 시행령 제정('21년 12월) -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사용에 관한 규정 고시('21년 3월 9일) - 표준운영절차의 관리·활용에 관한 규정 고시('21년 3월 31일)

□ 정책·관행의 변화

- 중대본 공동차장제 운영을 통한 COVID-19 총력 대응 노력 - 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 및 책임강화 지원 - 재난관리평가 지표 개편, 우수지자체 특교세 지원, 재난관리부서 공무원 인센티브 등 - 국가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 재난안전제품 인증 및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정 - 전국적으로 통합적인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및 통신망법 제정

- 자치단체의 재난 예·경보 체계의 고도화
- 재난문자 송출권한 확대(시·도 → 시·군·구)
- COVID-19 방역 상황에서 재난문자 발송
 - 지자체 코로나 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지침) 제정 및 개정
- 17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국 대표전화 개설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재난대비훈련 체계 구축 및 상시·합동 훈련
 - * 기관 : ('18년) 634개 기관/1,072회 ⇨ ('19년) 705개 기관/1,050회
 - * 민간기업 : ('18년) 1,013개 ⇨ ('19년) 1,166개
 - * 어린이 재난안전 훈련 : ('18년) 34개 ⇨ ('19년) 46개 ⇨ ('20년) 93개 ⇨ ('21년) 195개교
 - * 재난대비 상황조치 훈련 : ('21년) 7회
- 재난관리·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 : ('18년) 15개 대학(26억 원) ⇨ ('19년) 15개 대학(31억 원) ⇨ ('20년) 15개 대학(31억 원)
 - * 2018년 2월~12월(총 11기 운영) / 2019년 2월~12월(총 11기 운영) / 2020년 2월~8월(총 11기 운영) / 2021년 2월~12월(총 11기 운영)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국가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하여 내실있는 훈련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 및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안전의 기반을 마련함
- 재난안전제품 인증, 재난안전기업 경쟁력 확보 및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정으로 안전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함
- 전국적으로 통합적인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및 통신망법 제정으로 이용기관 간 원활한 현장 지휘, 통제 및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함
- COVID-19 방역 상황에서 재난문자 발송을 통한 신속·정확한 정보전달로 대응능력 제고 및 대시민 정보 전달력을 확보하였고 이로써 시민의 안전보장에 기여함

☐ 향후 과제

- 2022년 재난관리 평가 추진(335개 기관 : 중앙 29개, 공공 63개, 지자체 243개)
 - 평가 추진(1월~6월), 평가 결과 발표(7월), 미흡기관 컨설팅 등 후속조치(7월~11월)
- 국가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을 통해 실효성있는 재난안전훈련 추진
- 통합재난문자시스템으로 전환 추진
 - 사용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안정성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재난문자(CBS, DMB), 재난방송(DITS) 시스템을 신규 구축한 통합재난문자시스템으로 전환
- 재난 예보 및 경보 체계 고도화

Ⅱ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1. 차별금지	

□ 이행상황 총괄

< 총괄표 >

구 분	계	과제완료	정상추진	추진지연	기타
합 계	12	-	11	1	-
1. 차별금지	12	-	11	1	-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진과제	추진상황
【차별금지】			
26	Ⅱ-1-①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추진지연
27	Ⅱ-1-②	성인지 정책추진 기반 확립	정상추진
28	Ⅱ-1-③	성별 임금차별 해소	정상추진
29	Ⅱ-1-④	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	정상추진
30	Ⅱ-1-⑤	성평등 교육 확대 및 문화확산	정상추진
31	Ⅱ-1-⑥	장애인 고용 개선	정상추진
32	Ⅱ-1-⑦	국어사전의 성차별내용 개선	정상추진
33	Ⅱ-1-⑧	인권 및 문화 차별·혐오적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	정상추진
34	Ⅱ-1-⑨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 및 성차별 개선 심의 기반 마련	정상추진
35	Ⅱ-1-⑩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정상추진
36	Ⅱ-1-⑪	양성평등 문화 확산	정상추진
37	Ⅱ-1-⑫	장애인 교육권 보장	정상추진

□ 과제별 이행평가

26	II -1-①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I	1. 차별금지	①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추진부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실질적 인권 향상 및 보호를 도모하여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		
주요 내용	- 차별 관련 국내 법·제도 연구 및 개선방안 마련 -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 -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차별금지 관련 입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 차별 피해구제를 위한 기본법 제정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장애인 차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에 대한 확인 시행 「차별금지법안」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20.6.)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21.6.)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21.8.)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21.8.)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일반적 차별금지와 관련한 법률·제도 등에 대한 성과 미비 * 차별금지 사유·영역·구제절차 등에 관한 심각한 사회적 의견대립 - 발의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 지연 * '21. 11. 국회 법사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등 5건의 청원 심사기간을 '24. 5.까지 연장 의결함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에 있어서, 차별금지 사유·영역·구제 절차 등에 관한 사회적 의견대립을 이유로 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
- 차별금지법제는 2008년부터 제정이 추진되어 왔으나 번번이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제정이 무산되었으나, 최근 들어 시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의 찬성이 반대 여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기자협회 보도: “한겨레가 지난달 25~26일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2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1.2%로 반대 의견(21.7%)의 3배가 넘었다. 앞서 시사저널이 지난 6월 22일 여론조사 기관 시사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찬성이 66.5%로 반대(33.5%) 의견을 크게 앞섰다.”⁹⁾
- 시민 간 의견 대립에 있어서 인권정책 총괄부처인 법무부에서는 대립의 실체와 세부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러한 주장이 인권보호와 증진 측면에서 합당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차별금지(평등)법」 입법 관련 공론화
-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협조 지원
-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마련을 위하여 종교계·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 수렴
-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정책 연구
-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이후의 법 집행책임부서로서의 법무부 과제 도출
- 해외 법안과 사례 연구(EU지침,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차별금지 관련법안 및 사례 분석) 검토
- 차별금지정책 : 정부 차원의 차별금지정책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차별금지사업). 차별 관련 실태조사. 이주자, 난민, 성소수자 등 주요 취약 집단(소수자 집단)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 도출 등, 행정부 각 부서의 차별금지업무 현황 점검 및 과제 도출 등, 법무부가 행정부 내의 차별금지 주무부서임을 명시하고, 관련 정책 수립 및 이행 의무가 있음을 확인
- 차별금지를 위한 교육, 홍보 사업

9) 한국기자협회(2021.12.08.)보도. “차별금지법 찬성 여론 거센데...언론은 여전히 ‘신중론’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I	1. 차별금지	② 성인지 정책추진 기반 확립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과제목표	생활밀착형 성별영향평가 추진으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성별통계 개선·이용 활성화 강화 등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주요 내용	-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으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를 고려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전문가 심층 분석 실시 - 대시민 공모 등 수요자 참여를 통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발굴 및 정책 개선 추진 - 성별 통계 개선 및 활용 활성화 - 신규 승인 통계, 주요정책 분야 통계 등 국가 승인통계의 성인지 관점의 점검 및 개선 - 성인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계자 교육 강화 - 관리자 과정,담당자 과정 등 대상자별로 분리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 교육방식 다양화로 참여 확대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국가승인통계 개선 - 사회조사 분야 국가승인통계 개선안 수용 및 반영 '19년 신규승인통계 개선 제안 반영 '21년 국가승인통계의 조사표 및 결과표 개선의견 제시 '20년 노동분야(36종) 국가승인통계에 대해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및 지표개선(11개 통계)

□ 정책·관행의 변화

- 부처별 성평등 목표 수립 및 목표에 근거한 대상과제 선정, 전문가 심층분석을 통해 성평등 조치사항을 발굴, 정책개선 강화 - 시민의 성평등 의식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단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실시 및 콘텐츠 개발·확산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 교육 실시

(단위: 명)

연도	총계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사이버 성인지 교육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교육	여성친화 도시교육
'21년	112,898	11,250	95,068	5,973	607
'20년	99,773	10,415	82,848	5,921	589
'19년	48,421	8,847	33,585	5,201	788
'18년	12,984	4,580	2,884	5,083	437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18년부터 성별영향평가 대상 부처 및 사업을 꾸준히 늘려가면 수용률을 관리하면서 실효성을 확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주요정책 및 중장기 계획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짐. 성별 통계 개선 및 활용 활성화,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교육을 실시하면서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도모

• 해당 사업들은 성인지 관점으로 정책의 결정과정, 집행과정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을 통해 제도적으로 안착화 되는 것이 필요함.

•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사이버 성인지교육,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 예·결산 교육, 여성친화도시 교육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꾸준한 교육 추진되었음

□ 향후 과제

- 성별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소외될 수 있는 주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대상 확대

•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교육으로 내용과 형식의 다양한 시도가 필요함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I	1. 차별금지	③성별 임금차별 해소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관 직업능력평가과
과제목표	• 성별 임금격차 해소		
주요 내용	• 유사업무에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 및 개선 지도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능력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확산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을 발간하여 고용평등 전담근로감독관 업무 전문성 강화 도모
-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 및 확산 추진 중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1,064개, '21년 기준)
- 중견·중소기업에 NCS 기반 직무분석 및 훈련, 채용 등 NCS 기업활용컨설팅 지원('21년 700건)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남녀고용평등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여성고용환경 개선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
 - * '16년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36.7%로 OECD 23개국 중 1위('16년 기준)였으나, '20년에는 31.5%로 하락하며 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
- 남녀고용평등 사업장 지도·점검 증가
 - * ('18년) 659개소, ('19년) 700개소, ('20년) 400개소, ('21년) 868개소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여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을 내실 있게 실행함. 그러나 점검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점검의 결과에 대한 조치 및 분석이 필요함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세부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남녀고용평등사업장 지도 감독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부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임금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직접적인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중하위직 여성들의 임금차별 개선을 위한 사업 배치 필요함

□ 향후 과제

- AA 제도개선(인센티브 강화 등), 컨설팅, 교육, 코칭 등 지도체계 강화
- '21년 남녀고용평등 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속('22년 점검대상 사업장 목표는 1,000개)
- 현장 직무중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확산 및 기업의 능력중심 인사관리시스템 도입 지원 지속
- 성별임금차별 개선을 위해서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표치를 세우는 것 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성별 임금격차가 생기는 이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여성들의 장기근속 할 수 있는 환경, 인사관리 시스템, 근로감독 및 개선 지도 등이 통합적 관점에서 연계되어야 함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Ⅱ	1. 차별금지	④ 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과제목표	• 공공 및 민간부문 의사결정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여성 역량강화, 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 등 사회참여 확대 기반 마련		
주요 내용	•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 확대 지원 • 전문직 직능단체 등의 여성 지위 강화 • 차세대 여성 리더 육성 사업 활성화 • 여성관리자 양성 지원 • 정부위원회 관리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여성인재DB 등재 인원 확대('20.12월말 기준 129,782명) • 지역여성, 중간관리자 등 여성 특성·경력단계별 역량강화 교육 지원, 지역거점교육기관 운영 – '20년까지 누적 50,932명 교육 수료 • 청년여성 진로설계 및 네트워킹 위한 멘토링 사업 추진 – '20년까지 누적 12,603명 멘토링 참여 • 민간부문 성별균형 제고 위한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운영 사업 추진 – 기업과의 자율협약, 연구·조사, 기업 내 성별균형 제고 지원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 상장법인 성별임원현황 조사·발표 등 관련 연구·조사 추진 –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확대 기여 * 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 ('19년) 4.0% → ('20년) 4.5% → ('21년) 5.2% – 기업 내 성별균형 제고 지원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21년 40개 기업) • 여성 리더 발굴·양성 – 지역여성, 중간관리자 등 여성 특성·경력단계별 역량강화 교육 지원, 지역거점교육기관 운영(10개) – 사회 각 분야 여성인재 적극발굴 및 등재('21.12월말 기준 139,596명) –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인원 2,458명 교육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연2회), 지자체 소관 위원회(연1회) 위촉직 위원 성별참여현황
 - * 중앙 : ('18년) 41.9% → ('21년) 42.4%
 - * 광역 : ('18년) 44.4% → ('20년) 44.9%
 - * 기초 : ('18년) 39.1% → ('20년) 41.4%
- ※ '21년 지자체(광역·기초)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참여 조사결과는 '22.7월 공표 예정
- 지역여성, 중간관리자 등 여성 특성·경력단계별 역량강화 교육 지원, 지역거점교육기관 운영(10개)
 - 사회 각 분야 여성인재 적극발굴 및 등재('21.12월말 기준 139,596명)
- 지역여성, 중간관리자 등 여성 특성·경력단계별 역량강화 교육 지원, 지역거점교육기관 운영
 - '20년까지 누적 50,932명 교육 수료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인식확산 노력 지속 필요
- 위원회 성별 참여율 40%미만 개선권고 대상 위원회 중점관리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사업의 결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위원회 여성참여율, 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 등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 중앙 : ('18년) 41.9% → ('21년) 42.4%
 - * 광역 : ('18년) 44.4% → ('20년) 44.9%
 - * 기초 : ('18년) 39.1% → ('20년) 41.4%
-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컨설팅, 지역 중심 거점 기관 운영을 통해 여성의 의사결정적 참여에 대한 사회적 역량 및 개별 여성에 대한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향후 과제로 제시된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인식확산은 여성 리더를 발굴·양성이 함께 되어야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향후 과제

- 공공 및 민간 부분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인식확산 노력 지속 추진
- 여성들이 일회성 임시직 위원회 외에도 고위직의 안정적 지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성의 질 점검이 필요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Ⅱ	1. 차별금지	⑤ 성평등 교육 확대 및 문화 확산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여성정책과
과제목표	성평등 의식 제고와 문화확산을 위해 공무원, 방송관계자 등 성평등 교육 대상 확대 및 교육 추진		
주요 내용	- 공무원, 방송관계자 등에 대해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교육 실시 - 교육 매뉴얼 및 콘텐츠에 ‘성평등’내용을 포함하고, 부모교육 담당자에 대해서도 성평등 교육 추진 - 성평등한 정부정책 수립을 위해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시행 - 방송사업자 및 관계자, 방송심의 모니터 요원 등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공무원, 방송관계자 등의 성평등 의식 제고와 문화 확산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추진 - 연극형교육, 젠더토크콘서트, 집합교육 등 성인지 교육 실시 (‘18년) 25회 4,580명 → (‘19년) 33회 8,847명 → (‘20년) 22회 10,415명 → (‘21년) 27회 11,250명 * 2020년 COVID-19 상황으로 비대면 교육 전환에 따라 정원 확대 운영 - 언론인 등 방송관계자 성평등 교육 실시 (‘18년) 1회 16명 → (‘19년) 2회 37명 → (‘20년) 269명 → (‘21년) 44명 * ‘21년 2분기부터는 방송관계자 대상 교육은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개선’사업에서 통합해서 운영 - 사이버교육 교육인원 및 과정 확대를 통한 성인지 사이버교육 활성화 (‘18년) 3개 과정 7기수 2,884명 → (‘19년) 4개 과정 10기수 9,446명 → (‘20년) 6개 과정 10기수 10,608명 → (‘21년) 8개 과정 10기수 11,332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공무원, 언론인, 방송 관계자를 교육 대상으로 선정해 교육 진행. 대시민 상호작용이 활발한 정책 주체, 방송 관계자라는 점에서 시민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교육 참여자가 극소수라서 교육의 효과성, 성평등 문화확산 기대 어려움. 교육 참여자 확대 방안 고민 필요
- 비대면 교육의 특성상 직접적 상호작용의 한계로 교육 효과 정해 우려, 공무원 외의 대중문화 언론, 주요 시민 그룹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 추진 및 확대 필요
- 공무원 대상 교육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사이버 교육이 활성화되었고 그 결과 교육 과정 및 인원이 증가하였음
- 성평등 교육 콘텐츠의 내용과 질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교육 대상을 확대 하는 것만큼이나 교육 진행 과정과 참가자의 피드백 정리를 통한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이런 내용을 이행 실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함

□ 향후 과제

- 성평등 교육 콘텐츠의 내용과 질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하며 더불어 교육의 질을 담보할 강사에 대한 지원 실시
- 시민 간의 여성혐오, ‘젠더 갈등’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므로 시민 대상 성평등 감수성교육, 문화 확산을 위한 대중문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
- 최근 영향력이 커진 유튜버 등 1인 방송 창작자를 위한 성평등 교육 실시
- 공공 정책을 설계하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정당인 등에 대해 특화되고 영향력 있는 성평등 교육 시행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I	1. 차별금지	⑥ 장애인 고용 개선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과제목표	장애인 친화적 고용환경 확산 및 고용 확대		
주요 내용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17년 11월 개정, '18년 5월 시행) 및 현장 안착 계획 수립 - 교육 의무 이행지도 및 상시 50인 이상 사업주 교육결과 제출 의무 규정 마련 - 원격교육용 교육콘텐츠 인증제도 도입

□ 정책·관행의 변화

- 사업체 및 기관의 원활한 교육의무 이행을 위해 교육 인프라 확대 - 다양한 지원을 통한 교육 효과 향상 * '21년 기업체장애인실태조사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사업체의 교육의무 이행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대 - 교육 강사 양성 : 1,821명 양성(장애인 강사 192명) [누계 4,941명(장애인 1,229명)], 자격 유효기간(3년) 만료자 233명 포함 - 교육 기관 지정 : 91개소(장애인 관련 단체 50개소) [누계 689개소(장애관련단체 429개소)] - 교육 의무 이행지도 : 2,054개소 - 교육 강사 지원 : 11,987개소 - 교육 홍보 : 포스터, 옥외 광고(KTX, SRT 등), 라디오, 일간지 등 - 교육콘텐츠 제작·보급 : 24종(누계 35종) - 교육 포털 기능 확대 : 5대 법정 의무교육 플랫폼, 불법교육 신고센터 운영 등 - 다양한 지원을 통한 교육 효과 3년 연속 향상 ('19년) 66.2% → ('20년) 68.9% (2.7%p ↑) → ('21년) 71.6% (2.7%p ↑)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현장 조기 안착 위해 인프라 지속 확충 필요
 - 교육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410만개소 사업체, 22백만명 근로자)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교육 강사 양성, 교육 기관 지정·관리, 의무 이행 홍보,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사업체의 원활한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해 교육의 전반적인 인프라를 확대하고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과 더불어 기업체 내 장애친화적 업무 환경 지원은 성과적임
-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법제86조를 근거법령으로 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의무화와 교육 인프라 확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였는지, 또한 그것이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의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 향후 과제

- 교육강사 양성,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교육 인프라 강화
 - 장애인 당사자 강사 양성을 포함한 교육 강사 양성
 -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강화
 -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원격교육 시스템(LMS) 구축 및 운영
 - 문화·체험형 교육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수도권 이외 지역 장애문화예술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I	1. 차별금지	⑦ 국어사전의 성차별내용 개선
추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과제목표	• 국어사전의 성 차별 내용 개선		
주요 내용	•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성차별적인 단어 뜻풀이, 용례 등을 조사하여 보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뜻풀이 및 용례 수정
 - ‘도락’, ‘의붓아버지’, ‘연애’, ‘연모’ 등의 뜻풀이 및 ‘눈요기하다’, ‘가장’, ‘중용하다’ 등의 용례에서 성차별적 요인이 있는 부분 수정 혹은 삭제
 - 사전 뜻풀이가 ‘여자가’, ‘여자들이’로 시작하는 항목을 조사하여,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 17항목(립스틱, 가계, 단유, 파라솔 등)의 뜻풀이 수정
 - 사전 뜻풀이나 용례 등에 ‘여자다운/남자다운, 여자처럼/남자처럼, 주로 여자들이/남자들이’ 등의 표현이 있는 항목을 조사하여,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 약 180항목(처녀막, 남아, 발뺨하다, 가락지, 각선미, 까르르, 꽃밭, 몸을 더럽히다, 미용실, 섬섬옥수, 양산, 어머 등)의 뜻풀이 또는 용례 수정

<예시>

표제어	변경 전	변경 후
처녀막	처녀의 질 구멍을 부분적으로 닫고 있는, 막으로 된 주름 또는 구멍이 난 막. 파열되면 재생이 되지 않는다.	‘질 입구 주름’의 전 용어.
여자02	「2」 여자다운 여자. 『그녀는 천생 {여자다}.	삭제
남아01	「2」 남자다운 남자.	「2」 건장한 남자.
발뺨하다	『~/(그렇게 {발뺨하려고} 하지만 말고 사내답게 솔직히 말해라./~	『~/(그렇게 {발뺨하려고} 하지만 말고 솔직히 말해라./~
가락지	「1」 주로 여자가 장식으로 손가락에 끼는 두 짝의 고리. ≒지륜02, 지환.	「1」 장식으로 손가락에 끼는 두 짝의 고리. ≒지륜02, 지환.

- 우리말샘 신어 및 추가된 단어
 - ‘트랜스젠더, 성소수자, 비소수자’ 등의 단어 및 뜻풀이 등재 완료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성차별적 용례, 뜻풀이, 관용어 등은 기계적으로 일괄 검토 하여 수정하기가 어려움
- 예전에 사용되던 단어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하여 일괄적으로 내용을 수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성차별 언어는 일괄적인 기준으로 찾아 낼 수 없기 때문에 검토를 위한 시간과 내용선정의 어려움이 있음.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검토되는 것이 필요함
- 별도의 예산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고 사업의 규모가 있거나 참여자가 많은 사업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파급력이 큰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바람

□ 향후 과제

- 표준국어대사전 및 우리말샘에 있는 성차별적 표현 및 정보에 대한 지속적 보완
- 예산 책정을 통해 개선된 내용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개선안에 대한 발굴 등을 시민적인 캠페인 등으로 만들어 추진해 보길 제안함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I	1. 차별금지	⑧ 인권 및 문화 차별·혐오적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
추진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기반총괄과
과제목표	• 사회적 소수자 보호를 위해 인권 및 문화 차별·혐오 방송에 대한 심의 강화		
주요 내용	• 방송 프로그램 내 출연자의 성, 인종, 종교, 문화 등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에 대해 심의 - 사회적 소수자 보호를 위해 관련 모니터링 및 심의 강화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보호), 제29조(사회통합), 제30조(양성평등),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제32조(신앙의 자유 존중) 등 적용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인권 및 문화 차별·혐오적 방송내용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위반 방송사에 대해 제재 추진 - 인권 및 문화 차별·혐오 관련 심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의결 ('18년) 58건 → ('19년) 55건 → ('20년) 38건 → ('21년) 14건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인권 및 문화 차별·혐오적 방송 내용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위반 방송사를 제제한 부분은 주요 성과로 볼 수 있음 • 차별·혐오적 방송 내용을 제재하는 심의 체계는 사후적인 구제의 역할에 그치므로 차별·혐오적 방송 내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차별·혐오적 방송내용에 대한 시민의 민감도 등이 상승하는 사회여론 속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의결 건수는 줄어들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심의제도 구현이 필요

□ 향후 과제

• 방송제작자에 대한 폭넓은 인권교육이 필요 • 차별·혐오적 방송(내용)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적·정책적 방안 마련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I	1. 차별금지	⑨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 및 성차별 개선 심의 기반 마련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과제목표	•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대중매체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미디어 모니터링 강화 • 차별, 비하, 폭력 등을 조장하는 부정적 사례를 발굴하고 시정을 추진하여 양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		
주요 내용	• 대중매체 내용분석 실시 • 성차별 개선 심의 기반으로서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 실시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대중매체 내용분석 실시 및 심의요청
 - 오락·예능, 광고 등 매체별 내용분석 실시('18년 12회, '19년 17회, '20년 17회, '21년 17회)
 - * 예능·오락, 시사·보도, 인터넷 기사, 유튜브 섬네일·제목, 웹툰 등
 - 내용분석 결과물 활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개선 요청('18년 275건, '19년 323건, '20년 579회, '21년 586건))
- 성평등 미디어 교육 및 미디어 인식개선 온라인 캠페인 실시
 - 방심위 기초심의위원 및 청소년 대상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 실시('18년 9회, '19년 73회, '21년 87회)
 - 방송·언론인 및 청소년 대상 성평등 미디어 교육 실시('20년 방송·언론인 5회, 청소년 대면 56회 / 비대면 177개교)
 - 미디어 속 성차별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캠페인 실시('19년 3회, '20년 5회, '21년 4회)
 - 성평등 미디어 포럼(1회) 실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18년부터 '21년까지 지속적인 매체 분석과 심의개선 요청을 실행함. 성평등한 미디어환경 조성에 기여
- 성차별적인 대중매체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차별적인 미디어를 가려낼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의미가 있음.

□ 향후 과제

- 미디어 인식개선 활동을 위한 다양한 대상을 발굴 필요
- 대중매체 분석한 내용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 홍보 방안 마련 필요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I	1. 차별금지	⑩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추진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기반총괄과
과제목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차별 개선 기능 강화 • 차별·비하 관련 정보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		
주요 내용	• 방송 모니터 요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인터넷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의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2018 ~ 2021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별·비하관련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의를 통해 총 4,539건의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구 분	심의	시정요구	
2018년	2,638	2,352	
2019년	1,886	1,406	
2020년	1,580	473	
2021년	1,369	308	
계	7,473	4,539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혐오표현에 관한 학술회에서 한국사회에서의 온라인 혐오표현은 “2010년 이후,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삼는 온라인 게시물이 급증”하였으며, “2015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혐/남혐 논쟁이 심각”해졌고, 코로나 19팬데믹 이후 중국인과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표현이 확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왜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박아란, 2020)
- 주무부처가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정책은 국가의 인권보호 및 존중의무에 부합
- 다만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는 사후 구제로 차별 혐오적 방송 내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은 미흡
- 또한 차별혐오적 방송내용에 대한 시민의 민감도 등이 상승하는 사회여론 속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의결 건수는 줄어들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심의제도 구현이 필요

□ 향후 과제

- 차별비하 정보의 유통 및 확산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는 예방정책 추진
- 사전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전담인력 확충 및 전담인력 근무여건 개선
- 시민대상 미디어인권교육 필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I	1. 차별금지	⑪ 양성평등 문화 확산
추진부처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과제목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주요 내용	-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및 학교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 추진 강화 - 학교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추진 - 학교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 지원 확대를 통한 및 양성평등 교육 기반 마련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 전반에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교육 지원 ‘양성평등교육 교원 현장지원단’ 양성(196명)과 국립부설학교 연구학교(4개교)에 양성평등 과제 지속 추진을 통한 학교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강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양성평등교육 교원 현장지원단* 양성 직무연수 실시 * 현장지원단 연수(‘21년 8월 16 ~ ‘21년 11월 20일, 150명), 전문교원 연수(‘21년 8월 2 ~ 13일, 46명) - 국립부설학교 양성평등 연구학교 지정(4개교)* 및 운영(~ ‘22년 2월) * 청주교대부설초, 춘천교대부설초, 제주대사대부설중, 서울대사대부설중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인권·양성평등 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 양성평등 학교 문화 조성 가이드라인, 초·중등 수업 자료집 개발 등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 하였음
- 교육이 학생이나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의 대상으로만 머물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양성평등 연구학교 지정, 우수학교 유공자 포상 등 양성평등 문화 조성 지원하고 있으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을 위한 계획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학생들 간 양성평등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일방적인 소통방식의 강의식 진행 교육 보다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와 형식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I	1. 차별금지	⑫ 장애인 교육권 보장
추진부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과제목표	장애이해(인권)교육 추진 강화를 통한 일반학교 장애공감문화 조성		
주요 내용	- 일반학교 장애이해(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식 개선 및 인권 감수성 향상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영역별 특성, 에티켓, 교우관계 형성 등을 포함한 장애이해(인권)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장애체험활동, 관련 행사 참여 등 체험중심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실시 확대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 학교(급)별 교육과정, 발달단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일반학교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백일장, 사진·동영상 공모전 등 체험중심 장애이해교육 실시 및 연 2회 이상 이행률 증가
- 장애공감문화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학교 및 학급별 교육과정, 발달 단계 및 특성 등 고려)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이행률 증가
 - (‘18년) 89.1% → (‘19년) 90.4% → (‘20년) 90.4% → (‘21년) 91.7%
- 학교(급)별 교육과정, 발달 단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장애공감문화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18년) 초등학교 → (‘19년) 중학교 → (‘20년) 고등학교 → (‘21년) 유치원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학교 및 학급별 교육과정, 생애주기별 및 장애유형의 특성 고려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으로 장애공감문화를 확산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을 통해 일반학교 장애이해교육의 내실화와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식 개선 및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하였지만 백일장, 사진·동영상 공모전 등과 같은 간접 체험중심의 장애이해교육 실시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예컨대 장애가 있는 학생과의 적극적인 교류 등 실효적인 장애인식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향후 과제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백일장, 사진·동영상 공모전 등 체험중심 장애이해교육 실시의 지속(‘22년 3월 ~)
- 학교교육활동 연계 특별방송프로그램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보급(‘22년 1월 ~)

Ⅲ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1.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2. 표현의 자유
3. 결사·집회의 자유
4. 사생활의 자유
5. 거주·이전의 자유
6. 인격권

□ 이행상황 총괄

< 총괄표 >

구 분	계	과제완료	정상추진	추진지연	기타
합 계	23	7	16	-	-
1.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3	2	1	-	-
2. 표현의 자유	5	-	5	-	-
3. 결사·집회의 자유	5	3	2	-	-
4. 사생활의 자유	7	2	5	-	-
5. 거주·이전의 자유	2	-	2	-	-
6. 인격권	1	-	1	-	--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진과제	추진상황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38	Ⅲ-1-①	「국가보안법」의 남용방지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	정상추진
39	Ⅲ-1-②	「보안관찰법」상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요소 개선	과제완료('18.)
40	Ⅲ-1-③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검토	과제완료('20.)
【표현의 자유】			
41	Ⅲ-2-①	공적 데이터 민간개방 확대	정상추진
42	Ⅲ-2-②	소외계층 방송 향유권 보장	정상추진
43	Ⅲ-2-③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접근성 개선	정상추진
44	Ⅲ-2-④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정상추진
45	Ⅲ-2-⑤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공개	정상추진
【결사·집회의 자유】			
46	Ⅲ-3-①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강화	정상추진
47	Ⅲ-3-②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의 적법성 제고	과제완료('20.)
48	Ⅲ-3-③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의 책임성 제고	과제완료('18.)
49	Ⅲ-3-④	집회시위 일반교통방해죄 미적용 원칙	과제완료('18.)
50	Ⅲ-3-⑤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 기회 확대	정상추진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진과제	추진상황
【사생활의 자유】			
51	Ⅲ-4-①	보안관찰제도 운영 합리화	정상추진
52	Ⅲ-4-②	수사과정에서 통신비밀침해 방지	정상추진
53	Ⅲ-4-③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정상추진
54	Ⅲ-4-④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인권침해 소지 개선	정상추진
55	Ⅲ-4-⑤	영상정보 오남용에 의한 사생활 침해방지 법제 정비	정상추진
56	Ⅲ-4-⑥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기 대응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	과제완료('19.)
57	Ⅲ-4-⑦	생체정보의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과제완료('18.)
【거주·이전의 자유】			
58	Ⅲ-5-①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정상추진
59	Ⅲ-5-②	도서주민의 이동권 증진	정상추진
【인격권】			
60	Ⅲ-6-①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제도의 인권침해 소지 개선	정상추진

□ 과제별 이행평가

38	Ⅲ-1-①	국가보안법의 남용방지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Ⅲ	1. 차별금지	① 국가보안법의 남용방지 및 인권침해 문제해결
추진부처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
과제목표	국가보안법의 남용방지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		
주요 내용	-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해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사·기소 - 사안 경중, 죄질, 국가안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불입건·기소유예 등 적극 검토 - 남용방지를 위한 수사 관계자 교육 및 수사지휘 체계 확립 지속 - 남북관계 변화상황 등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 개정 필요성 검토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2018년 주요 이행 실적 - 국가보안법위반 총 38명 중 12명 기소유예 처분(구수 18명 포함) - 법무연수원 공안수사 교육 실시(검사 240명, 수사관 80명) 2019년 주요 이행 실적 - 국가보안법위반 총 53명 중 18명 기소유예 처분(구수 30명 포함) - 법무연수원 공안수사 교육 실시(검사 284명, 수사관 48명) 2020년 주요 이행 실적 - 국가보안법위반 총 51명 중 11명 기소유예 처분(구수 19명 포함) - 법무연수원 공안수사 교육 실시(검사 47명) 2021년 주요 이행 실적 - 최근 5년간 입건 및 기소 건수 감소 추세 ※ 2017년 42명 입건, 14명 기소 → 2018년 20명 입건, 6명 기소 → 2019년 23명 입건, 1명 기소 → 2020년 32명 입건, 5명 기소 → 2021년 35명 입건, 20명 기소(신수 기준) - 국가보안법위반 총 52명 중 9명 기소유예 처분(구수 17명 포함) - 법무연수원 공안수사 교육 실시(검사 39명) ※ 공안분야 검사 타켓 교육 등을 통한 국가보안법위반 의율 신중 교육 지속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국가보안법의 남용방지 및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소건수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의 남용역사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다수 발생한 점으로 판단해 볼 때, 국가보안법의 유지 여부를 인권적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

☐ 향후 과제

- 국가보안법 준치의 필요성을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하여 판단
- 국가보안법 자체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위헌적 사안이 아닌지 검토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Ⅲ	1. 차별금지	② 보안관찰법상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요소 개선
추진부처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
과제목표	• 보안관찰법상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요소 개선		
주요 내용	• 보안관찰법 시행령상 보안관찰 면제신청시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 요건 삭제 검토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TF논의 결과 토대로, 보안관찰 면제신청 시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 요건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관찰법 시행령 개정안 입안('19년 6월), 입법예고('19년 6월 18일 ~ 7월 29일)
- 법제처 심사 접수('19년 8월)하여 법제처 심사 완료('19년 9월 초), 공포·시행('19년 10월 8일)

□ 정책·관행의 변화

- 보안관찰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대검 안보수사 TF 진행('18.6. ~ '18.11. 3차례)
- * 보안관찰 면제 신청시 첨부서류인 ‘준법서약서’를 삭제하는 내용 검토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보안관찰 면제시 준법서약서를 삭제하여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취하고 있으나 보안관찰 제도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1차·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7~2011·2012~2016)에서 “보안관찰처분은 위법행위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에게 대해 재범행위로 인한 처분이 아닌,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내심을 추정해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며 “재범 위험성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행정처분 형식의 결정으로 오용의 가능성 크다”고 판시한 바, 보안관찰제도의 유지를 인권적 관점으로 재검토 필요

□ 향후 과제

- 보안관찰제도의 유지를 인권적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Ⅲ	3. 결사·집회의 자유	③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검토
추진부처	국방부	인사기획관	인력정책과
과제목표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추진공개		
주요 내용	• 현재 결정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도입방안 마련 • 대체복무 도입 관련 법령 제·개정 및 대체복무 시행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관련 법률 제·개정 완료
 - (복무기간)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 유지 등의 이유로 36개월로 설정
 - (복무분야) 합숙 시설이 갖춰져 있고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로 단일화
 - (복무형태) 현역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없이 합숙 근무

□ 정책·관행의 변화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대체역법 등) 제·개정 정부안 확정('19년 4월)
 - 대체복무는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근무를 통해 이뤄지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해당
- 여부 판단을 위해 별도의 심사위원회 설치
 - * '대체역의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병역법' 개정
- 대체역법에 대한 국회 공청회 실시('19년 7월)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의결('19년 12월)
- 대체역법 관련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완료 : '20년 6월
-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 완료 : '20년 6월 9일
- 대체역 편입심사 접수 시작 : '20년 6월 30일
- 대체복무요원 대체복무 시작 : '20년 10월 26일 ~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법령에 따라 현재 730명이 대체역으로 편입되었으며, 106명이 소집 근무 중('20년 12월 기준)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은 그 자체로서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의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임
- 다만 대체복무의 기간, 장소, 방식 등이 징벌적 형태로 추진되는 것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대체복무자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혐오가 발생할 수 있기에 대체복무제 운영에 있어서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이 요구됨(국가인권위원회, 2019b)

☐ 향후 과제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제도가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복무기간은 현역과 동일하게 조정, 복무장소의 다양화, 복무방식의 다양화, 현역 복무 중이라도 대체역 편입신청 허용 절차 마련)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II	2. 표현의 자유	① 공적 데이터 민간 개방 확대
추진부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과제목표	• 시민수요를 반영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확대 • 혁신성장 지원 및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파급효과가 큰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추진		
주요 내용	•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 보유현황 전수조사 결과('18년)를 토대로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14.2만개) 개방을 목표로, 중장기 개방계획 수립 및 개방 추진(~'21년) •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고수요·고가치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비교▶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19년 ~ '21년) 전면개방 확대 완료('21년)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계획에 따른 데이터 개방사업 추진(자유주행, 스마트시티, 스마트 교통정보, 먹는 샘물정보, 철도종합정보, 미세먼지를 포함한 생활환경 등 6개 영역 26개 분야) • 공공데이터 개방 이행과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평가'를 통한 점검 • 공공데이터 개방이행 지원을 위한 컨설팅 추진(2021년) - 컨설팅 추진 및 상시 기술지원 - 비정형 데이터 개방 가이드라인 수립 등 • 공공데이터 개방은 COVID-19시기와 맞물려 시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함. 예. (질병청, 행안부, 해수부, 농식품부, 복지부 및 심평원 등) 예방접종센터 현황, 선별진료소 현황 및 감염현황, 안심식당, 위탁의료기관 현황 등 COVID-19 극복 지원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기관보유 공공데이터 개방(누적, 테이블 기준) * 2018년 개방, 테이블 기준 : 2.8만 개 * 2019년 개방 누적, 테이블 기준 : 4.4만 개

* 2020년 개방 누적, 테이블 기준 : 10.5만 개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누적)

* 2017년 개방 : 48개

* 2018년 개방 누적 : 77개

* 2019년 개방 누적 : 96개

* 2020년 개방 누적 : 121개

* 2021년 개방 누적 : 147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공공데이터 개방은 COVID-19시기와 맞물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초기에 데이터 개방의 부정적인 문제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여 이후에 가이드라인의 운영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또한 아직도 접근성에 있어서의 보장 수준은 미흡함. 예컨대 ‘쉬운 언어’, ‘글자크기’ 조정 등 누구나 장벽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으로 공공데이터포털 등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19년 공공데이터 운영에 대해 40% 이상의 기관들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였고 일반시민들도 찾고 있는 해당 데이터 없거나, 데이터의 확보방법을 모르거나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공공데이터 개방과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데이터 수량만 늘린다면 사생활침해, 데이터 오용 등 데이터개방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함¹⁰⁾

☐ 향후 과제

- 공적 데이터의 민간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점검과 관리
- 개방 분야의 확대 및 비정형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1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https://www.opengirok.or.kr/4820>. 최종검색일 : 2022.08.22.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II	2. 표현의 자유	② 소외계층 방송 향유권 보장
추진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양성정책과
과제목표	•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주요 내용	• 시·청각장애인용 TV 편의기능 개선 추진 및 저소득층 보급 확대 • 시·청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시·청각장애인용TV 저소득층 보급 확대 - 방송 이용 편의 및 시청격차 해소 •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의 단계적 개발 및 단계적 개발에 대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실시 • 미디어 환경변화와 코로나 비대면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미디어 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국무회의 상정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100,665명, '16년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 맞춤형 TV 누적보급률 100% 달성 •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 및 비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 제고를 위해 수어방송의 위치·크기 조정 및 제거가 가능한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 지속 지원(9개사)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93개사),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영유아기·학령기·성인기 등)별 맞춤형 콘텐츠(42편) 및 장애인의 기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방송콘텐츠(3,799편) 제작·보급 • 비실시간 위주로 미디어 이용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공익성·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지상파(KBS·MBC·SBS·EBS) 장애인방송 VOD 제작 지원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차별 없는 디지털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해 미디어에 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 전반을 포용하는 실질적인 종합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함. 특히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 확대,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춘 신기술 개발(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등) 및 장애인방송 지원 환경 개선으로 장애인의 차별 없는 방송접근 제고와 미디어 이용환경을 보장함. 한편 개발된 신기술들이 미디어보급과 함께 보편적으로 실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향후 과제

-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을 전체 시·청각장애인 대상으로 확대 및 방식 개선
-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사업자(131개사) 대상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발달장애인 생애 주기별 콘텐츠(30여편) 및 장애인 교육 방송 콘텐츠(3,000여편) 제작·보급
- 인공지능·음성인식 등 기술을 활용한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단계적 개발 및 시범서비스 확대 운영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II	2. 표현의 자유	③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접근성 개선
추진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과제목표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활성화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과 소외 없이 디지털 기술·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접근·이용환경 개선		
주요 내용	(보조기기 개발·보급)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보조기기 임대·보급 및 개발 지원 추진 (정보접근성 제고) 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연구, 실태 조사·컨설팅·인식제고 활동 등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정보접근성 준수 지능정보제품 공공우선구매 제도 시행(지능정보화기본법, '21년 6월) 등
- 접근성 준수 지능정보제품 우선구매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
- 키오스크 접근성 국가표준 개정 등 추진
- 정보접근성 준수 의무화 범위 확대 『국가정보화기본법』('20년 6월)

□ 정책·관행의 변화

- 기능정보기기·서비스 정보접근성 개선
 -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주요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지원
- 정보취약계층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보급
 - 장애 유형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 취약계층 대상 보조기기 체험기회 확대 등 디지털 접근 및 이용 편의성 향상 지원
- 정보접근성 기반 강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취약계층 대상 보조기기 체험기회 확대* 등 디지털 접근 및 이용 편의성 향상 지원
 - * ICT 생활체험관 구축(2개소) 및 찾아가는 보조기기 체험전시회(10개 시·도)개최 등
- 장애 유형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보급 - 정보통신기기 개발(16건)·보급(13,465대)
- 영세한 국내 보조기기 개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주요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지원(160개소),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 개발·실증(2종)
- 키오스크·웹·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수준 향상
 - (키오스크) ('20년) 64.5점 → ('21년) 66.8점(2.3점 ↑)
 - (웹 사이트) ('20년) 60.7점 → ('21년) 60.8점(0.1점 ↑)
 - (모바일 앱) ('20년) 69.2점 → ('21년) 75.2점(6.0점 ↑)
- 수혜자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보급 지원을 통한 만족도 상승
 - (영세기업) 기술 역량 제고(4개 기업) 및 판로 확대(6개 기업, 613만불(67.6억 원)) 계약체결, 전년 대비 45배)
 -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보급을 통한 만족도 향상 : '20년 84.03점 → '21년 84.75점(0.72점 ↑)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에 대한 관심과 시급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부족('21년 3.5억 원)하여 개선 한계 → 예산 확대 추진('22. 3.63억 원)*
 - * 정보접근성 현황조사 예산 확대(1억 원 ↑),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 ISP 예산 신규 확보 등(1.63억 원)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범위를 웹 및 모바일 앱에서 무인정보단말로 확대하고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장애인 등 장애인 및 고령층 대상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기술) 개발·보급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정보접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개선함.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의 질뿐만 아니라 재해안전 예방 및 대처에도 필수적임. 또한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하고 포용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활용정책을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함
- 정보접근성 개선, 정보통신 보조기기 등을 통해 웹 접근성 및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향상함(키오스크·웹·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수준 향상)

□ 향후 과제

- 키오스크 유형별 접근성, 사용성 제고 UI 개발 및 확산을 위한 표준 플랫폼 설계 등 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 및 '23년 구축 예산 확보 추진
- 영세 정보통신보조기기 기업을 디지털 포용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수출 통합 지원체계 운영 강화(해외 보조기기 시장 분석 → 해외 경쟁력 높은 통합제품 개발 지원 → 수출처 사전 발굴 · 관리 → 최적의 국제전시회 선별 및 참가 지원 → 현장 및 후속 계약 지원 등)
- 장애인, 개발기업 등 정책 지원대상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개발하고 사용자평가 강화 등을 통한 우수 보조기기 선정·보급 확대 추진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5. 표현의 자유	④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추진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과제목표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문화 확산을 통한 민주적 여론 형성 및 디지털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통해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주요 내용	-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및 제도개선 -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 -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의 위법성 조각사유 확대 추진 - 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임시조치,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 국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국회와 협의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 지원

□ 정책·관행의 변화

-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관련 활동 지원
- 기업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전한 정보 이용환경 구축 지원
 -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서는 방심위 심위 전에 사업자 등이 법규 및 약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의 일방적인 임시조치에 대한 반론권을 제기하는 이의제기 절차 신설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성화하는 법률 개정안 국회 논의 지연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이행내용이 해당 추진과제의 목적에 적합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에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심의는 불법정보나 그에 준하는 정보와 내용으로 제한되어야 하고¹¹⁾, 판단기준 역시 불법성으로 명확해야 하기에 절차적 엄격성을 갖추도록 보완해야 함

- 국제사회에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보매개자에게 책임을 부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¹²⁾. 한국의 임시조치제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열/규제하는 방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활동 지원은 임시조치의 악용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게시자에게 사전 통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재심이 동일한 심의위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됨. 위의 의견을 종합하여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때 절차의 엄격성 제고, 심의 과정에서 인권의 가치 포함, 재심에 있어 위원 구성, 철저한 심의 사전통보가 이루어지도록 보완되어야 함
-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은 그 주장이 사실임에도 명예훼손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진실에 관한 사항,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바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과 같이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어야 민주사회에서 사회 비판적 기능을 키우는 방향이며 한국 역사의 언론 통제와 같은 일이 방지될 수 있음. 현재 부처에서도 논의 및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법률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임. 정보에 대한 진위,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이 있으므로 개정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조치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둘러싼 환경과 맥락을 파악하여 게시물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인권의 가치를 내포되어야 함
- 민주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권 전반과 함께 논의되어야 과제의 목표였던 인터넷 공간에서 민주적 소통의 문화를 만들 수 있기에 미디어 인권교육을 할 것을 제안함.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현황에 인터넷 심의를 공개되지 않는 것은 이의절차,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민할 수 있는 자료 접근을 막는다는 점에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포털 사이트의 자율규제와 임시조치는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과 표현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쟁점이 될 것임. 이후에도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경우 그 제한의 내용과 범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시해야 함. 그러나 제3차 NAP에서 개선 목표로 함께 둔 바와 같이 명예훼손 적용 대상에 따라 임시조치가 가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 비판의 기능까지 제한하는 부분은 개정될 필요가 있음.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률 개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악용되어 피해자를 낳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그러나 이를 빌미로 공익을 위한 사안에 관한 비판을 제한하는 것은 권력 남용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이는 포털 사이트에서 자율규제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그 제한의 내용과 범위가 적시되어야 하고, 개인의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사고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국가의 검열과 통제와 연결된 문제이므로 국가가 법률로 처벌하는 것만이 궁극적인 해답은 아님. 민주사회 방향성 속에서 시민의 자율성과 함께 도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문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향후 과제

- 인터넷상 정보에 관한 심의의 대상, 기준 명확화, 심의 절차 엄격성 제고, 심의 과정에 인권의 가치 반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심의 현황 공개 심의 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전 고지
- 자율규제, 임시조치 등에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리(intermediary liability safe harbor) 반영
- 임시조치에 대한 반론권, 이의제기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 사이버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과 공익성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반영 등 법률 개정 필요
- 미디어 인권교육을 병행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

11)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13 전원재판부

12)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2011). Joint decla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Internet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Ⅲ	2. 표현의 자유	⑤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공개
추진부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제목표	화학물질의 등록을 통해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고, 물질별 유해성 확인 및 유독물질 해당 여부 등 유해성 심사결과를 고시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		
주요 내용	-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공개 - 유해성정보 조기 확보를 위해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은 기업이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여 '3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하도록 의무화 - 유해성정보를 공개하는 원칙으로 하되, 영업 비밀을 요구할 경우 사전심사제 도입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20년 11월 9일 제정, 2021년 1월 16일 시행)
-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2021년 1월 4일 제정, 2021년 1월 4일 시행)

□ 정책·관행의 변화

- 「화학물질 정보제공 및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실무가이드」('20년 12월 30일)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 및 공개('21년, 누적 2,328종)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 제외 인정('21년 12월 31일 기준, 1,514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❸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 및 공개('21년 누적, 2,328종) 성과
- 현재의 정책은 생산하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립 필요

□ 향후 과제

-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수립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Ⅲ	3. 결사·집회의 자유	①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강화
추진부처	경찰청		정보상황과
과제목표	• 평화적 집회·시위 자유 적극 보장		
주요 내용	• 평화적 집회시위 최대 보장 •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법률·제도 개선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과도한 규제로 헌법불합치 결정된 집시법 ‘집회금지장소 규정(제11조)’ 개정
 ※ 舊 집시법에서는 국회·총리공관·각급 법원·현재 경계지점 100m내는 집회시위가 원천 금지되었으나, 금지장소일지라도 예외적으로 해당 기관 고유 기능·활동을 방해하거나 대규모 확산 우려가 없는 경우 집회시위가 가능토록 개정

□ 정책·관행의 변화

-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참여자, 시민, 경찰의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화경찰 제도 도입
-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 신고의 편의를 위해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집회 신고 접수하는 곳을 변경하여 야간이나 휴일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금지통고 건수(코로나19 관련 제외): ‘15년 193건 → ‘16년 96건 → ‘17년 74건 → ‘18년 12건 → ‘19년 9건 → ‘20년 2건 → ‘21년 13건
- 대화경찰 인력풀: ‘18년, ‘19년 1,433명 → ‘20년 1,677명
- 전체 집회 대비 대화경찰 배치율: ‘19년下 16.8% → ‘20년上 53.9% → ‘20년下 56.7%
- 대화경찰 배치 인원 및 횟수, 활동실적

관련 통계	‘19년(5월부터 집계 시작)	‘20년	‘21년
집회시위 개최횟수	69,638회	77,453회	86,552회
배치횟수(전체 집회 대비)	11,688회(16.8%)	42,733회(55.2%)	59,468회(68.6%)
배치인원	연 20,934명	연62,131명	연 86,837명
활동실적(갈등·위험예방 등)	6,400건	18,602건	28,106건

- ‘20년 ‘대화경찰 효과성’ 정책연구 결과: 대화경찰 운영시 위법시위 약 54.5% 감소 / 집회참가자(277명) 설문조사 결과, △ ‘대화경찰 활동 만족도’ 77.0%, △ ‘집회의 자유가 더 많이 보장’ 73.6%, △ ‘물리적 위험요소 효과적 통제’ 77.6%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전반적으로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의 적극 보장이라는 과제 설정을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로 적절하였으나 이행 과정에서 부족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완 유지하여야 함. 특히, 감염병 확산이라는 재난상황 속에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됨. 방역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인권 보장을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라는 점에서 인권 보장을 해하는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됨. 제4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이 사례를 성찰의 기회로 삼아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
-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노력이 계속됨에도 이에 역행하는 법집행이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의해 단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줌. 현재의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를 시정과 함께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거나 모니터링 등을 할 필요가 있음.
- 집회·시위는 여타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전달이 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적극적 행위임. 따라서 집회·시위는 그 성격상 다소 과격하고 급진적일 수 있다는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집회·시위에 따르는 상황들을 폭력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맥락을 소거한 해석임. 집회·시위에 있어 평화를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집회·시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화의 기준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자유로운 집회·시위 보장을 위해 집회·시위와 관련된 집회주최자, 지자체, 경찰, 지역사회,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협력 속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와 소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집회·시위의 제한과 통제에서 벗어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함. 특히, 본 법률 제11조에서 집회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조항은 삭제 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과제

- 감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 속에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할 수 있는 지침 마련
-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의견 청취를 통한 시정해야 할 사안 확인 혹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마련
- 집회·시위 특성을 반영한 평화 집회 기준 재고
- 집회·시위와 관련된 집회주최자, 지자체, 경찰, 지역사회,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협력 절차와 시스템 마련
-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Ⅲ	3. 결사·집회의 자유	②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의 적법성 제고
추진부처	경찰청		경비과
과제목표	집회시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찰 법집행 과정의 적법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지침 개정		
주요 내용	- 살수차 운용요건 강화 및 장비사용 교육 - 살수차 △사용요건·명령권자 △거리별 수압기준 △최루액혼합살수 근거규정 등을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토록 개정 - 내부지침을 개정하여 일반 집회시위에서는 차벽을 사용하지 않고, 불법폭력행위로 인하여 차벽을 사용하지 않고는 제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집회시위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차벽을 사용하지 않도록 차벽운용지침 개정 완료 - 경찰개혁위 권고안 등을 반영한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 ※ △살수차 사용요건 엄격화(대통령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살수차 사용 명령권자를 시·도 경찰청장으로 규정(제13조의2 제1항) △살수거리별 수압기준 규정 및 준수 의무 부여(제13조의2 제2항) △최루액 혼합살수 근거규정 마련(제13조의2 제3항)

□ 정책·관행의 변화

안전한 장비 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장비 점검 및 안전교육을 통해 인권·안전에 최우선한 집회시위 현장에서 법집행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 ※ 안전 교육 '18년 반기 1회 → '19년 이후 분기 1회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집회시위 현장에서 법집행의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살수차와 차벽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된 것은 부족함. 집회·시위 참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역할로 나아가야 함
- 차벽 설치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으나 지난 3년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차벽이 설치된 경우가 있었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음. 프랑스 최고집행법원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보건위기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라고 판단하고 있음¹³⁾
- 차벽 설치의 사용 금지가 아닌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집회·시위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함인데 차벽 설치의 그 행위를 막는 행위임. 또한, 차벽 자체가 주는 위화감으로 인해 집회·시위에 참여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집회·시위 자체가 불온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함. 따라서, 폭력 행위가 일어날시 차벽이 아닌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 집회·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제한과 사고를 일으켰던 차벽 설치와 살수차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정책 과제 설정은 바람직함. 그러나 법집행의 적법성 제고를 문제가 되었던 것을 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안전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역할을 고민해볼 것을 제안함. 대개 경찰의 업무가 법집행을 하고 제한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인권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는 것도 경찰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제4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과제

- 차벽 설치 규정 철폐와 폭력 행위가 일어날시 차벽이 아닌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
- 보건위기 상황 속 차벽설치 등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소지가 큰 경비행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재정비 필요
- 집회·시위를 관리와 통제의 방향이 아닌 안전하고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보호의 역할로 전환하는 사업 필요

13) 노컷뉴스.(2020.10.06.). 경찰, '차벽' 운용지침 무시했다...코로나 집회 대응 '도마'.
<https://www.nocutnews.co.kr/news/5422896>. 최종검색일: 2022.8.24.

① 추진 과제별 개요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Ⅲ	3. 결사·집회의 자유	③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의 책임성 제고
추진부처	경찰청		경비과
과제목표	집회시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찰 법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후통제를 엄격히 하기 위함		
주요 내용	- 집회시위 상황에 대한 지휘를 위해 사용하는 지방경찰청 지휘무선망을 녹음하고 이를 3월간 보전(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전기간 연장 가능) - 집회시위 현장에 배치되는 경찰에게 개인 식별표지 부착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전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정

□ 정책·관행의 변화

- 집회시위 상황에 대한 지휘를 위해 사용하는 지방경찰청 지휘무선망을 녹음하여 일정기간 보전함으로써 경찰 법집행 과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및 사후통제 강화
- 집회시위 현장에 배치되는 전 경찰을 대상으로 소속·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 식별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경찰권 행사의 책임성 확보, 인권침해 행위 예방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집회·시위 현장에서 법집행의 책임성 제고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과제임
- 두 전문가 모두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보호 및 관리 계획을 정하는데 있어 당사자가 참여해야 함을 강조함. 집회·시위 현장에서 일어나는 조치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계획된 것이므로 사전협의 단계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협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과정을 담보한다면 국가가 집회·시위 현장에서 안전과 보호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 경찰관이 법집행을 함에 있어 신분을 밝히는 것이 맞으나 이름표, 개인식별표지를 부착함으로써 고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속부대를 기호 혹은 숫자로 표기하는 방법을 제시함. 반면, 대규모 집회의 경우 식별표를 부착하여도 시민들이 인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법집행을 함에 있어 확실한 신분을 고지하기 위해 소속별 색 구분을 할 것을 제안함

□ 향후 과제

- 본 정책과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정부의 책임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중요하나 일회적 제도 변화로 책임성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속되어야 할 과제임
-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보호 및 관리 계획 시 주최측, 지자체 등 관계자가 참여하여 보호 및 조치에 대해 사전에 조정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경찰관이 법집행을 함에 있어 신분을 밝히는 것이 맞으나 이름표, 개인식별표지를 부착함으로써 고시하는 적합한 방법인지 재고 필요
- 집회시위 현장 경찰지휘 무선통신망 녹음과 보전에 대한 점검 필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Ⅲ	3. 결사·집회의 자유	④ 집회시위 일반교통방해죄 미적용 원칙
추진부처	경찰청		수사
과제목표	• 집회시위 일반교통방해 미적용 원칙		
주요 내용	• 집회시위 일반교통방해 적용기준 및 실무지침 마련 • 집회시위 현장 경찰관 교육자료 제작 및 동작화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집회시위 일반교통방해죄 적용기준 및 실무지침' 마련

□ 정책·관행의 변화

- '집회시위 일반교통방해죄 적용기준 및 실무지침' 관련 사이버 직무교육 강의 게시
- '2018년 집회시위 수사 매뉴얼' 사이버 직무교육 강의 게시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집회시위 현장에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17년 대비 '18년 집회시위 사법처리 건수 67% 감소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집회·시위 일반교통방해죄 뿐만 아니라 집회·시위 분야로 교육 내용을 확장한다면 교육 참여자들에게 집회·시위의 자유와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이 될 것임. 집회·시위 관련 판결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경찰의 역할을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향후 과제

- 집회·시위와 관련한 판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등을 참고하여 교육자료를 지속 업데이트하여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경찰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함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Ⅲ	3. 결사·집회의 자유	⑤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 기회 확대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과제목표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주요 내용	- 정책제안 활동,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청소년 의견수렴 등 참여기구 역량 강화 -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 - 온라인·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청소년 참여 촉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청소년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수련시설의 정책 및 운영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청소년 중심의 정책 추 - 지역사회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 특별회의, 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참여기구 운영 - 청소년의 보다 다양한 참여활동 기회를 마련하여 청소년 친화적 정책 추진 - 지역사회 ‘청소년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 매뉴얼 마련·배포 등 독려 추진 -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참여포탈’ 모바일 페이지 구축 및 정책제안 게시판 상시 운영(‘20년 ~) -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21.6월~’21.8월) 및 대한민국청소년원탁회의(‘21년 8월) 개최 - 지역별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10개 시·군·구)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청소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 참여활동 기반 강화 ‘청소년참여포탈’ 모바일 페이지 구축 및 정책제안 게시판 상시 운영(‘20년 ~) -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실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COVID-19로 인하여 오프라인 참여 등에 한계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추진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청소년특별회의가 기초-광역-전국으로 연계되는 절차와 의미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가 낮아 각기 운영되고 있으며, 연도별 사업으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음
- 청소년특별회의의 정책과제에 대한 높은 수용률은 긍정적이라 할 것이나, 단지 ‘의견을 청취’한 수준을 넘어 반영 여부와 반영에 따른 후속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피드백 절차도 의견표명권 보장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함.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제안 정책 수용률 모니터링도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실무에서는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만 이루어질 뿐, 청소년 참여기구 정책 계획 및 추진방안 수립 등에도 청소년의 참여가 보장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청소년 참여기구는 청소년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획 수립 단계와 운영 전반에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통해 소수자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성별, 경제적 상황(차상위계층), 재학 여부(학교밖청소년), 다문화가정 등만 고려되고 있을 뿐, 장애, 이주 맥락, 거주지역, 가정밖청소년, 보호대상아동 등 다양한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 마련 및 이들의 참여기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음
- 한편, 제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후 2022년 5월 3일 다시금 입법예고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연령 제한 없이 사건에 관계된 모든 미성년자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사법절차의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보장하고 있음.¹⁴⁾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점검 과정에 마땅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향후 과제

- 지속적인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도모
 - 청소년 참여활동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및 인지도 확대를 위한 대시민 홍보 강화
 - 상시적인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및 개발 및 운영 과정에 청소년 의견청취 및 참여권 보장
 -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의견청취를 위한 소수자 할당 지침 마련 및 그에 적합한 예산 할당
 -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 정책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정책참여 모델 운영 확대
- 아동기본법(안) 제정 등으로 정부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산재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의 활동 근거 일원화 및 유기적 운영체계 마련
 -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뿐만 아니라, 각 정부부처(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및 지자체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의 운영실태를 망라하여 모니터링하고, 이들 참여기구의 의견에 대한 피드백이나 정책 수용률을 포함한 성과 보고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 실질화 과정에 아동·청소년의 의견청취 제도화
- 아동·청소년 의견표명과 참여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는 법체계 구축
 - 『아동복지법』 기본이념에 ‘아동참여 및 의견존중’ 원칙 반영을 통해 모든 아동의 사법·행정절차상 의견표명권 보장
 - 2022년 5월 입법예고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정 및 가사소송규칙 개정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과 관련한 연령 제한 규정 폐지

14)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68284&lawCd=0&lawType=TYPE5&currentPage=1&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Ⅲ	4. 사생활의 자유	① 보안관찰제도 운영 합리화
추진부처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
과제목표	보안관찰제도 운영 합리화		
주요 내용	-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심사 지속적 시행 - 보안관찰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 보안관찰처분 면제 제도 운영의 적정성 제고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
- 대면, 전화조사 등을 통한 실질적 조사 실시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18년 ~ '21년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기각 6건, 면제 5건 의결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보안관찰대상자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사안 조사시 대상자들이 보안관찰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안 조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실질적인 조사를 시행한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임
- 그러나 보안관찰처분 자체가 대상자의 자유를 상당한 정도로 구속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불공정 또는 자의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더욱 필요함
-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는 재범의 위험성, 준법정신의 확립 등 심사 기준의 추상성으로부터 비롯된 부분도 적지 않으므로, 그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할 것을 요구하거나 심사 및 결정을 사법부가 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과제

- 보안관찰제도의 개선방안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Ⅲ	4. 사생활의 자유	② 수사과정에서 통신비밀침해 방지
추진부처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
과제목표	수사과정에서 통신비밀침해 방지		
주요 내용	- 수사과정에서 통신 관련 정보 확인 시 요건과 절차 철저히 준수 - 전국 검찰청에서 통신 수사 시 법정 요건과 절차, 판례가 용구하는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 지도 - 인권보장과 범죄대응체계가 조화를 이루는 통신비밀보호 법제 정비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여 인권보장과 범죄대응체계가 조화되고 선진법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령 정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수사과정에서 개인의 통신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정비

□ 정책·관행의 변화

- 통신비밀보호법 1차 개정('19년 3월 28일 정부안 제출 → '19년 12월 31일 시행)
 - 통신제한조치 총 연장기간 신설(기한 없음 → 원칙 1년, 안보범죄 3년)
 - 위치정보 추적자료·기지국 수사 시 요건 강화(보충성 요건 신설)
 -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지범위 확대(기소중지·수사 중 미통지 → 통지)
 - 통신사실확인 사유 통지 신청권 부여(사유 미통지 → 통지)
- 통신비밀보호법 2차 개정('20년 2월 10일 의원 발의 → '20년 3월 24일 시행)
 - 인터넷 회선 통신제한조치 집행 종료 후 법원 승인청구 제도 도입
- 통신비밀보호법 3차 개정('21년 3월 11일 개정안 국회 제출 → '21년 6월 18일 법사위 상정 및 법안 심사 제1소위 회부)
 - 긴급통신제한조치 법원 사후허가 필수화 도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 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국가의 인권존중 책무에 비추어 볼 때, 수사에 필요한 통신비밀의 확보는 개인의 통신에 관한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선에서 그쳐야 하고,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사법기관의 사전 통제를 받아야 함
- 통신비밀보호법의 1, 2차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¹⁵⁾에 따른 조치로서, 개인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적 요소가 다소 제거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2010년 12월 28일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침해적 요소의 제거에 근 10년의 시간이 소요된 점에 대해서는 인권존중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음
- 또한 일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이나 국제규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있는바, 추가적인 개정을 통해 개인의 통신비밀의 자유의 침해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이 수사실무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개인의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의 단축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
 -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메타데이터 수집에 있어 대상범죄 제한, 자료제공 대상자 한정,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소명 등 자료제공 요건과 절차 강화
 - 실시간 추적자료 및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해 대상범죄 한정,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소명, 보충성 요건 강화 등 제공 요건을 강화하고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 포함
- 이메일, 메신저 대화내용 등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통신감청에 준하는 수준으로 요건 강화
- 회선감청 등 정보기관의 감청에 대해 대상범죄의 제한, 감청요건의 명확화(특히 보충성 요건), 당사자의 열람권과 불복권 보장 등 통제 강화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제도의 강화 : 요청사유, 통지시점, 통지내용 등 통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고, 통지위반의 경우 제재 부과 근거 마련 등

15) 헌법재판소 2010. 12. 28.자 2009헌가30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8. 8. 30.자 2016헌마263 결정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Ⅲ	4. 사생활의 자유	③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추진부처	행정안전부		주민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과제목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생명·신체, 재산 등 2차 피해 예방		
주요 내용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선 -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신속한 심사·의결을 통해 피해 시민의 권리구제 지원 -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시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정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제도 마련

□ 정책·관행의 변화

- 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류 확대(상당사실확인서 추가)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자의 범위 확대
- 주민등록번호 부여 시 지역번호 폐지(임의 번호 부여)
-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시행
- 지방자치단체 통지 의무 이행점검 강화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이 6개월 → 90일, 연장기한 3개월 → 30일로 단축
- 주민등록번호 변경심사 처리현황 온라인 조회 서비스 실시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문’의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반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 관련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은 사실조사 생략(3주 내 결정 통보)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 정부위원 5명 → 2명으로 감축
 - 사이버범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성 갖춘 민간위원 6명 → 9명 확대

- 온라인 변경 신청서비스 도입 추진
- 읍면동 업무담당자 대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실무교육(총 7회, 3천여 명)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홍보 확대
 - 전국 경찰서 및 범죄피해지원센터 약 320개소, 여성상담기관 약 300개소, 시·도/시·군·구/읍·면·동 및 출장소 등 3,848개 기관 대상 홍보물 제작 배부
 - 다음·카카오톡 보드광고, 수도권 아파트 및 정보청사 영상광고
 -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 한국법률구조공단,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북부·남부경찰서 대상 찾아가는 홍보 실시
- 고령자와 시각약자를 위한 큰글자 서식 도입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민 총 3,045명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 중 66.2%가 ‘대체로 만족’ 이상(갤럽 조사)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어려움
- 읍면동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변경제도에 대한 현장 안내 미흡

㉓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임
- 수 십 년간 유지되어 온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를 폐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을 제거한 것은,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임과 동시에 시민들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음
-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됨을 고려할 때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필요한 범죄 유형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근본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공공서비스 분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처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DI(Duplication Information)나 CI(Connecting Information)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범죄피해의 예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절차 간이화 지속 추진
- 주민등록번호 악용 사례 추이 관찰 후 제도 반영
- 주민등록번호 사용의 허용 범위 제한
- DI와 CI에 대한 제도적 통제 장치 마련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Ⅲ	4. 거주·이전의 자유	④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인권침해 소지 개선
추진부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과제목표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 강화로 오(誤)등록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 유관기관 협업 강화, 일제점검을 통한 등록정보 정확성 제고 - 신상정보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등록정보 열람 편의성 제공 - 신상정보 등록면제 제도의 안정적 시행		
주요 내용	- 신상정보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등 업무협업 강화 - 법무부(전자감독과),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경찰청(여성청소년범죄 수사과)과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 고위험자에 대한 신상 등록정보 일제점검 강화 - 신상정보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등록정보 열람 편의성 제공 - 신상정보 등록면제 제도의 안정적 시행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신상정보 등록면제 신청시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절차 생략
- 고위험자(공개·고지)에 대한 등록정보 일제점검을 통한 주기적인 정보 현행화
- 고위험자(공개·고지)에 대한 등록정보 일제점검
 - 2019년 4회 실시(9,362건 점검), 2020년 6회 실시(14,541건 점검), 2021년 7회 실시(12,017건 점검)
-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신상정보 유관기관 협의회 실시(매년 정기 3회, 수시 2회)
- 신상정보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신상등록 오등록 전무(全無)
- 신상정보 등록면제 심사 및 결과 통보 1,131건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과제명의 ‘인권침해 소지개선’이 신상정보주체의 인권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과제목표와 이행내용이 과제명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과제목표와 이행의 주된 내용은 신상정보 등록에 있어 정확한 정보가 등록되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는 신상정보주체의 사생활의 자유이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성범죄의 위험성으로부터 일반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과제목표와 이행내용 중 신상정보주체의 인권에 관한 것은 신상정보 등록면제 신청시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생략한 것뿐임
- 과제가 일반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과제목표와 이행내용은 그에 부합하며, 대상자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등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예방과 수사 효율성 제고라는 당초의 목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오등록의 문제는 제도의 운영을 경찰,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데도 일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운영 주체를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신상정보등록은 등록기간이 장기간이어서 그로 인해 대상자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상당하므로, 등록기간이나 등록면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기간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대상자의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등록기간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을 위시한 대상자의 개별 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 향후 과제

- 신상정보등록기간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
-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운영 주체 일원화 또는 유기적 협력 체계 방안 마련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Ⅲ	4. 사생활의 자유	⑤ 영상정보 오남용에 의한 사생활 침해방지 법제 정비
추진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과제목표	• 영상정보 오남용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방지		
주요 내용	• SNS, 인터넷 등을 통한 사진·동영상 유포 등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이 증가됨에 따라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예방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영상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개정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

□ 정책·관행의 변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20년 8월 5일 ~ 12월 23일)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 실시('21년 1월 6일 ~ 2월 16일)
 -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새로운 영상기기 출현을 대비한 위임규정 신설 등
- 관계부처 협의, 국조실 규제심사, 법제처 법제심사 등 정부입법절차 진행('21년 3월 ~ 9월)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21년 9월 28일), 법안소위 회부('21년 11월 16일)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 제16930호, 2020. 2. 4.)에 따라 '20년 8월 5일자로 행안부 및 방통위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관련 업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영상정보는 오남용의 경우 다른 유형의 정보에 비해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가 심각하고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다 강화된 보호조치가 수반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은 오히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완화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안은 업무를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한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영상정보 오남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의 의미가 모호하고 추상적이므로, 포괄적 위임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
-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촬영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지 않고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이나 관련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에 허점이 생길 우려가 있음. 특히 그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수사의 기밀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 수집은 감청에 준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 의한 촬영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수준의 통제가 필요함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한 촬영도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 수집은 감청에 준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 의한 촬영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수준의 통제가 필요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CCTV로 촬영된 영상을 수집, 저장, 이용하는 이상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함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CCTV로 촬영된 영상정보가 범죄 수사 등을 위해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통신비밀보호법 수준의 통제 장치 마련이 필요함¹⁶⁾
-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하여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한 직장 내 노동 감시를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법률적 규율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등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촬영 허용 범위의 명확화
 - 수사기관에 의한 영상정보 수집에 대한 통제 장치 마련
 - 정보주체에 대한 사후 통지 강화
 -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한 직장 내 노동 감시에 대한 법적 통제 장치 마련

1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8. 5. 3).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선 권고.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boardtypeid=24&boardid=7602987>. (최종검색일 2022. 8. 29)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Ⅲ	4. 사생활의 자유	⑥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기 대응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
추진부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제목표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 등 발달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점검		
주요 내용	-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기 개발시 주의사항 안내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 및 침해우려 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등 안내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19.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IoT 기반 서비스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이슈 검토 및 국내외 사례 수집 - 국내외 침해 사례 수집·검토, 산업계 전문가 의견 청취하여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방향 마련 - 자동 수집에 따른 사전 동의 한계, 개인정보 처리량의 증대, 데이터 결합 및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1차 사용 가능성 증대, 서비스 간 협업 증가로 인한 관리 주체 모호 등 - IoT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배포('20년 2월 19일)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사업명과 과제목표는 'IoT, 웨어러블 기기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이나, 서비스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은 법제에 해당하지 않음. IoT, 웨어러블 기기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독체계의 수립에 초점을 맞추어 이행되어야 하는 과제임. 이행내용이 사업명 및 과제목표에 부합하지 않음

-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 준수만을 기대할 수 없음. IoT, 웨어러블 기기 등에 의해 수집된 정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유출될 경우 그 피해의 정도나 지속성은 심각한데 반해,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보주체가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 IoT 등의 사용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국제규범이 요구하는 수준에 따른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IoT 등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의사결정을 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감독체계는 더욱 더 철저할 것이 요구됨. 현재 사물인터넷과 관련하여서는 개별 법률에서 산발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각 법률의 내용을 분석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향후 과제

- IoT, 웨어러블 기기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국제규범 수준에 맞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독체계의 수립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II	4. 사생활의 자유	⑦ 생체정보의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추진부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과제목표	• 생체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과 관련한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 • ICT 기술 발전과 함께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바이오정보)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바이오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통해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주요 내용	• 생체정보를 신원확인, 본인인증 등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원칙 및 보호조치 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등 마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기기제조업자, 앱개발자 등의 사업자가 이용자의 바이오정보 처리 시 필요한 보호조치 및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18.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생체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 － 비례성 원칙(침해 최소화 정보 수집)
 - － 수집·이용 제한 원칙(동의 후 수집, 원본정보 삭제)
 - － 목적 제한 원칙(다른 목적으로 이용 금지)
 - － 통제권 보장 원칙(정보 주체의 통제가 가능한 방법 제공)
 - － 투명성 원칙(처리 내용 공개)
 - － 바이오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및 운영 원칙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종합점검(평가)

-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의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규범적·기술적 보호 수칙을 제시한 것은 인권보호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생체정보는 유일성, 불변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 유출되면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 대책으로서 충분하지 않음. 즉, 설정된 목표와 이행내용이 과제명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수칙 준수에 대한 사업자의 동기가 약할 경우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법률로써 마련하되 생체정보의 특징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보호 기준을 강화해야 함. 특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생체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고 있으면서도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일정한 생체정보는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나아가 최근 국제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원격 생체인식 기술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생체인식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향후 과제

- 생체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 마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에 공공기관 보유의 생체정보를 포함
- 공공장소 원격 생체인식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II	5. 거주·이전의 자유	①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추진부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모빌리티정책과 택시정책팀
과제목표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도모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운영 중인 공공형 택시의 전국적 확대 - 대중교통 사각·취약지대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		
주요 내용	-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 이동편의 실태 조사, BF 인증 시범사업 추진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에 재정 지원 '18년부터 균특별회계 '시·도 자율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시·군당 5천만 원/년 지원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공공형택시 사업 운영효과 제고를 위한 정산시스템 도입 - BF 인증사업 추진 -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사업 추진(휠체어 탑승가능 고속버스 노선 운영) - 공공형택시 철도연계 서비스 개시 - 공공형택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자체 배포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저상버스 도입지원 : 1,516대 -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 210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기법 적용한 이동편의시설 개선 : 경기 오산, 전남 구례 -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및 교통소외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지원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제3차('17년 ~ '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년 2월)에 따라 '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 도입을 목표로 정책추진 중임

- '04년부터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저상버스와 일반버스간 차액)을 지속 지원 중이나, 보급률('20년 27.8%)이 여전히 저조한 실정
- 특히, 일부 버스업체는 대·폐차시 기존 저상버스를 일반버스로 전환하고 있어 보급률 담보 상태이며, 지역별 보급률 편차(서울시 57.8%, 충청남도 10%)도 있는 실정
- 공공형 택시
 - 대중교통체계가 잘 정비된 수도권 시지역 등은 공공형 택시 도입 필요성이 적고,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부분이 공공형 택시를 도입하고 있어, 도입지역의 추가적인 확대는 어려울 전망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저상버스 도입으로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고함. 그러나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이 목표한 2021년까지의 저상버스 보급대수(보급률)는 2016년 말과 거의 차이가 없는 15,178대(42.1%)로 계획되었으나 2021년 9월 기준, 실제 보급대수는 10,382대로 30.4%로 머물렀음(국가인권위원회, 2022a)
- 도입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함에도 저상버스 도입으로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어린이차(유모차) 이용자 및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고함. 또한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제고함
-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되는 노선버스의 종류에는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광역급행버스와 시외(고속)버스 등이 제외되어 있음으로 해서 구간별 공백이 많고 지역은 물론 전국을 자유롭게 이동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22a)
- 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한 지원과 보장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가는 목적지에 따라 어떤 수단으로 이동할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함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증진은 특별교통수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동방식, 모든 지역, 모든 교통수단, 보행로 정비 등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설계와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특별교통수단 중 일부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짐

□ 향후 과제

- 저상버스 도입보조
 -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 예산 확대('22년 예산 전년대비 약 50%증가) 및 저상버스 대폐차 의무화('23년 1월 시행예정)를 통해 저상버스 보급률 제고
- 이동편의 실태조사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25조)에 따른 법정조사로 매년 실태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
-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23년 7월 시행) 등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 향상 추진
- BF 인증 사업
 - 전국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을 대상으로 매년 공모·선정하여 인증사업 추진
 - * 인증사업 완료지에 대한 효과평가를 통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
- 공공형 택시
 - 대중교통 사각·취약지대 주민들이 조속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년도 사업비 조기교부 완료
 - 공공형 택시 수혜범위 확대 등을 위해 '22년 사업 집행률을 제고하여 '23년도 예산 증액 추진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II	6. 인격권	①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제도의 인권침해 소지 개선
추진부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과제목표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제도 운영을 통해 재범은 억제하되 인권침해 최소화		
주요 내용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성능개선을 통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생활 편의성 증진 - 전자감독대상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및 스트레스 경감 -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감독대상자의 근본적인 재범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사회적응력 향상 및 부작기간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경감 - 부작명령 임시해제 제도 활성화 -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임시해제 심사·결정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부작명령 임시해제 실시 -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정보 등 수신자료의 열람 및 조회를 수사나 재판자료 등의 목적으로 엄격하게 제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체계적 관리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전자감독대상자 대상 일체형·개량형 전자장치 보급 - 일체형 : ('18년) 1,800세트, ('19년) 1,420세트, ('20년) 330세트 - 개량형 : ('20년) 1,293세트, ('21년) 2,229세트 - 전자감독대상자 사회적응력 향상 및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심리치료 확대 실시 ('18년) 10,620회, ('19년) 14,427회, ('20년) 9,740회, ('21년) 14,381회 실시 - 재범위험성 분석을 통한 부작명령 임시해제 실시 ('18년) 157명, ('19년) 142명, ('20년) 123명, ('21년) 530명 실시 - 법령에 근거한 수신자료 제공 ('18년) 39건, ('19년) 46건, ('20년) 22건, ('21년) 140건 '수신자료 폐기 대상 확인의 날'(월 1회) 운영 등 체계적 관리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과제의 이행내용은 재범 억제라는 당초의 목적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의 착용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한 것으로, 대상자의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는 대상자의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부착기간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감하게 하는 조치로서 향후에도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전자장치의 부착은 필연적으로 사생활의 자유를 제약하며, 이중처벌의 논란, 사회적 낙인 효과,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함. 반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는 등 전자장치의 재범 억제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전담 인력의 부족으로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상황임. 전자장치에 의한 인권침해적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재범 억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 향후 과제

- 전자장치의 지속적인 성능 개선 및 임시해제제도의 활성화
- 심리치료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IV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1.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2. 참정권

□ 이행상황 총괄

< 총괄표 >

구 분	계	과제완료	정상추진	추진지연	기타
합 계	8	-	8	-	-
1. 권익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3	-	3	-	-
2. 참정권	5	-	5	-	-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진과제	추진상황
【권익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61	IV-1-①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정상추진
62	IV-1-②	군장병 인권보호 및 교육 강화	정상추진
63	IV-1-③	집단민원의 효과적 조정 및 민원처리 역량 강화	정상추진
【참정권】			
64	IV-2-①	직무 외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원칙적 보장	정상추진
65	IV-2-②	공직 내 여성대표성 제고의 체계적 보장	정상추진
66	IV-2-③	장애인의 공직진출 기회 보장과 지원	정상추진
67	IV-2-④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 보장과 지원	정상추진
68	IV-2-⑤	지역인재의 공직진출 기회 보장과 지원	정상추진

□ 과제별 이행평가

61	IV-1-①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V	1. 권익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①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추진부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
과제목표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강화 추진		
주요 내용	-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침해 예방 -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및 구제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 실태 점검 (‘18년) 영월교도소 등 36개 기관 실태조사 실시, 개선요구 60건, 설문조사 3,013건, 면담 457건 (‘19년) 진주교도소 등 31개 기관 실태조사 실시, 개선요구 97건, 설문조사 3,801건, 면담 261건 (‘20년) 부산구치소 등 47개소 실태조사 실시, 개선요구 150건, 설문조사 5,642건, 면담 251건 (‘21년) 광주교도소 등 12개소 실태조사 실시, 개선요구 47건, 설문조사 782명, 개별 면담 164명 - 주제별·집중 실태조사 도입 - 서울소년원 등 5개 소년보호기관 실태조사(개선조치 18건, 설문조사 525명, 직접면담 158명) - 인권침해 신고사건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위한 직접 조사 강화 (‘18년) 1,778건 → (‘19년) 2,138건 → (‘20년) 2,532건 → (‘21년) 2,622건 -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18년) 162회 6,161명 / (‘19년) 157회 7,211명 / (‘20년) 34회 1,846명 / (‘21년) 46회 1,160명 - 화상조사시스템 확대 구축 완료 (‘18년) 40개소 → (‘19년) 47개소 → (‘20년) 55개소 → (‘21년) 57개소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과제의 이행내용은 수용자의 인권존중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음. 특히 전국 교정시설 수용처우와 관련해 수용자를 전수 조사하여 개선안을 마련한 부분은 높이 평가됨
- 그러나 수용자의 의료처우 및 건강권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이 매년 수백 건에 이르는 반면, 전국 구금 시설 의사 인력은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치료감호법에 의한 국립법무병원도 의사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임. 그로 인해 응급환자의 관리나, 진료와 처방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감염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수용자는 의료 분야에 있어 일반적인 환자들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의료적 현실은 그와 같은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의하면 피구금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임(국가인권위원회, 2022a : 86-87). 수용자의 의료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향후 과제

- 급여 상향 등 의사 인력 유치를 위한 노동조건 개선 방안 마련
- 응급환자 관리를 위한 당직 의사제도 도입 또는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강화
- 원격 화상진료 활성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V	1. 권익 패해 구제를 위한 권리	② 군장병 인권보호 및 교육 강화
추진부처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정책기획관	병영문화혁신팀 인권담당관실 양성평등정책과 정신전력문화정책과
과제목표	- 장병의 고충 및 복무 부적응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적극적 관리 및 지휘 조언으로 복무 적응 여건 보장 - 병영 내 취약계층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불필요 침해를 방지하여, 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인지 교육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강군 육성에 기여 ‘책 읽는 병영’ 조성을 통한 신세대 장병 인성 함양		
주요 내용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증원 : 383명('17년) → 660명('21년) - 취약계층 사적 생활영역 및 복무여건 개선 - 장병 인권침해 상담/신고시스템 및 인권자문제도 운영 -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한 군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 맞춤형 성인지 교육 내실화, 현장중심의 성폭력 예방활동,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등 - 장병의 체계적인 독서지도를 위한 독서코칭 프로그램 사업 확대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장병 사적지시 및 운용 근절을 위한 규정 반영('18년 12월)
- 병 구직휴가 신설(2일) 및 가족 장례목적 휴가 기간 확대(자녀·조부모 사망시 2일 → 3일)
- 청원휴가(본인진료목적) 허용일수 제한적 확대와 구체화
 - * 허용일수 구체화(30일 → 연간 30일), 제한적 확대(군병원 요양심사를 통해 30일 이상 휴가사용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 하사 이상의 군인의 휴가일수가 1개월 이상인 경우 토·공휴일 휴가일수 산입을 구체화
- 난임시술 청원휴가 일수 확대 * 인공수정(1일 → 2일), 체외수정(2일 → 4일)
- 유·사산의 경우와 같이 조산의 위험시 출산휴가 미리 사용 허용
- 휴가 중 연장절차와 대리신청의 기준 마련 * 부득이한 상황으로 휴가 연장신청이 제한되는 것을 개선

- 임신·출산·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 임신 초기(15주 이내) 유·사산휴가 일수 확대(5일→10일) 및 배우자 유·사산 휴가(3일) 신설, 임신 검진휴가 개선(임신기간 중 매월 1일→10일) 등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개정('19년 12월)
- 군기훈련(구, 열차려)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20년 5월 26일)

□ 정책·관행의 변화

- 장병 외출, 외박 구역 제한 폐지('19년 2월 1일 부), 평일 일과 후 외출 시행('19년 2월 1일 부)
- 병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개시, 점진적 확대('18년 4월 부)
- 병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20년 7월 1일)
- 폐지된 군 영창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군기교육제도 신설('20년 8월 5일)
- 변화된 병영환경을 반영한 '대대급 이하 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 최신화 재발간('20년 12월)
- 「수사기관 등에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지침 우선 시행('21년 9월 1일)
- 「국방부-법무부 업무협약」('21년 10월 14일)으로 군 성폭력 피해자도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등 피해자 지원 채널 다양화
- '18년 ~ '22년 군인복무기본정책서 제정('17년 12월 27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하여 정책 추진
- 취약계층의 불필요한 침해 방지를 위한 현장활동 : 병영문화혁신 지도방문('21년 4~5월, 10~11월)
-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우수부대 선발 정례화(반기 단위)
 - * 포상금(2,800만원), 부대 / 개인표창 등을 통해 병영문화개선에 대한 일선 부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장병 인권침해 상담 / 신고시스템 및 인권자문제도 운영 등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군어린이집(2개소), 공동육아나눔터(7개소) 확충으로 양육여건 개선
- 20인 이상 시설 군 어린이집에 야간보육교사 인건비 지원('19년 ~)
- 관련부처·통신사와의 협업을 통한 요금제 할인으로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장병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20년 10월)
-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 병사 대상 독서코칭 프로그램 수혜부대 확대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연도별현황	50개	50개	50개	150개	200개	250개	260개	300개	350개	400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부처 자체 점검결과)

- 다각적인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제도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지속(이중 군 조직의 특성상 '우월적 지위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 다수 차지')
- '수사기관 등에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우선 시행에도 불구하고 신분 노출 및 2차피해 등을 우려하여 상담 및 신고를 주저하거나 기피하는 경향 잔존
- 군내 증가하는 남성 인력 간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고려, 원활한 상담 지원 및 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성고충전문상담관 등) 부족
 - * 군단급까지 배치된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사·여단급 부대까지 확대 배치 필요

- 독서코칭 프로그램은 '12년부터 문체부(사업예산 전액 지원)와 협업하여 운영 중이나, '18년 이후 문체부 예산 삭감 추세에 따라 '20년에 국방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신규편성함
- 독서코칭은 장병 독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 확대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군장병 인권보호 및 교육 강화는 규모의 측면에서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장병의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과 여성 군인의 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또한 주요 추진 성과라 볼 수 있음
- 그러나 군장병 인권보호 제도가 사후 구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사건처리시스템 또한 지역별·군별 편차가 발생. 그중에서도 성 관련 문제의 경우 시스템이 존재함에도 계속해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기존의 구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바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22b), (국가인권위원회, 2018)
- 또한 군대 내에 존재하는 여성, 성소수자, 경제적 곤궁, 채식인, 소수 종교 신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의 내용이 부재하거나 미흡하고, 장병 사생활의 보장과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과제

-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이행
- 국제인권규범 및 권고에 따른 법률개정 및 정책 개선 (군형법 제92조의 6폐지)
-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 공개 군복무 보장제도 보완
- 군대 여성, 성소수자, 경제적 곤궁, 채식인, 소수종교신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인권 보장방안 마련
- 장병의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침해할 요소(병영, 샤워시설, 개인별 사물함 등)에 대한 인권보장 방안 마련 (장병의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미래형 생활관을 고려할 때, 2인실이나 1인실과 공용생활시설(거실, 부엌 등)을 기반으로 한, 사생활의 비밀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함
- 장병의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신고 구제 절차(신고-조사-결과) 중 신고자 보호(선분리조치, 유급 휴가 조치, 조력자 지원 등)를 위한 제도 개선
- 장병 및 장병가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장병복무 및 생활 관련 규정(각 군단 및 사단급 예규 등)의 공개 및 접근용이성 확보
- 군대 내 전 장병에 대한 맞춤형 인권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교육의 확대 및 교육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1회성 교육 탈피, 병사 및 단기복무, 장기복무 간부 등 대상자를 세분화 한 소규모 인권교육 추진 등)
- 병사 및 간부 등 전 장병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해외의 군인권보장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도입하여 장병의 인권은 다양하게 보장하고 군대의 기강은 확립할 수 있도록 조치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V	1.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③ 집단민원의 효과적 조정 및 민원처리 역량 강화
추진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민원조사기획과
과제목표	장기간 미해결상태의 집단민원을 적극 조정하고, 워크숍, 교육 등을 통한 각급기관의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민고충의 근원적으로 해소 추진		
주요 내용	-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 해결 추진 - 각급기관의 고충민원처리 역량 강화 지원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 고충민원을 조정 해결함으로써 주민숙원 해소
- 지속적인 교육 및 평가를 통한 고충민원 처리역량과 민원처리 마인드 제고로 지자체의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주민 만족도 제고
- * 고충민원처리 만족도 : ('18년)51.1점 → ('19년)52.3점 → ('20년)57.8점 → ('21년)60.2점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❸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 및 민원처리 역량 강화'가 '권익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라는 추진과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인권침해 혹은 차별문제에 대한 권리구제기관(차별시정기구)은 국가인권위원회이므로 인권침해 또는 차별문제에 대한 집단민원 해결 및 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및 역량강화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과제의 목표와 주요내용, 주요성과를 볼 때 집단민원의 조정과 처리능력 향상을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다소 모호

□ 향후 과제

-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 및 민원처리 역량 강화'가 '권익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라는 추진과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해당과제 유지 시, 집단민원의 효과적 조정 및 민원처리가 인권에 기반하여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마련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V	2. 참정권	① 직무 외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원칙적 보장
추진부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과제목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허용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합리적 대안 마련		
주요 내용	-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직무 외 영역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 마련 등 추진 -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범위 조정 등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정치단체’ 범위 구체화 관련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 현재 위헌결정에 따라, ‘정치 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 확보,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지방공무원법, 균형법 등 4개 법률 일괄 개정 추진 → 개정안 국회 제출(’20년 12월 28일)

□ 정책·관행의 변화

- 인권위 권고(’19년 4월 25일,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권고) 관련 이행계획 제출(’19년 7월 25일)
 -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행계획 제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세부심사 지연(법안심사 소위 미상정)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직무 외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하려는 노력은 시민(공무원 포함)의 인권보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직무 외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상 규정도 함께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노력은 부족
- 국제사회를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2019a), 학계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촉구. 학계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해 “현행 공무원의 직무와 징계, 책임 관계 법령에서는 공무원과 교원 등이 어떤 표현행위를 함에 있어 그것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시민의 지위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한 것인지 서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단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정치적 표현행위와 정당가입 및 선거 운동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라며 문제를 제기(성중탁, 2020)
- 입법적 변화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행정부의 가이드라인,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직무 외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는 것이 필요

□ 향후 과제

-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
- ‘정치단체’ 범위 구체화 관련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 및 대응
- 입법활동 외, 공무와 무관한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의 적극적 정책 수립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과제 IV	2.참정권	② 공직 내 여성대표성 제고의 체계적 보장
추진부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
과제목표	• 전체 여성공무원에 비해 과소 대표된 여성관리직 비율 개선을 통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주요 내용	• ‘공직내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18~2022)’ 수립·추진 – 정책결정자 지위에 있는 여성의 비율 확대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국가직 공무원 임용 및 보직관리 시 성별 등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 등 명문화
 - 공무원임용령 개정('18년 7월)
 - 국가공무원법 개정('20년 1월)

□ 정책·관행의 변화

- 공직 내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의 지속적 추진, 여성관리자 확대 및 주요보직 임명 등을 통한 공직 내 여성대표성 제고
- 정부 최초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18년 ~ '22년)’ 수립('18년 6월) 및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발표('19년 9월)에 따른 공직 내 양성평등 제고 등 공공부문 균형인사 확산 추진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2년 연속('19년 ~ '20년) 고위공무원 및 3년 연속('18년 ~ '20년) 본부과장급 여성비율 목표 초과달성
 - '18년 여성 고위공무원 6.7%, 본부과장급 17.5%로 각 목표(6.8%, 15.7%) 대비 98.5%, 111.4% 달성
 - '19년 여성 고위공무원 7.9%, 본부과장급 20.8%로 각 목표(7.2%, 18.4%) 대비 109.7%, 113.0% 달성
 - '20년 여성 고위공무원 8.5%, 본부과장급 22.8%로 각 목표(8.2%, 21.0%) 대비 103.7%, 108.6% 달성
 - * 여성 고공단 임용 확대를 위해 워크숍, 간담회, 분기별 현황 점검 및 임용확대 관련 부처 협조 등 지속적인 노력
 - '21년 여성 고위공무원 10.0%, 본부과장급 24.4%로 각 목표(9.6%, 23.0%) 대비 104.2%, 106.1% 달성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정부 최초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및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 계획’ 발표 등 인사 전반에서 성차별 해소를 위한 체계 개편 추진하였음
- 해당 정책 추진으로 공직 내 여성관리자 확대에 성공적 추진. 여성고위공무원 미임용기관 인사담당관 회의 개최 등 적극적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임
- 공직 내 여성대표성에 대한 수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성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대상 발굴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향후 과제

- 균형인사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발 필요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V	2. 참정권	③ 장애인의 공직진출 기회 보장과 지원
추진부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
과제목표	• 상대적으로 취업여건이 어려운 장애인의 공직 진출 지원 • 장애인 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여건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주요 내용	• 장애인 공직진출 기회 확대 - 인사처 주관 7·9급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 장애인 공직진출 기회 확대 (법정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 선발) - 인사처 주관 중증장애인 일괄 경력채용시험*을 통해 중증장애인 선발 확대 * 응시자격을 중증장애인에 한정,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선발 •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공무원 대상, 공학기술을 응용한 보조공학기기 제공 - (근로지원인) 중증장애인 공무원 대상,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근로지원서비스 제공 • 포용적 공직문화 조성 - 장애인공무원 의견 청취를 위한 정례적 중증장애인 소통간담회 개최 -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실태 및 근무환경 개선 사항 점검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장애인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한 「균형인사지침」 개정('18년 12월)
- (복무지침개정) 재활치료 위한 병가 사용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규정('20년 1월)
- (여비지침개정) 대중교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공무원 출장 시, 자차운행 전구간에 운임 지급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20년 1월)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응시 요건 완화*를 위한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 개정('20년 2월)
- 장애인 공무원 희망보직 조사 및 반영 제도 강화*를 위한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 개정('21년 3월)

□ 정책·관행의 변화

- 장애인 공직진출 기회 확대
-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 포용적 공직문화 조성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인원 규모
 - 2018년 지원 실적 : 54명(장애인 보조공학기기 24명 + 근로지원인 30명)
 - 2019년 지원 실적 : 117명(장애인 보조공학기기 77명 + 근로지원인 40명)
 - 2020년 지원 실적 : 180명(장애인 보조공학기기 131명 + 근로지원인 49명)
 - 2021년 지원 실적 : 143명(장애인 보조공학기기 82명 + 근로지원인 61명)
- 장애인 공직진출 기회 확대 인원 규모
 -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한 선발 : ('18년) 7급 40명, 9급 222명 / ('19년) 7급 41명, 9급 263명 / ('20년) 7급 48명, 9급 207명 / ('21년) 7급 46명, 9급 239명
 -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으로 중증장애인 '18년과 '19년 각각 25명, '20년 39명, '21년 33명 선발 완료
 -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 * 제공 실적 : ('18년)936명 / ('19년)931명 / ('20년)943명 / ('21년)1,050명
 - * 예 :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답안지/점자 문제지·답안지/음성지원 컴퓨터 등 제공, 대필 등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장애인의 공직 임용 확대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제공함
-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보조가 될 수 있는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따른 지원(예.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과 각종 인사 및 업무지침(균형인사지침, 복무지침, 여비지침 등)의 개정을 통해 장애가 있는 공무원이 장애가 없는 공무원과 동등한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다양한 소통프로그램을 통해 장애가 있는 공무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식개선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고 포용적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함
- 장애인이 처한 현실은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알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공직임용확대는 한 개인의 임용 이상의 의미를 가짐

□ 향후 과제

- 의무고용률 미이행 기관에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 인원의 우선 배치 등 전 부처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신속한 달성 지원
-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한 공직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
-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채용, 보직관리, 근무환경 등)를 담은 『균형인사지침』 이행력의 제고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V	2. 참정권	④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 보장과 지원
추진부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
과제목표	• 교육환경 및 수험준비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저소득층 채용확대로 공직 대표성 강화,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추진		
주요 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채용 지속 추진 -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2%를 저소득층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채용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공채인원대비 2.7%) 선발 완료
 - (2018년도) 선발예정인원 134명, 선발인원 137명 선발 완료
 - (2019년도) 선발예정인원 136명, 선발인원 133명 선발 완료
 - (2020년도) 선발예정인원 138명, 선발인원 119명 선발 완료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공채인원대비 2.8%) 선발 완료
 - (2021년도) 선발예정인원 159명, 선발인원 150명 선발 완료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채용 지속 추진으로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가치 반영 노력
 - 2018년 137명, 2019년 133명, 2020년 119명, 2021년 150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 보장과 지원은 적극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향후 과제

-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역차별 주장에 대한 법률적·정책적 근거 마련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V	2. 참정권	⑤ 지역인재의 공직진출 기회 보장과 지원
추진부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
과제목표	지역인재를 균형 있게 등용하여 공직 내 대표성을 강화하고 중앙·지방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학교의 활성화 도모		
주요 내용	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및 7급 공채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실시 - 지역인재 7·9급 선발 확대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실시로 지방인재 추가 합격
 - (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12명('18년), 4명('19년), 10명('20년), 4명('21년) 추가 합격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시행 연장('22 ~ '26년) 완료('21년)
 - (7급 공채) 20명('18년), 12명('19년), 49명('20년), 15명('21년) 추가 합격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시행 연장('20 ~ '24년) 완료('19년)
-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우수 인재 공직 등용 기회 확대
 - (지역인재 7급) 130명('18년), 140명('19년), 145명('20년), 160명('21년) 선발 완료
 - (지역인재 9급) 180명('18년), 210명('19년), 244명('20년), 316명('21년) 선발 완료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부처 자체 점검결과)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한시적 제도로 5급 공채시험의 경우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1차 : '07 ~ '11년, 2차 : '12 ~ '16년, 3차 : '17 ~ '21년)되었으며, 4차 연장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됨. 7급 공채시험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차로 시행하였다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차로 적용기간을 연장함

❸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한시적이지만 지방인재채용목표제로 지방인재들의 공직진출의 기회가 확립됨. 그러나 이는 한시적 제도에 의한 일시적 효과일 뿐 근본적 대책이 아니므로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 및 지속적인 지방인재 공직진출을 위한 정책수립 필요

□ 향후 과제

- 지방인재(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및 7급 공채) 채용 목표제 운영 및 지역인재(7·9급) 선발 지속적 추진

V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1. 노동권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4. 교육을 받을 권리 5.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6.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 이행상황 총괄

< 총괄표 >

구 분	계	과제완료	정상추진	추진지연	기타
합 계	93	9	84	-	-
1. 노동권	19	-	19	-	-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19	2	17	-	-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22	1	21	-	-
4. 교육을 받을 권리	12	5	7	-	-
5.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13	-	13	-	-
6.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8	1	7	-	--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진과제	추진상황
【노동권】			
69	V-1-①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정상추진
70	V-1-②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 개선	정상추진
71	V-1-③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정상추진
72	V-1-④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	정상추진
73	V-1-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상추진
74	V-1-⑥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지도·감독 및 개선	정상추진
75	V-1-⑦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 해소	정상추진
76	V-1-⑧	사내하도급 노동자·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정상추진
77	V-1-⑨	산업안전보건 제도개선	정상추진
78	V-1-⑩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강화	정상추진
79	V-1-⑪	평생직업능력개발 강화 및 훈련 사각지대 해소	정상추진
80	V-1-⑫	신중년근로자 등 장기근속 및 전직 지원	정상추진
81	V-1-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지원 강화	정상추진
82	V-1-⑭	노사정 간 대화를 통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	정상추진
83	V-1-⑮	근로자 이해대변기구 제도개선 및 미조직 노동자 의견참여 통로 확대	정상추진
84	V-1-⑯	임금체불근절 및 체불노동자 보호	정상추진
85	V-1-⑰	공정임금체계 확립	정상추진
86	V-1-⑱	장시간 근로 개선	정상추진
87	V-1-⑲	일·생활 균형 근로문화 확산	정상추진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진과제	추진상황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88	V-2-①	공공부조 혁신	과제완료('21.)
89	V-2-②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정상추진
90	V-2-③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정상추진
91	V-2-④	고용산재보험 보호 수준 강화*	과제완료('21.)
92	V-2-⑤	수돗물 수질기준 관리 및 개선	정상추진
93	V-2-⑥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강화	정상추진
94	V-2-⑦	안전한 물환경을 위한 물관리 일원화	정상추진
95	V-2-⑧	물환경 위해관리체계 강화	정상추진
96	V-2-⑨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정상추진
97	V-2-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정상추진
98	V-2-⑪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정상추진
99	V-2-⑫	급식관리 공공성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정상추진
100	V-2-⑬	주거권에 대한 인식 및 국가 역할 정립을 위한 노력 지속	정상추진
101	V-2-⑭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	정상추진
102	V-2-⑮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	정상추진
103	V-2-⑯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정상추진
104	V-2-⑰	저소득층 주거 안정지원 확대	정상추진
105	V-2-⑱	안전과 편리성을 갖춘 노인주거 여건 마련	정상추진
106	V-2-㉑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정상추진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107	V-3-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정상추진
108	V-3-②	비급여 진료관리체계 개선	정상추진
109	V-3-③	지역균형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정상추진
110	V-3-④	치매에 대한 대응과 국가 지원 강화	정상추진
111	V-3-⑤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지표 개발·보급	정상추진
112	V-3-⑥	희귀 질환 치료제 등 필수약품 특례 공급 지속 지원	정상추진
113	V-3-⑦	군 장병 의료접근권 향상	정상추진
114	V-3-⑧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	정상추진
115	V-3-⑨	학교 성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	정상추진
116	V-3-⑩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	정상추진
117	V-3-⑪	마약류 유통관리 및 오남용 예방 강화	정상추진
118	V-3-⑫	환경보건 기반 구축 지원	정상추진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진과제	추진상황
119	V-3-⑬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정상추진
120	V-3-⑭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개선	정상추진
121	V-3-⑮	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안전강화	정상추진
122	V-3-⑯	기후변화 적응법제 및 대응역량 강화	정상추진
123	V-3-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정상추진
124	V-3-⑱	생활소음 대책 마련	정상추진
125	V-3-⑲	국토 및 환경보전계획의 지속가능 발전기반 확보	정상추진
126	V-3-⑳	진료비 정보공개 확대	과제완료("18.)
127	V-3-㉑	필수·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정상추진
128	V-3-㉒	의료서비스 이용 차별개선	정상추진
【교육을 받을 권리】			
129	V-4-①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	정상추진
130	V-4-②	성취평가제 실현	정상추진
131	V-4-③	저소득층 가정 자녀 교육 지원	정상추진
132	V-4-④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	정상추진
133	V-4-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 보호 강화	정상추진
134	V-4-⑥	고교 교육제도 개선	정상추진
135	V-4-⑦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정상추진
136	V-4-⑧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과제완료("20.)
137	V-4-⑨	석·박사 학생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완료("18.)
138	V-4-⑩	출연연 석·박사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	과제완료("18.)
139	V-4-⑪	청년과학기술인의 연구실 안전을 위한 보장 강화	과제완료("18.)
140	V-4-⑫	청년과학기술인의 발명자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과제완료("18.)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141	V-5-①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상추진
142	V-5-②	청소년 주도 문화활동 확대	정상추진
143	V-5-③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정상추진
144	V-5-④	노인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정상추진
145	V-5-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정상추진
146	V-5-⑥	지역문화기반 구축	정상추진
147	V-5-⑦	지역문화 균형발전 지원	정상추진
148	V-5-⑧	문화다양성 존중 정책 실시	정상추진
149	V-5-⑨	예술인 창작기반 강화	정상추진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진과제	추진상황
150	V-5-⑩	콘텐츠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 및 실효성 제고	정상추진
151	V-5-⑪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	정상추진
152	V-5-⑫	불법복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강화	정상추진
153	V-5-⑬	국민 스포츠 향유환경 개선	정상추진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154	V-6-①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정상추진
155	V-6-②	결혼·출산 친화적 세제 개선	정상추진
156	V-6-③	보육취약지역 대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상추진
157	V-6-④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정상추진
158	V-6-⑤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정상추진
159	V-6-⑥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생활안정 지원	정상추진
160	V-6-⑦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정상추진
161	V-6-⑧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과제완료(18.)

□ 과제별 이행평가

69	V-1-①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1. 노동권	①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청년취업지원과 공정채용기반과 시민취업지원기획팀
과제목표	• 청년 등 취업 촉진		
주요 내용	• 시민취업지원제도 도입·운영 – 청년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21년 1월 1일 ~)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저소득층에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 지원(월50만 원×6개월)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을 통한 청년 고용 촉진('21년 5월 신규신청 종료)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한 청년의 장기근속 확대 •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편견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확대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채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19년 7월 17일)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0년 6월 9일 제정, '21년 1월 1일 시행)

□ 정책·관행의 변화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마련('17년 7월 13일)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시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 18.5만 명의 청년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였으며,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21년, 노동연구원)

- '20년 최초로 장려금 활용한 기업의 평균 피보험자수가 전년 대비 21.0% 증가하였고, 청년층은 36.1% 증가
- '18~'19년 장려금 지원기업(5.1만개소)의 피보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년 7월 ~ '20년 12월말까지 기간에도 기존 고용 규모 유지
 - * 기업당 평균 피보험자수(명): '19년 28.3~28.5명 → '20년 28.2~28.5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으로 장기근속 및 임금격차 완화 효과
 - 일반 중소기업 재직 청년보다 공제가입자의 1, 2년 이상 근속비율도 약 30%p 높아 장기근속 촉진 효과가 있다고 판단
 - * 1년 근속 : 중기 재직청년 46.6%, 공제 가입청년 78.6%(32.0%p ↑) <고보DB>
 - 2년 근속 : 중기 재직청년 33.0%, 공제 가입청년 67.3%(34.3%p ↑) <고보DB>
 - 또한,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도 88.3%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형성 지원에도 효과적이며, 연구결과에서도 청년공제 가입자는 미가입자 대비 동일기업 재직확률** 및 이직 시 노동시장 잔류확률***이 높게 나타남 ('21년, 노동연)
 - * 청년내일채움공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20년, 노동연)
 - ** (동일기업 재직확률) 청년공제 가입 1년후 9.7%p, 2년후 10.7%p 높은 수준
 - *** (노동시장 잔류확률) 청년공제 가입 1년후 0.6%p, 2년후 6.8%p 높은 수준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 및 기업의 고용유지에 기여하였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으로 장기근속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다소 완화하는 효과를 얻음
- 현재의 실업대책은 나열적이고 분산적이어서 일관성있게 추진되기가 어려우며, 다양한 청년 구직자층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한계가 있음

☐ 향후 과제

- 공정채용 기반 조성을 통해 공공기관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부문 확산 지속 노력
- 취업을 가로막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양극화 현상 해소
-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기업 모두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밀착형 프로그램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유도 필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1. 노동권	②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 개선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과제목표	• 장애인 고용 확대		
주요 내용	• 의무고용률 상향 및 공무원 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의 일자리 확대를 유도 • 장려금 단가 인상, 경증 장애인 연차별 감액제도와 6급 장애인 한시지원 제도 폐지 등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 장애인 노동문제 상담 등 전문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 고용유지 지원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신규고용 인센티브 적용, 고용장려금과 별도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제도(시행령) 등

□ 정책·관행의 변화

- 법정 의무고용률 상향
-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 일자리 확대 유도(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부문 부담금 적용)
- 장애인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훈련 인프라 확충
- 차별 및 부당해고 등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신설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장애인 고용률 증가 및 신규고용 창출 :
 - 2020년(260,826명)에서 2021년(265,577명) 한해 동안 4,751명 고용 증가
-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 6곳 신설 지원(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대구시, 대전시, 경기도)
- 발달장애인 진로교육·훈련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치 확대(누계 19개소, 17개 광역시·도)

- 고용장려금 지급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 :
 - 장애인 고용증가(지급연인원) : '20년 566,701명 → '21년 597,138명
- IT 맞춤형훈련 및 특화훈련 수료 :
 - IT 맞춤형훈련 : 빅데이터 등 4개 직무, 41명 수료
 - 특화훈련 수료 : E 커머스 창업, 소프트웨어 테스트 등 21명 수료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22년 기준으로 전체 직원 중 상시 노동자가 50인 이상인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의 3.6%, 전체 직원 중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전체 직원의 3.1%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 의무고용률 및 부담기초액 상향, 공무원 부담금 부과 예고 등을 통해 공공 및 민간부분 장애인 고용률 증가 및 신규고용을 창출하고는 있으나, 장애인들이 업무현장에서 부서원들과의 소통, 타부서원들과의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업무여건을 조성하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3조 제1-2항 및 동법 제 19조 제 1항, 동법시행령 제 20조에 의해 설치된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으로 직장내 인권침해,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및 부당해고 등에 대한 권리구제는 물론 고용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함. 더 많은 장애인 노동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훈련수요 충족을 위한 훈련인프라 확충으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및 장애인 고용을 확대함. 특히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설치 및 운영 확대는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진로교육 및 훈련강화를 통해 직업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맞춤형 진로교육 및 훈련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는 여전히 모니터링하면서 개선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향후 과제

-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강화
 -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컨설팅 대상을 법정 의무고용률 미준수기관으로 확대하고, 미이행 지방공기업까지 컨설팅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고용장려금 및 표준사업장 지원 확대
 -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유지와 신규 창출 지원을 위하여 고용장려금 예산 확대편성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확대
- 직업훈련 인프라 지속 확대를 통해 훈련수요 불균형 해소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축사업 지속 추진 : ('21년) 실시설계·착공 → (~ '24년) 건립공사 진행
 - IT특화 맞춤형훈련센터 확충 : ('21년) 2개소(전환 1, 신설1) 운영 → ('22년) 3개소(신설 1) 운영
-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인권침해·부당해고·임금체불 등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 등을 제공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과제 V	1. 노동권	③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과제목표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을 통해 여성 고용 및 경제활동 참여 제고		
주요 내용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적용 사업장 확대 및 성별 임금격차 개선계획 제출의무 신설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적용을 위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규정 삭제 등 적용방안 마련·추진 - 직장 내 성차별 예방을 위해 건강(임신·출산)·고용(사업장)보험 정보 연계를 통해 「모성보호법」 위반 의심 사업장 대상 집중 근로감독(매년 500개소) - 비정규직 여성의출산·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개선 및 기간제 여성의출산휴가급여 지급 보장 추진 -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2차 피해 최소화, 고객의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조치의무 강화 등 추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비공식 영역의 가사노동을 공식화하여 취약계층 근로자 권익 보호 및 맞벌이 여성의 가사·보육부담 완화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 구제 시스템 마련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완료('21년 5월, '22년 5월 시행) '19년 1월 1일 부터 남녀 노동자 간 임금, 승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18년 5월 고평법 시행령 개정) '20년부터 AA 전체사업장에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등 제출 의무 부과 - '19년 12월 고평법 시행규칙 개정 - 가사·돌봄 서비스 공식화 및 가사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법제화 추진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21년 5월 21일) 및 공포(6월 15일)

□ 정책·관행의 변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사-구제 시스템' 강화 - (예방)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21년 337개소) - (구제) 성희롱·성차별 익명신고 처리지침 개정* 및 시스템 개편**으로 피해자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 행정지도 및 근로감독 대상 확대 등 익명신고사건의 사무처리 기준 구체화

** 사건 조치내용(진정처리·행정지도·근로감독 등) 세분화 및 기능개선으로 사건처리의 신속·효율성 도모

-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 미부여, 육아휴직 사용 부진 등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스마트 근로감독 강화('18년 - 659개소, '19년 - 700개소, '20년 - 400개소, '21년 - 868개소)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를 통해 여성고용(관리자)률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 AA 대상 사업장 지속 확대
 - * ('18년) 2,146개소 → ('19년) 2,442개소 → ('20년) 2,486개소 → ('21년) 2,553개소
 - AA 대상 사업장의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율 지속 상승
 - * 여성고용률: ('19년) 37.38% → ('20년) 37.69% → ('21년) 37.78%
 - * 여성관리자율: ('19년) 19.76% → ('20년) 20.92% → ('21년) 21.30%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여성들의 임신, 출산, 양육권 보장을 위한 근로감독, 직장내 성희롱 예방,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없는 제도 이행을 보장하고 있음. 또한 법·제도적 개선 사항이 가장 두드러지는 사업으로 사업 이행 및 개선이 우수함
 - 성별 임금, 승진 차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직장내 성희롱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근거 명문화, 노동위원회에 성희롱 성차별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 신설, 기간제 파견 여성 노동자에 대한 출산휴가급여 지급 근거 마련, 가사 돌봄 서비스 공식화 및 가사 근로자 권익보호 법제화 완료
- 고용형태, 돌봄 유무에 상관없이 노동권을 존중받고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확장하였음.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저임금 여성 노동자, 사회적으로 저평가된 가사 돌봄 노동에 대한 공식성 부여 등 시민의 여성 노동 인권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임. - 장애 및 외국인의 제도 접근권 제고를 익명 신고시스템 등 변화된 법제 사항,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외국어 안내 등을 통해 정보 접근권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적극적 조치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정확한 데이터로 확인시켜주면서 차별적인 임금구조를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의 대상을 민간기업으로 확대 필요함

□ 향후 과제

- 검침원,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등 여성노동자 비율이 높은 방문 노동의 경우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압도적 비율을 차지함. 현재 남녀고용법은 직장 성희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사업주의 고객에 의한 성희롱 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 구제 기능 미비.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사항,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칙 규정, 더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의무 신설 등 법률개정 필요.
-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용평등상담실을 위탁 운영하고 있음. 관행적으로 외주화하지 않기 위해 정책 수행의 효과성, 적절성, 유기성에 미치는 영향에 해나 평가와 분석 필요.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과제 V	1. 노동권	④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
추진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과제목표	경력이 단절된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일자리 복귀와 출산·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우수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확대 및 역량확충 지원		
주요 내용	-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이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참여를 지원하고, 그간의 연구공백 해소와 복귀 후 경력 정착을 위한 교육·멘토링·컨설팅을 병행 지원 - 과학기술분야 출산·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일·생활 균형제도 활용을 촉진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우려 해소 및 기관의 업무공백 부담을 완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중단사유 및 제재조치 기준 세분화, 인권보호·준중 이행 등 사업운영지침 및 양식 제·개정('20년 3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경력복귀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과제 지원('20년 398명 → '21년 464명)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R&D 관련 직무 복귀 지속 지원 및 교육·멘토링·컨설팅을 통한 경력 복귀단계별(준비-복귀-성장) 역량 강화 ※ 경력복귀 지원 수혜자: ('18 ~ '20년) 1,242명 / 예비복귀자·경력복귀자 교육 수혜자: ('20년) 516명 - 과학기술분야 일·생활 균형지원 제도 활용 및 정착을 위해 대체인력 수요기관과 R&D 직무에 적합한 대체인력을 연결하여 업무 공백 최소화과 과학기술분야 경력개발 지원 ※ 대체인력 지원 수혜자: ('18년) 23명 → ('19년) 26명 → ('20년) 41명 → ('21년) 83명 - 출산 및 육아·휴직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대체인력 지원(56명) - 과학기술 연구개발 현장 수요를 반영, 육아기 연구자의 연구활동 및 연구경력 지속을 위한 연구인력 지원 신규 시범운영(인턴연구원 19명, 박사후연구원 8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COVID-19 장기화로 인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아·돌봄 부담 가중에도 불구하고, 휴직제도 사용보다 재택근무 또는 고용조정(퇴사 등)으로 이어지는 상황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돌봄을 위한 경력단절이 과학기술인 분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경력복귀자의 근무조건 개선의 부분과 돌봄을 대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가능 함. 전 사회적으로 돌봄 시스템을 점검과 연동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일·생활 균형 문화 확립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무, 재택근무 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향후 과제

- 고용형태, 돌봄 유무와 상관없이 노동권을 존중받고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1. 노동권	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권익지원과, 권익침해방지과, 권익기반과, 교육혁신팀
과제목표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주요 내용	-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대상 ‘성희롱’관련 온오프라인 특별점검 실시 및 실태조사 -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활성화(신고센터 운영)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대응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엄정한 사건 대응 -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컨설팅 위원단을 운영하여 사건발생기관에 컨설팅 지원 - 성폭력피해자 상담, 의료 및 심리치료 확대 등 지원서비스 내실화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평등 문화 확산 -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추진점검단 설치·운영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권센터 설치·운영 의무화(「고등교육법」 개정, '21.3.23, 시행 '22.3.24) -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 조치의무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남녀고용평등법」·「노동위원회법」 개정 '21.5.18., '22.5.19.시행)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 신설(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및 시행 '21.8.27.) -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에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의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 권한 및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근거 마련(「양성평등기본법」 개정, '21.4.20., 시행 '21.10.21.)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법령·지침 제·개정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시·도, 시·군·구) 본부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의무화, 당해 연도 부진기관 언론 공표,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명단 공표 근거 마련

□ 정책·관행의 변화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수립·추진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이하 범정부 협의회) 구성·운영 등 성희롱·성폭력 대응 추진체계 강화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18년 3월~) 및 기관장 사건 전담창구('20년 12월~) 운영 -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총괄·점검 기능 강화를 위해 ‘권익침해방지과’신설('21.3.30.)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기관장 전담 창구 포함) 지속 운영
- '21년 지방자치단체 20개 기관 대상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실시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실적('21. 1. 1.~12.31. 단위 : 건)								
익명 상담	신고사건 현황				피해자 지원 연계 실적*			
	소계	기관 조치	이관 (고용부 등)	취하 등 종료	소계	상담소	법률	의료
3,826	128	31	30	67	1,866	891	776	199

* 하나의 사건에 대해 복수 연계한 경우 각각 산정

- 공공기관('20년 17,693개) 대상 폭력예방교육 점검 결과, 전년 대비 고위직 참여율 2.4%p, 종사자 참여율 1.8%p 각각 상승하는 등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 인사, 직무배치, 일·생활균형, 성희롱 예방 등 전반에서 조직의 양성평등 수준이 3년 전에 비해 개선(3.37점)된 것으로 인식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다양한 내용으로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함. 그중에서도 범정부 추진점검단을 설치·운영하여 전 분야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실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기관장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며 사후 구제 분야뿐만 아니라 각종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 측면에서도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다만 2차 가해에 관한 실질적인 보호체계 마련과 성희롱,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가해자 및 기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
- 현실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한 대책은 미흡함

□ 향후 과제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이행상황 점검, 환류
- 사건처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등 존중, 보호의 원칙 실현 수단 보완, 신설 조직 기관의 제도적 안정적 확보 필요
- 현재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받는 것 외에 예방 및 신고 단계의 정책 이행은 우수하나 사건처리 과정 및 사건 이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이 보완될 필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의 적절성,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필요함. 피해 회복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확보를 위해 효과적인 시기별(피해 보고 직후, 사건 조사 중, 사건 종결 후 등) 피해자 보호 조치의 내용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필요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추진체계의 강화를 위해서는 예산의 안정성 확보 필요
- 민원인, 고객, 거래처 등 업무관련자에 의한 성희롱 예방, 발생 시 조치 사항, 피해자 보호 조치 체계화 등 대응강화 필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1. 노동권	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의료인력정책과
과제목표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 분야별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다각적 실태점검 및 실태조사조사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평등 문화 조성		
주요 내용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 추가·강화 -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엄중조치 -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 및 부적정 대응 의료기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 마련 -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추진 - 의사(전문직군)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18년도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업무지침 개정('18.3.) - 의료인 보수교육 필수과목인 직업윤리 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 포함하여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 3년 이내 반드시 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의무화 - 성폭력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공포('19.1.15.)

□ 정책·관행의 변화

- 의료인 성폭력 예방·관리를 위한 매뉴얼 마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발표('19.12.18.) - 성추행·성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 포함하여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활동 현황 및 근무여건에 대한 인식조사 실시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20년 12월, 시민건강보험공단)

-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개소('21년 8월)
-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피해자 상담지원 및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 실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보건의료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련 법률(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 법률) 제정,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설치 등은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의 일환이라고 판단됨
- 2차 가해에 관한 실질적인 보호체계 마련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 및 기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

□ 향후 과제

- 2018년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이후 전공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구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평가에 대한 투명한 자료 공표 및 보완 대책 마련 필요
- 의료계의 남성중심적 의사결정 구조, 위계적 조직문화, 성차별적 관행 개선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이용자인 시민의 성차별 인식개선 등이 정책과제로 도출 필요
- 환자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기관장 책무와 조치 강화 필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관장의 고에 의한 성희롱 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 구제 기능 미비. 고객에 의한 성희롱 예방, 발생 시 조치 사항, 피해자 보호 조치 체계화 등 대응 강화 필요
- 인권침해 상담센터 홍보 및 상담체계 내실화 등 기능 강화
 - 인권침해 상담 가이드·메뉴얼 제작, 교육 표준교안 제작 등 상담센터 전문성 강화
 - 인권침해 예방 홍보영상, 상담센터 홍보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한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센터 홍보 강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1. 노동권	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부처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과제목표	-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추진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역량 강화		
주요 내용	-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추진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현황 실태조사 등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역량 강화 - 시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전담조직 설치 확대 및 역량 강화, 대학 전담기구 역량 강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 도출 -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도출하여 사업계획, 예산요구서 등에 반영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개설 및 운영('18년 3월 ~) '18.3월 신고센터 개소 이후 건 신고 접수('20.12.31. 기준, 신고 사안399건, 교육분야 외 153건) - 시도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15개 교육청), 시도교육청별 사안처리지원단 구성·운영(모든교육청), 사안처리 컨설팅 매뉴얼 개발('21년 12월) - 대학 전담기구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중앙센터 선정·운영('19년 3월 ~) 및 담당자 연수·전문가 컨설팅 등 실시 - 대학정보공시에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공시항목으로 반영 완료('18년 10월~)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교육청/대학별 대응 역량 편차 존재 - 전담조직 미구성 교육청(2개)의 전담조직 구성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문화예술분야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19년 : 8,382명, '20년 : 9,250명, '21년 : 16,045명) 등 예방교육을 체계화하고 맞춤형 교육, 정부 사업 참여 시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등 이행 성과가 확인됨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인 대학인권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한 법제는 국가의 인권보호 책무에 부합
- 또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분리 조치 등이 어려운 경우, 또는 2차 가해나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적 보완이 필요

□ 향후 과제

- 교육청별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구성 확대 및 사안처리 지원단 구성·운영 지원을 통해 학교 성희롱·성폭력 대응 기반 강화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 기구의 실질적 운영 및 역량 강화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및 지원 필요
-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담당자 직무연수 실시, 온라인 직무연수 콘텐츠 개발, 시도교육청 협의체 운영 및 우수사례 보고대회 개최
- '22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 중앙센터 사업 운영 지속을 통해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역량강화
- 사건처리 과정의 2차 피해 예방 및 대학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조치 마련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1. 노동권	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과제목표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실태파악 및 근절방안 마련		
주요 내용	•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추진 - 문화예술, 영화계, 출판, 대중문화산업 및 체육·관광 등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 문화예술분야 신고·상담센터 운영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예술인 대상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기구 설치 등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21.9월)

□ 정책·관행의 변화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
- 문화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및 현장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조사('18년 3월 ~ 6월)
- 분야별 실태조사(체육계 선수, 지도자, 학부모 (성)폭력 실태조사('18년 6월~12월) 및 프로스포츠 분야 실태조사('18년 5월~10월), 공연예술·대중문화·출판 성폭력 실태조사('18년 6월~'19년 3월)
-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 비교분석을 위한 공통조사표 개발('20년 7월~12월)
- 민간보조사업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
 -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상담신고센터 운영 : 예술인복지재단 '성폭력피해상담센터' ('18년 6월 20일 ~),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20년 11월 30일 ~),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18년 3월 29일 ~),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18년 3월 1일 ~)

- 문화예술관광분야 예방교육 콘텐츠(10종) 및 문화분야 행동강령 개발(5개 단체)
 - 민간보조사업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등 예방안내서 제작 및 배포('21년 4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19년 : 8,382명, '20년 : 9,250명, '21년 : 16,045명)
- 현장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19년 : 9종, '20년 : 6종) 및 행동강령 개발('19년 : 4종, '20년 : 4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문화예술인은 일반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아 법적인 조치에 한계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문화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은 제도 밖에서 소외될 수 있는 대상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인권보장의 저변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를 일반적 체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해자에 대한 징계, 분리조치, 교육 이수 등이 일반적인 조치로서,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문화인의 경우 피해보상이나 접근제한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
- 또한 사건처리 후 피해자 회복 및 가해행위 재발방지에 대한 후속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

□ 향후 과제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연계강화 및 민간보조사업 예방교육 의무화 확산 및 피해구제 절차 등 가이드라인 상세 안내 추진
-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문제관련 정책연구 추진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마련 등('22년 9월 시행)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1. 노동권	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부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복무과
과제목표	• 성비위 임용결격 강화 및 가해자 엄정 조치 등을 통한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근절		
주요 내용	• 성희롱·성폭력 범죄 관련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성비위 징계 강화 등 공직 내 성비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마련 •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금지 조치, 성비위 고충처리 절차 개선 등 피해자의 권익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방안 마련 • 공직 내 성비위 신고처리체계 구축 등 피해자의 권익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방안 마련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성희롱 징계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18년 5월 30일)
- 성비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및 신고처리 체계 구축
 - (규정 제정) 공직내 성희롱 발생시 사건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정('18년 11월 27일)
 - (피해자보호)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불이익 금지, 희망하는 경우 파견·전보 등 조치 가능
 - (신고창구 마련) 누구나 조직내 성비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개설·운영('19년 4월)
-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희망 시 가해자의 징계처분결과 통보 의무화
 - ※ 「국가공무원법」 개정('18년 10월 16일/'19년 4월 17일 시행), 「공무원 징계령」('19년 4월 17일)
- 성 비위 은폐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및 징계감경 제한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19년 4월 30일)
-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이 1/3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
 - ※ 「공무원 징계령」 개정('20년 7월 28일)
-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세분화·강화
 -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성폭력 범죄행위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 신설
 - 성비위 2차 가해 징계기준 신설
 -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징계양정 강화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21년 8월 27일)
-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 → 10년으로 연장
 - ※ 「국가공무원법」 개정('21년 6월 8일/'21년 12월 9일 시행)

□ 정책·관행의 변화

- 공직 내 성비위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개정('21년 2월)
 - (신고대상) 국가공무원 간의 성비위에서 국가공무원에 의한 성비위까지 대상을 확대
 - (처리범위) 성비위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2차 피해 신고하도록 범위를 확대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19년 4월 ~ '20년 12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실적
 - 총 139건 처리, 이 중에서 조사·심의 8건
- '21년 1월 ~ 12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실적
 - 총 122건 처리, 이 중에서 조사·심의 7건 / 전년대비 처리건수 41% 증가
 -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21년 8월) 및 성희롱 재발방지 컨설팅 실시(3회)
 - 중앙부처 성고충담당자 워크숍 개최('21년 12월) 및 지침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 실시(3회)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등 공직사회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여 국가의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함
- 다만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조사 이후 그 후속 대처로 부서이동 등 분리조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조직 규모가 작은 경우 분리조치 하더라도 가해자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향후 과제

- 피해 회복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확보를 위해 효과적인 시기별(피해 보고 직후, 사건 조사 중, 사건 종결 후 등) 피해자 보호 조치의 내용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필요
- 조직규모가 작은 경우 실효성 있는 분리 조치 체계 마련
- 신고 사건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 신고센터 전담인력1인이 연간 122건-139건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인력 보강 및 안정적 기관 운영 방안 마련이 요구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1. 노동권	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부처	법무부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과제목표	• 폭력 예방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통해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개선과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		
주요 내용	• 양성평등전담부서 신설 – 기획조정실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신설 • 폭력예방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 폭력예방교육 및 홍보·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및 예방시스템 제도 정비 등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및 예방시스템 제도 정비 – 2차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 개정(법무부 훈령, '19.5.7., '20.5.27.) •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 발간·배포('20.1. 2,500부) •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및 예방시스템 제도 정비 – 2차피해 예방 및 처리사항(피해자 등이 요청한 보호조치 실시 등) 신설, 소속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내용으로 지침 개정(법무부 훈령, '21.6.7.)

□ 정책·관행의 변화

• 양성평등 전담부서 신설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홍보강화 –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행동수칙 제정·통보('19.12.) –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콘텐츠 제공(3회)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폭력예방교육 실시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병행 실시('18년 2회 805명, '19년 2회 821명, '20년 3회 808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강화 필요
 - 성희롱·성폭력문제 대응 및 양성평등 추진의 지속성 및 전문성 확보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법무부 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전담부서 설치, 지침 개정, 매뉴얼 발간 등을 주요 추진 성과로 제시
- 다만 2차가해 방지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조사결과 부서이동 등 분리조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조직 규모가 작은 경우 분리조치 하더라도 가해자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등 대안마련이 필요
- 국가인권정책과제의 과제로서 법무부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한 과제 설정이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법무부가 국가 인권정책상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향후 과제

- 피해 회복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확보를 위해 효과적인 시기별(피해 보고 직후, 사건 조사 중, 사건 종결 후 등) 피해자 보호 조치의 내용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필요
- 조직규모가 작은 경우 실효성 있는 분리 조치 체계 마련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및 교육 지속 실시
-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및 예방시스템 제도정비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1. 노동권	⑥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지도·감독 및 개선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인력담당관
과제목표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개선에 기여 - 외국인근로자 대상 교육 및 정책홍보를 통한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노력		
주요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 강화 - 외국인근로자 대상 교육 및 정책홍보 강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 지침 강화 및 기숙사 정보 제공 ‘21.1월부터 농축산·어업의 가설건축물 등 열악한 숙소의 경우 고용허가 불허 지침 마련·시행(‘21.1.1.)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21.12.16.) * (주요내용) 기숙사 시각자료 제출 근거 마련, 기숙사시설표 개정 등

□ 정책·관행의 변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6시간 노동 관계법령·인권 6개 과목 교육 의무화 * ① 고용허가제의 이해, ② 노무관리, ③ 산업재해예방, ④ 보건위생관리, ⑤ 외국인근로자 출입국·체류관리, ⑥ 인권보호교육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적발 4,748건(시정지시: 4,597건, 사법처리 3건, 과태료 47건, 고용제한 등 58건, 관계기관 통보 45건) - 취약사업장(법 위반 비율이 높고 타 업종 대비 근로조건이 취약한 농축산업·어업 분야) 점검을 전체 물량 대비 55.8% 실시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20년 2회)
- 농어업 분야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환경 실태조사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 지침을 강화하고 기숙사 정보 제공 고시를 개정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대한 성과로 가치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인권교육 등을 의무화한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조치로 보임. 다만 기숙사를 제공하기 어려운 농어업 등 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침고시 개정은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다만 주무부처의 이러한 노력은 사후적 조치이며,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작업장환경, 산업재해 시 보상 절차 및 방안, 임금채권보장 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함
- 또한 근로조건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나 제보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의 권리보장은 수동적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
- 국제사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및 학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나 강제노동의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업장변경허가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 국제인권협약인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22a)

□ 향후 과제

-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의 실질적인 개선 및 보장 방안 마련(숙식비 정수지침 개선 필요)
- 농업 어업 등 법령 및 비용 문제 등으로 개인사업자가 기숙사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태 등 외국인 근로자 주거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 (예를 들어 기초지자체, 농협, 수협 등과 협의하여 공동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든지, 지방주택공사 등과 협의하여 저렴한 임대 숙소를 제공한다든지, 정부 및 지자체가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정책이 필요)
- 고용허가제 임금채불보장보험의 보장한도 증액 및 농업 등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금지급제도 확대
- 사업장변경허가제도 폐지 및 개선
- 사업장 지도감독 시, 관련 지원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이용에 있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침해 요소 등 기본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1. 노동권	⑦ 비정규직보호 및 차별 해소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고용차별개선과
과제목표	- 기업의 정규직 채용 분위기 조성·확산 - 비정규직 차별 개선		
주요 내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 민간부문 정규직 전환 원칙 확립 및 차별해소 - 비정규직 차별 적극적 해소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 기업의 정규직 채용 분위기 조성·확산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연차휴가 부여(「근로기준법」 개정, '18.5.29. 시행) 300인 이상 사업체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 내용 추가 공시(「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1.5.18. 공포, 11.19. 시행)

□ 정책·관행의 변화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점진적 고용구조 개선 - 근속기간 1년 6개월 초과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율 증가 추세 * ('16.6월) 16.8% → ('17.6월) 18.3% → ('18.6월) 26.0% → ('19.6월) 26.0% 300인 이상 사업체 전체근로자 중 기간제* 및 소속 외 근로자** 비중 감소 * 기간제 근로자 : ('18년) 23.5%, 931천명 → ('19년) 22.3%, 886천명 ** 소속 외 근로자 : ('18년) 18.5%, 901천명 → ('19년) 18.1%, 881천명 -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사람이 '1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자발적 비정규직 선택 비율 증감(전년비, %p): ('15.)△0.4→('16.) 3.9→('17.) △3.1→('18.) 3.0
→('19.) 2.2→('20.) 1.4→('21.) 3.3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18.8.28), '18.7.18.부터 정규직 전환된 자부터 적용
* 1인 최대 960만원(80만원) → 1,080만원(월 90만원)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격차 완화
* 정규직(3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300인 미만 사업장)
: ('16년) 37.4% → ('17년) 40.3% → ('18년) 41.8% → ('19년) 42.7% → ('20년)44.5%
-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등 증가
① '20년 대비 사회보험 가입률(%) : 시민연금(37.8→38.4), 건강보험(49.0→50.3), 고용보험(46.1→52.6)
② '20년 대비 근로복지 수혜율(%): 퇴직급여(40.4→42.7), 유급휴일(34.1→35.1)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코로나19 이후 비정규직 고용불안 심화 우려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20.12월말 기준 계획대비 97.1%의 성과를 냈으나 이 내면을 보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으로 실질적 급여인상 및 복리후생 향상 등에서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음
- 신분보장 및 복리후생개선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여부에 있음. 이에 이 원칙하에 기간제·사내하도급 등 근로자 보호대책 수립 필요

□ 향후 과제

- 비정규직 차별, 불법파견 의심 사업장 지도·감독 등 지속 추진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하에 비정규직 차별 및 격차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보호 제도개선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1. 노동권	⑧ 사내하도급 노동자·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디지털노동 대응 T/F 산재보상정책과
과제목표	•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강화		
주요 내용	• 원·하청 노동자 간 불합리한 격차 완화 • 근로감독 강화 등 불법과건 근절 추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방안 마련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원청(도급인)의 사업장 밖 안전보건조치에 대해서도 원청(도급인)의 공동 사업주 책임을 확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19.12.24. 공포, '20.1.16.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특고, 배달종사자로 확대('19.1.15. 공포, '20.1.16. 시행) •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 – 건설기계 특고종사자를 레미콘 1개 직종에서 지게차,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등 전체 27종으로 확대('19.1.1.) –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방문교사 등 5개 특고 직종에 대해 적용('20.7.1.)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직종에 대해 적용('21.7.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1.1.15. 공포, '21.7.1. 시행))

□ 정책·관행의 변화

• 불법과건 지도감독 성과의 양적·질적 개선 * 감독 사업장 수 : ('17년) 1,349 → ('18년) 1,609 → ('19년) 1,630 → ('20년) 706 → ('21년) 576 * '20년부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독 물량 감소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적용제외 신청제도 개선으로 실 적용자 및 실 적용률 증가
 - * (기존, '21.6월 기준) 적용자 23만명, 적용제외자 44만명, 실적용률 34.4%
 - (개선, '21.10월 기준) 적용자 75만명, 적용제외자 144명, 실적용률 99.9%
- 실적용자 확대에 의한 특고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
 - － 보험료경감 : 특고 29.5만명의 보험료 128.5억원 경감
 - － 소급징수면제 : 특고 4.4만명의 보험료 13.8억원 소급징수 면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고용구조와 일의 형태 차이, 쟁점이 상이한 '원하청'과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문제를 하나의 과제로 선정한 것은 부적절함
- 일정정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제도적 안정망을 구축함
- 파견·사내하도급의 문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여부에 있음. 이에 이 원칙하에 사내하도급 등 근로자 보호대책 수립 미비함
-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에 대한 성과는 미비함
- 특고 보호 문제에 있어 각 분야별 특수성이 반영이 미비함

□ 향후 과제

- 동일 노동을 하고 있는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 간 근로조건 및 임금체계가 상이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방안 마련
 - － 원·하청 노동자 임금 하한선이나 이윤공유제도, 비정규직 다수 고용 부과금(동종업계 평균의 일정 비율 이상 고용) 등
 - － 해당 업종의 초기업 산별교섭 활성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개정)를 통해 원하청 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정책'을 노사관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산별임금정책 검토
- 특고 보호 문제에 있어 각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보호대책 마련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1. 노동권	⑨ 산업안전보건 제도개선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보상정책과
과제목표	• 근로자의 안전보건 예방 • 근로자 산업재해 보호 강화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 체계 혁신을 통해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감소 추진 • 노동자의 정신건강 영역까지 안전보건 보호영역 확대 •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참여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사용자·근로자 체험교육 강화 •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신고에 대한 행정감독 및 제재 •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개선 및 재해 조사 역량 강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원청의 책임확대, 유해작업의 도급 제한 등 제도개선 내용을 모두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
- 감정노동 종사자 정신건강 보호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2021. 1. 26. 제정, 2022. 1. 27. 시행

□ 정책·관행의 변화

-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 산재보상 보장성 강화로 질병 처리건수 및 승인율 증가
 - * 질병 처리건수(건) : ('18.)12,975 → ('19.)18,266 → ('20.)18,634 → ('21.)24,871
 - * 질병 승인율(%) : ('18.)59.6 → ('19.)60.6 → ('20.)61.4 → ('21.) 63.1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기업의 상시적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을 위해 지도·점검, 컨설팅, 재정사업 지원 등 추진
 -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위험기계·기구 교체, 노후공정 개선 등 안전투자혁신사업 집중 지원('22년 3,271억)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정부예산을 보면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실질적 지원예산은 전무한 채 '안전체험교육장 설치' 예산만 반영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감정노동 종사자 정신건강 보호강화 및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일부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중소기업의 노동자 안전대책은 미비
- 사업장 내 산업재해 보호를 위한 예산집행은 단순히 지역별 안전체험교육장 신설 및 노후시설개선에만 집행되었을 뿐 각 사업장 내 위해요소제거에 대한 지원은 없어 실질적인 보호강화 미비

□ 향후 과제

- 중소기업 노동자의 안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지원
 - 단가에서 노동자 안전에 대한 비용을 포함시키고 EU 소속 독일 혹은 프랑스처럼 대기업의 인권 경영과 인권영향평가 책무를 의무화하여 납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안전한 환경 제공 점검 책무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
- 합리적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마련으로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및 역학조사 생략대상 확대, 역학조사 수행기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1. 노동권	⑩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강화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과제목표	최저임금 합리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		
주요 내용	-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지원 -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 지원 및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소상공인·영세기업 부담 완화 추진 - 최저임금 준수 사전제도 및 지도·점검 - 최저임금 업무 전담자 지정, 편의점·음식점 등 취약업종 대상 기초노동질서 준수 중심으로 사전제도 및 지도·점검 - 최저임금 자율적 개선 지원 및 최저임금 준수 관련 집중 홍보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산입하여 실제 지급받는 임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18.6.12., '19.1.1. 시행)

□ 정책·관행의 변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산입함으로써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18.6.12. 최저임금법 개정, '19.1.1. 시행) (최저임금 합리적 결정 지원)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 지원 -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간담회, 권역별 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한 의견수렴 진행 * ('20년) 간담회(15개소), 토론회(5개 지역), 현장방문(2개소) 등 결정 과정의 합리성 제고 - '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통한 의견수렴 진행 * 간담회(7개소), 현장방문(4개소) 등 결정 과정의 합리성 제고 (최저임금 현장안착 지원) 정책캠페인 및 최저임금 준수 지도, 영세사업장 지원 등을 통해 최저임금 현장 안착 지원

- ('20년) 영세소상공인 대상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를 통해 정책안내·사전계도* 실시 및 노무관리 지도**
* 161,296개소, 187,178명 계도·홍보 / ** 50인 미만 중소기업장을 중심으로 지도 실시(5,057개소)
- ('21년) 영세소상공인 대상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를 통해 정책안내·사전계도* 실시 및 노무관리 지도**
* 50인 미만 중소기업장을 중심으로 지도 실시(11,061개소) / **169,864개소, 214,249명 계도·홍보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18.1월~)
 - * ('17.7.15.) 최저임금위원회 '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의결(전년 대비 16.4% 인상)
 - * ('17.7.16.)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하나로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발표
 - * ('18.8.22.)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사업주 부담경감을 위해 '19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지속 발표
 - ('18년) 노동자 264만명, 사업장 65만개소에 2조 5,465억원(85.6%) 집행
 - ('19년) 노동자 343만명, 사업장 83만개소에 2조 9,165억원(99.97%) 집행
 - ('20년) 노동자 360만명, 사업장 83만개소에 2조 6,610억원(99.99%) 집행
 - ('21년) 노동자 322만명, 사업장 76만개소에 1조 1,968억원(92.3%) 집행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최저임금 인상
 - 2019년 8,350원
 - 2020년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 2021년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예산을 '20년부터 감액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 지원금 예산은 2021년 1조 2,965억원에서 2022년 4,635억원으로 65% 감액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으나 현장 안착 및 준수 여부에 대한 통계 부족

☐ 향후 과제

- 적용 최저임금 현장 안착화와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 및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1. 노동권	⑪ 평생직업능력개발 강화 및 훈련 사각지대 해소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과제목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생태계 및 인프라 구축 - 소외없는 포용적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을 통한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 신중년 직업능력개발 강화 - 기존의 베이비부머 훈련 성과, 신중년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 지정·운영 - 기본적 직무 수행에 필요한 디지털 능력(digital literacy)을 습득하는 기초 ICT 과정 보급·확산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을 통한 물리적 사각지대 일소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접속·학습할 수 있는 직업훈련 분야의 온라인 공공 플랫폼, 플립러닝 등 선진 훈련방식 확산 매체로 활용 - 직업훈련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훈련 실시 - 비정규직 종사유형별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 훈련 실시 - 자영업자·특고 대상 직업훈련 계좌 신설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직업훈련 진단·상담의무화를 위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20.8.) 및 시스템 구축(~'20.10.)

□ 정책·관행의 변화

- 평생 경력진단 시스템 구축
- 신중년의 취·창업을 위한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 운영 (실습 위주 수업 및 자격증 취득과 연계)
- 신중년 대상으로 기초 직무수행에 필요한 디지털 능력(digital literacy)을 습득하는 ICT 과정 보급·확산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구축·운영을 통한 물리적 사각지대 일소
-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신설(’18년~), 중소기업 기업현장 맞춤형 훈련 지원
- 체계적현장훈련(S-OJT) 실시 지원
-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훈련지원
- 자영업자·특고 대상 직업훈련 계좌 신설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원격훈련 인프라(LMS 등) 제공 확대 (’19.) 40개소 → (’20.) 359개소 → (’21.) 506개소
- STEP 활용 원격·혼합훈련 인원 대폭 증가 (’19.) 3,489명 → (’20.) 60,000명 → (’21.) 168,000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 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신중년 직업능력개발 확대,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 확대 운영, 창업과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 지원(’21년 900명 정원, 914명 참여), 재직자 중심의 신중년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위한 기초 ICT 과정 지속적 공급,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구축·운영을 통한 물리적 사각지대 일소, 직업훈련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훈련 실시
-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및 장기화로 집체훈련이 중단된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원격훈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직업훈련 공백 최소화 선제적 대응
-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대상 직업훈련 실시,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지역, 광역, 특화센터)를 통한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으로 중소기업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정책이 준비되고 추진됨.

□ 향후 과제

- 당사자 욕구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실태조사 등을 진행할 필요
- 프로그램 내 해당 직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미를 포함 필요
 - 실직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참여 당사자가 가지는 상대적 상실감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 직업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를 안전하게 증진시키는 과정의 하나라는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프레임 워크의 기본정신과 일치함.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1. 노동권	⑫ 신중년 근로자 등 장기근속 및 전직 지원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근로기준정책과
과제목표	신중년 근로자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주요내용	- 신중년 근로자 실업급여 보장 ‘생애경력설계서비스-직업훈련-재취업’이 원스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개선·확충 - 신중년의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을 위한 적합 직무 개발 확산 - 경영상 해고 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장 지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자영업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한 폐지, 피보험자격 당연소멸 기간 연장

□ 정책·관행의 변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운영 - 대기업은 50세 이상 근로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 중소기업은 특고 채용장려금 제공 (민간일자리)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18년 신설), (공공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19년 신설) 65세 이상 근로자 : (기존) 장기근속에도 실업급여 수급 불가 → (개선) 같은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 중이면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수급 가능 * 자영업자 : 가입기간 제한 폐지, 피보험자격 당연소멸 기간 연장(보험료 3개월 미납 → 6개월 미납) (고령자 고용활성화 대책 마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베이비부머 노동시장 이탈 방지 위한 대책 발표('21.9.30.)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퇴직자(이직자) 중에서 정년으로 인한 퇴직자 수가 증가하고, 주된 일자리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매년 상승
 - ‘정년’ 퇴직자 수(천명): (‘17.)352 → (‘18.)346 → (‘19.)350 → (‘20.)392 → (‘21.)394
 - 주된일자리 근로자 평균연령(세): (‘17.)47.2 → (‘18.)47.5 → (‘19.)48.0 → (‘20.)48.1
- 신중년 취업자 규모 증가하는 가운데 상용직 증가하여, 고령자 고용의 양과 질 개선
 - (취업자 규모) ‘20.11월 10,192천명 → ‘21.10월 10,502천명, (상용직 비중) ‘20.11월 42.6% → ‘21.10월 44.1%
 - 고용률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1월 이후 다시 꾸준히 상승 중
 - * 신중년(50~69세) 고용률(%): (‘20.10.)66.9 → (‘21.1.)63.1 → (‘21.3.)65.4 → (‘21.10.)67.4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 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신중년 단계별 및 기업 조건에 따라 정책적 유용성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임
- 주된 일자리에서 장기간 또는 정년까지 근무 후 퇴직자 수 증가
 - 퇴직자(이직자) 중에서 정년으로 인한 퇴직자 수가 증가하고, 주된 일자리 근로자의 평균연령 매년 상승
- 신중년 취업자 규모 증가하는 가운데 상용직 증가하여, 고령자 고용의 양과 질 개선

□ 향후 과제

- 신중년 일자리를 통하여 전개되는 업무가 지속성이 확보되어 노동자와 그 업무 안에 있는 시민 모두의 인권이 상생하는 방향에 유의하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설계에 유의가 필요
(단순한 생계를 위한 노무형 일자리로 구성되지 않도록 유의)
- 고령자의 고용연장 제도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필요
 -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사회(전체 시민 중 65세 이상이 20%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안착을 위한 노력 진행
 - 의무대상 기업 컨설팅, 인사담당자 교육, 업·직종 특화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보급
- 경영상 해고 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장 지도 지속
- 신중년 구직자가 재취업하기 적합한 적합직무 추가 발굴 지속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1. 노동권	⑬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지원 강화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퇴직연금복지과
과제목표	•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		
주요 내용	• 청소년 다수 근로 업소·업종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청소년 대상 근로권의 교육 확대 • 청년 체불노동자 신속한 구제를 위해 소액채당금 지급요건을 간소화(확정판결요건 폐지)하여 채당금 수령기간 대폭 단축 • 부당행위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일반채당금 상한액을 최대 1,800만 원에서 최대 2,100만 원으로 인상('20년1월 1일 고용노동부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보 대신 '사본'도 제출할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액채당금 청구 방법을 온라인, 팩스로 가능하도록 개선('20년 8월 12일)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행('20년 12월 8일 개정, '21년 6월 9일 시행) • 채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포함,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용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채당금을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 신설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행('21년 4월 13일 개정, '21년 10월 14일 시행)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시행 • 채당금이라는 용어가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변경(일반채당금 → 도산대지급금, 소액채당금 → 간이대지급금) •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중복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 정비 • 재직자 채당금 신설: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포함 • 소액채당금 지급절차 간소화(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지방노동관서의 체불확인서만으로 소액채당금 수령)

□ 정책·관행의 변화

- 청소년 다수사업장 대상 지도점검을 통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충분한 제도 안내 및 교육 등 제도활동 추진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피해 청소년 권리구제를 위한 민간 법률 전문가의 1:1 심층 상담 및 신속한 무료 권리구제 서비스 제공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운영을 통해 청소년에 특화된 노동환경 개선 교육·홍보 실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해당 정책과제는 정책목표 및 인권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나,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보호·실현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음. 또한, 권리구제에 앞서 청소년에게 안전한 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보장되도록 사업장의 긍정적 동참을 촉진하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근본적인 변화에 필요할 것으로 보임(국가인권위원회, 2022a: 181)
- 근로기준법 일반법령에 따라 청소년 근로자 고용 기업의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조치(성별 및 외모, 재학 여부, 국적 및 인종, 장애 등)를 예방하는 법·제도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이행실태는 확인되지 않음. 또한, 소수자 청소년 노동자(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권익교육, 상담 및 권익구제 조치(다양한 언어로 정보제공, 통역 등) 제공 등 추가적인 정책적 고려도 미비함
- 청소년 다수사업장 대상 점검과 노무관리지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변화에 대한 추적과 후속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는 파악할 수 없음.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교육·홍보 활동도 추진 실적만 확인될 뿐, 그로 인한 권리침해 사건의 유형, 권리구제 조치의 내용 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알 수 없는 등 교육·홍보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재함
- 심층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지원 절차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및 상시 종사자의 인력 충원 등은 이루어지지 않음
- 성인이 아닌 청소년(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정 임금채권법 이용 여부는 알 수 없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미성년기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추가적인 실태파악도 어려움

□ 향후 과제

- ‘22년에는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노무관리지도 등 자율개선 중심의 지도점검 실시
-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개편된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 인권으로서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실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의 교육과정 제도화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기적인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 피해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권리구제 시스템 일원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1. 노동권	⑬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지원 강화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제목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부당처우 등에 대한 종합상담, 분쟁중재 등으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근로권의 보호		
주요 내용	- 부당처우 피해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한 24시간 상담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가 현장방문 등 근로상담 및 피해사실 확인, 업주와의 면담·중재를 통해 신속한 문제해결 - 청소년의 생활 여건 및 근로 사유에 맞는 청소년 관련 기관 건강·진로상담, 학업복귀, 직업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등 종합 서비스 연계*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통합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대상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운영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부당처우 해결 지원 -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상담 및 권리구제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 상담실적 : ('17년) 16,786건 → ('18년) 32,882건 → ('19년) 50,000건 - 근로현장도우미의 현장 방문 및 상담·중재 * 만족도조사 : ('18년) 매우만족 75%, 조금만족 24% → ('19년) 매우만족 88.5%, 만족 9.4% → ('20년) 만족 99%, 재상담요청의사 99% → ('21년) 만족 99.4%, 재상담요청의사 98.4% -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실시 * ('18년) 총 1,549회, 50,479명 → ('19년) 총 2,680회, 101,215명 → ('20년) 총 1,118회, 54,390명 → ('21년) 총 1,085회, 41,964명 - 모바일 근로계약서 서비스 지원('20년 724건 → '21년 107건) - 정부합동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점검, 정당한 근로문화 인식 확산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확대 * ('17년) 중앙지원당 1개소 → ('18년) 중앙지원단 및 지역지원본부 3개소 → ('19년~) 중앙지원단(광명시)

및 지역지원본부 4개소(수도권, 경상권, 호남권, 충청권)

-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협력 청소년 노동인권 교과서 개발('21년 8월) 및 교과서 해설서 개발('21년 12월)
- 청소년 근로 관련 지원제도 홍보물 제작·배포
 - ('18년 ~ '20년) 88천부,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청소년 쉼터 등 → ('21년) 265천부, 전국 지자체, 노동관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점검 및 규제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보임
- 2018년 전국 1개소였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확대는 긍정적이라 할 것이나, 청소년의 접근가능성을 고려한 지역별 근로보호센터 확충도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장·정착된 온라인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의 안정화·지속화를 도모하며, 프로그램 이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사생활 보호 등에 유의할 필요도 있음
- 청소년의 개별적 특성(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 이주 청소년, 범죄소년, 가정밖청소년, 보호대상아동 등)과 노동조건(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플랫폼 노동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소수자 청소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저고용연령, 고용시간 및 조건, 규제 조건 등의 법적·제도적 개선은 미비함.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 국한되어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진 한계를 인식하며, 다양한 직역과 상황에 있는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근로현장도우미 등 현장 지원 종사자들의 전문성 확보와 청소년 권리 인식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노동 인권교육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초·중등학교 노동인권 교육을 통한 표준교육과정 마련, 학교 내 권리구제 체계 구축 등으로 교육과정 내에 제도화된 교육과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함(국가인권위원회, 2022a: 181)

□ 향후 과제

- 청소년 및 사업주 대상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운영 확대 등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력
 - * 업계 정기 교육 등 활용 방문교육 실시 및 홍보자료 배포
 - * 청소년연예인 등 대상 노동인권교육 운영
- 청소년 근로보호사업 전국 17시도 확대 추진('22년 ~)
 - * ('22년 ~) 지자체 보조사업 전화:17개 시·도별로 사업 확대 추진 중(보조율 50%)
- 청소년 노동인권 교과서 및 해설서 보급 확대, 교사 워크숍 등 추진('22년 ~ 23년)
- 이주, 난민, 장애 등 대상별 특성이나 플랫폼 노동, 대중문화예술 종사자 등 일하는 직종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노동인권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1. 노동권	⑬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지원 강화
추진부처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과제목표	• 직업계고 학생 대상 근로권의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확대		
주요 내용	• 직업계고 학생 대상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교육 운영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교육 운영 - 교육 대상 : 직업계고 1~3학년 ※ ('18년) 97,860명, ('19년) 90,625명, ('20년) 83,285명, ('21년) 81,822명 - 교육 내용 :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 꼭 알아야 할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주요 내용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교육부, 고용노동연수원 연계를 통한 콘텐츠 개발 및 학습 운영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2018, 2019년까지 대규모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의 한계가 지적되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사항에 대한 언급 없이 2020년, 2021년 이행점검상 어려움은 달리 없는 것으로 보고됨.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 등에 대한 보완조치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직업계고 학생의 의견청취를 통해 교육의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고등학교 3학년 현장실습 직전의 중점교육이 아닌, 직업계고 교육 전반에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민감성 향상을 위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임. 나아가 청소년기 노동인권 보장은 노동인권 전체의 맥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 따라서 아동·청소년 권리 기반 관점에서 교육과정의 적절성을 점검·보완하는 노력이 요구됨. 이때 노동인권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 전반에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의 의견청취도 필수적이라 할 것임
- 교육부의 학생 대상 사전교육과 더불어, 현장실습 대상 사업장의 책무 강화를 위한 노동인권, 산업안전보건 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참여도 증진을 위한 정책을 설계함으로써(국가인권위원회, 2022a: 181), 권리 침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향후 과제

- 노동인권교육의 교육과정 제도화
 - 노동인권교육이 일하는 청소년 혹은 현장실습을 나가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청소년들에게 시행되어 청소년 노동권이 보장이 확장되는 한편, 인권으로서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교육과정안에서 노동인권교육 제도화될 필요 존재
 - 교육기본법 등의 개정을 통한 노동인권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1. 노동권	⑭ 노사정 간 대화를 통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노사관계법제과
과제목표	노동기본권 신장 및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주요 내용	-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당면 위기극복 및 노동존중사회 실현* -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의 대표성·민주성을 제고하고 논의의제를 확대하는 등 전면개편으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재정비 * 국제과제 변경: (기존)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 → (변경)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당면 위기 극복 및 노동존중 사회 실현 - 고용형태 다양화 등 새롭게 제기되는 수요를 반영하고 취약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 체계적·전문적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여 노동기본권 신장 및 노동존중 인식 확산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舊 노사정위원회법, 2018년 6월 12일 시행)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2020년 3월 31일 제정, 2020년 10월 1일 시행)

□ 정책·관행의 변화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설립('20년 10월 5일) 1989년 10월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노사교육본부의 후신으로 1990년 한국노동교육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한국노동교육원'으로 변경됨. 이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해당 법률이 2009년 3월 1일 폐지되면서 해당 사업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 고용노동연수원으로 이관됨. 2020년 3월 31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으로 별도 법인 설립 '18년부터 중·고등학교 1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헌법상 보호된 근로자의 권리 등의 노동권 내용 반영, 학교에서 노동교육 실시 (① 중학교 '사회' 검정교과서 8종, ② 고등학교 '통합사회' 검정교과서 5종)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경사노위 내 업종·의제별 위원회를 통해서도, 세부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등 노동존중사회 실현 노력 지속
- 전문기관 출범, 협조체계 구축, 전문강사 양성 및 강의컨텐츠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노동인권교육의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㉓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재설립 및 중·고교육내 노동권 교육 강화 등의 성과를 냄
- 노사정 간 대화는 경사노위 내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각 현장에서의 노사간 대화의 내실화·체계화도 중요한 만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각 단위별·지역별 지원

☐ 향후 과제

- 경사노위 중심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하여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사회” 실현
-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컨텐츠 개발·보급 확대, 비대면 등 교육방식 다양화, 플랫폼·프리랜서 등 교육 확대 추진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1. 노동권	⑮ 근로자 이해대변기구 제도 개선 및 미조직 노동자 의견참여 통로 확대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노사관계법제과
과제목표	• 미조직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지원체계 구축 - 청년·여성·비정규직 주체별, 지역별 이해대변·권익보호를 위한 소통 활성화 •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대표 제도 기능 강화		
주요 내용	•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미조직 노동자 대변단체와의 소통채널 마련 및 정례 협의체계 구축 •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대표 제도 기능 강화를 통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이익대변 강화 - 근로자위원 선출제도 개선*을 통한 민주성·대표성 확보 * 근로자위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관리 등 구체적 선출 절차 신설 등 - 근로자 이해대변기능 확충을 위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경사노위 사회적대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논의
 - (논의 경과) ▲(1기 경사노위, '18년 7월 ~ '19년 7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 등 핵심 현안 논의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논의 지연 → ▲(제2기 경사노위) '19년 11월 18일부터 중요 의제로 논의
 - (사회적 합의 도출) 10개월간에 걸친 논의(공식회의 10회이상)를 진행하여 노·사·정, 공익위원 전원일치 의결로 합의('20년 10월 16일)
 - * 노사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20년 6월 12일)되기도 하였으나, 정부의 조정·중재 노력으로 논의 진행
- <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 주요 내용 >
1. 근로자대표의 선출
 -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회의'(과반수 의결로 의사결정)
 - (과반수 노조 및 노사협의회 모두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
 - 근로자대표 선출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 금지
 2. 근로자대표의 임기
 - 3년 보장(노사합의로 3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음)
 3.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 (근로자대표 활동 보장) ▲사용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서면합의 체결이행 관련 근로자의 고충해결을 위해 사용자에 대한 협의 요구 ▲근로자대표 활동시간 근로시간 인정 ▲근로자대표에 대한 이익취급 및 개입·방해 금지
 - (근로자대표 책무) 근로자 의견수렴 및 비밀유지 의무
- (현장지원) 법·제도 개선 이전 현장의 노사협의회 운영 지원

- 「노사협의회 설치·운영멘토링」 실시('18년 1월 ~)

- 노사협의회가 실질적 근로자이해 대변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계획('19년 4월)」 수립·시행 →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지도 강화

- (노사정합의 경사노위 의결) 경사노위 본위원회,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에 대해 노·사·정, 공익위원 만장일치로 의결('21년 2월 19일)

- (관련 법률 개정 추진) 「근로자참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21년 2월) →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등 협의('21년 3월) → 「근로자참여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안호영의원) → 환노위 법안 상정('21년 9월 16일) →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소위 논의('21년 12월 9일, 12월16일, 12월21일, 12월 28일)

* 환노위 전문위원, 주요 의원, 여당 보좌진 대상 법안 설명 및 개정 필요성 지속 설명

- 「근로자참여법」 개정안 환노위 소위 의결('21년 12월 28일)

* (근로기준법) 여야간 상당 부분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소위 의결 불발

< 「근로자참여법」 환노위 소위 의결 주요 내용 >

- ▲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되,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 의무화
- ▲ 현행 시행령의 간접선거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되,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을 규정

- (미조직 노동자 이해대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변단체의 경사노위 공식 참여, 중앙·지역별 협의체 운영 등 소통 강화('18년1월 ~)

* (대상별)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미조직취약근로자 대변단체 ↔ 본부

* (권역별) 지역별 미조직 취약근로자 이해대변 단체 ↔ 지방관서

- 중층적 소통 채널 구축을 통해 계층별 대변단체와 정보교환 및 이대대변 창구 기능 수행

- 미조직 취약 노동자 대변단체 지원사업 추진

* '19년 227백만 원, '20년 240백만 원, '21년 223백만 원

- 미조직 이해대변 (미조직 취약근로자 대변단체 지속적인 정례협의체 가동)

- 비정규직 : ('21년) 3월 23일, 5월 26일, 9월 8일

- 청년, 여성 : ('21년) 3월 18일, 3월 29일, 9월 7일, 12월 3일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관계법령 미개정등으로 실질적인 개선사항 미비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근로자참여법」 미제정 등 소기의 성과를 내지는 못함. 또한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개발 필요

□ 향후 과제

-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 가입률이 약 14.5%에 불과, 85.5% 취약계층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및 지원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1. 노동권	①⑥ 임금체불근로자 및 체불노동자 보호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퇴직연금복지과
과제목표	• 임금체불 근절을 통한 근로자 생계 안정		
주요 내용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미지급임금 지연이자제 적용 대상 확대(퇴직자→퇴직자+재직자) • 체당금 지급요건 완화, 지급기간 단축 등 체당금 제도를 개선하여 임금체불에 따른 노동자 생계 보호 강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소액체당금 상한액 1,000만원으로 인상 「체당금 상한액 고시」('19.7.1. 시행)
- 일반체당 상한액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 「체당금 상한액 고시」('20.1.1. 시행)
- 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 「임금채권보장법」 개정('21.10.14. 시행)

□ 정책·관행의 변화

- 체당금 지급범위 확대(출산전후휴기간 중 급여 포함) 및 체당금 수급계좌 보호('20.12월)
- 소액체당금 청구 방법을 온라인, 팩스로 가능하도록 개선('20.8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체당금 상한액 인상을 통한 체불청산 확대*
 * ('18) 3,740억원 92,376명→('19) 4,599억원 100,085명→('20) 5,797억원 110,177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❸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 체불근로자의 권익구제 기능 강화에 있어 성과
- 상습·과다 임금체불 사업주 등에 대한 임금체불 제재 강화 필요

□ 향후 과제

- 임금체불 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1. 노동권	⑰ 공정임금체제 확립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노사협력정책과
과제목표	• 공정임금체제 확립으로 차별 개선		
주요 내용	•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임금체제 확산 •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의 적용 사업장 확대(지방공기업 등 추가) 및 임금분포공시제와 연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추진 • 공공기관의 임금체제를 직무중심 체계로 개편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AA 대상을 300인 미만 지방공사·공단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중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고평법 시행령」 개정('19.1.1 시행)
- AA 전체사업장에 '남녀 근로자 임금 격차 현황 및 원인 분석' 제출 의무 부과 「고평법 시행규칙」 개정('20.1.1. 시행)

□ 정책·관행의 변화

- '16년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36.7%로 OECD 23개국 중 1위('16년 기준)였으나, '20년에는 31.5%로 하락하며 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매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매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음
- 민간기업에 대해 AA 대상사업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AA 제도는 경영평가보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고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도 낮으므로 기관장 및 임원들의 AA 제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및 인사평점 반영 등 추진 필요

□ 향후 과제

-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임금체제 확산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 필요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1. 노동권	⑱ 장시간 근로 개선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과제목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여 ‘일·생활의 균형’ 실현		
주요 내용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명확화하고, 법정근로시간 적용대상 확대 -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최소화 - 주 52시간 근로 정착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 장시간 근로 업종과 특례업종 등 예외 부문을 중심으로 지도·감독 확대 - 포괄임금제 남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감소분을 기업이 보전할 경우 기업의 보전금액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마련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18.3.20. 공포) - 주52시간제 보완 「근로기준법」 개정('21.1.5. 개정, '21.4.6. 시행) - 주근로시간 단축형 신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18.7.1.)

□ 정책·관행의 변화

'21.7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52시간제 적용하여 장시간 근로 개선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감소분을 기업이 보전할 경우 보전금액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함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에 기여 * ('16.) 2,052시간→('17.) 2,014시간→('18.) 1,986시간→('19.) 1,978시간→('20.)1,952시간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 부분까지 확대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적용에 일부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존재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법정노동시간 단축등의 성과
- 노동시간 관련 정책 방향은 노동자 건강권의 관점에서 봄이 타당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받는 노동자의 주간 노동시간이 산업별 평균 노동시간보다 높은 사례가 제조업, 정보통신업, 도매소매업,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등 다수 발견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 향후 과제

- 시간외 수당 등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키고 적법하지 않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도는 장시간 노동과 강제 노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사회서비스, 사무직, IT 업종에서 남용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과 함께 장시간 노동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 마련
- 노동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노동자가 생애주기와 필요에 따라 자신의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근로시간 선택제’ 도입모색
-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은 단시간 노동을 늘리는 효과에 그치고 있으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일하는 시간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마련
- 적용 최저임금 현장 안착화와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 및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1. 노동권	①9 일·생활 균형 근로문화 확산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과제목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여 ‘일·생활의 균형’ 및 ‘시민의 휴식있는 삶’ 실현		
주요 내용	- 근로시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초과근로를 적립해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로 대체·활용 가능한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도입 - 휴일·휴가제도 개편, 근로문화 개선 등 노동자 휴식권 보장 - 노동자의 상황(육아, 돌봄, 학업, 훈련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추진 * 단축사유 범위, 사용자 의무 및 거부 사유, 전일제 근로 복귀권 등 종합 검토 -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 민관합동 ‘근무혁신 10대 제안’ 캠페인 등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근로문화 확산(연중) * ① 정시 퇴근 ②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③ 유연한 근무 ④ 연가사용 활성화 등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18.3월 공포) — ('20.1.) 300인 이상→('21.1.) 30~299→('22.1.) 5~29인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19.8.27. 공포) — 300인 이상, 공공기관('20.1.1.)→30~300인 미만 사업장('21.1.1.)→30인 미만 사업장('22.1.1.) - 공휴일 근거를 법정화하고 대체공휴일을 확대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2021.7.7. 제정, 2022.1.1. 시행]

□ 정책·관행의 변화

-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18.3월 공포) *('20.1.) 300인 이상→('21.1.) 30~299→('22.1.) 5~29인 - 공휴일법을 인사혁신처와 공동으로 제정하여('21.7월) 공휴일 근거를 법정화하고 대체공휴일을 확대

하여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강화

- '22.1월부터 5~29인 민간기업에 관공서 공휴일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라디오·신문·버스·지하철·ktx 등 광고 집중 추진('21.10~11.) 및 리플렛(10만부) 제작 배포('21.12.)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19.8.27. 공포) 및 시행령 마련('19.12.)
* 300인 이상, 공공기관('20.1.1.) → 30~300인 미만 사업장('21.1.1.) → 30인 미만 사업장('22.1.1.)
- 재택근무 종합매뉴얼 마련·배포, 온라인상담소 개설('20.9.)
* 재택근무 도입·운영지원을 위한 도입절차, 인사·노무관리 방안, Q&A, 컨설턴트 상담 등 제공
- 중소·중견기업의 재택근무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확대('20년 212개소 → '21년 400개소)
- 중소·중견기업의 일·생활 균형 자발적 참여를 위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확대('19년 45개소 → '20년 100개소)
* 정기근로감독 면제, 정부지원 사업 참여 우대, 대출금리 우대,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17개 시도별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 운영 및 제5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21.11.) 등 개최
-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 광고 제작 및 송출
* ▲ TV광고, ▲ 라디오 송출, ▲ 일간지 지면광고(이상 '21.8~9.), ▲ 옥외 광고('21.8~10.)
-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근로자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21.8월) 및 영상·사진 공모전 실시('21.10.), 우수기업 공모전 등 추진('21.11.)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완료(2020.1.1. 시행)등으로 '과제완료'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노동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 개선으로 '일·생활의 균형' 및 '시민의 휴식있는 삶' 실현되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확대 적용
- 근로시간단축근무제는 0.5%(2017년)에서 1.9%(2020년)로 활용률 저조
- '일·생활의 균형' 및 '시민의 휴식있는 삶' 실현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근로시간 선택권 보장 필요

□ 향후 과제

- 개선된 제도가 노동현장에서 시행 및 정착화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① 공공부조 혁신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제목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비수급빈곤층 해소 등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주요 내용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의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19.1.~)
- 장애가 심한 장애인 수급권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1.~)
- 생계급여 제도개선 방안 시행
 - 근로연령층 대상 근로소득 공제 30% 적용
 - 부양비 부과 완화(아들·미혼 딸 30%, 기혼 딸 15→10%)
 - 수급자 재산기준(기본재산공제액, 주거용재산 한도액)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방안 마련 등 포함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 '21년 노인·한부모 가구, '22년 그 외 가구 포함 전면 폐지
- 노인·한부모 포함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폐지('21.1.~)
- 그 외 가구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기 완결('21.10.~)

□ 정책·관행의 변화

- '18년 소득분배악화 상황에 대응,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기 시행('19.1.~)
-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5.16, 국가재정전략회의)을 통해 장애가 심한 장애인 수급권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1.~)

- 생계급여 제도개선 방안 시행('20.1.~)
 - 근로연령층 대상 근로소득 공제 30% 적용
 - 부양비 부과 완화(아들·미혼 딸 30%, 기혼 딸: 15→10%)
 - 수급자 재산기준(기본재산공제액, 주거용재산 한도액) 완화 등
-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수립('20.8.)
 - 노인·한부모 가구 대상('21.), 그 외 가구 포함 전면 폐지('22.)
- 노인·한부모 포함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폐지('21.1.~), 당초'22년 예정이었던 그 외 가구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기 완결('21.10.~)
 - 단, 수급(권)자의 부모 또는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1억초과), 고재산(9억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통해 생계급여 25.9만명, 의료급여 8.6만명, 주거급여 68.6만명 신규 지원('17.11월~'21.9월 기준 누적)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빈곤의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된 점은 인권실현의 책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이는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부양책임이 개인이 아닌 국가에 있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완전한 국가 책임 달성을 위해서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가 요망됨
- 또한 최근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급여의 낮은 수준과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은 빈곤의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아울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라 빈곤의 사각지대가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함

□ 향후 과제

-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기준 상향 조정
- 재산의 소득환산시 기본재산공제액 대폭 상향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른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 효과 점검 및 후속조치 마련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②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보건복지부		시민연금정책과
과제목표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신규 가입률 제고 및 가입 촉진 활동 강화 - 사회보험 신규가입률 제고 및 일용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		
주요 내용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위주 제도 개선 - 지원 대상 월 보수 인상 및 지원 수준 확대 -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 연계·활용 강화, 찾아가는 가입서비스 지원, 미가입 사업장 발굴 등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 촉진 - 사회보험 가입 촉진 활동 강화 - 지자체 등과 사회보험 가입촉진 협약 체결 -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업종·직종 등 가입촉진 및 타겟 홍보 -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보험 신규가입률 제고, 일용근로자 등 취약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촉진 - 대시민 사회보험 인식 제고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지원대상 월보수 인상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등에 관한 고시」(‘18.12.26.), (‘19.12.27.), (‘20.12.28.) 개정 - 보건복지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18.12.26.), (‘19.12.31.), (‘20.12.29.) 개정 ’21년부터 예술인(1월), 특고(7월) 고용보험료 지원 시작(근로자와 동일하게 80% 지원)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등에 관한 고시」(‘20.12.28.), (‘21.6.29.) 개정, - 보건복지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20.12.29. 개정) - 건설일용근로자 시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 「시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시행(‘18.8.1.), 전면시행(‘20.8.) - 일용·단시간근로자 시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 - 사업장 가입기준에 ‘일정소득이상’ 추가(「시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21.6.22., 시행 ‘22.1.1.) 「시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1.12.8. 제정, ‘22.1.1.시행)

□ 정책·관행의 변화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보수요건 완화로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월 보수수준 상향('18년 : 190만원 미만 → '19년 : 월보수 210만원 미만 → '20년 : 215만원 미만 → '21년 220만원 미만)
- '전시민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1월), 특고(7월) 고용보험료 지원 시작(근로자와 동일하게 80% 지원) 및 관련 고시 개정
- 사회보험 가입 촉진 활동 강화
 - 지자체와 업무협약(보험료 지원제도 안내,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촉진(계속) 및 취업 포털(알바몬 등) 사회보험 가입 정보 제공
 - 취업포털(알바몬 등) 사회보험 가입 정보 제공
 - 전국 48개 지역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총 294개 유관기관 참여), 집중홍보기간 운영(5월, 10월), 민간기업(네이버)과 비대면 온라인 홍보 및 모바일 지원 안내 추진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수준 상향 및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인상*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 * 지원수준 : ('17년) 최대 60% 지원 → ('18년) 최대 90% 지원
 - * 월 소득 기준 : ('17년) 140만원 미만 → ('18년) 190만원 미만 → ('19년) 210만원 미만 → ('20년) 215만원 미만 → ('21년) 220만원 미만
 - ** ① 지원신청일 이전 (기존)1년간 → (완화)6개월간 시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지원
 - ② 소급 직권가입된 일용근로자는 사용자가 기한 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신규가입자 지원인원 증가
 - '18년 24만명에서 '21년 80만명으로 신규가입자 지원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두루누리 지원) 제도 시행('12.7.) 이후 184만 개 사업장, 780만 명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 지원('21.11월 누적기준)
 - * ('18년) 사업장 83.5만 개소, 221만 명, ('19년) 사업장 92.5만 개소, 252만 명, ('20년) 사업장 91.8만 개소, 240만 명, ('21년) 사업장 47만 개소, 75만 명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중 시민연금사업장 가입 비율 지속 증가
 - * ('18.) 21.5% → ('19.) 20.5% → ('20.) 32.5% → ('21.12.(예상)) 48.0%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사회보험 대상자 및 지원 확대 성과. 단 지원대상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장 기준을 완화할 필요

□ 향후 과제

- 보험 가입대상 및 보험료 지원대상 지속적 확대
-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고용기피를 하거나 고용형태를 변경할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형태 취업자에 대해서도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노력 필요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③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산재보상정책과
과제목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가입요건 완화 등을 통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주요 내용	- 고용보험 고령자 및 자영업자의 적용 및 가입요건 완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경비원 등 도급사업)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현재는 65세 이전부터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인정 - 자영업자 창업 후 1년 → 5년 이내로 가입기간 연장 - 특수형태근로자, 예술인 등 적용제외 대상자의 고용안전망 적용 확대 -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부터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 - 산재보험 특고 적용제외 사유제한 및 적용직종 확대 -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일정기간 이상 휴업 등 특정사유에 한해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고위험, 낮은 근로조건 등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우선으로 특고 산재보험적용 직종 확대 - 산재보험 1인 자영업자 특례 적용업종 확대 1인 자영업자(자동차정비업)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당연적용 직종 지속 확대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19.1.15. 시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21.7.1. 시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당연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21.7.1. 시행) -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징수법 하위법령 개정('22.1.1. 시행)

□ 정책·관행의 변화

- 특고 고용보험 당연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21.1.5.개정, '21.7.1. 시행) * ('21.7월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 입법예고('21.3.18~4.29), 규제심사(5.14) 및 법제심사(5월 4주) 등을 거쳐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21.6.8)* * (주요내용) 적용직종, 적용제외 소득기준, 보험료율,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다만, 농·임(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의 상시 5명 미만 사업은 임의가입 가능) 및 모든 건설공사로 대상 확대('18.7.1.) - 건설기계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레미콘 1개 직종에서 지게차,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등 전체 27종으로 확대('19.1.1.)

-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방문교사 등 5개 특고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20.7.1.)
- 중소기업사업주* 및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20.1.7.)
- * (기존) 50인 미만 사업장 → (개선)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 허용
- ** (기존) 12개 업종 한정 → (개선) 모든 업종 가입 허용
-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기반 마련
 - (하위법령 개정) 고용보험법 및 징수법 하위법령 개정(공포 '21.12.31., 시행 '22.1.1.)
 - (사전안내)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간담회·교육 등을 통해 신고 사항 및 방법 등 안내·교육
 - * [플랫폼] 플랫폼별 개별 설명회(58회), 플랫폼사업자 간담회(12.7.~8.), 실무자 교육(수시), 전산컨퍼런스(12.15. 등)
 - [사업주] 대리운전연합회(9.28., 11.14., 12.14. 등), 배달사업주 협회(12.27. 등)
 - [종사자] 라이더유니온(12.18.), 민노 서비스연맹(12.18.) 등
 - (지원금 신설) 플랫폼 보험사무비용 지원금 신설(28억원)
 -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플랫폼 노무제공 정보를 근로복지공단 전산망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21.7.1.)
 -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 가능하도록 신청사유를 엄격히 제한('21.7.1.)
 - 적용제외 사유제한에 따른 실적용자 증가로 인한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위험·저소득 특고 6개 직종* 대상 보험료 50% 한시적(1년) 경감 시행('21.7.1.)
 - *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 중소기업사업주의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임의가입 허용('21.6.9)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확대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중장년의 일자리 안전망 강화
- *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혜자(명) : '18년 56,223 → '19년 63,811 → '20년 80,941 → '21년 96,180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 * 자영업자 가입자수(명) : '17년 16,455 → '18년 18,265 → '19년 22,529 → '20년 30,071 → '21년 36,859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고용보험 가입자는 577,035명('21.12.31.기준)
- 실적용자 확대에 의한 특고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
 - 보험료경감: 특고 29.5만명의 보험료 128.5억원 경감
 - 소급징수면제: 특고 4.4만명의 보험료 13.8억원 소급징수 면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향후 과제

- 지난 5월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 그러나 산재보험은 가입자와 기업이 공동 부담하는 구조로 이뤄짐. 플랫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주체는 아직 미정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④ 고용산재보험 보호 수준 강화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산재보상정책과 퇴직연금복지과
과제목표	고용산재보험 보호 강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주요 내용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및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 공적퇴직연금제도 도입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한 「고용보험법」 개정('19.10.1. 시행) - 출퇴근 재해 소급입법에 따른 취약계층 산재노동자 보상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0.6.9. 시행) - 질병관리청 역학조사 결과공유 근거 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0.12.) - 산재노동자 직업훈련 신청기간을 확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21.2.1. 시행) - 사업주 참여와 협력을 통한 원활한 원직장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를 도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2.1. 시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22.4.14. 시행)

□ 정책·관행의 변화

- 신속·공정한 질병판정을 위한 인정기준 및 절차 개선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도입으로 산재노동자 치료비 부담 완화 및 보장성 강화('21.6.) - 원직장복귀 지원제도 안내 등을 위한 사업주 컨설팅 지원기간 확대(3개월→6개월)(('21.6.) - 사업주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체인력지원금 등의 모바일 지원시스템 도입('21.12.)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산재보험 보장성 및 신속성 강화
 - 산재보상 보장성 강화로 질병 처리건수 및 승인율 증가
 - * 질병 처리건수(건) : ('18.)12,975 → ('19.)18,266 → ('20.)18,634 → ('21.)24,871
 - * 질병 승인율(%) : ('18.)59.6 → ('19.)60.6 → ('20.) 61.4 → ('21.)63.1
 - (판정위원회 운영) 신속(일괄)심의 기준 마련 등을 통한 회의횟수 증가 및 심의신속성 제고, 심의 제외질병 확대 추진을 통한 회의운영 개선
 - * 심의건수(건) : ('18.)10,006 → ('19.)14,206 → ('20.)14,422 → ('21.)17,374
 - * 회의횟수(회) : ('18.)1,058 → ('19.)1,517 → ('20.)1,525 → ('21.)1,611
 - * 심의기간(일) : ('18.)29.4 → ('19.)39.9 → ('20.)35.3 → ('21.)28.43
-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지속 상승('19년 65.8% → '20년 66.3% → '21년 67.3%)
- 사업주 컨설팅 확대, 모바일 시스템 도입 등으로 산재노동자 원직장복귀율 1.4%p 향상('20년 43.2% → '21년 44.6%)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합리적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마련으로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및 역학조사 생략대상 확대, 역학조사 수행기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및 원직장복귀율 확대 등 아직 개선사항 및 성과가 미비한 상황에서 '과제완료'로 처리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일정정도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산재보험 보장성 및 신속성 강화 성과
- 국내 산재 발생율(재해율)은 2019년 0.58%로 독일, 캐나다 등의 재해율이 3% 전후인 것을 비교할 때 매우 낮은 발생률을 보이는데 반해 산재사망 만인율은 1.08로 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산재은폐가 어려운 사망율은 가장 높은 수준인데 반해, 일반 산재의 재해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산재은폐가 상당한 수준임을 의미함. 이에 산재은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 필요

□ 향후 과제

- 합리적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마련으로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및 역학조사 생략대상 확대, 역학조사 수행기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 수요자 중심 재활 및 재활중기계획 수립 및 재활시스템 개편 추진
- 산재노동자의 재취업 활성화 및 원직장복귀 촉진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⑤ 수돗물 수질기준 관리 및 개선
추진부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이용기획과, 상하수도연구과
과제목표	수돗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하고 노출수준 및 인체위해도 등을 평가하여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지속적 관리강화		
주요 내용	- 전국 주요 정수장 수돗물 원·정수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 - 지역분포 및 처리공정 등을 고려한 70개 정수장에서 미량유해물질 65종 조사 - 조사항목의 노출수준 및 인체위해도 평가 등을 통해 수질기준/감시항목 등 관리기준 마련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고시 개정

□ 정책·관행의 변화

- 수계별 주요 70개 정수장 원·정수에서 조류독소 및 소독부산물 등 총 65개 항목 미량유해물질 함량 조사 - 수돗물 중 미량유해물질 분석을 위한 총 10개 그룹의 분석법을 국제수준에 부합되게 확립 - 노출수준 및 인체 위해도 평가 등을 통한 관리기준 및 수질관리방안 제시 - 우선관리후보물질에 대한 관리기준 및 효과적 정수처리방법 등 관리방안 제시 - 위해도 평가에 기반한 수질감시 후보물질 선정 및 기준 설정안 마련 - 먹는물 수질감시 강화 및 정수장 운영 관리 향상 방안 제시 - 조류독소, 맛냄새물질 및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관리주기 강화, 시험분석법 개선 - 향후 조사항목의 확대,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 활성탄 재생주기 단축 및 기존 공정운영 최적화 등 선제적 관리 방안 제시 - 원수 및 정수공정의 신규물질 탐색을 위한 추정/비표적 조사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신규물질 탐색 강화를 위한 비표적 분석 기반시스템 구축·운영 -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수질자료 등 DB 구축기반 마련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예산 및 투입인력의 한계로 조사지점 및 항목 확대에 제한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먹는 물 수질기준(1종) 추가 설정 및 수질감시항목(4종) 확대 및 안전관리를 확대하였으나 수질감시항목의 확대와 평가결과의 관리가 필요함
-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고시 개정 및 3종의 미량유해물질(Nitrosamines, Vanadium, Quinoline) 신규 수돗물 수질감시항목 설정안으로 수질관리 강화기반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나 미량유해물질도 유역별 상수원 입지별로 차별적 조사와 평가를 진행하고 전국 정수장 수돗물 조사외에도 유역별 특정 환경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먹는물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조사대상 선정기법 고도화
- 장래 수질기준항목 또는 감시항목 설정에 대비한 정수처리 및 시험분석 기반 구축이 필요
-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경로, 제거효율 평가 등 조사 내실화
- 지속적인 신규 조사항목 및 지점 등의 확대로 먹는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제도 개선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⑥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강화
추진부처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과제목표	• 권역별 수질관리계획 수립·추진으로 수질관리 강화		
주요 내용	• 권역별 수질관리계획 수립 - 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오염원의 입지를 제한하고,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의 차등화를 통해 수질관리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수계별 유역특성을 고려한 중권역별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완료
- 물환경관리계획의 이행평가 등 점검 실시
- 수질측정망 및 유량조사망 측정자료 연계체계 구축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수질 및 유량 연계활동 지점 650개소 도출
- 중권역별 물환경관리계획 대책내용의 이행점검(총 42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❸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수계 내 유역특성을 고려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32개 중권역별 적합한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물환경관리 계획의 이행평가 등 점검을 실시하고 수질측정망 및 유량조사망 측정자료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주요 이행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 향후 과제

-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이행평가(매년)
- 차기 물환경관리계획 수립('22년)
 - 계획기간(~ '21년)이 만료되는 중권역 대상으로 차기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2. 적절한 생활수주에 관한 권리	⑦ 안전한 물환경을 위한 물관리 일원화
추진부처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물이용기획과 수질관리과 수생태보전과 생활하수과
과제목표	수량·수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시민 물복지 향상		
주요 내용	'18년 물관리일원화 추진 '22년까지 취수원 다원화, 광역·지방 상수도 통합으로 안정적 물공급 '22년까지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1,717km), 물순환선도도시 5개소 조성, 하수 재이용(1.1억톤/년 이상) 등 상시 가뭄 극복 물순환 체계 구축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제·개정('18년 6월) *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하천관리 기능 이관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20년 12월) - 수도법 개정 - 물순환 회복 조례 제정('18년 4월, 광주, 대정 등 5개소) - 저영향개발(LID) 기법 시공가이드라인, 행정지침 마련('20년 12월)

□ 정책·관행의 변화

-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가수도기본계획(안)을 마련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이행계획 수립 -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확정 -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역단위 공급계획 마련 -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 마련 - 시·도 및 소유역별 물순환 관리목표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이행평가기준 마련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쏘 사업대상지 착수완료 및 추가 신규사업 지원(공모사업 14개소, '20년 4월) 등 사업추진
* 총 146개 사업(관망 112개소, 정수장 34개소) 착수완료
- 구미·대구성서산단 공공하·폐수처리시설 후단에 미량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수질개선시설 설치 추진
* '22년 설계비 12.81억 원 확보
- 물순환 선도도시(김해, 광주, 안동, 대전) 기본 및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20년, 하반기)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해당 사업과 관련한 목표와 주요 이행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제·개정('18년 6월)과 하천관리 기능 이관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량-수질 물관리 일원화에 일정정도 기여한 성과는 있으나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미흡했고 일원화 이후 제기된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 소통과 논의를 통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확정으로 30년 넘게 지속되어 온 낙동강 물 문제 해소의 전기를 마련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을 통한 향후 10년의 통합물관리의 기반을 마련함
- 노후상수도시설을 정비하는 정책과제의 추진은 누수를 저감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됨. 노후관망정비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은 주민의 만족도를 정량적으로 평가가능하므로 사업의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사업효과를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취수원다변화 사업 추진(~ '28년, 계속)
-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 정상추진('17년 ~ '24년, 계속) 및 추가 공모사업 선정·추진('22년 ~, 계속)
- 산단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수질개선시설 설치사업 추진('22년 ~ '25년, 계속)
-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의 성과 도출을 위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공유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⑧ 물관리 위해관리체계 강화
추진부처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과제목표	• 물환경기준 선진화, 수질 유해물질 환경 배출 최소화, 녹조 저감 및 발생 최소화로 공공수역 안전 확보 등으로 하천·호소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확보		
주요 내용	• 물환경기준 선진화 － 하천 유기물질 목표기준에 TOC 도입 등 유기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 강화 － 카드뮴, 수은, 납 등의 건강보호항목을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 • 수질 유해물질 환경 배출 최소화 － 환경영향을 고려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적용 － 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 고도화 및 누출사고 예방 － 산업단지 미량유해물질 조사연구 • 녹조 저감 및 발생 최소화로 공공수역 안전 확보 － 영양물질 유입 차단 및 적정수속 확보로 사전예방 － 녹조 감시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조류제거시설 및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개정('21년 12월),

☐ 정책·관행의 변화

• 조류경보제 정상운영 및 먹는 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수장 일체점검 실시 • 미량오염물질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물환경기준 선진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관계기관 사전 대응력 제고를 위한 조류경보제 예측정보 대시민 서비스 확대('21년 5월, 8지점, 물환경정보시스템 공개)
- 조류경보제 정상운영(주요 상수원 및 친수활동구간 등 29개소)
- 먹는 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수장 일제점검 실시('18년 → 101개소, '19년 → 102개소, '20년 → 102개소)
- 중·소규모 정수장 기술지원('18년 → 30개소)
- 소규모수도시설 기술지원('19년 → 100개소, '20년 → 124개소) 실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해당과제의 정책목표와 주요 이행내용의 보완 필요
- 물환경기준 선진화를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위해성 등 관련연구 자료를 축적하여물관리 위해관리체계 강화에 기여함. 다만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이 사후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의 효과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전예방 대책 및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로 최근 3년간 조류경보 대발생 미발령* 및 조류발생으로 인한 피해(먹는물 안전, 친수활동 제약)사례가 미발생한 것은 성과임. 다만 조류독성의 생태계축적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의 재설정 관련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오염물질 배출원 추적 및 조기대응을 위한 미량오염물질의 위해성 등 관련연구 자료를 축적하였고 배출 허용기준의 전환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향후 과제

- 녹조감시 지점 확대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조류발생 피해 예방
 - 녹조우심지역 상류 수질감시체계 구축, 조류경보제 운영개선 등
- 수계별(한강, 금강, 영산강) 산업단지 미량유해물질 조사 및 인벤토리 구축 연구용역 추진('22년 2월 ~ '23년 3월)
 - 미량오염물질 배출원 DB 구축연구 등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⑨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과제목표	농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주요 내용	- GAP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인증품 판로 확대, 농업인·소비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한 인증 확대로 대시민 안전농산물 공급 -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 독소 등) 상시 조사관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 사전 예방 - 축산물 생산단계(농장·도축장 등) HACCP 활성화, 안전성 검사 및 축산물 위생 취약시기(설·하절기·추석 등) 도축장·집유장에 대한 위생감시 실시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생산단계 유해물질(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 안전성조사로 부적합품의 유통을 사전차단 - 재배환경 안전성 실태조사를 통한 잠재적 유해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위해평가 기반 마련 - 매년 식육·식용란에 대한 축산물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확보 추진 - GAP 인증 농가에 대한 (판로)지원사업, 교육·홍보, 민관협업 등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GAP) 생산·소비 홍보 강화와 유통업체 협업 등으로 GAP 인증 농가 지속 증가 * GAP 인증농가 : ('18.) 87(8.3) → ('19.) 99(9.7) → ('20.) 114(11.3) → ('21.) 119(11.6) (농산물) 농약 안전사용 교육·홍보 등 사전 예방적 지도를 추진한 결과 부적합률 감소 * 연도별 부적합률: ('17.) 1.9% → ('18.) 1.3% → ('19.) 1.2% → ('20.) 1.0% → ('21.) 1.0% (축산물) 농장·도축장·집유장 HACCP 운영을 내실화하고, 안전성 검사와 위생감시를 통해 생산단계 안전관리에 기여

* ('18년) 미생물 : 115,605건/잔류물질 : 130,362건 / ('19년) : 미생물 : 114,210건/잔류물질 : 143,360건/ ('20년) 미생물 : 114,640건/잔류물질 : 98,263건
 ** ('18년) 도축장 110건, 집유장 45건 / ('19년) 도축장 116건, 집유장 47건 / ('20년) 도축장 115건, 집유장 45건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잔류농약,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의 안전성 조사로 식품으로 부적합한 농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먹거리의 안전성을 제고함
-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를 통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 안전한 농약사용 문화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진행하여 연도별 부적합률이 감소하여 먹거리 안전성을 제고함
- 축산물은 도축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HACCP운영을 내실화하고, 안전성 검사와 위생감시를 통해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먹거리의 안전성을 제고함

□ 향후 과제

<GAP>

- 유통업계와의 지속적 협업, 영양(교)사·소비자 단체 교육 등 다양한 교육·홍보로 인증확대 추진
-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단체인증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내부심사자* 지정 의무화 및 활동 활성화
 * 단체인증을 받은 집단의 내부심사자가 해당 집단의 인증기준 준수와 인증품 품질향상을 위해 단체 구성원에 대해 지도·관리 활동을 하는 자

<농산물>

- 농업인의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을 통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지속 추진

<축산물>

- HACCP 인증농장 확대를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 및 인증농가 대상 인센티브 강화 추진
- 생산단계 축산물의 미생물·잔류물질 등 안전성 검사와 축산물 작업장(도축장·집유장 등)에 대한 위생 감시를 실시하여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노력 지속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강화
추진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농촌사회복지과
과제목표	먹거리 체계의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먹거리 관련 다양한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및 지역단위의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주요 내용	- 국가 및 지역단위 먹거리 종합전략(먹거리계획) 수립 (국가)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단위 먹거리 종합적 대응 전략 마련 (지역) 지역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함으로써 신선·안전한 먹거리 공급, 중소농 소득 안정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지역 먹거리계획 추진 근거 마련('21년 12월 9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

□ 정책·관행의 변화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추진
 - 민관실무단 구성·운영('18년 2월 ~ 3월) 및 관계부처(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 등) T/F 구성·운영('18년 5월 31일 ~)
 - 관계부처 합동 「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 수립 및 발표('21년 9월 16일, 3대 추진 전략, 9대 중점 과제)
 - * (추진 전략) ① 시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②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③ 먹거리 접근성 보장
-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
 - 선도지자체 9개소 선정('18년 2월) 및 선도지자체 대상 워크숍 개최('18년 6회/'19년 2회)
 -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원 지자체 선정('20년 1월)
 - 푸드플랜 운영 지원 지자체 선정('20년 5월)

- 지역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19년 2월 13일, 9개소/'20년 5월 13일, 8개소)
 - * 계획수립(18개소), 안전·품질관리(14개소), 기획생산체계 구축(16개소)
-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 기본 계획 수립 완료('21년 1월 22일)
- '21년 ~ '25년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 대상 선정(4월 7일 10개소)
- '21년 푸드플랜 실행전략 수립 교육(푸드플랜 아카데미) 운영((5기) 4월 1일 ~ 5월 7일, (6기) 6월 24일 ~ 7월 30일)
 - * (5기) 강원(강릉, 원주), 충북(청주), 충남(천안, 태안, 논산), 경북(영천, 의성)/ (6기) 인천(강화), 경기(남양주), 충북(제천, 영동, 증평), 전북(전주, 정읍, 임실), 전남(여수), 경남(양산)
- 지역 푸드플랜 추진 지자체 대상 이행점검 추진(8월 ~ 11월)
 - * (점검방법) 현장 컨설팅(aT, 전문가 합동), 비대면 회의, 서면 점검 등
- 지역 먹거리계획 추진 근거 마련('21년 12월 9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
- 2021 로컬푸드 지수 측정결과 발표 및 우수 지자체 시상식 개최(12월 14일)
 - * (참석) 우리부, aT, 소비자시민모임, 우수지자체/ (장소) 대전 ICC호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지역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19년 2월 13일, 9개소/'20년 5월 13일, 8개소)
 - * 계획수립(18개소), 안전·품질관리(14개소), 기획생산체계 구축(16개소)
- '21년 ~ '25년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 대상 선정(10개소)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지역 먹거리계획에 대한 지자체, 농업인, 주민 등 실행주체들의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21년 현재까지 지역푸드플랜을 추진한 지자체가 111개소에 달한 것처럼 지역단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 및 특성화된 프로그램(농림사업 패키지, 푸드플랜 협의회, 아카데미) 등의 실행이 확산되고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지역별 먹거리계획 추진 근거 마련을 통해 공공급식 기반이 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푸드플랜 활성화 인프라를 마련함. 지역별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구축되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나 먹거리 거버넌스 기구 설치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지역내 먹거리 여건과 이슈에 맞게 특색있는 먹거리계획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수립, 실행 역량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확대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강화
추진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과제목표	- 시민 영양 안전망 확충 및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 구축 -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영양 보충지원), 농산물 소비·유통 활성화 연계 강화(로컬푸드 활성화) 및 식생활교육 연계(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주요 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에 현물(채소, 과일, 우유 등) 지원방식의 '농식품바우처'로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 강화 등 사회적가치 제고와 국내산 신선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 구축 * 국정과제 83-4.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심의(협의) 완료 : '18년 11월 9일
 - (심의내용) 사업 타당성, 중복성, 법적근거, 바우처 전달체계 등 사업추진계획
 - (심의의견) 취약계층에 대한 현물지원 방식의 농식품바우처를 통해 농식품 소비를 확대하고 영양 섭취 및 식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 인정

□ 정책·관행의 변화

- 농식품바우처 타당성, 사업설계안 연구용역
-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심의(협의) 완료
- 농식품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도입·운영
-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2회, 학술대회 2회, 정책포럼 1회 개최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농식품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도입·운영
 - 제도도입 계획 수립·시범사업 지원체계 구축

- 2020년 4개 지자체 1만 5천 가구에 4개월간 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확대 지원
 - * ('20년) 4개 지자체, 1만 5천 가구, 4개월 → ('21년) 10개 지자체, 3만 3천 가구, 12개월
 - * 지원대상/금액 : 지자체 4개소의 저소득층(중위소득50%이하 가구)/1인가구 기준 월 4만 원
 - * 지원품목 : 채소, 과일, 우유, 계란, + 육류, 잡곡, 꿀(기존 4개 품목에서 '21.6월부터 7개 품목으로 확대)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보장받을 당사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업체계 개선의 지속 요구
- 바우처 판매처 및 지원품목의 다양화 검토, 전달체계 개선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농식품바우처의 지역별 수요증가에 따라 추가지원이 진행되고 바우처 지원의 재참여 의사가 96.3%가 될 정도로 사업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특히 건강평가 및 식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여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고 국내산 농산물의 수요기반과 소비를 확충함
-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농식품바우처지원은 위의 평가와 같이 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기여도가 높은 것에 비해 예산 확보의 문제로 사업의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임. 우리나라의 식품지원예산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농민신문은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지원제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규모가 매우 작다. 지난해 관련 예산은 총 2조6000억원이었다. 미국이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으로 대표되는 식품지원 프로그램에 지난해 103조29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내총생산(GDP) 1억원당 식품지원제도 예산을 비교해봐도 한국은 15만1000원으로 미국(42만6000원)의 35.4%에 불과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¹⁷⁾ COVID-19등 재난을 겪으면서 먹거리 사각지대 해소는 국가의 중요과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과제로 식품지원제도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경제적 취약계층에 신선 농산물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 지속 추진 및 본사업 도입 준비
- 농식품 지원정책의 언론홍보, 전문가 토론회 등 대시민 공감대 형성
- '23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반영 노력

17)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46760/view>. 최종검색일 : 2022.08.24.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⑪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부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유통정책과
과제목표	- 생산단계에서의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 생산 -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물량 확대(전년대비 500건) -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매년 30개소 이상 등록 추진) -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 제고를 통한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 - 이력제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 품목 확대 및 시스템 개선		
주요 내용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 지속 강화 및 HACCP 등록 확대 - 주요 패류 생산해역 위생관리 강화 -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조사 및 오염원 관리 - 항생제 사용 저감을 위한 백신개발 확대 - 수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까지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수산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원인 및 사고발생단계를 파악하고 문제 식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및 조치 등 피해범위를 최소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일반해역 위생관리 기준 마련(개정 '20년 7월 31일, 시행 8월 19일)

□ 정책·관행의 변화

-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패류 생산 일반해역에 대한 위생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
 - 패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오염우려 물질 및 조사해역 모니터링 지속 확대
 - * 조사항목 : '20년(42개) → '21년 ~ '22년(83개) → '23년(113개)/조사 해역 : '20년(64개) → '21년 ~ '22년(67개) → '23년(70개)
- 일반해역(67개해역)의 강우에 따른 패류채취 금지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추진
 - '20년(11개소) → '21년(11개소) → '22년(15개소) → '23년(15개소) → '24년(15개소) → '25년 ~ '26년(채취제한 시기 마련)
- 참조기, 생굴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수산물 위생 관리 및 모니터링의 지속 확대로 안전조사 부적합률 낮아짐
 - HACCP 등록 확대*로 양식장 위해요소 관리 강화하여, 양식장의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률이 낮아지는 추이**이며, 최근 3년간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율이 1%를 넘지않아 HACCP 정책 효과로 평가
- * HACCP 등록현황: '05년~'17년 155개소 → '18년 194개소 → '19년 237개소 → '20년 284개소 → '21년 354개소
- ** 수산물 안전성조사 부적합률: '19년 0.48% → '20년 0.48% → '21년 0.37%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생산자, 판매자 등은 이력제품 등록 시 유통 단계별 이력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감으로 이력제 참여에 소극적임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안전성조사와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식용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수산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함
- 패류 생산일반 해역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및 위생관리의 강화를 통해 시민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함
- 굴, 굴비 등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의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교육, 물품 및 인력 등을 지원하고, 챗봇을 개발하여 이력제품의 입고를 알리는 서비스 및 카카오톡 연계 교육 콘텐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이력제 참여업체의 업무 편의성을 향상함. 한편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는 시민의 알권리는 물론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안전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 향후 과제

-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수산물 안전성조사 및 HACCP 등록 확대(400개소) 추진
-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패류 생산 일반해역에 대한 위생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
 - 패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오염우려 물질 및 조사해역 모니터링 지속 확대
- 일반해역(67개해역)의 강우에 따른 패류채취 금지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추진
 - '20년(11개소) → '21년(11개소) → '22년(15개소) → '23년(15개소) → '24년(15개소) → '25년 ~ '26년(채취제한 시기 마련)
- 수산물 이력정보 관리 시스템을 개편하여 생산정보 중심의 이력관리로 참여율 제고
 - 수산물이력제 정보시스템과 수협위판정보시스템과 연계('22년 12월)하여 수산물 위판 시 입력하는 정보를 이력정보로 활용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⑫ 급식관리 공공성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추진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식중독예방과
과제목표	•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영양증진 기반 구축 – 안전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식품 제공으로 어린이의 건강증진 도모 • 만성질환, 섭식기능 저하 등으로 영양 불균형이 쉬운 노인의 삶의 질 향상 필요 • 음식점 위생개선을 통한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주요 내용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노인 등 건강 민감계층 급식시설의 위생안전·영양관리 지원 •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식품 판매환경 개선 • 음식점 영업자 중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을 신청하는 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등급을 지정하고 홍보하는 등, 제도 운영을 통하여 음식점 위생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노인·장애인 등 급식관리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19년 11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6조의3 신설,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등록 의무화 등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시행('21년 12월 30일) •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정('21년 7월)으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안전관리 지원 확대 기반 마련 • 『호텔 등급결정 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 개정 • 포장배달 위주 등급 지정업소에서 조리식품 포장지 등에 지정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21년 1월 28일)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제7조의4(위생등급의 광고)

□ 정책·관행의 변화

•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등록 의무화 등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7개소)의 운영확대를 통해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402개소) 급식관리 서비스 지속 제공(연중) • 배달음식 대상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음식·주방문화개선 협의체 운영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모든 시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36개소) 지속적인 확충으로 영양사 고용의무 없는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및 유치원(약 28천개소)등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
 - * 급식관리 지원 확대 : ('18년) 34,292개소, 64% → ('19년) 39,711개소, 75% → ('20년) 39,711개소, 75%
 - * 센터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지원율 : ('20년) 90% → ('21년) 99%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내 영양사 등 급식관리 전문인력 1,811명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 급식관리 전문인력 일자리(누계) : ('18년) 1,637명 → ('19년) 1,755명 → ('20년) 1,811명 → ('21년) 2,048명
- 전국 7개 지자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 요양·보호시설 등 급식 위생·영양관리
 -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지원현황(개소) : ('20년) 307개소 → ('21년) 402개소
-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기반 마련('18년)
 - 현장 맞춤형 컨설팅(1,656개소)
- 위생·영양교육 지원 어린이 현황 : ('20년) 123만명(92%) → ('21년) 115만명(99%)
- 영양사·위생사 등 전문인력 일자리 확대(전년 대비 237명 증가)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완료 및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등록 의무화로 어린이를 위한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함
-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을 제정('21년 7월)함으로써 아동·노인·장애인 등 먹거리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대상 급식관리지원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먹거리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음
- 위생등급 인지도 개선 홍보 강화 등 배달음식 중심의 등급제 확대 노력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 활성화를 꾀함

□ 향후 과제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서비스 지속 제공(연중)
-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
- 노인 뿐 아니라 장애인시설까지 사회복지급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신규 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사회복지 급식관리 서비스 지속 확대 제공(연중)
-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음식점 중심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확대
 - 지역 맛집, 음식특화거리 내 음식점, 배달음식점 우선 기술지원을 통한 위생등급 참여 독려
-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취약 음식점 기술지원 확대
 - 식중독 발생 우려 또는 위생관리 미흡 품목(김밥, 족발 등)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우선 기술지원
- 소비자 중심의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⑬ 주거권에 대한 인식 및 국가 역할 정립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과제목표	• 주거복지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시민 주거권 보장		
주요 내용	• 시민의 주거권 신장을 위한 국가 역할 정립 -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상응하는 국가의 역할 강조 •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주거복지대상자가 정보부족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거복지재단, 주거복지포럼, LH 주거복지센터, 지자체 등을 통해 교육 및 홍보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PC·만화방 거주자, 아동 빈곤가구 등을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침 개정 '19. 7.)

□ 정책·관행의 변화

- 국가에서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 이행
 - ※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 비주택거주자 전수조사
- 쪽방·노후고시원거주자·대학생·사회초년생·청년 신혼부부·저소득 고령자 등 대상별 맞춤형 주거복지 정보 제공
- 주거복지 안내자료 제작 배포 및 현장 상담인력 교육강화 등 취약계층 등 수요자 정보접근성 및 질적 수준 제고
- 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진입장벽인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용을 종합 지원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쪽방·반지하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합동 전수조사로 공공임대 입주희망 6천6백 가구 발굴 및 5천5백 가구 입주 지원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시민의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를 국가의 책무로 설정하고 해당 정책과제를 설정한 것은 바람직함. 다만, 주요 이행 내용들이 저소득층 취약계층, 주거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적절한 주거지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을 목표를 달성하기 미흡함. 청년과 신혼부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전체 시민의 주거권 보장이라 보기에는 어려움. 모든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완되어야 함
- 2021년 기준 통계청의 주택총조사에서 주택이외의 거처, 숙박업소, 기숙사 및 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가구수만을 합산하였을 때 130만 호에 달하지만¹⁸⁾, 본 정책과제에서 공공임대로 입주를 지원한 가구는 5천여 가구로 매우 미흡한 실정임
- PC·만화방 거주자, 아동 빈곤가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지하층) 거주자 등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포함하고, 수급자의 경우 자산검증을 생략하여 신속하게 주거 공간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적극적인 조치임
- 또한, 찾아가는 주거상담을 통하여 주거 지원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쪽방·노후고시원 등 취약계층 거주자 방문조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주거지원에 대한 상담을 지원, 이주희망자를 조사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 것은 국가의 실현의 책무를 한 것임.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을 하는데 있어 장벽요소로 작용하였던 보증금, 이사비용, 생필품을 지원한 것은 형식적인 지원에서 탈피한 적극적 행정 사례임
- 다만,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가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점검하여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함. 전문가 B는 그 요인을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보고 있음. 주거취약계층은 전역에 걸쳐 존재하기에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상담 시스템이 전체 지자체로 확산되어야 하고, 주거복지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전문적 교육이 필요함

□ 향후 과제

- 정책과제의 본래 목표는 모든 시민의 주거권 보장인데 주요 이행내용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모든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현재 주거빈곤가구수에 비추었을 때 현재 주거비용 및 주거 공간 지원의 규모 대폭 확대 필요
-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점을 확인하고 실효성 확보
-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 찾아가는 주거 상담,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 수요를 파악하고 정보 제공과 입주 지원 등적극적 행정 기조 유지 및 확산

18) 통계청. 2021년 주택총조사.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⑭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
추진부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과제목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정비함으로써 노후·불량주거지의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정착에 기여		
주요 내용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비 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정되는 지구에 대하여 기반 시설비 등 지원 - 원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제도개선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한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 보호를 위한 임대주택건설 등 특례 규정 도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하여 규정을 명확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 건축물 안전조치 가능하게 조정,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정비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을 완화 등

□ 정책·관행의 변화

- 도시활력 증진, 가로주택정비 등 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주민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소규모 동네 단위의 주거환경개선 등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18년 112,766백만원(190개지구) 중 21,768백만원(22개지구), '19년 75,737백만원(110개지구) 중 11,985백만원(15개지구)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지자체 보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불량건축물 개선하는 소규모주택정비에 '18년, 67,505백만원(21개지구), '19년 150,000백만원(38개지구), 의 기금 지원, '20년 386,900백만원(90개지구), '21년 409,400백만원(약120개지구) 기금 지원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주민들이 쾌적하고 걱정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제고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임. 「민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도시활력증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들이 체감하였는지 점검이 필요함
-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소유자 중심에서 벗어나 실 거주민인 임차인의 거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향후 과제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사 시행
- 임차인의 거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거주민 당사자 참여 보장, 강제퇴거 이익제기 보장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⑮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
추진부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과제목표	•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서민이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주요 내용	• 18~'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연평균 4만호 공급 •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 연간 공공지원임대주택 리츠·펀드형 2.4만실 공급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18. 4. 3.)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18. 4. 16.) 개정
 -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 비율 상향 15% → 25%
 - 장기임대 최소비율 상향 15% → 25%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18. 7. 17.)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임대료, 임차인 자격, 촉진지구사업 활성화 등

□ 정책·관행의 변화

- 일자리 연계형 청년주택을 공급
- 지원대상을 확대, 대학생·취준생 → 19~39세 청년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20. 10.)을 통해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 하는 방식을 최초 도입
- 고령자 주거지원(시설 무장애 설계 적용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연계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18~'21년까지 누적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4만호로 목표대비 초과 달성
 - (건설임대) '18년 공급목표 7만호 대비 7만호(99.5%) 공급, '19년 공급목표 6만호 대비 6만호(99.5%) 공급, '20년 공급목표 7만호 대비 7.2만호(102.9%) 공급
 - (매입임대) '18년 공급목표 2.1만호 대비 1.9만호(92.6%) 공급, '19년 공급목표 3.1만호 대비 3.0만호(97.7%) 공급, '20년 공급목표 2.73만호 대비 2.8만호(102.6%) 공급
 - (전세임대) '18년 공급목표 4.1만호 대비 5.9만호(144.1%) 공급, '19년 공급목표 4.5만호 대비 4.8만호

- (107.3%) 공급, '20년 공급목표 4.35만호 대비 5.0만호(114.9%) 공급
- '21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목표 4.0만호 대비 4.1만호(103.2%) 공급
-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 등 임대수요가 높은 곳 위주로 청년을 위한 공공지원 임대주택 2.4만실 공급
 - '19년 지원대상을 확대(대학생·취준생 → 19~39세 청년)한 청년매입·전세임대주택 1.7만호 공급
 - '19년 교통이 편리한 곳, 대학, R&D 산업단지 인근 등 위주로 공공지원임대주택 2.6만실 특별공급
 - '20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급목표 6.5천호 대비 8천호 공급(준공기준)
 - '21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상·하반기 공모사업 2,192호 선정(상반기 7곳 1,192호, 하반기 5곳 1,000호)
 - '21년 국·공립 어린이집·충간소음 저감 설계 등을 적용하고 신혼부부에게 70~80%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 시민임대 3곳(2천호) 최초 입주
 -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자공모 실시 인천, 화성, 의왕 등 6개 사업지 6천호 규모
- 고령자 주거 지원
 - '21년 무장애 설계 적용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연계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 1,182호 선정(상반기 11곳, 783호, 하반기 4곳, 399호 선정)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공공임대주택이 주로 사회취약계층에 임대되고 있어, 집값하락 등을 걱정하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 발생, 지자체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예산부담 증가 우려 등으로 사업추진 시 장애요인으로 될 우려가 있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시민의 주거권 보장이 국가의 책무임을 재확인하고, 집을 사고 파는 소유물에서 사람이 사는 거주 공간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 부처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과 갈등을 삼은 것처럼 주택 공급만으로 거주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인프라와 프로그램이 필요함
- 공공임대주택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고려를 취하고 있지 않음. 모든 시민의 주거권 보장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포괄한 것이지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상에 적절한 쾌적하고 적절한 주거 공간을 공급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임.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가족이 아닌 친구나 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비친족 가구원은 꾸준히 늘어 2021년 기준 101.5만명으로 2020년 대비 11.6% 증가함¹⁹⁾. 현재 임대주택 제도가 개인, 혹은 혈연 가족 중심으로 되어 있기에 시민들의 삶의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제도도 수정 보완되어야 함
- 현재 한국에서는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과정에서 거주민의 살 권리 보장에 있어 미흡한 지점이 발견되고 있음. 이에 주택 관련 사업에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시민의 주거권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향후 과제

- 주거 공간 수요 파악과 이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 주택 투기를 방지하고 모든 시민의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 계획 수립: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주거기본법」 제2조의 주거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변화하는 주거 형태에 따라 임대주택 제도 변경: 장애인,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임대주택 공급, 탈 가정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지원, 비친족 가구원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2명 이상이 동반 지원하여 거주할 수 있는 제도 마련(SH공사 세어형 참고, 2인 이상 다인 가구 신청 제도 등)
- 공공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인권영향평가 도입

19) 통계청, 2021년 인구총조사.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①⑥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추진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제목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주요 내용	- 제도개선을 통한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 - 대출요건 조정 - 청년·신혼부부 금융지원 신규사업 시행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등 출시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전세자금 대출요건 조정(유자녀 우대금리, 한부모 우대금리) - 청년·신혼부부 등 금융지원 신규사업 시행 - 청년가구 대상 공급확대 및 주거비 지원 강화 - 신혼 및 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신혼 및 아동양육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 신혼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18년 22.5조원(구입 12.8, 전세 9.7) 지원 '19년 23.1조원(구입 6.9, 전세 16.2) 지원 '20년 18.9조원(구입 6.0, 전세 12.9) 지원 '21년 18.9조원(구입 9.1, 전세 9.8) 지원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본 정책과제는 시민들이 주거 공간을 당장 구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필요할 수 있겠으나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주거권을 보장하는 목표에서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임. 금융지원은 국가가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기보다 개인의 능력에 방점이 찍힌 방안임
- 주거문제를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금융지원 제도는 주택 대출 한도가 결국 수입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짐. 주거 공간을 마련할 자금이 부족하여 금리 부담이 있는 금융제도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수입에 따라 대출 한도가 책정되어 저 보증금, 고 월세 부담 또는 고 이율을 부담해야 해 수입의 많은 부분을 주거비로 부담하게 되어 안정적인 주거로 나아갈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 민간 부분이 아닌 공공영역에서 금융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입에 관계없이 적정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금융지원으로 전환이 필요함
- 또한, 주요 이행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신혼부부 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 보기 어려움.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제도가 필요함
- 저금리 정책이 주택 마련을 안정화 하는 방향이 아닌 주택 가격을 상향을 이끄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은 주거 안정이라는 장기적 목표 하에서 작동하는지 점검 필요
 - 금융지원이 주택가격 인상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연구 등
 - 본 제도를 이용한 시민들에게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개선점 등 파악
-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제도 마련
-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 쾌적하고 적정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취약계층이 감당할 수 있는 저금리에 금리를 납부할 수 있는 최저 요건만 확인된다면 수입에 연동되지 않는 금융지원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⑰ 저소득층 주거 안정지원 확대
추진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과제목표	저소득층 주거 지원 확대		
주요 내용	-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확대, 기준중위소득중위소득 43→46%
- 기준 급여액 현실화, 최저보장수준 대비 : 95%→100%
- 지역 급지구분 적정성 제고(특례시 급지조정)
- 청년 분리지급 시행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1년의 경우 코로나 19 추이를 감안한 수급가구 확대지원 하고(127.7만 가구), 기준 급여액 인상(최저보장수준 확대 : 90%→95%) 및 청년 분리지급(약 3.1만) 신규추진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임차 및 자가가구의 주거급여 지원내용 확대
 - (수급가구) ('17년)81만 → ('18년)94만, (월평균 급여액) ('17년)11.7만원 → ('18년)12.2만원
 - (자가가구 지원상한액) 최대 978만원('15~'17년) → 최대 1,026만원('18년)
- '19년 기준임대료 '18년 대비 5.0~9.4% ↑
- '20년 기준임대료 '19년 대비 7.5%~14.3%인상(4인기준 서울 월 기준임대료 36.5만원→41.5만 원), 자가가구 수선비용 '19년 대비 21% 인상(노후도에 따라 79~215만원 인상)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 다만, 신청주의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주거 급여만을 제공할 뿐 쾌적한 주거지에서 살 수 있는 권리 보장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주거급여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협력과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함.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복지 사각지대 속에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시급하고, 필수적인 문제임.
- 주거급여가 실질적인 적정하고 쾌적한 주거지에서 살 권리 보장의 방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정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비용이 책정되어야 하며 적정 주거 공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주거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현재의 주거급여는 모든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에 미흡함. 특히, 주거 지원의 주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로 제한되어 있음. 아동·청소년이 함께 하는 가구, 생계를 위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구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 주거 급여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다양한 방식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주민은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됨. 이는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인권침해가 지속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

□ 향후 과제

- 공백 없는 주거급여 전달체계 구축
 - － 신청주의 개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 모든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급여로 전환
 - － 주거급여가 실질적인 적정하고 쾌적한 주거지에서 살 권리 보장을 위한 비용 책정
 - －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
 - － 가구 특성 반영
- 디지털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 주거 급여에 대한 정보 접근 제고
- 이주민 등 배제되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대안 마련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⑱ 안전과 편리성을 갖춘 노인주거 여건 마련
추진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과제목표	• 노인주거 여건 개선		
주요 내용	• 65세 이상 자가가구 주거급여 대상자의 개량지원 확대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주거약자 냉방설비 등 추가 설치를 위한 지침 개정 및 지자체 안내

□ 정책·관행의 변화

-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19년부터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수선유지 급여 외에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50만원 한도내 신규 지원 결정
- 고령 자가가구 신규 편의시설 설치(한도 50만원) 지원시행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냉방설비 설치 원하는 세대에 공사 우선 시행하여 목표인 1,500가구 중 1,540설치 완료(102.6%지원, '19.10월 기준)
- '20년 1.85만호 수선세대 중 고령자 6,097호 대상(약 32%)으로 추가 편의시설(안전손잡이, 단차제거 등) 설치
- '21년 1.88만호 수선세대 중 고령자 5,410호 대상(약 29%)으로 추가 편의시설(안전손잡이, 단차제거 등) 설치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가구형태는 노인독거가 19.8%, 노인부부가 58.4%로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의 78.2%로 굉장히 높음. 이는 거주시설에서 도움을 받기 보다는 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거주시설에서 보호 제도가 높지 않은 실정에서 거주시설의 환경 정비가 중요한 것으로 보임
-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의 주택 불만족하는 이유로 '방, 화장실, 욕실 등이 사용하기 불편하다 (32.3%), '일상생활을 하기에 공간이 좁아서(19.4%), '주택의 출입이 불편해서(19.4%)'순으로 거주 공간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 본 정책과제의 목표는 '노인 주거 여건 개선'으로 되어 있으나 대상은 65세 이상 중 자가가구여야 하고, 주거급여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음. 임차가구 노인이 소득, 건강, 안전의 측면에서 시설 정비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을 수 있음. 따라서 거주시설 정비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이행내용에서 제시된 노인을 위한 시설로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등을 들고 있으나, 노인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해외 자료 등을 수집하여 제공되어야 할 설비에 대한 발굴 및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노인 거주 공간 설비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함.
 - 기존 : 65세 이상 자가가구 중 주거급여 대상자 → 확대 : 전체 노인 가구
- 지원 시설에 대해 노인 당사자 욕구 파악 및 해외 조사를 통한 필요 설비 발굴 및 제시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①9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추진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과제목표	•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보 통합·제공		
주요 내용	•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운영 –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을 맞춤형으로 통합안내 * 마이홈포털(온라인), 마이홈 상담센터(오프라인), 마이홈 콜센터(전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마이홈센터를 중심으로 복지관련 기관(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등)과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다양한 서비스 지원
 - *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상담인력 배치
- 취약계층이 밀집 거주중인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찾아가는 마이홈센터를 확대 개설
- 기존에 LH·주택관리공단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주택관리공단으로 일원화
- 마이홈포털 모바일 앱을 생애주기별, 관련 자료들을 접근하기 용이하게 개편
- 공공주택 주거통합포털 시행으로 공공주택 데이터 통합관리·청약 시스템 통합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기존 마이홈센터를 교통 환경이 편리한 곳으로 이전, 10개소 신규 설치
- 각종 주거지원 서비스를 통합 상담·지원하기 위해 오프라인 상담센터 확대(19곳 추가개소, 전국 71곳)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마이홈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관련 기관과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주거 복지 서비스 등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하고 주거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은 정보 제공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임
- 홈페이지 및 앱을 개선하여 주거 관련 정보를 접근하고 청약 신청을 편리하게 하여 주거 지원에 접근 가능성을 제고함
- 취약계층이 밀집 거주중인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찾아가는 마이홈센터를 시행하여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 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나 대개 온라인 위주의 정보 제공과 신청 제도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에게까지 정보가 적극적으로 제공되는지 미지수임. 이는 정보 격차를 불러일으켜 주거권에 영향을 미치기에 고려해야 함

□ 향후 과제

- 디지털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주거지원안내 시스템 구축 필요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과제목표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기능 정립, 공공병원의 필수의료 서비스 역량 강화 등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고		
주요 내용	-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기관별 기능 정립 -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기능 특성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부재지역에 민간의료기관 활용 또는 지방의료원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전달체계 보완 등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고 - 의료 질 향상 및 적정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공공병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 질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공포하여 지역 공공의료 연계·조정 등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 운영 확대(+9개소) 및 법적 근거 마련

□ 정책·관행의 변화

-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 내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 공공성 관점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전, 서부산, 진주) 및 제도 개선
-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18년 10월 1일)
 -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19년 11월)
 -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발표(‘20년 12월)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년 ~ ‘25년)』 수립
 - 5년간 4.7조 원 재정 투자 등 공공의료 발전 방향을 제시

□ 시설, 예산, 보장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지역거점공공병원 시설·장비 확충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 보강
 -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 ‘21년 지방의료원 54명, 적십자병원 5명 등 59명에 대해 54억 원 지원
 - 시도공공보건의료 지원단 : ‘20년 12개(+4개), ‘21년 13개 설치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 내 감염병 관리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에 따라 추경예산(12억 원)을 확보해 지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14개소)하고 당초 '21년 예정되었던 감염관리 사업을 '20년부터 조기 시행
- 지역거점공공병원 이용환자 만족도 향상
- 74.9점('06년) → 87.3점('18년) → 88.1점('19년) → 85.3점('20년)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고라는 정책과제 설정은 적절함. 지역 간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병원의 필수 의료 서비스 역량 강화를 추진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함
- 그러나 신종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기에 공공보건서비스 제고하기에는 미흡함.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공공병원의 비율은 2020년 기준 5.4%임에도 불구하고²⁰⁾,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제공의 71.3%, 코로나19 입원환자 중 68.1%를 치료함²¹⁾. 공공병원은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역할을 하고 있으나, 수적으로 충분하지 않음. 이와 더불어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제고도 필요함. 병원 규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다르기에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에 있어서 대진료권, 중진료권 등에 필요한 의료기관이 규모 체계적으로 설정해야 함
- 의료 인력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냄. 대안 중 하나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포함한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함. 공공병원이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접근권이 제한된 상황임. 특정 취약계층 '지정'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냄. 본 제도가 치료의 전문성이 아닌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공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향후 팬데믹 등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4%임(통계청, 2021).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공공의료기관이 전담하는 방식보다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장하는 방법이 위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고, 일상에서 취약계층의 실질적 의료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그리고 일반 시민을 구분하는 공공의료가 아닌 모든 시민의 이용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병원 운영에 있어 의료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한다면 공공병원 서비스 운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에 거버넌스 증진의 필요성을 제기함
-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를 활성화 하여 민관의 협력으로 공공병원 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향후 과제

- 중진료권, 대진료권에서 필요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의 공공병원 확충
- 의료 인력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예)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 공공의대 설립 등
- 특정 취약계층 '지정' 제도에 대한 검토 하여 주변화된 취약계층의 의료비 보장이 아닌 의료보장을 위한 포괄적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 활성화

20) 통계청. 2020년 공공의료기관현황.

21) 데일리메디.(2021.09.27.). 공공병원 역할 확인...코로나19 입원 환자 70% 치료.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74600. 최종검색일: 2022.08.24.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② 비급여 진료 관리체계 개선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과제목표	•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 공개를 통한 환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제고		
주요내용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및 분석 결과 공개 •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추진(표본조사 실시 등)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을 위한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시행령 '21년 3월 개정, '21년 6월 시행, 시행규칙 '21년 월 개정·시행)하여 비급여 규모·현황 파악 및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의 정기적인 보고체계 도입

□ 정책·관행의 변화

-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및 결과 공개 확대
-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및 공개 첫 시행
 -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비급여에 대해 의료기관 방문 혹은 홈페이지 검색 없이 비급여 진료비용 확인 가능
- 비급여 의무 항목 확대
-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 도입
- '비급여 종합대책' 수립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18년 대비 '19년 144항목(61.3%) 인하, 변동계수 감소 항목 118항목(50.2%)
- '20년 대비 '21년 중간금액이 인하되었거나 변동 없는 비급여 항목은 224항목(53.5%)이며, 변동계수가 감소하거나 변동 없는 항목은 217항목(51.8%)으로 기관 간 편차가 감소함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그동안 파악이 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 비용을 확인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전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한 것은 시민들이 자신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알 권리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다만, 비급여 진료와 비용에 대한 설명만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지지 않은 시민들에게 의료 선택권을 보장했다고 보긴 어려움
- 다수의 시민이 시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대비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함. 그러나 비급여 진료의 결정권이 의료기관에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시민들은 실손 의료보험에 의지하고, 보험사는 보험료를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는 영역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비급여 진료 중 보장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여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비급여 진료 보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정보는 의료 관계자가 아닌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해하기 용이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설명 자료 등이 필요할 것임. 또한, 비급여 진료는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를 다수 이용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게 보다 영향을 미치는 변화이기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켰는지 확인할 수 체계가 필요하고, 정책과제의 목표였던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완해야 함
- 비급여 진료에 없는 병의원을 운영한다면 의료비 걱정 없이 모든 시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모델을 제시하고, 필요에 따른 적절한 비급여 진료 문화를 형성에 도움이 될 것임

□ 향후 과제

- 비급여 진료 중 보장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여 분류체계를 정립
- 비급여 진료 보장에 대한 기준 마련
- 시민, 정보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게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이를 통한 사업 보완
- 비급여 진료 없는 병의원 모델 제시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③ 지역균형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추진부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제목표	어업인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		
주요 내용	- 어업 작업과 어업인 질환과의 연관성 조사 및 어업인 질환 예방교육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어업안전보건센터를 활용하여 낙도 등 취약지역 거주 어업인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시행 * 센터: 경상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조선대병원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낙도지역 어업인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 ('18년 - '21년) 의료시설이 없어 치료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낙도지역 어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실시
 - 어업안전보건센터 의료진이 방문하여 혈압, 혈당, 관절질환 진료상담 및 약물 처방과 질환 예방교육 실시
 - * 해양수산부가 어업안전보건센터(어업인 질환 및 업무상 재해의 원인 규명 연구, 현장교육 등을 수행)로 지정('18년 1월 ~ '20년 12월)한 경상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조선대병원에서 진행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낙도 및 낙후지역 거주민 의료서비스 제공
 - ※ '18년, 9개 도서 451명 → '19년, 12개 낙도 및 낙후지역 618명 → '20년, 755명 → '21년, 850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㉓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의 방문시간대가 어업종사자들이 노동시간과 맞물려 본 정책과 어업안전보건 센터에 대해 알지 못하는 어업인들이 있음²²⁾. 어업 종사자들이 본 정책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홍보 확대가 필요함
- 어업종사자들의 다수가 반복된 노동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겪고 있음. 만성적 질환은 꾸준한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운동 등을 통해 치료가 가능함. 병원선 사업 등의 기존 시스템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 모색과 함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인근의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의료 접근권을 높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거주민의 의료 필요도에 따라 인력을 증진해야 함
- 2020년 해양수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수산물 생산업 종사자 중 외국인이 11.3%(49,458명)로 적지 않음. 본 통계수치가 등록이주민을 파악한 것이라면 이보다 많은 수의 이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전체 어업 종사자들이 차별 없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²³⁾

□ 향후 과제

- 어업 종사자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어업안전보건센터 등을 알 수 있도록 홍보 방법 변경 및 확대
-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 이주민 포함 모든 어업 종사자가 배제되지 않고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2) 현대해양.(2019.04.08.). 성과 없는 정부의 ‘어부병’ 대응.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11>. 최종검색일: 2022.08.24.

23)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2022). 어업인 - 수산물 생산을 위해 고용한 인원 : 국적별, 성별. 해양수산업통계조사.

<https://www.mof.go.kr/statPortal/cate/statView.do>. 최종검색일: 2022.08.24.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④ 치매에 대한 대응과 국가 지원 강화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과제목표	-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 국가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 조성		
주요 내용	-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 편안하고 안전한 치매환자 치료·돌봄서비스 제공 -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으로 치매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근거 마련 및 체계 정비 - 중앙치매센터 설치 등

□ 정책·관행의 변화

- 치매의심 단계의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영상검사(MRI)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 - 치매안심마을 전국 확대 시행 - 종일방문요양서비스(연 12회 이내, 1회당 12시간)의 이용대상 및 제공기관 확대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인지지원등급 시행 ※ '19년, 16천여 명 등록 → '20년, 19천여 명 등록 → '21년, 22천여 명 등록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지속 확충 ※ 공립 치매전담형 시설 '19년, 총 93개소 → '20년, 105개소 → '21년, 115개소 - 의료적 필요가 있는 큰 중증치매 질환자 대상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으로 본인부담률 인하 * '18년 8월 말 기준 26,421명 대상 302.6억 원 지원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 ※ '21년 총 34만 명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 국가 치매관리체계의 지역 거점 기관인 치매안심센터 전국 256개소 설치 완료하여 국가 치매관리 체계를 구축,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을 통하여 통합서비스 제공 ※ '20년, 368만여 명 서비스 이용 → '21년, 410만여 명 서비스 이용 - 공립 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설치 ※ '19년, 총 43개소 설치 → '20년, 총 55개소 설치 → '21년, 총 65개소 설치지원

-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
※ '19년, 총 4개소 설치 → '20년, 총 4개소 지정 → '21년, 총 7개소 지정
-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 체감도 긍정적 평가
※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체감도 조사('21.8.2.~8.10., 리서치앤리서치) 결과 치매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는 응답 97%,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83.3%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치매서비스 다양화 및 내실화 필요
 - 치매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형평성 제고 필요. 지리적 이유로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산간·농어촌 지역에 분소 설치,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만 이용할 수 있는 제한 완화 등 필요
- 코로나19로 위축된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비대면 및 야외 프로그램 운영 등 감염병 대응 서비스 발굴·확산을 지속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치매안심센터의 적정 인력으로 운영되는 곳이 2020년 기준 전체 256곳 중 28개소로 굉장히 적음. 필요에 따른 적정 인원을 보장해야 하고, 전문성을 증진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안정성을 담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²⁴⁾. 인력과 전문성은 치매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연관이 있기에 중요함.
- 치료 및 요양 시설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로 인한 사망 사례와 사실상의 면회 중단 등으로 사회적 단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향후 방안을 세워야 함. 이는 장애인 시설과 같이 시설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할 지점임. 시설이 아닌 기존의 거주지에서 치매, 노년이 되어도 인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치매'라는 용어가 '어리석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치매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도 커 용어 변경을 위한 노력을 요구함. 보건복지부는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에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치매에 대한 대응과 국가 지원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서비스 과정 중 인권침해를 예방 혹은 구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치매안심센터, 치료·돌봄, 공공후견인제도 등의 관계자에게 인권침해가 일어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교육, 지침 마련,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 등이 필요할 것임
- 공공후견인사업은 개인의 정보가 드러나는 사업임으로 사생활, 비밀 보장, 개인의 정보 보장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실제 수행 경과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향후 과제

-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제고. 예.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 찾아가는 서비스, 인근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등
- 치매안심센터 인력 충원 노력 및 센터 관계자의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교육 등 운영
- 팬데믹 등 위기상황에서 코호트 격리, 사회적 단절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평가하고, 병원 및 요양시설의 인권적 방향 속에서 지침 마련
- 치매를 대체할 용어 모색
- 치료, 요양, 센터 관계자에게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과 사안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공공후견인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24) 디멘시아뉴스.(2020.10.05.). 전국 치매안심센터 중 인력 정원 충족한 센터 28곳 '불과'.

<https://www.dementia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0>. 최종검색일: 2022.08.24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⑤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지표 개발·보급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제목표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을 강화하여 동일 및 유사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주요 내용	- 환자안전사고 분석결과 및 환자안전기준과 연계, 환자안전기준 수행 정도를 측정·점검할 수 있는 평가 지표(‘환자안전지표’) 개발 - 개발된 환자안전지표를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환자안전의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환자안전기준 및 지표 개발과 성과제고 관련 연구 진행
- 환자안전 지표 보급
- 환자안전 지표 활용 결과 모니터링 시행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 증가
 - *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 : '17년 73.7%, '18년 76.0%, '19년 85.0%, '20년 93.7%
 - *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 : '17년 3,864건, '18년 9,250건, '19년 11,953건, '20년 13,919건
- 「환자안전법」 제11조에 따라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지표 활용률 100% 달성('21년 1월 31일기준)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인 지표 관리를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역량이 강화되도록 지표 산출방법 교육 등을 통한 인식제고,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확대 등 추진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지표 개발·보급’은 환자 안전 보장을 위한 정책 중 일부임. 이와 더불어 환자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보완되어야 함

□ 향후 과제

- 개발된 환자안전지표가 병원 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⑥ 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수약품 특례 공급 지속 지원
추진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과제목표	• 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수약품의 특례 공급 지속 지원		
주요 내용	• 희귀질환 환자치료 등을 위해 긴급도입이 필요한 국내 미허가 의약품 특례 공급 • 필요시 긴급도입 의약품에 대한 보험등재 요청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20년부터 희귀필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의약품 구입 예산을 확보하고 긴급도입 수요를 예측하여 필수적 치료제를 사전 비축하여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의약품구입비 지원 대상을 장애인으로 확대
 - (변경 전) 소득수준이 차상위계층 → (변경 후) 소득수준이 차상위계층+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 (1인당 최대 300만 원 이내)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의약품 구입비 확보하여 적정재고 비축을 통해 희귀필수약품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 추진
 - 취급품목 : 187품목
 - 공급현황 : 13,883건, 260억6천만원 상당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특정 국가에 의존적인 의약품인 경우, 해당국가의 경제적·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공급이 어려운 경우 발생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정책과제 설정과 이행 내용은 적절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치료 받을 권리, 생명권 보장함. 그러나 더 나아가 향후 정부의 선도적 역할은 당사자의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를 통한 자력화 증진과 함께 해야 함
- 필수약품 목록을 결정과 수급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자 당사자와 환자를 지원할 수 있는 관계자의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함. 환자 당사자들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장의 부재하기에 참여를 위한 절차 필요

□ 향후 과제

- 필수약품 목록 결정 및 수급·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당사자 및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환자 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여 치료에 있어 자력화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⑦ 군 장병 의료접근권 향상
추진부처	국방부		보건정책과
과제목표	장병들의 진료접근성을 보장하여 건강한 병영생활 유지 및 전투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안심하고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주요 내용	-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AI의료영상 판독시스템, 이동형 원격진료 시범운영, 진료비지원 등 장병 의료접근성 보장 - 군 병원내 정신건강증진센터 개설을 통한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 -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무후송전용헬기 확보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30일 초과하는 청원휴가 사용 가능, 외래·검사의 경우에도 병가 사용기준 확대 - 청원휴가는 연간 30일이나, 예외적인 경우* 심사를 통해 30일 초과하는 병가 허용하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 완료('21년 12월 31일)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병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에 관한 훈령」 개정 중 -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복합부위 통증증후군 등), 군병원 병상 부족시(코로나 등) 등 - 외래·검사를 위해서도 병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확대하여 병가 사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에 관한 훈령」 개정 완료 * 수술 후 경과확인(최대 2회 → 횟수 미제한), 지역 내 진료가 불가능한 특수질환 등 외출·외박으로는 외래·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 군 응급후송헬기 지원관련 「국방환자관리 훈령」 개정('21년 4월)

□ 정책·관행의 변화

(AI 의료영상 판독 시스템) -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 의료시스템에 적용하여 군의관의 진료·진단을 지원하고 장병의 건강권을 제고 - 응급상황시 후송환자에 대한 정보를 의료종합상황센터·군병원 등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체계 - 병사의 민간병원 진료비(건강보험부담금 약 70% + 본인부담금 약 30%)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하여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경감 및 병사의 진료 선택권 보장('21년 8월 1일 부)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 중증질환으로 민간병원을 방문하는 병사의 진료비 부담경감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군 병원과 민간병원 진료가 가능함으로 진료 선택권 확대에 기여
- (정신건강증진센터)
 - '11년 국군수도병원 개설 이후, 국군양주병원('16년), 국군대전·구리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개설('18년)
 - 구리병원 입원병상 확대(24 → 42병상)를 위한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 확보(11.4억 원)
 - 구리병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를 위한 장비(안구운동탈감작기, EMDR) 도입을 위한 장비 정수 반영 완료

(의무후송전용헬기 확보)

- 의무후송전용헬기 조달 요구/양산계약 : '18년 10월/'18년 12월('19년 2대, '20년 6대)
-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 외진 소요 및 진료까지 걸리는 시간 단축, 중증으로 발전 할 가능성 환자 조기 식별로 적시적 진료제공
 - 전년 대비 원격진료 만족도 증가 : 4%(보통 이상 92%→96%)
 - * 병사 92%→96%, 간부 92%→96%
- 격오지 원격 진료량 매년 지속 증가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진료량	2,162	5,458	6,534	7,012	5,820	13,652

(이동형 원격진료)

- 응급상황시 후송환자에 대한 정보를 의료종합상황센터·군병원 등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체계
- '21년 총 진료건수 : 13,652건(진료 6,390건, 상담/교육 7,262건)
- 총 진료건수 중 투약(77%), 후송(18%), 경과관찰(5%)로 원격진료를 통한 1차 진료 종결률이 82%로 원격진료 효과성 입증
- 이용자의 원격진료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 90%로 전년대비 향상
- 원격진료 실적('18년 ~ '21년) 단위 : 건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실적(건)	19,397	6,534	7,012	5,851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이동형 원격진료)

- 이동형 원격진료 사업 확대시 성능개선(경량화, 소형화)된 장비를 보급하고자 하였으나, 확대 예산이 '22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되어 성능개선도 잠정 중단

(정신건강증진센터 개설)

- 정신건강 전문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운영 제한
 - 수도병원 의사 직군의 퇴사로 수도병원 진료가 비예약제→예약제로 변경됨
- 외래환자 다수가 구리병원으로 집중하여 구리병원 외래진료 대기 발생
 - 춘천병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퇴사로 업무 공백
 - 정신건강의학과 전담 간호인력 부족으로 환자 입원 및 병동 운영 제한

(의무후송전용헬기 확보)

- 군 의료시스템 개편 추진과 연계 현 의무후송헬기(KUH-1)의 후방지역(2작전사) 재배치를 추진하였으나 기동헬기 운영전력 공백문제로 불가 결정(육본)
- 후송지원 범위 확대 / 신속한 후송지원, 정비·교육비행 여건 고려시 의무후송전용헬기 확보수량 부족 (추가 전력화 소요 검토필요)
 - 2작사 지역, 서북도서, 영동지역
- '21년 항공의무후송 실적 : 2사단 뇌출혈 환자등 134건 실시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군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청원휴가 확대, 진료비 지원 등), 격오지 장병을 위한 원격진료 시스템 도입, 이동형 원격진료 등은 장병의 의료접근권 측면에서 국가의 인권 보장 책무에 부합
- 다만 장병의 의료권 및 건강권을 위한 장병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진료 시 가족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은 미흡
- 원격진료의 용이성이 있다 할지라도 특정 질병의 경우 의사의 직접 대면 진료가 요구되므로 장병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직접진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장병이 특정 병력(病歷)을 근거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제한, 배제, 분리, 거부)받지 않도록 하는 절차 또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음
- 또한 장병의 의료접근권 보장에 있어서 의료기관까지의 교통수단에 대한 지적이 있음

□ 향후 과제

- 장병의 외부의료기관 이용 시 개인의 민감정보(질환 관련 내용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절차 간소화 및 비밀보장 제도 마련
- 장병의 의료접근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알권리 증진 방안 마련
- 만성기저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접근권 보장 방안 검토
- 장병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 마련 또는 지원체계 구축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관한 권리	⑧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
추진부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제목표	• 학교급식 종사자 위생·안전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식중독 예방 강화		
주요 내용	• 단위학교의 위생·안전관리 및 교육청 주관 위생점검 강화 • 교육청 주관 학교급식 종사자 식중독 예방교육 강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위생점검) 개학대비 학교급식소 자체점검 및 신학기 시작 전 급식실 개·보수 실시
- (식중독 예방교육) 학교급식 종사자 대상 위생관리 역량강화 교육 및 정책 지원
-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 대상 연 2회 위생안전점검 실시(코로나 상황으로 교육청 대면점검 또는 자체점검 병행)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신규 영양교사 배치학교 등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지원('20년 11월2일 ~ 11월 24일/17교, '21년 9월 ~ 10월/34개교)
- 급식 관계자 위생관리 역량 강화 특별연수 추진(1,500명) 및 연수 동영상 제작·보급
- 급식 전(全)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급식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식중독 발생위험 요인 도출 및 개선방안 컨설팅 지원('19년 6월 27일 ~ 7월 19일/15개교)
- 교육청 담당자의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19년 5월 22일 ~ 8월 2일 총 4기 운영)
- 국립부설학교 노후 급식시설 및 기구 지원 : 총 1,920백만 원(시설개선 6개교, 기구교체 6개교)
- 학교급식 위생관리 업무 담당자 워크숍 추진('19년 8월 19일 ~ 8월 20일)
-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한 안내서 개발·보급(3종, 8천부)
- 최근 개정된 급식관련 법령 등을 반영한 제5차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개발·보급(2종, 14천부)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의 과제는 크게 급식시설을 갖춘 유치원 및 학교에 대한 위생점검과 학교 급식 관련 종사자 위생 안전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음. COVID-19사태로 급식이 축소되거나 폐쇄된 상황속에서도 교육청 주관 대면과 시설 자체점검을 병행하여 진행된 유치원 및 학교의 급식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및 안전점검은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고 식중독을 예방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함
- 특히 급식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식중독 발생방지 개선방안 컨설팅, 학교급식 종사자 식중독 예방 교육 등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종사자의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식중독 예방에 기여함

□ 향후 과제

- 유치원 및 학교급식 관계자 위생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등 정책 지원
- 시도교육청의 주관 학교급식 위생점검 및 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보급 및 미흡상황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
- 교육을 통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과제 V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⑨ 학교 성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
추진부처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
과제목표	-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체계적 성교육 실시 -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담당자 전문성 강화		
주요 내용	-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체계적 성교육 실시 -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에 따라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 -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청 단위 행정지도 강화 -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담당자 전문성 강화 - 성교육 내용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과정 시도교육청별 개설·운영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적용과 학년별 15차시 이상 성교육을 실시하고 성교육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통해 학교 성교육 내실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체계적 포괄적인 성교육 실시
 - 2021년 학교 성교육 현황(단위: 시간)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	14.9	14.9	14.9	14.9	15.2	15.1
중	15.7	15.3	15.3			
고	15.0	14.8	14.7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학령기 성교육을 통해 성인지 관점에 대한 확보 중요함
- '18년에만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예산이 없음. 이에 대한 설명 및 확인이 필요함
- 성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이행 실적을 정리할 때 교육을 몇회 실시했는지는 기본값으로 정리하되 성교육의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내실있는 성교육을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 향후 과제

- NAP 과제로 제시되어 있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과의 차별점에 대한 검토 및 점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계획 정리 필요함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⑩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추진부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제목표	• 교육을 통한 청소년 흡연율, 음주율 감소 및 흡연·음주에 관한 위험성 강조		
주요 내용	• 교육과정 내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 - 흡연·음주의 위험성 및 예방의 중요성 교육 * 초·중·고 별로 수준에 맞는 교육내용 편성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중고등학교 음주예방교육 실시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교내 주류반입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21.1월) - 교육(지원)청은 흡연·음주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하여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여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조치 안내('21.1월) - 교원 연수 시 흡연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도자 과정 운영 - 다양한 자료들로 관련교과 시간에 학생 대상흡연 예방교육 실시 - 금연 후 식단관리, 간접흡연의 위험성, 담배거절하기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청소년의 실생활에 밀접한 흡연 예방교육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를 통한 학생 연령대별 맞춤 교육 콘텐츠 제공
 - 금연 웹툰, 영상 등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콘텐츠 제공
- (학생 교육) 학교급 별 눈높이에 맞게 ‘관련교과, 학교장 재량시간 등’을 활용 ‘담배의 유해성, 금연 실천 방안 등’ 교육 지속 실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담배의 역사와 성분 이해 - 간접흡연의 해로운 점 인식 - 담배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 흡연권유시 거절방법 - 담배의 유해성 인식 -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 인식 - 담배연기없는 환경 만들기	- 담배의 유해성 인식 - 흡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금연의 필요성 인식 - 금연실천방안	- 담배의 유해와 역사, 청소년의 흡연실태 파악 - 담배의 유해성분 이해 - 금연관련 법규 및 정책 이해 - 담배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등교일수 감소 및 교사 방역부담 으로 인한 교육기회 제한
- 흡연학생의 자진상담 및 교육요청 유도 한계, 전문기관 지원 등도 어려움 초래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약물 오남용은 기본적 건강 보장과 발달 증진의 관점에서 예방되어야 하며, 이는 결과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묻는 형태로 제공되어서는 안 됨. 즉, 흡연·예방 교육의 실시율과 더불어, 교육내용과 컨텐츠, 교수방법의 적절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아동·청소년 참여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도모하는 변화가 추가적으로 요구됨. 예컨대, 관련 교육이 불량/비행학생의 문제행동을 비난하는 등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교내 단속과 지도 과정에 학생인권 침해 가능성은 없는지 등 인권에 기반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 교육부의 본 정책과제는 보건복지부의 학교흡연예방과 같은 목적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부처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사업적용이 실효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음.
- 흡연·음주 예방 교육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실효적인 청소년유해환경 단속도 병행되어야 함. 이는 교육의 효과성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수적임.
- 아동·청소년의 장애 여부, 디지털 환경 접근 가능성 등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컨텐츠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함,

□ 향후 과제

- 학교 정규수업, 재량시간 등을 통한 흡연·음주 예방 교육 계속 실시
-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 확대를 통한 학교단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
 - － 교육청 단위 별도사업추진 및 학교지원체계 구축(보건복지부 공동)
 - ※ 보건복지부에서 시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 학교흡연예방 사업 추진 중(지속)
- 건강증진계획을 포함한 교육과정 전반에 약물오남용과 관련된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포괄적으로 반영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⑪ 마약류 유통관리 및 오남용 예방 강화
추진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과제목표	•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주요 내용	• 마약류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마약류 유통관리 체계구축 및 단속 강화 •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방치 예방을 위한 폐기 사업 법정근거 마련

□ 정책·관행의 변화

-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실시
- 과학적 기법(하수역학) 기반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사업 추진
-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 ('20년)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 ('22년) 전체 마약류로 확대
- 국내외 불법 유통되는 신종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국내 유통 사전 차단 등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강화
-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감시체계 수립·시행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감시체계 수립·시행으로 마약류 감시 위반행위 적발률 제고
※ ('17~'19년) 평균 적발률 28.8% → ('20년) 적발률 45.2% → ('21년) 적발률 52.3%
- 의사별 주요 마약류 처방내역 비교·분석 결과 제공(분석리포트 우편발송)으로 오남용 방지 및 적정 처방 유도
※ (발송 전 3개월 평균) 56.27개 → (발송 후 3개월 평균) 53.47개
-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류(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처방내역 비교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오남용에 대한 적정 처방 유도로 처방량 감소
※ 처방정보 분석자료를 수신한 의사들의 수신 전·후 3개월 기간 비교 결과,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 약 8.3% 감소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마약류 예방을 두텁게 하기 위해 유치원에서부터 다문화, 유학생, 군장병, 직장인, 학부모 등 예방교육의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의 특성에 맞추어 콘텐츠를 제작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에 노출되기 쉬운 대상과 만나는 이해관계자 및 또래집단에게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마약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인적 안전망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함
-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내용에서 특정한 대상자에게 낙인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 점검이 필요함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마약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는 개인 정보를 국가에서 침해할 소지를 가지고 있음. 마약류 유통 방지와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은 불가피하다 이야기하고 있으나 법 규정 내에서 정보 동의하에 침해를 최소화하는 속에 되어야 함을 강조함. 그러나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 정보를 보관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함. 그렇기에 개인 동의하에 정보가 수집·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 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유통관리 단속 및 오남용 예방 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조치에 정책과제를 설정, 마약류에 노출 빈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분석하고 예방할 수 있는 조치, 마약류가 중독성이 높아 개인의 의지만으로 재활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다시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범율을 낮출 수 있도록 재활 지원을 통한 건강 회복, 자력화 증진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세계 마약 오남용 개선에 있어 선진 국가들은 단속과 처벌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고 있음.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세계보건기구(WHO)도 치료를 통해 마약에 중독되는 것을 줄이면 마약범죄조직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을 25)함. 중독된 이들을 치료해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마약 범죄를 줄이기 어려움.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형을 마친 후 국가의 지원 없이 중독자 개인에게만 재활의 책임을 맡기는 것은 재범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음. 인적, 물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치료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향후 과제

-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성격에 맞게 마약과 관련한 정책과제 설정 필요
-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의 대상자 확대하고 대상별 맞춤 콘텐츠 제작 및 보급
- 의료 관계자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내용에서 특정한 대상자에게 낙인효과를 낼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모니터링 필요
- 예방 활동의 결과를 인식변화, 효과성으로 평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실효성 평가와 예방 체계 보완·강화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통 방지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활용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서 치료보호 기간을 12개월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약 중독 치료 필요 기간을 1~2년으로 기정하고 있음. 법률상으로 치료 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하여 중독 치료와 사회 복귀까지 이어지기에 충분한 지원을 어렵게 함. 따라서 법률에 치료 기간을 최대 12개월이라는 기간을 늘리거나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함
- 마약 중독을 치료하고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협력과 지원. 미국의 경우 법조계, 의료계, 사회복지계에서 협력하여 치료를 지원하고 있음. 한국의 마약 사범 재범율이 높고, 10-30대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치료와 재활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25) 뉴스핌.(2019.07.04.). [마약중독자의 고백④] 선진국, 치료될 때까지 국가 무한 책임.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0704000840>. 최종검색일: 2022.08.24.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⑫ 환경보건 기반 구축 지원
추진부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제목표	• (시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체내 환경유해물질 노출수준의 분포, 변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시민건강보호에 기여 • (환경보건기술개발) 환경보건 공공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기반 강화를 통해 환경성 질병 부담 저감 및 환경보건 선진화 구축 • (환경보건센터 운영)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역학조사 지원 등을 통해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기반 강화 및 대시민 환경보건서비스 확대		
주요 내용	• (시민환경보건 기초조사) △ 시민 체내 중금속 등 환경유해물질 33종의 노출수준 파악을 통한 국가 대푯값 산출, △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특성 및 환경유해물질 노출관련 설문조사, △ 혈액학 검사 등 환경유해물질 노출과의 연관성 파악을 위한 임상검사 • (환경보건기술개발) 아토피, 석면, 가슴기살균제 등 환경위험(risk)으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공공기술 개발 • (환경보건센터 운영)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과의 상관관계 연구조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시민환경보건 기초조사
 - 제4기 시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추진, 기초조사 결과 국가승인통계 공표 및 제5기 기초조사 1차년도 현지조사 추진
- 환경보건기술개발 기술정책활용위원회 및 현장조사를 통해 환경보건 업무 효율화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지원 기술 확보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생활공감 환경보건 R&D” 연구과제 추진
- 환경보건센터 운영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사업 추진 및 지역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권역형 센터 확대 추진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생활공감 환경보건 R&D 연구과제 추진(1,814억 원)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개발사업('21년 ~ '28년, 880억 원)
- 환경보건 디지털 조사기반 구축 기술개발사업('21년 ~ '24년, 300억 원)
- 환경보건센터 운영 (3,943억 원)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시민환경보건 기초조사) COVID-19로 인한 현지조사 및 대면조사 어려움으로 이동식 검진 차량 등 운영 확대 필요
- (환경보건센터)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건 이슈 대응, 환경보건 기반 강화를 위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확대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시민환경기초조사를 통해 환경유해인자 체내노출수준 등에 대한 조사와 환경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과 질환 상관성 규명, 피해자 질환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한 환경보건정책 기초자료 확보,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시민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 건강권 보장에 일정정도 기여함
- 시민의 환경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과 그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도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기술개발에는 한계가 있음. 여전히 새로운 화학물질로 인한 생활화학제품의 유해화학물질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원인과 질환과의 상관성 규명에 대한 환경보건기술개발 및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환경부, 2022)
- 지역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환경보건사업의 추진 및 지역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권역형 센터 추진의 확대가 필요함
- 생활화학제품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 지속 강화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 추진 필요
- 피해원인 규명, 추적 및 평가 등 실제 환경오염피해조사 현장에서 활용할수 있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술 확보가 필요함. 환경성질환 사전예방을 위해 관련법 제정, 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정책 추진에 한계 생활화학제품 사용으로 발생 가능한 시민 보건상의 위해 관리기술 확보
- (환경보건기술개발) 31건의 논문 등록, 특허출원 1건, 특허등록 7건, 정책활용 1건 등 기술·정책활용 위원회 및 현장조사를 통해 환경보건 업무 효율화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지원 기술 확보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향후 과제

- (시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제5기('21년 ~ '23년) 기초조사 2차년도 현지조사 추진
 - － 전국 200개 조사구 2,610명(성인 1,050명, 초·중·고등학생 1,560명) 대상 설문조사, 생체시료 채취 및 분석기관 이송 등 현지조사 실시
- (환경보건기술개발) 환경보건정책 추진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위해성평가, 건강영향평가 등 환경보건 R&D 지속 지원('22년 R&D 추진, 215억 원)
-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역 환경보건 기반 강화를 위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확대 추진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⑬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추진부처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제목표	자연방사능 물질로 흡연과 함께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물질인 라돈의 적정 관리로 시민건강 보호		
주요 내용	- 사전예방적 환경보건 관리체계 구축 - 생활 속 건강위해물질 노출 최소화를 위한 실내공간의 라돈 관리강화 - 실내 환경유해인자 측정·조사 실시 등 - 환경오염 민감·취약 계층의 건강 우선 보호 - 환경오염 민감·취약계층 대상 유해인자 노출 저감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200\text{Bq/m}^3 \rightarrow 148\text{Bq/m}^3$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18년 10월) 및 시행('19년 7월))
- 신축 공동주택 건축자재 선택 시 사전예방적 라돈 관리를 위해 '방사능 지수' 활용 권고('19년 11월)
 - 관계부처 합동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제작·배포
- 가정어린이집·협동어린이집·실내어린이 놀이시설 추가(「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공포('19년 4월), 시행('20년 4월))

□ 정책·관행의 변화

- 환경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민감·취약계층 우선 보호 추진 - 관리강화
- 환경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민감·취약계층 우선 보호 추진 - 실태조사
- 환경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민감·취약계층 우선 보호 추진 - 취약가구 지원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1층 이하 거주자, 마을회관 등 라돈 취약가구의 실내라돈 무료측정·저감 컨설팅 지원
 - ('18년 ~ '20년) 무료 측정·컨설팅 4,682개소, 알람기 보급 1,091개소, 저감시공 168개소
-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 신청 주택(단독 및 다세대, 아파트 등)을 라돈 취약가구의 실내라돈 무료측정·저감 컨설팅 지원
 - ('21년) 무료 측정·컨설팅 2,150개소, 알람기 보급 400개소, 저감시공 106개소
- 전국 실내라돈지도 작성 및 제공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라돈은 세계건강기구(WHO)에서 폐암 등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시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는 라돈침대 사태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진 후 심각한 수준에 있는 건축자재 라돈 방출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음.
- 건축자재 라돈방출의 예방적 관리를 위해 저감·관리 지침서'를 제작하고 배포,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권고기준을 다중이용시설 수준으로 강화, 라돈 관리기반 구축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라돈 취약계층에 대한 실내 라돈 저감 지원으로 환경으로 인한 피해 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함
- 2019년 7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라돈 항목이 추가되어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라돈으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건축자재의 관리기준과 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실내라돈 저감·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지원사업** 지속 추진
 - * 고농도지역 라돈 집중조사 / ** 실내라돈 무료측정·저감 컨설팅 지원사업 등
- 라돈 고농도 지역에 대한 라돈 우선 저감을 위해 지자체 맞춤형 '라돈관리계획 수립' 지속 지원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⑭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개선
추진부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제목표	시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민감계층과 취약계층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 예방적 정책 추진		
주요 내용	-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캠프 운영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을 겪고 있는 어린이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에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추진 -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까지 환경오염물질이 성장발달, 신경인지발달, 알레르기질환, 사회성 및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추적관찰하여 인과관계 규명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임신부 7만명 모집(대규모 코호트 6만 5천명, 상세코호트 5천명) -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 -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 내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집먼지 진드기 등 환경유해인자의 진단 및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지원* * 벽지·장판지 등 교체, 공기청정기 지원 등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건강나누리 캠프 운영 -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체험 프로그램, 전문 의료인 상담·교육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제공 -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추진 - 사회취약계층(어린이·청소년·어르신 등)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제공 2018년 ~ 2021년 523회, 24,692명 - 사회취약계층(저소득, 장애인 가구 등)에게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환경유해인자 관리방안 진단 및 컨설팅 지원

- 2018년 ~ 2021년 6,856개소
- 환경개선이 시급한 가구에 시설개선(장판, 벽지교체 등) 지원
- 2018년 ~ 2021년 2,503가구
-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어르신 등에게 진료 지원 서비스 제공
- 2018년 ~ 2021년 1,134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지속 추진 필요(단년도 지원 → 3년간 지원 등)
- 사회취약계층 중 열악한 실내환경의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공헌기업 (벽지, 장판, 페인트, 가구 제공) 확대 필요
- 사회 소외계층(보육원,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 참여를 위한 사업 확대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환경부와 국립공원이 연계하여 진행하는 건강나누리 캠프 운영,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전문 의료인 상담·교육,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등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 지원사업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기준으로 한 취약계층(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환경성 질환의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함. 다만 가정에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보육원,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등에 대한 참여를 위한 정책사업들이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치료프로그램과 병행하여 환경성 질환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실내 환경 진단 등을 내실있게 진행하고 벽지, 장판, 가구 등의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 향후 과제

-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추적관찰
 - 7만명의 영·유아 코호트가 모집(~'20.12.)됨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노출·거주환경 등에 따른 성장단계별 건강영향 추적 실시(~'36.)
 - * 과불화화합물, 중금속(Pb, Cd, Mn, As 등), 내분비계장애물질
- '21년도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21.2.~12.)
 - 1,500가구 진단, 500가구 시설개선(벽지·장판 교체 등),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어르신 진료 지원*(350명)
 - * 과거 3년간 지원대상 중 지속적 진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중증 환경성 질환자) 선정 및 진료서비스(진료·약제비) 지속 지원 검토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⑮ 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안전강화
추진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
과제목표	• 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위해성통합평가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민건강 보호		
주요 내용	• 발암 또는 위해성이 높은 물질 등에 대한 독성시험 수행 및 독성정보 DB 구축 확대 • 널리 사용되고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에 대하여 인체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인체적용제품·물질의 통합 위해성평가를 위한 기반 마련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2021. 7. 27. 제정, 2022. 1. 28. 시행)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019. 4. 17. 전부개정, 2019. 4. 17. 시행)

□ 정책·관행의 변화

- ‘인체적용제품·물질 독성시험·통합위해성평가’ 기본계획 수립('18년 6월)
- ‘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18년 6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성 평가 대상이 개별법에서 정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축산물, 화장품, 농수산물 등에서 사람이 섭취·투여·접촉·흡입 등을 함으로써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체적용 제품’으로 확대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성 평가 대상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체적용제품’으로 확대
- 시민 건강 보호라는 본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협력 강화를 통해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위해성 평가가 이뤄져야 함

□ 향후 과제

- 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계부처 정보공유 시스템 연계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⑩ 기후변화 적응법제 및 대응역량 강화
추진부처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과제목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구현		
주요 내용	- 사회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 유도 - 탄소포인트제도 활성화, 탄소발자국 인증 확대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탄소포인트제 운영규정 개선
 - 아파트단지 평가방법 간소화, 인센티브 지급한도 상향 등

□ 정책·관행의 변화

- 사회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 유도
- 탄소포인트제 운영규정 개선 및 홍보를 통한 제도 활성화 추진
- 탄소발자국 인증제품 확대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취약계층 이용시설(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등) 대상 인프라 개선(쿨루푸 등)(24개 지자체, 37.5억 원)
- 취약계층 폭염대응 지원(20백 가구, 대응 수칙 안내 및 물품 지원)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본사업 도입('20년 ~)에 따른 내용 반영, 장기 참여자(인센티브 연속 4회 이상 수급자)의 유지인센티브 상향 조정(연간 최대 7천원→21천원)
- 중소기업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 부담 완화를 위한 환경성적(탄소발자국) 산정 및 도안 제작 비용 지원('21년 90개 기업지원)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본과제는 기후변화 적응법제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목표 하에 사회전반에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고, 탄소포인트 제도 활성화, 탄소발자국 인증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과 정부대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는 일정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전 사회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인식개선과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탄소포인트제도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가입자수의 증가는 긍정적이나 시민인지도 확산을 위한 캠페인 사업 등의 고려도 필요함. 한편 시민의 참여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함
- 비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저감유도 방안으로 기존의 캠페인, 컨설팅 등의 간접적인 유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전기사용량을 줄이는 등)의 제시가 필요함

□ 향후 과제

- 기후위험 중점관리지역(Hot Spot)을 선정하여 적응 인프라(무더위·한파 쉼터, 쿨링로드 등) 우선 구축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발굴 및 지원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⑰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추진부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과제목표	- 미세먼지 국내 감축목표 및 환경기준 강화 - 영·유아,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 미세먼지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사업 추진		
주요 내용	- 미세먼지 국내 감축목표 및 환경기준 강화 '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노후석탄발전소 폐지,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 미세먼지 노출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확대 - 미세먼지 “나쁨” 이상 시 질병결석 인정, 학교 공기정화장치 단계적 설치 등 - 한·중 협력센터 출범 등 중국과의 협력사업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 ~ 3월)’ 도입·시행('19년 12월 이후 매년 시행) - 질소산화물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배출부과금 제도 시행('20년 ~)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요건, 절차,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정('19년 2월) - 지하역사 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을 $50\mu\text{g}/\text{m}^3$으로 신설('18년 10월 제정)

□ 정책·관행의 변화

- 미세먼지 국내 감축목표 강화 '24년까지 '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감축조치 시행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불허 및 노후 석탄발전소 6기 폐지 - 노후 경유차 감축 및 지속적인 전기·수소차 보급 - 미세먼지 노출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확대 -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 지하역사 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을 $50\mu\text{g}/\text{m}^3$으로 시행 - 중국과의 협력사업 추진 - 한-중 맑은하늘(청천) 계획 세부이행방안 MOU 체결 및 이행계획 추진 - 대기질 예보 및 경보 정보 공유 - 계절관리제와 중국의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 추진 성과 공유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결과 계절관리제 기간(12~3월)동안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4.8\mu\text{g}/\text{m}^3$ ($29.1 \rightarrow 24.3\mu\text{g}/\text{m}^3$) 개선, 나쁨 이상 발생 빈도 9%p 감소
- 조기폐차 지원, 노후차량 운행제한 등 노후 경유차 감축('21년 노후 경유차는 '18년 대비 127만 대 감소), 전기·수소차 보급('21년 누적 약 25.7만대)
-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 4기 폐지(누적 10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년 12월 ~ '21년 3월) 석탄발전소 최대 28기까지 가동정지 등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지속 관리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9개소 추가 지정·운영('20년 누적 36개 → '21년 누적 45개소)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미세먼지 농도는 아래와 같은 복합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기상여건 등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음 : * ① 국내 정책효과, ② 국외 여건 개선, ③ 기상조건 등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계절관리제 최초 도입 시행('19년 12월 ~ '20년 3월)으로 동 기간 배출량 최대 2.2만톤(4개월 국내 배출량의 19.5%)이 감축됨으로써 시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함. '21년 초 미세먼지 농도는 $18\mu\text{g}/\text{m}^3$ 로 '15년 관측 이래 최저, '16년 대비 30% 이상이 개선된 것은 긍정적임. 어린이집과 학교 등 주변에 미세먼지 측정소를 확충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학교 인근 등에 이동측정차량을 집중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미세먼지 노출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확대함.
- 다만 당면하여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노후경유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 전반의 운행 등의 제한이 필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계획 및 시행단계에 시민의 참여가 요구됨. 또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신뢰를 주는 것도 필요함

□ 향후 과제

- 미세먼지 노출로부터 민감·취약계층 보호
 - 에어코리아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오존 예·경보 현황, 고농도 발생 현황 등 신속 전파
 -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22년 누적 48개소 지정목표)
- 동북아 및 국제사회 공조 강화
 - 한·중·일 대기오염 5개년 협력계획('21년 ~ '25년) 및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5개년 시행계획('21년 ~ '25년) 이행으로 동북아 국가들의 책임 있는 저감을 유도
 -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 추진을 통한 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질 연구와 정책지원 기반 확보 및 국제 협력체계 구축(본 조사 수행, '22년 ~ '24년)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⑮ 생활소음 대책 마련
추진부처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제목표	생활소음 관리강화를 위해 공사장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실시간 소음도 공개제도를 활성화 하고, 도로변 교통소음원 관리 강화를 위한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 확대 추진		
주요 내용	- 공사장 소음 관리 강화 - 공사장 현장 관리자 교육 강화 및 전문 현장진단을 통한 컨설팅 - 도로변 교통 소음원 관리 강화 - 교통소음·진동관리 지역 지정, 확성기 등 이동소음 규제지역 확대 등 추진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 - 층간 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지속 추진 및 교육 홍보 강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 도입을 위한 절차·내용 등 규정(’19년 12월) -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 본격 시행(’20년 1월), 타이어 소음도 신고제 운영 - 타이어 소음도 표준시험절차 마련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20년 8월 10일)

□ 정책·관행의 변화

- 공사장 소음 관리 강화 -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 수립 -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운영 안내서 마련 - 공공장소 발생소음의 자율적 저감 실천을 위한 이동소음 관리요령 마련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해결 - 유아 및 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층간소음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주요 소음발생기계인 ‘발전기, 콘크리트 절단기’(8종)의 제작 및 수입시 소음도 검사를 통한 소음도 표시로 공사장의 저소음 기계 사용 유도 및 생활소음 저감

-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센터 '12년 개소 이후 전화상담 164천건, 현장진단 49.6천건 수
-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센터 '21년 전화상담 46천건(누적 252천건), 현장진단 9천건(누적 69천건) 수행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특정공사 사전신고, 생활소음 및 도로 등 교통소음 관리,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소음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온한 환경에 대한 시민적 요구 증가와 소음발생원의 다양화로 인해 시민의 정책 체감도 미흡
 - 공동주택 거주인구 증가, 주간야간 근무 등 생활패턴의 다양화, 개인 중심 문화의 확산 등으로 정온한 환경에 대한 시민적 요구 증가
 - 시민의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건설현장, 도로 및 철도의 확장, 교통수단(버스, 철도, 승용차 등)의 증가로 인한 소음발생원 다양화로 인한 소음관리 애로
- 공사장, 공동주택 공급자, 도로 및 철도 건설자 등이 방음시설 등 저감대책을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회피함에 따라 자발적 관리에 한계
- 공동주택 거주인구 증가, COVID-19 장기화 등에 따른 실내생활의 증가로 인해 층간소음 민원 및 관련 사건·사고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인력과 권고 성격의 서비스만으로는 갈등 관리 한계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소음진동 관리법 제21조에서 생활소음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의미하며 생활소음에 대한 규제를 지자체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
- 주택공사장, 시민의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건설현장, 도로 및 철도의 확장, 교통수단의 및 공동주택거주의 증가로 소음발생원인이 다양해지고 특히 COVID-19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
- 정책적으로 공사장 소음관리를 강화하고 층간소음 관리와 갈등해소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외 환경보전 협회를 층간소음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운영하여 신속한 이웃사이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함
- 건설현장, 도로 및 철도시설 건설자, 공동주택 공급자 등의 소음저감대책 비용부담의 한계를 해결할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또한 공동주택 거주인구 증가와 개인중심 문화의 확산, COVID-19의 장기화에 따른 실내생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층간소음을 실효성있게 해결해 나갈수 있는 방안 필요

□ 향후 과제

- 기존 환경보건학적 접근이 부족했던 생활환경 유해인자(소음·진동)에 대한 건강부담 평가 추진
- 소음 측정망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IoT기반 실시간 소음·진동 측정기반 마련
 - IoT를 활용한 실시간 소음 자동측정 지점 단계적 확대 등이 포함된 소음·진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중장기 계획 맵 마련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확대(20대→50대),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을 동시에 제공하는 원스톱 소음측정, 관리주체 우선상담 시 저감물품 先 제공 등 이웃사이센터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층간소음 갈등 조기 해소 추진
- 갈등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층간소음 갈등 해결 대화법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용 갈등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해 층간소음 민원 소통 창구 다양화 추진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①9 국토 및 환경보전계획의 지속가능 발전기반 확보
추진부처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과제목표	자연보전정책 수립으로 무분별한 개발 사업 등에 따른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한반도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백두대간의 보전·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조성		
주요 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도시 녹지 및 공원의 보존과 지속적 확대로 대시민 환경권 확보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으로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백두대간, DMZ 등 핵심 생태축 보전과 도시의 생태적 건강성 증진으로 지속가능한 국토 생태네트워크 구축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정보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확대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평가법('18.6.), 및 하위법령('18.11.) 개정]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으로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평가법('18.6.), 및 하위법령('18.11) 개정] -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국토부-환경부) 제정('18년 3월) - 지자체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 이행을 위한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개정('20년 12월) - 환경부의 복원사업의 후보목록 작성, 추진절차, 사후평가 역할 등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20년 8월),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22년 1월 시행) - 자연환경의 순손실을 예방하고 자연환경·생태계 서비스의 유지·증진관련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완료('21년 4월)

□ 정책·관행의 변화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도시 녹지 및 공원의 보존과 지속적 확대 확보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백두대간, DMZ 등 핵심 생태축 보전과 도시의 생태적 건강성 증진으로 지속가능한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기틀 마련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도시 훼손지를 대상으로 한 복원사업 실시('20년 2개소)
- 단절·훼손구간 생태통로 연결사업 등 추진(~'23년 81개소)
-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방안”을 마련 및 시행('18년 4월)
 - 우선관리지역 선정, 지방채 발행 이자지원, 국고사업 연계 등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계획의 마련 등 자연환경 복원 제도 기반 구축 및 도시 생태축 복원 신규사업 추진으로 훼손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녹지보존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환경권 및 건강권 보장에 일정 정도 기여함
- 일시적인 사업으로서 자연환경 복원 및 생태환경 보전은 한계가 있으며 추후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복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을 일정 정도 제고하였다는 평가도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작성에 있어 부실함은 여전히 개선사항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향후 과제

- 훼손된 녹지축 연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연환경 복원체계 구축
 - (자연환경복원사업)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지 조사·선정, 시범사업 대상 발굴·추진('22년 ~ '23년)
 - (도시훼손지 복원) 도시생태계 건강성 강화를 위해 도시 훼손지 대상 생태공간으로 복원('25년까지 25개소 복원)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㉔ 진료비 정보공개 확대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제목표	환자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확대		
주요 내용	- 정보공개 필요항목(상병별·코드·입원일수·진료비) 분석 및 데이터 구축 - 중증도 보정을 통한 요양기관의 종별·기관별 진료비, 입원일 수 등 제공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활용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진료비 정보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하여 건강보험 진료 통계 자료를 민간에 제공 중
 - 요양기관 종별 입(내)원 일수 및 요양급여비용
 - 다빈도 상병(코드)별 진료인원·환자당 진료비 및 입(내)원 일수
 - 연령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진료현황(진료일수, 진료비 등)
- ※ '18년 이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진료비 정보공개 중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환자의 건강권, 치료받을 권리 등을 위해 진료비용에 대한 관리와 투명한 공개는 바람직한 방향임.
- 다만, 온라인 위주의 공유 방법으로 인해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정보 접근이 어려울 수 있음.
- 시민들이 진료비 정보에 대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확대가 필요함.

□ 향후 과제

- 디지털 취약계층도 진료비용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방법 보완
- 시민들이 진료비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알 수 있도록 홍보 확대 필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㉔ 필수·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제목표	진료에 필요한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중증질환치료제, 필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통해 환자의 치료접근성 강화		
주요 내용	- 위험분담제 지속 운영 및 모니터링 강화 - 세계최초 허가 국내개발 신약은 100일 이내에 평가하고 30일 이내 협상 - 협상명령 전 심사평가원의 평가결과 자료를 건보공단과 신속 공유하여 행정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보험평가약가협상 연계 시행 - 약제 부문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약제 선별급여 도입 - 보험급여 중인 의약품의 기준확대를 통한 비급여 부담 해소 우선 추진 - 약가 결정이 필요한 기등재 의약품은 정부의 협상력 약화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제도 및 사후관리 방안 정비 후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위험분담제도 관리 보안 방안 마련
- 위험분담제도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외 기타 중증질환치료제까지 대상 확대
- 위험분담제를 적용한 약제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후발약제),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 및 3상 조건부 허가 약제에 대한 적용 확대
- 약제 선별급여 도입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항암제 약품비 비중 증가 11,719억원(7.0%)→19,148억원(9.4%), 귀의약품 약품비 비중 증가 3,348억원(2.0%)→6,417억원(3.1%)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 확대 ('17년 대비 '20년 기준)
- 보험급여 중인 의약품 중 전액본인부담이 발생하는 총 99항목 기준비급여 해소하여 환자의 치료접근성 강화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환자 치료접근성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약가제도를 지속 보완하되, 이해관계자별 이견에 대한 조율 등 필요
* 위험분담제도 및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 확대 관련 제약계는 적용대상 확대 필요성 주장, 시민사회계 등에서는 가격 투명성 악화 등의 이유로 반대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위험분담제도 운영 개선 및 희귀질환치료제, 항암제, 중증질환치료제로 확대하여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약제 선별급여 도입으로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여 본인부담율을 완화함.
- 필수·고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분담제도 운영을 하고 있음. 이에 의약품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 이므로 효과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임.

□ 향후 과제

- 위험분담제도 의약품에 대한 효과성 모니터링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㉔ 의료서비스 이용 차별 개선
추진부처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과제목표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 차별 개선을 위하여 의료인을 포함한 대시민 대상 교육·홍보 수행으로 HIV/AIDS 인식 개선 및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낙인 감소 기대		
주요 내용	HIV/AIDS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차별·낙인 해소를 위한 대시민·대상군별 교육·홍보 강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의료 관계자 대상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콘텐츠 제작 - 예비의료인 및 상담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길라잡이 개발 및 보급 - 에이즈 정보 전달·예방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캠페인 추진 - 대시민·대상군별 에이즈 인식 개선을 위한 객관적 정보 제공, 교육, 홍보로 에이즈에 대한 낙인 점수 개선과 에이즈에 대한 지식 수준 향상 ※ 낙인 태도 : ('17년) 3.47점 → ('19년) 3.40점 → ('21년) 3.15점(하향) ※ 지식 점수 : ('17년) 65.0점 → ('19년) 66.1점 - 에이즈에 올바른 지식 및 낙인 개선을 위한 일반인대상 지식·태도·신념 및 행태조사 실시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예비의료인 및 상담간호사 등 전문가 양성교육을 통해 감염인 진료에 대한 상담의 질 향상, 감염인에 대한 차별·낙인 개선 ※ 상급교육과정 상담사 상담수행능력 ('19년) 91.3점/100점 → ('20년) 92.0점/100점 ※ 교육 전·후 에이즈에 대한 낙인 감소 - 상담간호사 (교육전) 3.45점/5점 → (교육후) 3.90점/5점 - 예비의료인 (교육전) 3.23점/5점 → (교육후) 3.69점/5점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홍보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활동 다양화 및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차질 없는 교육·홍보 활동 수행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질병관리청에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등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HIV 감염인, AIDS환자에 대한 의료 차별은 지속되고 있기에 의료서비스 이용 차별을 위해 의료인 대상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함. 요양병원, 재활시설에서도 차별적 행위가 일어나는 상황이기에 관련 교육 대상자를 확대가 필요함
- 위와 같은 문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나타나며 법률이 사람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임. 본 법률의 제19조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과 제25조는 HIV감염인을 보호와 치료 지원이 아닌 전파의 원인으로 규정하며 처벌해야 할 대상으로 두고 있어 사람들에게 HIV 감염인과 AIDS 환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낙인을 불러일으킴. 또한, 형사처벌 규정은 당사자가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조기 검사와 치료를 어렵게 만들어 예방하고자 한 본 법의 목적과 반하는 결과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법률개정이 필요함
- 유엔에이즈계획(the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UNAID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HIV/AIDS 신규 감염인은 줄어들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²⁶⁾. 질병관리청의 신규 HIV/AIDS 신고 현황을 보면 1985년 이후 신규 감염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질병관리청, 2022). 이러한 통계 수치는 통제와 처벌에 기대서는 HIV 예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함. HIV 감염 예방에 대해 관리와 처벌이 아닌 예방과 권리 보장의 접근방식으로 '노출 전 예방 요법(pre-exposure prophylaxis, PrEP, 이하 프렙)'의 활성화를 들 수 있을 것임. 프렙은 HIV에 감염 고 위험군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프렙은 단순히 HIV 감염을 예방법으로 기능한 것이 아니라, 비감염인이 HIV 약을 복용하여 예방함으로써 감염에 대한 불안을 낮추고, 감염인과 비감염인을 구분 짓는 요인 중 하나를 없애 HIV/AIDS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음²⁷⁾. 이와 같이 HIV/AIDS에 대한 인식은 법률, 치료법 등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뿐만 아니라 인식개선을 위한 다측면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HIV/AIDS에 대한 신규 정보 전달 및 차별 개선 콘텐츠 제작·보급 및 교육 지속
- 의료차별 예방 교육에서 요양병원, 재활시설 관계자 등 교육대상자 확대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
- 노출 전 예방 요법(pre-exposure prophylaxis, PrEP) 처방 활성화
- HIV/AIDS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26) 의학신문(2021.12.06.). [세계 에이즈의 날] 코로나19에 막힌 HIV검사 접근성 높여야.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725>. 최종검색일: 2022.08.23.

27) 지로.(2017.12.29.). [커버스토리 'HIV/AIDS' #1] 현재 유럽권 국가의 HIV 예방 및 치료 흐름과 PrEP.

<https://chingusai.net/xe/newsletter/514555>. 최종검색일: 2022.08.23.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4. 교육을 받을 권리	①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
추진부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유아교육정책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과제목표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등을 통해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		
주요 내용	- 고등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상교육 실현 -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취학 전 유아의 무상교육 점진적 확대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지속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무상교육 시행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법률 시한 연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

□ 정책·관행의 변화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및 완료
 - ('19년) 2학기부터 고 3학년 → ('20년) 고 2, 3학년 → ('21년) 고 1, 2, 3학년
-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 ('13~'19.) 22만원 → ('20.) 24만원 → ('21.) 26만원 → ('22.) 28만원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고등학교 재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의 학비 경감
- '21.12월말 기준 누리과정 지원인원 499,875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인상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되면 그만큼 유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이 점에서는 인권실현의 책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유아 교육은 유아교육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기도 하므로, 교육 받을 권리의 충분한 실현을 위해서는 누리과정의 완전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무상교육 조기 실시는 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편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이 아닌 이주 아동은 누리과정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어린이집 보육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주민 가정의 이주아동이 교육에서 사실상 방치된 채 생활하고 있음. 이들은 본인의 선택이 아닌 부모의 선택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공교육 체계 안에서 사실상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누리과정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교육권과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향후 과제

- 누리과정 지속 지원을 통한 무상교육 실현
- 누리과정 지원 대상에 이주 아동 포함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4. 교육을 받을 권리	② 성취평가제 실현
추진부처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과제목표	•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 중심의 성취평가제 실현		
주요 내용	• 성취평가제 현장 안착 • 학생 평가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교육 구성원 역량 강화 • 지식 위주의 경쟁적 교육 개선을 통한 학생 존중 교육풍토 조성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개정 - 학생 성장 중심 평가를 위한 수행평가 활성화('18.1) - 수업-평가 연계 강화를 위한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중학교 자유학기 교사별평가('19. 12.) - 중학교 표준편차 삭제, 고교 교과세특 기재 단계적 확대, 과제형 평가 금지('20.1) 등 - 학생평가 관리 강화 관련 지침 정비('18. 12.)

□ 정책·관행의 변화

- 과정중심 학생평가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연구학교 및 교사연구회 구성·운영('19.3.~12.) - 연구학교 35개교(초17, 중18) 및 수업연구회 38개팀(초15, 중23) 운영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과정중심 수행평가 도구 개발·보급 - 초등 5-6학년군 7종('18.), 중등 7종('19) - 과정중심평가 및 서·논술형 평가의 이해 제고를 위한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보급('18.~'19.) - 과정중심평가 2종(초등 1종, 중등 10종) / 서·논술형 평가 2종(초·중등 각 1종) - 서·논술형 평가 자료집 및 가이드북 개발·보급('20) - 중등 5개 교과(국,수,사,과,영) 50건(165문항) 및 가이드북 10종 개발 - 교원·학부모 등 인식 개선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 개발·보급('20) - 리플릿 2종(과정중심평가, 학생평가지원포털 홍보) - PPT 3종(초·중·고 교사용 각 1종) - 홍보동영상 4종(대시민 인식개선용 1종, 초·중고 교원 각 1종) - 학생평가 운영 내실화 및 성취평가제 현장 정착을 위한 온라인 컨설팅 실시('21.5~11월, 89회) - 전체 초·중 교원 대상 실습·사례 중심 학생평가 연수 운영 : 매년 초·중학교 전체교원의 20%를 대상으로 실습중심 연수 추진('18.~'22.)

- 성취평가제 안착 및 과정중심 평가 활성화를 위한 자료 개발·보급
 - 학교급별 학생평가의 이해(3종, 5월)
 - 교사의 피드백 역량 강화 프로그램(1종, 8월)
 - 교원의 수업·평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10종, 6월)
 - 과정중심 평가 실천 사례집(2종, 8월)
 - 학생평가 컨설팅 도움 자료집(3종, 10월)
 - 초·중학교 학생평가 안내자료(2종, 11월)
 - 창의교육 선도 프로그램(8종, 12월)
- 학생평가 담당자 정책협의 정례화(연중, 총10회 개최)
- 초·중·고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운영(중앙지원단 106명, 지역지원단 985명)
- 교실수업 및 학생평가 내실화 지원을 위한 연수 및 콘텐츠 개발·보급
 - 학생평가 도구 개발의 실제(1종, 5월)
 - 교원의 원격수업 도구 활용 및 수업 적용 전략(1종, 6월)
 - 원격수업 학생평가의 실제(6종, 6월)
 - 학교 관리자 과정중심 평가의 이해와 실제(2종, 7월)
 -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학생평가의 이해(1종, 12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학생평가지원포털 기능 개선을 통한 현장교원의 만족도 제고(목표치 74, 만족도 79.5)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학습부담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세계 하위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성취평가제는 상대평가로 인한 석차나 등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인권의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
- 인권실현의 책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절대평가라는 특성에서 기인한 성취 수준 내지는 평가 기준의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교육현장에서는 고1공통 과목에 대한 9등급 상대평가 유지, 수능 상대평가 유지, 소위 ‘내신 부풀리기’의 우려 등으로 인한 혼선이 지속되고 있어, 성취평가제를 둘러싼 문제점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섬세한 정책적 조치가 지속되어야 함
- 또한 고교성적은 결국 대학 입학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성취평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입전형도 그에 따라 개편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성취평가 기준의 지속적 보완 및 교사의 평가 전문성 강화
- 성취평가제와 연계한 대입제도 개편방안 마련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4. 교육을 받을 권리	③ 저소득층 가정 자녀 교육 지원
추진부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과제목표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주요 내용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여 교육비 지원 신청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부원클릭(oneclick.moe.go.kr)

□ 정책·관행의 변화

-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급식비, 학용품비, 부교재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 지원
- 교육비 지원 수준의 점진적 인상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보장 수준 확대(단위 : 원, 약 30여만명)

구분	'18.	'19.	'20.	'21.	'22.
초	116,000	203,000	206,000	286,000	331,000
중	162,000	290,000	295,000	376,000	446,000
고	162,000	290,000	422,200	448,000	554,000

※ 실비 지원되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제외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상실당하지 않도록 저소득층 가정에 각종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의 교육 받을 권리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경제적 차이가 교육의 격차를 가져오는 현실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이와 같은 교육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지원항목과 금액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교육의 격차는 당장 상급학교의 진학에서도 차이를 낳고, 졸업 후 일자리, 급여의 문제와 연결되면서 인권주체인 아동 청소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므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한편,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는 들지 못하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실질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계층은 없는지 살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또한 한국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제공되는 언어를 다변화하고, 장애인을 위해 수어를 제공하는 등 이주민이나 장애인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
- 각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다른 점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의 사정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나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여부 혹은 지원수준이 결정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 보완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향후 과제

- 경제적 여력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 교육비 지원 대상의 지속적 확대
- 이주민, 장애인 등을 위한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에 대한 지역별 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 마련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4. 교육을 받을 권리	④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
추진부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과제목표	장애학생 및 장애대학생,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강화		
주요 내용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연수 강화 및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할 강화 - 장애대학(원)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내실화를 위한 전문도우미 확대 배치 및 교육콘텐츠 및 매뉴얼 개발 보급 - 특수교사 연차적 증원으로 특수교육의 질 향상,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급) 확충 -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추진체제 구축,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 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의 학력취득 지원을 위한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고시(‘20년 12월)

□ 정책·관행의 변화

-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 (‘18.) 71.9% → (‘19.) 74.8% → (‘20.) 79.3% → (‘21.) → 82.4% - 특수학교(급) 확충(5개교 신설, 381학급 확충)을 통한 과밀학급 비율 감소 * 과밀학급 1.0%p 감소: (‘17.) 16% → (‘18.) 14% → (‘19.) 12.1% → (‘20.) 11.7% → (‘21.) 10.7% - 사업전담기관의 교육지원인력 사전교육(120분) 지원 통한 전문성 향상 및 장애이해도 제고 - 원격수업에 따라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대학생 지원안내 및 교수자 유의사항 등 배포(‘20년 3월, 8월)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23회) 및 장애유형별 프로그램(16종), 교재(12종)·교구(87종) 개발·보급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 수립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시설·설비 표준안 마련 -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 구축 및 장애인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년 ~ ‘22년) 수립(‘19년 12월) 및 추진 - 장애성인에게 향상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마련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국립대학의 교육자원과 연계하여 예술, 직업교육 분야 등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 추진 및 체육 분야 특수학교 신축 예산('21년 설계비 19.5억원) 신규 확보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지원
 - 2018년 : 201개단 내·외부위원 2,383명, 4,176개교 지원
 - 2019년 : 202개단 내·외부위원 2,428명, 3,988개교 지원
 - 2020년 : 202개단 내·외부위원 2,438명, 2,925개교 지원
 - 2021년 : 201개단 내·외부위원 2,468명, 3,921개교 지원
-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사업 신설하여 편의제공 강화
 - 약 110개의 대학 약 15억 원 규모 지원(1차 72개교 10억 원, 2차 37개교 2억 원, 3차 1개교 1억 원 지원)
- 전국 67개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1,029명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인력 668명 지원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사 증원 등 특수교육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한 점은 성과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참여라는 '인권'으로 장애의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 현재에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만을 고려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인프라를 장기적 계획하에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방향성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유럽을 비롯해서 국제적으로는 특수학교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도 이러한 흐름을 고려한 장기적인 방향설정이 필요
- 전국 교육청별 장애학생 인권보호 활동, 특히 장애학생의 폭력피해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에 목적을 둔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인권지원단 구성 및 운영으로 장애학생의 폭력피해 및 인권침해 예방에 기여함. 가장 우선적으로 장애학생 당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정-학교-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향후 과제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할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대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관계기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병무청,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의체 구성 및 중앙 차원의 협력 강화('22년 ~)
- 장애인 고등교육지원 종합 방안(가칭) 수립 추진('22년 ~)
 - 고등교육 기회 확대, 장애학생 지원 관련 대학의 책무성·역량 강화 지원 등의 추진과제를 담은 종합방안 수립
-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특수교사의 연차적 증원을 통해 법정정원 확보율 제고 및 '22년까지 특수학교 22교 이상 신설 및 특수학급 1,250학급 이상 신·증설 추진
 - * 특수학교(총 22교 신설 예정) ('17년) 173교 → ('23년) 195교
 - * 특수학급(총 1,250학급 이상 확충) ('17년) 10,325학급 → ('22년) 11,575학급 이상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지속 추진
 - 제2차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3년 ~ '25년)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추진('22년 3월 ~ 9월)
 -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역 학습공동체 지원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22년 32개)
 - 장애인 문해교육 교·강사 양성 연수(80명) 등 학력보완 교육을 위한 지원 강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4. 교육을 받을 권리	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 보호 강화
추진부처	환경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제목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의 집중단속 및 이전·폐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주요 내용	- 학교주변 불법 유해시설에 대한 신속한 이전·폐쇄 - 학교주변 불법 유해시설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을 통한 불법 유해시설 적발 및 이전폐쇄를 위한 적극적 행정조치 - 교육환경평가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교육환경보호제도 강화 추진 - 교육환경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조정 -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계획 수립 대상 지역·지구 확대 -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평가제도 내실화 -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 시 또는 학교주변 재개발사업 및 대규모 건축물 건축 시 사전 교육환경평가를 통해 교육환경 저해요인을 제거·보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에 대한 설치규제 강화 추진(2018년 7~12월, 국정과제 54-4)
- 사고대비물질 다량 취급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제도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제도로 개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 교육환경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법 일부개정 추진('20년 8월19일 발의)

□ 정책·관행의 변화

- 학교주변 불법 유해시설 이전·폐쇄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단속* 및 시·도교육청별 자체점검** 실시
-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주변 불법 유해시설에 대한 조치
 - 학교주변 불법 유해시설에 이전·폐쇄조치

- 학교주변 유해환경 분야 합동단속 추진
- 교육환경평가제도 내실화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학교주변 불법 유해시설에 이전·폐쇄조치
 - * 시·도교육청 자체점검 등을 통해 연간 48개 불법시설 이전·폐쇄조치 완료
- 교육청 업무담당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전문연수 실시
 - * 워크숍(2020년 12월 11일, 199명 참석), 전문 연수 : 2020년 6월 ~ 12월, 283명 참석)
- 전국 초,중,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유해환경 합동 단속 - 16,346개소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전국의 교육환경보호 구역 유해환경 단속 및 학교주변 불법 유해시설 이전·폐쇄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해시설들은 없어지지 않고 심지어 형태를 변화해 가며 증가하고 있음. 일부에서는 단속을 더 강화하고 처벌기준을 더 엄격히 하는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단속과 처벌 일변도가 실효성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의 설계와 함께 고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향후 과제

- 학교주변 불법 유해시설 이전·폐쇄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단속(연 2회) 및 시·도교육청별 자체점검(수시) 실시
-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 추가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추진(계속)
- 교육환경평가대상별 평가기준 개정 및 항목 조정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계속)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4. 교육을 받을 권리	⑥ 고교 교육제도 개선
추진부처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 학교정책과
과제목표	-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및 다양화, 운영 내실화 -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내실화 - 고교 입시 경쟁 및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입제도 개선		
주요 내용	- 교과특성화학교를 융합, 사회, 외국어 등으로 확대 - 폐교 등 유휴 교육시설을 활용한 예술 위탁교육기관 운영 - 집중이수단위 편성·운영 - 일반고 3학년 대상 ‘일반고-전문대학 연계 직업 교육과정’ 제공 - 일반고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고입전형 동시 실시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일반고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고입전형 동시 실시

□ 정책·관행의 변화

-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및 다양화, 운영 내실화 ‘20. 366교·414과정 → ’21 395교·454과정 -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 6개 시·도 교육청, 14개 전문대학, 20개 과정, 304명 참여 - 일반고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고입전형 동시 실시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위탁형 교과특성화학교 : 대구예담학교, 창원예술학교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고입동시실시는 일반고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학전형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공정하게 보장하면서도 학생들로 하여금 고교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음. 특히 자사고의 경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일반고와 교육과정에서 큰 차이가 없이 운영되는 반면 전기 모집으로 인해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므로, 고입동시실시에 따라 학생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학교 간 학력격차를 해소한 점은 높이 평가됨²⁸⁾.
- 다만,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고교교육제도의 개편에 관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는 주체는 당사자인 학생인데, 이행내용을 보면 개편 과정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 현실적으로 고교교육제도는 대입제도와 직결되어 있고 우리나라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고교교육제도의 개편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교과특성화학교와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의 경우 학생에게는 교과 혹은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지만 있는 상황임. 따라서 교과 혹은 교육과정의 선정 과정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교과 등을 좀 더 다양화하여 학생의 선택지를 넓혀야 함.

□ 향후 과제

- 교과특성화학교의 다양화 및 확대 운영
-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내용의 다양화
- 고교교육제도의 개편 과정에 있어 학생 의견 반영 창구 마련

28) 헌법재판소 2019. 4. 11.자 2018헌마221 결정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4. 교육을 받을 권리	⑦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과제목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속 확대하여 센터로 연계된 학교밖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학업·자립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의무교육단계(초·중)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로 자동연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하여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21.9.24). 다만, 지원센터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더라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에게 고지하고 청소년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즉시 제공받은 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

□ 정책·관행의 변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1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실시 및 강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20년 38.5% → ’21년 41.4%) 향상

구분	지원인원	성과인원		
		소계(실인원)*	학업복귀	사회진입
’21년	43,124명	17,872명 (41.4%)	13,958명	6,074명

* 성과인원은 학업복귀와 사회진입 두 성과 모두 달성한 중복인원을 제외(2,160명)한 실인원임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제3차 인권정책기본계획의 해당 과제명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학업·취업·자립 등 맞춤형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밝히고 있으나, 과제목표는 “상담, 교육,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어 과제목표와 이행내용이 부합하지 않음. 교육의 목표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통해 전인격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청소년기의 여가, 문화생활은 발달에 대한 권리 보장에 필수적이며, 따라서 의무교육 밖에 있는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지원을 위한 정책은 포괄적인 내용을 아우를 필요가 있음
- 청소년증, 무상급식, 대입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권리 제한이 권리 박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센터의 프로그램과 종사자의 개별적 역량 하에서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진로탐색 과정에서 예외적 선택지만 제공됨. 민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적절성, 실효성 평가를 위한 장치가 필요함
- 해당 과제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지원정책’에 한정되어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가 다각적으로 보장되려면,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의 통합지원이 필요함. 가정해체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분리(시설보호), 탈가정 상황, 범죄로 인한 낙인과 배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결부된 상황에서 가급적 학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지원이 제공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업복귀의 선택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부처협력이 있을 때, 비로소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예: 서울시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수당)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이 극히 제한된 경험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극히 위축시켰으며, 현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주된 프로그램은 10대 중후반기를 대상으로 진로탐색과 노동권익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아쉬움이 있음. 다양한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 및 온라인 접근성·이용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향후 과제

- 학교 밖 청소년 체험활동 및 또래소통이 가능한 전용공간 확대('21년 34개소→ '22년 44개소)
- 비대면교육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을 구축, 저연령용(초·중)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및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 등 개발
- 진로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14개 시도) 추진 및 전문적인 직업교육훈련(내일이룸학교) 연계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의 활동사항을 대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생활기록부’ 적용 대학 확대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과제 VI	1.여성 분야	⑧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추진부처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과제목표	「진로교육법」의 양성평등 내용 강화 - 양성평등한 진로상담을 위한 교원 대상 교육 강화		
주요 내용	「진로교육법」의 기본방향(제4조)부분에 양성평등 가치 추가 개정 검토 - 진학지도 등에 성별 다양한 진로에 대해 지도할 수 있도록 진로 관련 교원연수 시 '양성평등'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 -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개선 지원을 위한 '온라인 진로상담' 운영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 과정에 ‘양성평등’을 포함하여 운영함으로써 진로전담교사, 담임교사, 학교 관리자 등 교원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에 기여
- ‘온라인 진로상담’을 통해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개선 지원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개선 지원을 위한 ‘온라인 진로상담’ 운영
* 커리어넷 온라인 진로상담 ‘양성평등’ 관련 상담사례 건수 : 46건(전체 상담사례 13,560건 중)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❸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성별 고정관념에 기초하지 않는 진로교육은 일상적으로 학생들과 접촉하는 교원들의 양성평등 의식에 기반할 수 밖에 없음
- 교원대상 진로교육이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이양되더라도 ‘양성평등’이 연수 내용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향후 과제

- 2020년부터 교원 대상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이양됨에 따라 ‘교원 연수 과정 편성 시 반영 요청사항’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 운영 진로교육 연수에 ‘양성평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 안내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4. 교육을 받을 권리	⑨ 석·박사 학생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과제목표	청년과학기술인은 학습과 연구를 병행하면서 학생·근로자 이중적 신분으로 권익 보호, 처우 및 보호장치 마련 필요		
주요 내용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 학생연구원에게 안정적으로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운영 등 제도개선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개정하여 기존 인건비 계상기준을 하한선으로 하고 그 이상의 상제기준은 기관에서 정하도록 규정개정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개정('18. 2. 21. 시행)

□ 정책·관행의 변화

-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계상·지급 체계를 개선하여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에 기여
 - 학생인건비 총액 계상 방식으로 개선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연구과제 수가 변동하거나 연구책임자의 필요에 따라 학생별 인건비 지급액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 개선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개정으로 재원이 풍부한 연구기관부터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상향하여 운영 등 처우 개선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학생 인건비 지급 근거가 되는 과제별 참여율은 측정,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 연구 책임자가 임의로 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교수가 학생의 인건비 가로챌 의혹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시작 첫해인 2018년 고시개정으로 ‘과제완료’는 부적절함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계상·지급 체계를 개선하여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에 기여
- 아직도 학생연구원 인건비와 관련한 의혹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건비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연구책임자의 전권 행사가 일어나지 않고 투명하게 인건비가 산정·집행될 수 있는 체계구축 감독 필요

□ 향후 과제

- 학습권과 노동권이 모두 보장돼야 하는 학생 연구원의 특성상 기존의 근로계약 형태보다는 현실 환경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근로계약 필요
- 인건비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연구책임자의 전권 행사가 일어나지 않고 투명하게 인건비가 산정·집행될 수 있는 체계구축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4. 교육을 받을 권리	⑩ 출연연 석·박사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
추진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
과제목표	청년과학기술인은 학습과 연구를 병행하면서 학생 근로자 이중적 신분으로 권익 보호, 처우 및 보호장치 마련 필요		
주요 내용	출연(연)에서 연수하는 근로성이 강한 석 박사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보장 의무화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학생연구원이 자신의 소속기관이 아닌 출연(연)에서 R&D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4대 보험 보장 등 처우개선, 권익 보호 및 보호장치마련에 기여
 - 근로시간 명확화, 학습시간 보장, 휴가와 적정임금 제공 및 일반 연구원들과 동등한 수준의 복리후생 제공 등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의무화 제도’가 오히려 단기계약만 양산한다는 지적
- 근로계약 의무화는 기타연수생 숫자를 줄이는 결과 양산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조사 결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타연수생은 '18년 2월 말 기준 1,053명으로, 제도 도입 직전인 '17년 6월 말(1,302명)보다 20%가량 감소
-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의무화 제도’ 도입만으로 ‘과제완료’는 부적절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예산등의 문제로 출연(연)의 기타연수생에 대한 단기계약 체결 및 기타연수생의 장학금 수혜를 위한 근로계약 체결 기피 등 현안문제 해결 필요

□ 향후 과제

- 학생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인 이중적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새로운 개념 정의 필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4. 교육을 받을 권리	⑫ 청년과학기술인의 발명자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추진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과제목표	청년과학기술인에 대해 학생·근로자 이중적 신분으로 권익 보호, 처우 및 보호 장치 마련		
주요 내용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청년연구자에 대해 발명자로서 특허 등을 받을 권리와 그 권리를 기관이 승계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도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18.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대학의 석박사 학생연구원 등에게 발명자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제도 개선
 -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와 이를 기관에 승계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도화
 - 주관연구기관과 학생연구원 등 간에 향후 연구성과에 대한 예약 승계 의무화
 - 학생연구원 등에게 적절한 규모의 기술료 수입 배분

□ 정책·관행의 변화

- 대학의 석박사 학생연구원 등에게 발명자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와 이를 기관에 승계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도화
 - 주관연구기관과 학생연구원 등 간에 향후 연구성과에 대한 예약 승계 의무화
 - 학생연구원 등에게 적절한 규모의 기술료 수입 배분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자신이 발명한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하므로, 그동안 석·박사 과정 연구생의 발명을 자유발명으로 취급하여 처리해온 관행을 해소하고 이를 직무발명으로서 지식재산권을 인정한 것은 인권보호 및 실현의 책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석박사 과정 연구생의 경우 연구를 수행하면서 과도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탓에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막상 지도교수로부터 폭언, 욕설, 폭행, 성희롱 등을 당해도 이를 공론화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음. 지도 교수의 사적인 심부름을 하거나 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는 등 부당한 대우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연구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들의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함.

□ 향후 과제

- 이행상황의 지속적 점검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미이행에 대한 제제, 징계 요구 등)
- 석·박사 연구생의 연구환경 개선
- 연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5.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①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미디어정책과
과제목표	• 청소년의 올바른 미디어 독해, 활용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 – 정규교육과정에서 미디어교육 확대 – 아동·청소년의 능동적·비판적 미디어 활용능력 강화 •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주요 내용	•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 토요문화학교 운영 지원 • 미디어교육 확대 및 품질 강화, 인프라 구축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 정책 구축
- 유아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 제공
-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산
-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청소년, 학생 및 교원 대상 미디어교육 지원·확대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미디어교육원 개관('20년 5월) 및 교육부 지정 종합교육연수원 인가('21년 4월)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영유아기 아동의 놀이 및 여가에 대한 권리보장, 교육권 보장에 목적이 있지, 이들에게 특별히 제공하는 시혜적 조치가 아님. 부처의 이행점검 결과에 참여인원을 ‘수혜’로 표기한 것은 정책과제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보임
- 해당 정책과제 중 ‘다문화가족, 새터민 등 이주민의 한국 사회 동화 및 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미디어교육 확대’는 정책목표와 부합하지 않음. 즉,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교육 제공과 강화는 모든 이들의 개별적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국가의 의무이행이며, 이는 한국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한국 시민의 이주민 수용도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미디어환경 조성, 교육으로 이루어져야지, ‘이주민의 한국적응’이 인권보장 내용일 수 없음. 인권정책 과제의 목표 및 취약계층의 미디어교육 확대의 취지를 고려하여, 세부사업의 운용방향이 검토되어야 함
- 전반적으로 가족지원, 학교 및 관련 기관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나, 모든 아동·청소년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역격차 해소 방안은 검토되지 않음. 온라인 접근성과 더불어 지역별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점검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 미디어교육의 전문성과 일관성, 체계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내용도 부재함. 모든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의 발달 정도를 고려한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이 계속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부처합동의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함. 이는 최근 디지털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성착취 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와도 연계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과제

- 전국 초·중·고에 학교예술강사 지원
※ 8,557개교에 국악·연극 등 8개 분야 학교예술강사 지원('22년)
-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 토요문화학교 기획·운영
－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연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 공유·확산
- 아동·청소년 대상 미디어교육 내실화 및 확대
－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한 미디어교육 강좌 지속 확대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5.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② 청소년주도 문화활동 확대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과제목표	지역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의 생산자·소비자로서 주도적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 증진 도모		
주요 내용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을 청소년이 주체로서 기획하고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 청소년 주도의 참여활동 기반 마련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사업지침 변경을 통해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 운영의 비대면 방식 허용

□ 정책·관행의 변화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면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소규모 방식으로 전환 - 청소년어울림마당 기획단을 시군구까지 확대 구성 운영 -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주관을 통해 전국의 우수사례 공유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전체 시군구에 청소년어울림마당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 증액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2019년부터 16개 시·도뿐만 아니라 110개 시·군·구로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이 확산되었으나,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예산은 2018년 이후로 변동이 없음. 사실상 지방비로 운영되는 상황으로서,

이는 지자체의 재정여건, 청소년 인구와 청소년의 교육·문화 인프라,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 운영방향과 내용이 현저히 달라지게 되는 요인임. 청소년의 참여활동을 통한 문화에 대한 권리 보장, 그로 인한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지자체 정책 변화라는 잠재적인 목표 달성이 온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지원과 정책화 방향에 대한 관계 종사자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등도 과제추진의 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임

-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은 계속사업이기는 하지만, 담당부처의 이행점검 결과를 통해 보건대 매년 일회성 사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추정할 수 있음. 그러나 인권정책기본계획의 해당 과제는 비단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의 경험을 통한 참여의 실현, 청소년 당사자의 경험과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경험을 통한 지역사회 전반의 변화를 도모하는 과정도 목적이 되어야 함.²⁹⁾ ‘운영’의 한계에 멈춰있는 한계를 벗어나, 청소년 주도의 문화활동 실현을 위한 추가적인 이행이 필요함
- 장애아동, 학교밖청소년, 가정밖아동·청소년, 빈곤가정 아동·청소년 및 보호대상아동 등 소수자 아동·청소년의 참여 정도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이들의 이용 접근성, 온·오프라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고려가 섬세하게 마련되어야 함

□ 향후 과제

- 2022년 청소년어울림마당 126개소 지원 지속 추진
 - 16개 시도 대표 청소년어울림마당, 110개 시군구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 비대면, 혼합형(대면+비대면) 청소년활동 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 SNS,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 연계 홍보 활동을 통한 운영 현황 공유

29) CRC/C/GC/12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5.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③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추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과제목표	-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장애인 생활체육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차원에서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유도		
주요 내용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 배치 -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통한 찾아가는 체육 지도 서비스 지원 - 장애인형 시민체육센터 건립 및 장애인 체력인증 기반 확대 - 장애인형 시민체육센터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건립 확대추진 - 장애 유형 정도에 따른 체력평가 관리 및 기초적인 운동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 확대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 배치
- 장애인형 시민체육센터 건립 및 장애인 체력인증 기반 확대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장애인 생활체육교실('18년 546개소 → '20년 604개소 → '21년 705개소) 및 동호회 지원('18년 349 개소 → '20년 253개소 → '21년 291개소)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19년 도입 2.3천명 → '20년 3.2천명 → '21년 6,184명) 및 장애인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19년 도입 5개소 → '20년 5개소), 장애인스포츠버스 운영('22년 신규, 24개소) 등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18년 577명 → '20년 915명 → 955명)

-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시민체육센터 건립 지원('19년 신규 30개소 → '20년 신규 23개소(총 55개소 → '21년 신규 13개소, 누적 66개소 건립 지원)
-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18년 3개소 → '20년 8개소 → 신규 2개소, 누적 10개소)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생활밀착형 장애유형에 맞도록 설계된 시민체육센터 및 장애인 체력인증센터의 건립 지원의 정상 추진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 및 문화권의 향상이 기대됨.
- COVID-19 확산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비대면 지도 병행 추진 등 변화된 생활환경에 맞추어 장애인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의 확대, 찾아가는 장애인스포츠버스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의 여가생활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생활체육의 접근성을 제고함
- 향후 변화된 장애패러다임의 전환에 맞도록 지역사회속에서 함께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향후 과제

- 생활밀착형 시민체육센터(장애인형) 건립 지원('22년 20개소, 총 86개소) 및 장애인체력인증센터 확대('22년 신규 2개소, 총 12개소)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22년 10,000명)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22년 1,000명)
- 장애인체육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공간 조성('22년 신규, 2개소) 등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5. 교육을 받을 권리	④ 노인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추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과제목표	문화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문화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인 문화향유권 제고 프로그램 지원 및 문화를 통한 노인 사회활동 기회 확대		
주요 내용	- 고령층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 - 어르신 문화예술동아리,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예술 공연 지원 등을 통해 고령층의 적극적인 문화 향유 확대 및 문화를 통한 사회참여 지원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18~'20년 전국 702개 문화시설·단체 활용, 프로그램 810개 운영, 어르신 24,532명 참여 '21년 전국 183개 문화시설·단체 활용, 프로그램 187개 운영, 어르신 4,500명 참여 '21년 (비대면) 어르신 문화예술체험 꾸러미 총 13,100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578개 단체 지원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21년 프로그램 종합 만족도 92.4점(매우 만족하는 수준)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코로나 19에 따른 사업 축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문화예술교육, 동아리 활동 등 지원,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고령층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고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세대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특히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웰다잉’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의 향유와 이를 통한 사회 참여는 노년 생활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므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 인권의 주체인 노인의 수요가 반영된 맞춤형 프로그램 또는 가급적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적 능력 저하로 인해 문화 향유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문화 향유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또한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에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취향에 따라 단체 형태가 아닌 개인 형태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향후 과제

-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 확대
- 노인의 수요가 반영된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 비대면 또는 개인 형태로 즐길 수 있는 방식의 프로그램 개발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5.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추진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과제목표	과학문화확산사업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사업 확대 추진으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지원 강화		
주요 내용	- 과학문화확산사업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사업 추진 - 학교밖 생활과학교실을 통해 소외계층 초중고생 대상 과학체험교실 운영 - 과학문화 바우처 지급, 우수과학도서 선정보급사업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 찾아가는 과학관(두드림 프로젝트), 국립과학관 소외지역 학생 초청사업 등 지역격차 해소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학교밖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 운영
-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사업
- 우수과학도서 소외계층 및 도서벽지 보급 확대 보급
- 두드림 프로젝트(찾아가는 과학관) 운영
- 과학문화활동지원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학교밖 생활과학교실
 - 프로그램 운영 읍면동 4.5% 확대('18년 1,063개→'19년 1,111개)로 수혜인원 9.4% 증가,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운영 2.4% 확대, ('20년) 도서벽지 4,005명, 배려계층 94,648명 → ('21년) 도서벽지 6,215명, 배려계층 103,407명
-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사업
 - ('20년) 4.6만 명 × 1.5만 원 → ('21년) 5만 명 × 3만 원
 - ('20년 누적) 도서벽지 4,005명, 배려계층 94,648명 → ('21년 누적) 도서벽지 6,215명, 배려계층 103,407명

- 우수과학도서 소외계층 및 도서벽지 보급 확대 보급
 - 전국 1,000개소 총 17,460권 보급 추진 및 소외계층 보급률 83.3% 달성('18년 35개소 → '20년 375개소)
- 두드림 프로젝트(찾아가는 과학관)
 - 총 10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과학관 24회 운영(수혜자 40,451명)
- 과학문화활동지원
 - 소외지역·계층대상 과학문화활동 과제 총43건(612백만 원) 지원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코로나 지속 확산에 따른 과학기술문화 사각지대 해소 필요
 - 디지털 불평등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반적인 교육·학습 결손 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미흡하여 지역단위 과학기술문화 활성화 및 취약계층 대상 과학 학습체험 서비스 강화 추진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는 학교밖 생활과학교실,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사업, 찾아가는 과학관, 과학문화 활동지원 등 지속적인 과학문화 콘텐츠 개발과 지원을 통해 확대해왔으며 온·오프라인 과학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과학문화 향유기회의 확대를 도모함. 특히 현장에서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과학학습콘텐츠를 개발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학교 등에서 활동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은 문화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 취약계층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함
- 취약계층의 디지털 불평등으로 인해 문화에서의 소외도 심각하지만 이런 디지털 불평등은 COVID-19 사태로 인한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교육 불평등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단위의 취약계층 대상 과학학습 체험 지원 강화가 필요함

□ 향후 과제

- 언제 어디서나 생활과학교실 콘텐츠를 이용 할 수 있도록(가칭)생활과학교실 종합 포털' 구축 추진
- 지원대상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인단위 신청 시스템 신규 도입 및 국가복지시스템과 연계한 사업 안내 추진
- 이동형 과학차량([가칭]사이휠)을 활용한 다양한 과학체험 서비스 제공 및 두드림 프로젝트 개최 횟수 대폭 상향('21년 5회 → '22년 20회)
- 총 20종의 과학도서 인증 실시 및 다양한 소통프로그램(라이브커머스, 오디오북 제작 등)과 도서활용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자발적 과학도서 구매·보급 추진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5.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⑦ 지역문화 균형발전 지원
추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과제목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배치 지원을 통한 지역별 특화된 문화 발전 및 지역의 문화적 역량강화 지원		
주요 내용	-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문화 진흥체계 구축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4) 수립(’20.2.) 및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 지역 문화시설 확충 운영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배치 -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 및 문화특화지역 조성 지원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지역균형발전 위한 지역문화진흥 체계 구축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15.7.) 수립 및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4.) 수립(’20.2.) 및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기본계획 발표(’20.2.), ▲ 제2차 지역문화진흥 시·도 시행계획 권역별 토론회 개최(’20.10.29.~11.11./ 호남,수도,충청,영남/150여명 참석) - 문화시설 확충 운영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등 51개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48,621백만원) -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등 11개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25,155백만원) ※ ’20년부터 국비 지원 없음(지방 이양 사업) - 생활문화센터 조성 : 수정2동 생활문화센터 등 391개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134,703백만원) -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배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10개 기관 지정 / (교육인원) 총 708명 수료

-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 지원) 총 86개소, 86명 배치(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배치)
- 문화도시 지정 추진
 - 문화도시 추진계획 발표('18.5.)
 - 제2기 문화도시심의위원 위촉('18.5, 당연직 2명 포함 총 17명) 및 위원회 개최(총 4회)
 - 제1차 문화도시 지정('19.12., 7개 지자체)
 - 제1차 문화도시 본사업 추진('20.~'24.)
 - 제3차 문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및 총16곳 조성계획 승인('20.12.)
 - 제3기 문화도시 심의위원 위촉('20.5.) 및 위원회 개최(총4회)
 - 제2차 문화도시 지정('21.1., 5개 지자체)
 - 제3차 문화도시 지정('21.12., 6개 지자체)
- 문화특화지역 조성
 - '18년 : 총 51개소(문화도시형 26, 문화마을형 25), 국비 8,966백만원 지원(균특회계)
 - '19년 : 총 50개소(문화도시형 33, 문화마을형 17), 국비 10,268백만원 지원(균특회계)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상적·자발적 생활문화공간 확대,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및 교육을 통해 문화인력 부족현상 해결,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 성과
- 지역문화인력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현장과의 괴리감이 커 양성과정 이수후 지역내에 지역문화인력의 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향후 과제

- 지역문화인력의 적정 배치를 통한 인력 활용 활성화와 교육 및 재교육을 통한 현장과의 괴리현상 해소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지역문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5.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⑧ 문화다양성 존중 정책 실시
추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과제목표	문화다양성 확산 및 이해 제고		
주요 내용	- 정책 추진체계 마련 - 정책 사업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근거 마련

□ 정책·관행의 변화

-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제2차 국가보고서 제출
- 유네스코 2018년 글로벌리포트 한국어판 발간 지원
- 2020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실시
- 문화 분야 공공기관 대상 「문화다양성 보호·확산을 위한 문화기관 운영 안내서」 개발
- 문화다양성위원회 운영으로 제1차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전담기관 지정
-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운영 지원(연 4개교, 2년 주기)
- 교원 대상 직무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21년 1,946명 참여)
- 문화 간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운영
 - ('18년) 전국 27개 지역, 258개 프로그램 운영 → ('20년) 26개 지역, 231개 프로그램, 대면·비대면 128만명 참여 → ('21년) 전국 25개 지역재단, 195개 프로그램 운영, 29만여명 참여
- 대학생·일반인 대상 문화다양성 교양강좌 개발(총 9강 900분, K-MOOC 연계), 교원·문화기관종사자·방송종사자 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운영(5.21.~27., 50만여명 참여)
- 교육부 협업 ‘문화다양성의 이해’ 교과서 개발
 - 인정도서, 중등 1종, 고등 1종
 - ‘22년 상반기 배포 예정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타문화 수용도는 아직 저조한 편*으로, 더 많은 접점에서 문화 간 이해도 및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예산 확보 필요
- * 출신 지역(2.79점), 성별(2.68점)에 대한 포용성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사회적 신분(2.33점), 성적 지향(1.96점)에 대한 포용성이 낮은 편(‘2020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무지개다리 사업을 비롯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그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은 그와 같은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각 참여 주체들의 확장과 교육 프로그램 설계 운영 중심으로 인해 꿈다락사업이나 지역특성화 사업과의 차별성을 상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더욱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지역매개자에 대한 교육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각 지역에서 이를 주관하는 기관에 따라 성과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지역적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주민, 장애인 등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언어를 다변화하고 수어제공, 시각장애인을 위한 언어서비스 등 누리집 이용방법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타문화에 대한 수용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편이고, 그로 인한 분쟁이 지역사회에서 표출되는 사례(예컨대 울산 아프간 난민 자녀들의 입학 관련 사례,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관련 사례, 성소수자 축제 반대 집회 등)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문화다양성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

□ 향후 과제

-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지역매개자에 대한 교육 강화
- 지역적 편차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
- 이주민, 장애인 등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제고
- 문화수용도가 저조한 영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다양성 사업의 확대 실시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5.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⑨ 예술인 창작기반 강화
추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과제목표	•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창작기반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 활성화 및 건강한 예술 생태계 조성		
주요 내용	• 예술인의 지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사업을 통해 창작안전망 구축 및 사회 보장 확대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창작역량강화, 직업역량강화, 불공정관행 개선, 사회보험가입 지원 등) 지속추진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20. 12. 10. 시행)

□ 정책·관행의 변화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설계를 위한 정책연구('18년 예술인 고용보험 실행방안 연구 등 총 7종)
-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21년 기본계획 비전, 전략, 세부 실행방안 등)
- 기업·기관 매칭 예술협업활동 지원('18년 1,000명 232개 기업·기관, '19년 1,001명, 207개 기업·기관, '20년 1,023명 208개 기업·기관, '21년 1,000명 199개 기업·기관)
-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대학로 및 마포 2개소, 17,022명 지원)
- 창작준비금 지원(49,261명)
- 예술활동증명(129,450명)
- 사회보험료 지원(산재보험 7,615명, 고용보험 및 시민연금 5,053명)
-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3,945명
-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시범운영 2회
-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 및 지원 906건
- 예술인 대상 계약 및 저작권 교육 23,221명
- 예술인 및 기획업자 대상 찾아가는 권익보호 교육('21년) 85회, 3,250명
- 성폭력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949건
-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19년 1,493명, '20년 2,515명, '21년 4,622명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전세자금 대출 '19년 1,497명 76.2억원, '20년 3,486명 179억원, '21년 2,418명 198억원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산재보험 신규 가입 : 7,615명
- 고용보험 가입자 10만명 돌파 : '21. 12. 31. 기준 106,652명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15,260명→24,000명)
-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 대학로 및 마포소 2개소
-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예산 4.5억원 증액(4.5억→9억) 및 연계 상담기관 5개소 증설(32개→37개)
- 불공정 행위신고·상담센터 및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 개소
- 생활안정자금 예산 확대(190억원→240억원) 및 한도 상향(긴급생계비 3백만원→5백만원)
- 코로나 19 특별 융자 예산 확대(70억원→90억원) 및 융자 조건 완화(한도 5백만원→7백만원, 금리 인하 2.2%→1.2%)
- 전세자금대출 상담접수 창구 광역거점별 설치(5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예술인을 위한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대출 등 금전적 지원은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향후에는 금전적 지원 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예술인 권익보호의 경우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취지와 달리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인력 확보가 시급함
- 현재의 생활안정자금이나 창작준비금의 수준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해 공연, 전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므로, 예술인의 발굴·육성 여건 조성, 창작활동 기반 확대 등 근본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예술인 중에서도 특히 이주배경,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어 있을 것이므로 정보 접근과 이용에 있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 예술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인력 확충 및 정규화가 필요함

□ 향후 과제

- 예술인 창작 지원 사업의 지역 불균형 시정
-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
- 예술인의 권익보호 관련 전문인력 보강
- 이주배경 및 장애 예술인의 창작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강화 방안 마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인력확충 및 정규직 전환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5.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⑩ 콘텐츠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 및 실효성 제고
추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사업과 대중문화산업과
과제목표	콘텐츠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도입 확대를 통한 문화산업 공정유통환경 조성		
주요 내용	(영화) 영화근로자 표준계약서 개정 및 기 제정된 표준계약서(4종: 근로/상영/투자/시나리오) 보완, 영화발전기금 지원신청 시 사용 의무화(근로/시나리오) (애니메이션) 제작·투자·방송·상품유통 등 생태계 주요 구성원 간 수익배분 관행 개선 및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만화) 만화·웹툰 및 2차적 저작물 표준계약서 보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등 공정계약 캠페인 실시 (대중문화)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연기자, 청소년연습생)의 전속계약 체결 시 적용할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투자·방영권 구매·시나리오·음악제작 등 애니메이션 4대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및 해설집 제작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순회교육('20년 7회) 및 온라인 교육강좌 개설·운영 -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및 연기자 중심) 표준 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및 자유선택권 등 명문화) 제정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영화근로표준계약서 활용률 70%대 유지 -'18년) 77.8% → ('19년) 77.9% → ('20년) 76.9% → ('21년 상반기) 78.6% - 저예산/독립영화 등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영화에서는 90% 이상 정착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예술활동에 관하여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창작의 자유, 재산권 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표준계약서의 제정 보급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청소년인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전속계약 등의 체결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어 종종 사업자가 제공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므로, 계약의 내용으로 인격권, 건강권 등 이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이 요구됨(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9조 이하 참조)
- 다만 표준계약서의 사용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고 표준계약서가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조치가 지속되어야 함

□ 향후 과제

-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 확대 보급
- 불공정 행위의 지속적 단속 및 후속조치 시행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5.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⑪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
추진부처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과제목표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소기업)에게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기반 확대		
주요 내용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지식재산권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 지식재산권 상담 및 명세서 등 출원서류 작성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창출 지원 -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등 지재권 분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지식재산권 무료 변리 상담 지원
 - (‘18년) 11,605건 / (‘19년) 11,256건 / (‘20년) 10,991건 / (‘21년) 10,046건
- 지식재산권 출원 등 지원
 - (‘18년) 475건 / (‘19년) 489건 / (‘20년) 560건 / (‘21년) 606건
- 지식재산권 심판·심결취소소송 지원
 - (‘18년) 136건 / (‘19년) 134건 / (‘20년) 140건 / (‘21년) 135건
-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업무협력 통해 스타트업, 장애인기업 등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 개최(8회), 서류작성 지원(15개사)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지식재산권 법률지원 ‘17년 대비 48% 증가 : (‘17년) 570 → (‘18년) 688 → (‘19년) 697 → (‘20년) 799 → (‘21년) 842
- 지식재산권 심판·심결취소소송 사건의 등록율과 승소율이 각각 94.8%와 93.1%로 ‘17년 대비 각각 31%와 8.5% 증가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 결과)

- 출원 및 심판·소송 지원업무의 23% 이상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도록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객관성 보완할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시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학생,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 또한 발명한 결과물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향유하며 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들이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인권 실현의 책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향후 지원에서 소외된 계층은 없는지 살펴 지원대상을 확대시켜 나가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역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활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 또는 이주민 등 언어적 장벽이 있는 사람도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함

□ 향후 과제

- 지원대상 확대 및 접근성 제고 추진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5.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⑫ 불법복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강화
추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저작권보호과
과제목표	온오프라인 상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를 단속하고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여 권리자의 권리 보호 및 대시민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주요 내용	• 저작권 침해 유형별 맞춤형 보호 체계 구축 • 온오프라인 상 저작권 침해 대응 고도화 •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 • 초중고 저작권 교육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대학연계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일반인 등 맞춤형 저작권 교육 실시 • 눈높이 생활 속 저작권 홍보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문체부-경찰청 정부합동단속 매년 실시 - “마루마루”, “애니24” 등 주요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 검거 및 사이트 폐쇄 - 웹하드 해비업로더 등 검거 - 적색수배 3명(국외자) • 저작권 위반 사범 수사 1,799건 • 불법 저작권 침해사이트 및 불법복제물에 대한 행정조치 * (시정권고) 총 1,937,735건 / (재택모니터링) 총 3,237,093건 * (접속차단 사이트) 총 3,081건 /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총 1,027건 • 국제공조수사(문체부-인터폴-경찰청) 수행 5년간(‘21~’25) 36억원 투입 •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 103,981건 •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664천건 •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사이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접속차단 지원 29개 사이트 261건 • 해외 불법사이트 대상 광고 차단조치 294개 • 온라인 불법복제 관련 민관협력 보호요청저작물 15,938개, 참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37개, 민관협력 조치 18,089건 • 불법SW 수사 1,366건

- 공공부문 SW 점검 9,288건
- 정품 SW 계도 활동 7,399건
- 중소기업 대상 SW 불법 복제 예방활동 2,124건
- 초중고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실시 ('18년 11,207회, 392,626명 / '19년 9,538회, 332,620명 / '20년 7,333회, 357,679명 / '21년 8,259회, 295,714명)
- 초중고 대상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 ('18년 308개 / '19년 292개 교실 / '20년 276개 / '21년 290개)
-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18년 5개 대학, 26개 강좌 / '19년 5개 대학, 27개 강좌 / '20년 5개 대학 28개 강좌 / '21년 6개 대학, 23개 강좌)
- 공공기관, 대학교 등 대상 협력과정 운영을 통한 저작권 교육('18년 56개 기관, 29,063명 / '19년 71개 기관, 25,831명 / '20년 649개 기관, 143,564명 / '21년 2,423개 기관, 201,294명)
- 교원, 산업종사자 등 맞춤형 저작권 원격교육 과정 운영('18년 829회, 40,726명 / '19년 1,723회, 48,957명 / '20년 2,074회, 179,323명 / 2,423회, 201,294명)
- 문화예술 창작자·매개자 등 교육 강화('18년 47회 / '19년 61회, '20년 53회 / '21년 56회) 및 전략분야 컨소시엄 교육을 통한 전문역량 개발 강화('18년 518명 / '19년 471명 / '20년 354명 / '21년 359명)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불법복제 이용률 하락 추세 ('19년 22%→'20년 20.2%→'21년 19.8%)
- 저작권법 위반 사범(형사고소 접수계) 전년대비 52% 감소('17년 24,309명→'18년 18,392명→'19년 15,831명→'20년 13,291명→'21년 6,316명)
- 저작권 교육 및 예방 활동, 맞춤형 저작권 교육 실시 등을 통한 저작권 인식개선 강화 및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82.4점, 0.2점 향상)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열거된 사업들은 주로 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권의 침해가 국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가 돋보임
- 그러나 최근 K-콘텐츠를 이끄는 웹툰 및 웹소설의 불법 복제물이 유통되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등 저작권의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유통 검색·제한 조치 의무의 강화, 불법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간소화,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타인의 저작물을 존중하고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임

□ 향후 과제

- 불법저작물 유통 근절을 위한 조치 강화
- 저작권 교육 및 홍보의 지속적 확대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5.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⑬ 국민 스포츠 향유환경 개선
추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과제목표	• 국민들의 스포츠 향유 환경 개선 및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주요 내용	• 국민들의 스포츠 향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와 스포츠클럽 지원 확대 - 맞춤형 스포츠지도사 양성 사업 본격화('15년 ~)에 따른 지도 대상별 체육지도자 확대 배치 지원 - 지역사회 기반에서 전 연령대가 함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1시·군·구 1스포츠클럽 운영 지원('16년 37개소 → '22년 229개소)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맞춤형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 체육지도자 양성 및 지원
- 스포츠클럽 지원 확대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맞춤형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 우수 체육지도자 양성 및 배치를 통한 양질의 생활체육 지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 상승 ('17.) 59.2% → ('18.) 62.2% → ('19.) 66.6%
- 스포츠클럽 확산에 따른 지역 시설 활용도 제고 및 스포츠 참여 인구 확산 도모
 * 전체클럽 정회원 수 48,329명, 클럽 당 평균회원 780명, 유·청소년 10,061명(21%), 노인회원 8,648명(18%)
- 체육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스포츠클럽 채용인원 1,456명
- 전문 선수반 육성으로 스포츠클럽 내 우수선수 발굴 및 지역 선수저변 확대
 - 97개 스포츠클럽 36개 종목에서 전문 선수반 운영으로 3,210명 선수 육성(1,524명 선수등록)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체육시설 이용 등이 제한되며, 생활체육 활동 다소 위축
* 생활체육참여율('19년 66.6% → '20년 60.1% → '21년 60.8%)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체육과 스포츠 국제헌장'의 제1조에서 “체육 및 스포츠의 실천은 모든 이를 위한 기본권이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에 스포츠 향유를 시민의 권리로 상정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한 것은 바람직함.
- 유아, 여학생, 여성, 노인 등 생애주기·대상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하여 체육활동을 증진함. 특히, 여학생, 여성, 노인은 스포츠를 향유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 것은 모든 시민의 스포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함.
- 다만, 생활체육에 있어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접근성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기에 거주 공간에서 접근 가능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할 것임. 또한, 시민의 스포츠 향유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가 필요함. 비장애인 위주의 시설을 장애인, 노인, 교통 약자 등 모든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 수영장, 샤워 시설 등 성소수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하는 차별적 사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침과 시설 마련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 인기 종목 뿐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참여하도록 하여 스포츠 '향유'에 적합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다양한 종목의 참여를 이끄는 것은 전문 스포츠인이 경력을 지속 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여가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체육지도자 양성 및 배치를 통한 양질의 생활체육 지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마련함. 그러나 시민의 안전하고, 즐거운 체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체육지도자의 노동 문제 개선이 담보되어 있어야 함.

□ 향후 과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속 추진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차별적 시설 및 접근제한 요인을 찾고 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체육지도자 노동 환경 실태조사와 후속 조치 필요
- 다양한 스포츠 종목 접할 수 있는 환경 마련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6.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①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과제목표	• 적정 양육수당 지원을 통한 가정양육 부담 경감		
주요내용	• 가정양육 가구에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지원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아동수당법 개정('21.12월)을 통한 근거법 마련 : 보육료, 양육수당으로 차등·구분된 지원체계 통합

□ 정책·관행의 변화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10~20만원) 지원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동일하게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기간 확대('19.1월~)
 - 친자소송,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못한 경우 소급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19.6~8월)
 -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영유아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전국단위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가능 공문시달('20.3.3)
 - 출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소급지원 규정을 전체 양육수당 대상으로 확대 추진('21.12.30.)
- 보육료, 양육수당으로 차등·구분된 지원체계 통합('22.1월)하는 영아수당 도입기반 마련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양육수당 지원
 - 745,677명('18.) → 658천명('19.12월 기준) → 641천명('20.12월 기준) → 561천명('21.12월 기준)
- 가정양육 시 영아수당 현금지원('22년 월 30만원) 지급 * '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 확대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시간제보육 등 서비스 확대 병행 추진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영아수당 도입을 통한 영아기 부모의 양육선택권 보장 및 가정양육 지원 강화
-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

☐ 향후 과제

- 양육비 지원 폭 증대와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시간제보육 등 서비스 확대 병행 추진 필요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6.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② 결혼·출산 친화적 세제 개선
추진부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과제목표	•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4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자녀장려금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녀양육비 지원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18년) 94만 가구에 4,917억 규모의 자녀장려금 지급 • ('19년) 88만 가구에 7,542억 규모의 자녀장려금 지급 • ('20년) 74만 가구에 6,457억 규모의 자녀장려금 지급 • ('21년) 71만 가구에 6,060억 규모의 자녀장려금 지급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 사항 없음

❸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자녀장려금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녀양육비 지원의 성과

□ 향후 과제

• 정책 용어 수정 필요 : 다양한 공공분야 인권 인권영향평가에서 출산을 '출생'으로 바꾸어 쓰기를 권고하고 있는 인권적 의미를 염두에 두고 정책 용어 자체를 조정할 필요 • 향후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포함 여부는 재고 필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6.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③ 보육취약지역 대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과제목표	-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22.3월) 위해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확충 * 국공립, 직장,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기존 ①신축 방식 이외 ②매입, ③공동주택 리모델링·신설지원, ④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충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화 * 「영유아보육법」 개정('18.12월), '19.9.25. 적용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공동주택 관리동 2층, 공공업무시설 5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허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18.2.28.)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20.9.)을 통해 어린이집과 돌봄센터와의 복합화 근거 규정 마련

□ 정책·관행의 변화

- 지자체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확충 지원
- 보육취약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어린이집과 돌봄센터와의 복합화 근거 규정 마련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21년말 공공보육 이용률은 34.3%로 전년(32.0%) 대비 2.3%p 상승
- 학부모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지속 상승
: ('12.) 3.85 → ('15.) 4.08 → ('18.) 4.11 → ('21.) 4.15 (전국보육실태조사, 5점 만점)
- 민관협력(하나금융 MOU) 통한 사업비 지원 선정 : '18~'20년까지 90개소에 총 1,000억원 지원
'18년 24개소, '19년 22개소, '20년 18개소 지원, '21년 21개소에 200억원 사업비 지원
- 국고보조율 50%→60%로 10%p 인상, 20년 26개소 既추진 및 21년 12개소 추진
- '21년 국공립어린이집을 515개소 확충(신축 50, 매입 12, 리모델링 427, 장기임차 26)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신축사업의 국비지원단가 대비 건축에 소요되는 실소요 금액의 차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적극적 확충이 어려운 상황
⇒ 신축 방식에 비하여 지자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의 사업 물량 확대, 사회공헌사업 및 생활SOC복합화를 통한 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
: ('20년) 신축 100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350개소 → ('21년) 신축 80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420개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다음 단계 정책 방향 전개에 있어서는 인권의 주체인 아동과 보호자 등에 대한 권리 보장 정책으로서의 효과를 내기 위한 정책 방향 수정과 보완이 필요함. 현재 도시 재개발사업의 확장 등 사회적 흐름 속에서 특히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지역 보육시설에 대한 낙인화의 문제점 등이 발생될 것으로 보임
- 농어촌 지역의 경우 거리상 접근성, 지역 인프라 정도, 보호자의 노동시간 및 형태 등에 따른 보육지원 정책의 차별성이 필요함. 현재도 관련한 일부 정책이 시도되는 등 인권의 주체가 가진 특성에 맞춰 모든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임. 다만 아직 현장 수요 대비 정책적 확장의 노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상황임.
- 취약지역의 보육 지원의 문제는 적절한 보육역량을 가진 보육교사가 해당 현장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갖춰져야 가능함. 조건과 환경이 열악으로 인하여 적절한 보육역량을 가진 보육교사의 이입이 어려울수록 아동학대에 노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동인권 보장에 중요한 문제임
- 시설의 설계 등에 있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충분한 보육공간(교실 평수)과 보육교사 등 노동자를 위한 공간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가이드라인 등이 운영되고 있음

□ 향후 과제

- 통합적이고 다양한 돌봄 정책의 마련과 선택권 보장 : 취약계층 지역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 시설 확대 정책은 해당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낙인화와 무력감 수반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인권의 주체인 아동과 보호자가 가지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시혜적 정책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다양하고 통합적인 돌봄 정책의 마련과 선택권 보장이 필요함
- 농어촌지역 특수성에 맞는 돌봄정책 강화 및 확대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 목표 V.	6.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④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과제목표	• 보육지원 확대 정책 지속 추진		
주요내용	• 보육 서비스 질 개선 정책과 영유아 수 변동 및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육 지원 확대 정책 지속 추진 – 전계층 무상보육 도입('13.3월)에 따라 이미 만 0~5세 전 계층에 대해 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중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만 0~5세 전체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24~97만원) 및 양육수당 (10~20만원)을 지원
-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예산집행현황 모니터링(분기별)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만 0~5세 전체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24~97만원) 및 양육수당 (10~20만원) 지원
 - ('18년말 기준) : 보육료(1,395천명), 양육수당(704천명)
 - ('19년말 기준) : 보육료(1,359천명), 양육수당(641천명)
 - ('20년말 기준) : 보육료(1,244천명), 양육수당(658천명)
 - ('21년말 기준) : 보육료(1,163천명), 양육수당(561천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지속 협의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보육 등 돌봄에 대한 공공성 확보 기반 구축 시작 :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라는 추진과제에 맞게 관련 부처가 각각의 역할을 설정하여 추진함. 이를 통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보육 등에 대한 공공성 인식 강화 및 확대의 방향성이 확보되기 시작함
- 아동의 성장 주기 및 환경과 조건 맞춤형 다양한 보육체계 건인 : 지역 사회 내 돌봄체계 구축 시도 등 아동의 성장 주기 및 환경과 조건에 맞는 다방면의 돌봄정책이 추진되어 아동인권 보장의 기반이 확대
-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하고, 양육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돌봄 수용에 대응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여 안심하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함
- 인권의 보편성, 비차별과 포용(inclusion)의 원칙에서의 보완 사항(현재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즉 배제되는 사람은 없는지) 발생의 우려는 없는가와 관련)

□ 향후 과제

-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 정책 필요 : 보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은 현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체 0~5세 영유아에 대해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이주아동의 경우 제외되어 있음. 이주 아동을 포함해 국내에 거주, 체류하는 아동이 생존권 및 발달권을 보장받도록 정책 개선 필요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 목표 V.	6.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④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추진부처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과제목표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주요내용	초등돌봄교실 전 학년 단계적 확대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 마련(‘21.8.)
- 온종일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물적, 지역적 인프라 확충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원, 휴교, 원격수업 실시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양육공백을 최소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전체 초등학생 대비 돌봄교실 이용비율
: (‘17.) 9.2% → (‘18.) 9.6% → (‘19.) 10.6% → (‘20.) 9.5% → (‘21.) 10.6%
※ 맞벌이 가정 참여비율(교육비수급 비대상) : (‘17.) 71.1% → (‘18.) 77.1% → (‘19.) 78.1%
→ (‘20.) 77.9% → (‘21.) 78.2%
- 초등돌봄교실 수요자 만족도 제고 노력
※ 전반적 만족도 추이 : (‘18.) 95.9% → (‘19.) 95.5% → (‘20.) 94.2% → (‘21.) 94.8%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을 위한 단위학교별 인력 운용·공간 확보 노력 필요

❸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아동의 성장 주기 및 환경과 조건 맞춤형 다양한 보육체계 건인 : 지역 사회 내 돌봄체계 구축 시도 등 아동의 성장 주기 및 환경과 조건에 맞는 다방면의 돌봄정책이 추진되어 아동인권 보장의 기반이 확대

- 각종 지원 이용에 있어 신청주의 등으로 인한 접근성의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홍보 및 신청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이후 이번 코로나-19 경우에서와 같이 특별 정책 등에 대한 안내가 빠른 시간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안이 준비될 필요 있음
- 돌봄교실 환경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인하기 위한 운영 매뉴얼이 제시되어 있음. 다만 아동의 의사와 욕구보다는 주로 보호자의 욕구에 기반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됨. 이로 인해 아동이 스스로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는 기회가 제한되고 아동으로 하여금 돌봄 이용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위화감이 형성될 우려마저 있음
- 돌봄교사와 아이돌보미의 돌봄역량(아동에 대한 이해 등)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적절한 노동환경 확보에는 부족함이 있음. 역량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앞의 노동환경 등의 제한적 조건으로 인해 충분하게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이용 아동에 대한 낙인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히 돌봄교실의 경우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아동 스스로가 그 공간을 권리의 주체로 즐길 수 있는 조건과 환경 확보를 통해 누구나 가고 싶고 이용하고 싶은 제도라는 이미지를 확보해 이용 아동에 대한 낙인화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돌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구됨. 그럼에도 급격하게 맞은 상황이라 적지 않은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며, 향후 유사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공동체) 내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존재함. 관련 기관과 지역 단위 등의 협력 등을 통하여 제도의 현실화, 확산이 절대적으로 필요
- 돌봄전담사 파업시 교육부-교육청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등 인권의 주체 간 권리의 충돌 착시를 막기 위한 노력 등이 이루어짐. 향후에도 돌봄에 대한 궁극적 책무자인 국가가 이러한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 그 누구의 인권도 누락되거나 부정되지 않도록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향후 과제

- 지역사회 내 돌봄체계 구축 확대 : 이용자의 낙인을 막으면서 아동에 대한 안정적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돌봄제도가 보편적 돌봄체계로 통합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필요
- 돌봄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휴식권이나 놀이권 등을 포함한 아동의 자기결정권 보장 : ‘당사자’로서 아동의 욕구와 의사를 반영하는, 아동 인권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 돌봄교실 등을 이용하는 아동이 그 공간 안에서의 시간이 타의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아동 의사와 욕구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이는 아동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돌봄교실 등 이용에 대한 낙인감도 없앨 수 있음.
- 아동에게 편안하고 충분한 심리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돌봄교사 등의 노동환경 적절성 지속적 개선 필요
- 지역 사회 내 보편적 돌봄체계의 강화 및 확대를 통하여 감염병 상황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의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시적인 대응체계 마련 필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 목표 V.	6.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④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과제목표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으로 부모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 기여 -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여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		
주요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가정양육지원 여건 개선 -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를 통한 저소득가정 지원 강화(∼'22년) -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돌봄공간 제공, 공동육아 및 프로그램 지원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 - 위반행위를 한 아이돌보미 자격 제재 강화, 서비스질 개선 등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 다자녀 가정 범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2021년 중위소득 90% 이하까지로 확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특례 지원 실시

□ 정책·관행의 변화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기반 마련 「근로기준법」에 따른 아이돌보미 법정수당 지급 추진 ‘일시연계서비스’ 실시 - 서비스 이용 편의증진과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챗봇, 돌봄 톡톡, 대기관리시스템 등)으로 서비스 연계율 향상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운영 매뉴얼 배포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저소득 가정 자녀 돌봄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대상/시간/비율)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 향상
 - ('18년) 81.1%→('19년) 84.7%→('20년) 89.5%→('21.11월) 92.0%
-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로 서비스 서비스 만족도 지속 향상
 - 서비스 만족도 : ('18년) 89.9점→('19년) 90.2점 → ('20년) 90.6점 → ('21년) 91.4점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18년 205개소 → '21년 391개소(186개소 설치 확대, 90% 증)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상승에 따른 가정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확대 필요
 - : 이용요금 : ('17년) 6,500원 → ('21년) 10,040원
- 공동육아나눔터가 없는 시군구에 신규설치 및 공간 확보 지원 필요 : 이용자 접근성이 높은 공동주택 등의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협조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아동의 성장 주기 및 환경과 조건 맞춤형 다양한 보육체계 건인 : 지역 사회 내 돌봄체계 구축 시도 등 아동의 성장 주기 및 환경과 조건에 맞는 다방면의 돌봄정책이 추진되어 아동인권 보장의 기반이 확대
- 각종 지원 이용에 있어 신청주의 등으로 인한 접근성의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홍보 및 신청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이후 이번 코로나-19 경우에서와 같이 특별 정책 등에 대한 안내가 빠른 시간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안이 준비될 필요 있음
- 돌봄교사와 아이돌보미의 돌봄역량(아동에 대한 이해 등)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적절한 노동환경 확보에는 부족함이 있음. 역량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앞의 노동환경 등의 제한적 조건으로 인해 충분하게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돌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구됨. 그럼에도 급격하게 맞은 상황이라 적지 않은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며, 향후 유사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추진 및 돌봄 사각지대 적극 발굴·지원
 - 정부지원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협의
 - 가정위탁 아동, 학대피해(우려) 아동 등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복지부, 지자체 등)
 - 아이돌보미 노동조건 개선 및 돌봄 역량 지원을 위한 지속적 노력
- 공동육아나눔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추진
 - 읍·면·동 주민센터, 건강가정센터, 아파트단지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지역의 접근성이 좋고 안전한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과제 V	6.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⑤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과제목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선도적인 기업·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수여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		
주요내용	- 가족친화경영 제고를 위한 인증기업 지속 확대 - 인증기업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직장교육 및 인센티브 지원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가족친화 인증기준 고시 일부개정('18.4.) : 인증제 신뢰 제고를 위한 인증기준 개정 및 사후관리 강화

□ 정책·관행의 변화

- 인증기업 사후관리 지원 강화로 가족친화 인증제 내실화 추진 -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운영 확대 추진 - 중앙·지자체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으로 지역 네트워크 강화 추진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속 확대 -'18.) 3,328개 → ('19.) 3,833개 → ('20.) 4,340개 → ('21.) 4,918개(대기업 520, 중소기업 3,317, 공공기관 1,081) - 가족친화경영 인증 전·후 컨설팅 실시 및 온라인 자체관리 시스템 구축('19.12월) : 인증 후 컨설팅 : ('18.) 150개사 → ('19.) 200개사 → ('20.) 299개 -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인센티브 발굴·지원 : ('18.) 186개 → ('19.) 211개 → ('20.) 200개 → ('21.) 229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속 확대를 통해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제고 / 중앙·지자체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으로 지역 네트워크 강화 / 인증기업 사후관리·지원 강화로 가족친화 인증제 내실화
- 가족의 개념 변화, 확대라는 사회적 흐름에 맞는 정책 구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향후 과제

- 가족의 개념 변화, 확대라는 사회적 흐름에 맞는 정책 고려가 필요 : 예를 들어 ‘아빠’ 등 부모를 부각시키는 내용의 사업의 경우 정상가족 프레임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공고하게 할 우려가 있어 재고가 필요함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6.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⑥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생활안정 지원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과제목표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생활안정 지원		
주요내용	• 아동양육비 현실화 및 지원범위 확대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 각종 매체를 통한 인식개선 추진 • 사업담당 공무원 대상 인식개선 강연 등 추진 • 차별경험 없이 신청 가능한 한부모 온라인 신청 추진·홍보 강화 • 한부모가족이 받는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지원 강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20.10.20.)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20.11.6.) •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게 아동양육비 등 지원 근거 마련(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침 변경 시행('20. 9.))

□ 정책·관행의 변화

• 아동양육비 현실화 및 지원범위 확대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 각종 매체를 통한 인식개선 추진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확대 • 사업담당 공무원 대상 미혼부모 등 한부모 일상 속 차별 및 인식개선 교육 • 차별경험 없이 신청 가능한 한부모 온라인 신청 추진·홍보 강화 • 한부모가족이 받는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지원 강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주거지원 강화 : '18년-145호(누적), '19년 : 158호(누적), '20년 : 189호(누적), '21년 : 222호(누적)
- 아동양육비 인상(월 13만→월 20만) 및 지원대상 확대(만 14세 미만→만 18세 미만)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월 10만원) 신규 지원하고,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 아동양육비(월 5~10만원) 신규 지급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양육부담 해소,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지원 확대, 인식개선 활동을 통한 한부모가족 편견 해소 및 차별 개선 등 성과 확인
- 다만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과 생활 안정이라는 이중고 해결에 필요한 지원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지원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 청소년 한부모 등 다양한 한부모 가정이 모두 포괄되는 정책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됨. 다만 조손가정의 경우 실제로 한부모 가정인 경우가 많음에도 포괄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향후 과제

- 한부모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의 현실화, 주거지원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조 유지 필요
- 조손가구 등을 포함해 '실질적 한부모 가족'까지 광범위하게 포괄되는 정책 과제가 수립될 필요
- 청소년 한부모가 처한 상황적 한계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정책 마련 필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II	6.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⑦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제목표	국제입양 시 요보호·일반아동의 입양절차 일원화하고, 입양결정 등 입양절차 전반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아동 권익 보호 추진		
주요 내용	- 이행법률안 국회통과 및 입양제도 개선을 통한 협약 비준 추진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이행방안 관련 관계부처(법원, 지자체 등) 및 관계기관(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관) 간 추가 논의 - 입양절차 개편에 따른 입양기관 기능 및 지원체계 개편방안 모색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입양 초기상담을 기존의 입양기관에서 지자체(아동보호팀 아동보호전담요원)로 이관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21.7.1. 시행))

□ 정책·관행의 변화

-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현행 법령·제도 개선 및 입양체계 개편 지속 논의 - 공적 아동보호체계 강화 및 입양체계 개편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정부·지자체, 입양기관의 역할 분담 등 논의 지속 필요 -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각 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정립 등 검토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60여년간 20여 만명의 아동을 해외입양 보낸 ‘아동 송출국’으로(이경은, 2017: 6), 가정과 아동보호의 의무를 방기한 국가책임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김재민, 2016). 2021년까지도 해외입양이 45.5%에 달하며,³⁰⁾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해외입양의 99.5%가 미혼모 자녀임.³¹⁾ 그러나 해외입양은 원가정 해체에 따른 최후의 아동보호조치로서, 아동을 중심에 둔 법적·행정적 절차는 특히 중요함.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법원의 입양허가제(2011년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 2012년 민법 개정)도 같은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한국은 2013년 5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한 이후 10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국내법 개정을 이유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입양허가제 도입, 지자체의 입양 초기상담을 통해 아동보호절차 일원화(보건복지부, 2021: 37) 등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 헤이그국제아동 입양협약 가입은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는 아동보호체계 개편 및 입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단체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2년 1월, 4월 2차례에 걸쳐 <아동중심 입양 포럼>을 연속으로 개최하여,³²⁾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국제적 기준에 맞는 아동 중심 해외입양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범부처 단위의 논의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것이나, 결국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 및 행정부의 입법적·행정적 결단이 중요한 사안임을 거듭 확인할 수 있음

□ 향후 과제

- 협약 이행법률안(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추진
 - 국내입양 우선의 원칙, 국제입양 보충성 원칙 명시
- 헤이그 협약 비준 준비를 위해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성 강화 및 입양기관 업무개편 등 필요
 - 민법,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된 입양 절차 일원화
 - 입양절차 전 과정에 원가정 보호와 지원이 실천될 수 있도록, 인적·재정적·물적 자원 투입
 -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 및 정보접근권 보장
 - 베이비박스 폐지 및 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해 보편적 출생등록제 실현

30) https://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08

31)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0&CONT_SEQ=371450

32) <http://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42&listLen=3&searchKeyword=%ED%95%B4%EC%99%B8%EC%9E%85%EC%96%91&position=E;>

<http://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47&listLen=3&searchKeyword=%ED%95%B4%EC%99%B8%EC%9E%85%EC%96%91&position=M>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	6.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⑧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추진부처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과제목표	-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 체류 지원 - 결혼이민자 체류기간 연장 시 불필요한 절차 폐지 및 간소화		
주요 내용	- 결혼이민자 체류기간 연장 시 신원보증서 제출 생략 - 결혼이민 체류자격 기간 연장 시 신청서류에 신원보증서 폐지('11. 12.) - 결혼이민자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 동반 방문 폐지('06. 4.)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결혼이민자(F-6) 체류기간 연장 시 신원보증서 제출제도 폐지('11.12.~) - 결혼이민자(F-6)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배우자 동반 방문 폐지('06.4.~)

□ 정책·관행의 변화

- 결혼이민자(F-6) 체류기간 연장 시 신원보증서 제출제도 폐지('11.12.~) - 결혼이민자(F-6)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배우자 동반 방문 폐지('06.4.~)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해당사항 없음

❸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결혼이민자 체류기간 연장 시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 및 간소화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자 함

□ 향후 과제

-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연구를 통해 보장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 법적 지위 외에 안정적 사회적·문화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연구 등 다양한 노력 지속

VI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1. 여성 분야 2. 아동·청소년 분야 3. 장애인 분야 4. 노인 분야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 이행상황 총괄

< 총괄표 >

구 분	계	과제완료	정상추진	추진지연	기타
합 계	69	1	68	-	-
1. 여성 분야	8	-	8	-	-
2. 아동·청소년 분야	19	1	18	-	-
3. 장애인 분야	11	-	11	-	-
4. 노인 분야	7	-	7	-	-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24	-	24	-	-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진과제	추진상황
【여성 분야】			
162	VI-1-①	여성 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정상추진
163	VI-1-②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상추진
164	VI-1-③	학교 내 여성 폭력 방지	정상추진
165	VI-1-④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상추진
166	VI-1-⑤	여성건강 증진 강화	정상추진
167	VI-1-⑥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익 향상	정상추진
168	VI-1-⑦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	정상추진
169	VI-1-⑧	모·부성권 강화	정상추진
【아동·청소년 분야】			
170	VI-2-①	학교 체벌의 금지	정상추진
171	VI-2-②	아동·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정상추진
172	VI-2-③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과제완료('20.)
173	VI-2-④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개선	정상추진
174	VI-2-⑤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풍토 조성	정상추진
175	VI-2-⑥	위기 아동 지원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정상추진
176	VI-2-⑦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정상추진
177	VI-2-⑧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피해 아동 보호·지원 강화	정상추진
178	VI-2-⑨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증진	정상추진
179	VI-2-⑩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	정상추진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진과제	추진상황
180	VI-2-⑪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정상추진
181	VI-2-⑫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정상추진
182	VI-2-⑬	가출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정상추진
183	VI-2-⑭	위기청소년 비행예방 강화	정상추진
184	VI-2-⑮	인터넷중독 청소년 치료·재활 체계 구축	정상추진
185	VI-2-⑯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정상추진
186	VI-2-⑰	학생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정상추진
187	VI-2-⑱	아동유기, 불법입양 대책 강화	정상추진
188	VI-2-⑲	아동양육 및 보호의 국가책임 강화	정상추진
【장애인 분야】			
189	VI-3-①	보호시설 내 수용인의 인권보호	정상추진
190	VI-3-②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정상추진
191	VI-3-③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 개선	정상추진
192	VI-3-④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및 급여 내실화	정상추진
193	VI-3-⑤	장애인 교육권 보장	정상추진
194	VI-3-⑥	장애인 시설이용편의 및 사법접근성 보장	정상추진
195	VI-3-⑦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정상추진
196	VI-3-⑧	장애인 건강권 보장	정상추진
197	VI-3-⑨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	정상추진
198	VI-3-⑩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	정상추진
199	VI-3-⑪	학대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	정상추진
【노인 분야】			
200	VI-4-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	정상추진
201	VI-4-②	노인학대 예방 및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정상추진
202	VI-4-③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정상추진
203	VI-4-④	노인 건강권 보장	정상추진
204	VI-4-⑤	단체·문화 활동, 사회공헌 활동 참여 강화	정상추진
205	VI-4-⑥	노인 소득 보장 대책 마련	정상추진
206	VI-4-⑦	농지연금 활성화	정상추진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207	VI-5-(1)-①	방문취업 동포 지원·관리	정상추진
208	VI-5-(1)-②	중국 및 구소련 동포 지원	정상추진
209	VI-5-(1)-③	재외동포 사회통합 지원	정상추진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진과제	추진상황
210	VI-5-(1)-④	재외동포 인권 개선	정상추진
211	VI-5-(1)-⑤	국외입양인 인권 개선과 지원	정상추진
212 /222	VI-5-(1)-⑥ VI-5-(2)-⑩	방문취업 해외동포 자녀에 대한 교육권 보장 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	정상추진
213	VI-5-(2)-①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평가	정상추진
214	VI-5-(2)-②	이주민 실태조사 및 정책수요 반영	정상추진
215	VI-5-(2)-③	이주민 사회통합 지원제도 활성화	정상추진
216	VI-5-(2)-④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장	정상추진
217	VI-5-(2)-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제도 개선	정상추진
218	VI-5-(2)-⑥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정상추진
219	VI-5-(2)-⑦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정상추진
220	VI-5-(2)-⑧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정상추진
221	VI-5-(2)-⑨	이주민 문화교류 지원	정상추진
212 /222	VI-5-(1)-⑥ VI-5-(2)-⑩	방문취업 해외동포 자녀에 대한 교육권 보장 (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	정상추진 (정상추진)
223	VI-5-(2)-⑪	외국인 입국규제제도의 합리적 운영	정상추진
224	VI-5-(3)-①	난민심사 제도기반 개선	정상추진
225	VI-5-(3)-②	난민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	정상추진
226	VI-5-(4)-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제개선	정상추진
227	VI-5-(4)-②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지원 강화	정상추진
228	VI-5-(4)-③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	정상추진
229	VI-5-(4)-④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의 탈북민 인권보호 강화	정상추진
230	VI-5-(4)-⑤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정상추진

□ 과제별 이행평가

162-1	VI-1-①	여성 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과제 VI	1.여성 분야	① 여성 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권익침해방지과 권익보호과, 권익기반과 교육혁신팀
과제목표	여성폭력 인식개선 활동 확대, 중장기 여성폭력근절정책 추진기반 마련		
주요 내용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시행 및 기본계획 수립·이행 -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등 신종성범죄 피해자 보호체계 마련 -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과 전문강사에 대한 관리·감독 내실화, 예방환경 조성 -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25. ~ 12.1.) 계기 여성폭력근절 캠페인 실시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12월)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수법인 전환('19.12.월)

□ 정책·관행의 변화

-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 시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를 통한 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 도모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지역사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상담소' 운영(신규) * 7개 광역 시도(경남,경북,대구,제주,전북,부산,충남)

- 일반시민 대상 젠더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및 맞춤형 특화교육** 실시
 * ('20.) 5,150회 목표, 5,241회 실시 → ('21.) 5,150회 목표, 5,208회 실시
 ** ('21.)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맞춤형 특화교육(2,603회) 실시 : 체육인(398회), 대학(원) 신입생(73회), 사회초년생(115회)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초·중·고등학생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2,017회)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확대 및 관리·감독 내실화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 확대('20년 715명 → '21년 824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여성폭력 방지법 제정 및 정책 전문기관 특수법인화 완료. 7개 광역시도에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등 제도적, 정책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음. 이후 특수법인 전환 된 진흥원의 역할 및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신종 여성 대상 폭력에 대응 할 수 있는 교육, 사회초년생과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폭력 발생 매커니즘에 개입할 수 있는 방향의 교육이 진행됨.
- 이행실적이 정량에 대한 기록에만 치중되어 있음. 여성가족부에서 여성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 마련의 정책적 방향을 확인하기 어려움. 향후 이행실적 정리하고 확인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향후 과제

-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중심에서 시민의 폭력예방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지속적 대시민 교육 확대, 현재 7개 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가 존재하나 17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상담소'가 없는 지역의 피해자 지원 공백 생기지 않도록 보완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과제 VI	1.여성 분야	① 여성 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추진부처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과제목표	• 여성대상범죄 근절 등 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 강화		
주요 내용	- 사이버성폭력·스토킹 등 신종 여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체계 마련 -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관련 법적근거 마련 등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여성폭력 전담 기구 마련 - 성매매 ‘표준식별모델’ 개발 - 스토킹 현장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디지털성범죄 :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 불법촬영 : 카메라 탐지를 위한 다양한 자이 보금 및 집중 대응기간 운영 - 가정폭력 : 적극적인 현장대응 - 성매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집중 단속체계 구축 - 스토킹 : 전담인력 시범운영(64명), 사이버 교육과정 개설 및 현장교육 실시 - 데이트 폭력 : 출동시 가해자 서면경고 및 피해자 보호제도 안내서 배부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디지털 성매매 등 신종 여성 폭력에 대응 할 수 있는 경찰 역량과 제도적 기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반이 갖추어짐.
-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단속 처벌하기 위해 아는 사람에 대해서도 접근 금지를 가능하게 하고 상담 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등 제도 마련이 유의미함. 임시 응급조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에 대응 시 경찰이 현장 대응에서 높은 인권 감수성을 가져야 함.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는지, 심리 정서적 지배 관계에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어야함. 성매매 현장 대응 매뉴얼과 같이 신종 여성폭력 대응시에 구체적인 현장 대응 지침을 마련해 실질적 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여성폭력 방지 전담 기구 신설을 통해 업무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 이루어지려면 전담 기구 위상과 역할, 목적에 대한 경찰 내부 구성원들 공동의 이해, 충분한 인력 배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업무 지원, 조직 내 협업 체계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 필요
-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일시적인 조치에 머무를 수 밖에 없음. 전국에서 발생하고 신고되는 여성폭력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접촉면이 넓은 일선 경찰서의 역량강화가 필요함.
- 사안별 매뉴얼 제작 등 현장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보임. 변화하는 폭력의 유형과 내용에 대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중요함

□ 향후 과제

- 방심위, 여가부 등 관련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 보호 효과가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가 가능토록 하고 피해자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부서 간 피해자 정보 공유, 보존, 업무 조정 없이 안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디지털 성범죄 증거 자체가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증거물에 대한 관리와 폐기 업무지침, 관리자 윤리에 대한 교육, 업무지침 준수 등에 대해 모니터링과 그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필요
- 젠더 기반 여성 폭력 범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업무 매뉴얼 제작 및 수시 교육 및 보완 체계 구축. 이에 대한 전담 부서 및 인력 배치 및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성평등한 기술 발전 개입 및 기술 기반 착취 범죄 대응
- 기술 발전을 악용한 기술 기반 성 착취는 기술 발전 속도와 비례하기 때문에 신종 기술 기반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제적 공조 체계, 상시 모니터링, 윤리적 기술 활용에 대한 인식 교육 등을 통해 발 빠른 차단이 중요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과제 VI	1.여성 분야	②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권익보호과 권익기반과 교육혁신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제목표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주요 내용	- 가정폭력·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서비스 추진 -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홍보 강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대상별, 생애주기별, 직급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한 폭력예방교육 효과성 제고
-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을 발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통해 젠더폭력 인식 변화 확대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가정폭력 국비지원 상담소* 확대(25개소) 및 상담소·보호시설 상담원** 인력(194명) 증원
 - * 국비지원 상담소 확대 : ('18.) 103개소 → ('21.) 128개소 (↑ 25개소)
 - ** 상담원 인력 증원 : 194명(국비지원 128개 상담소에 각 1명, 66개 보호시설에 각 1명)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 대한 상담, 보호, 주거, 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의료지원, 자립지원 등
 - ▶ 1366센터 연계건수 : ('20.) 354,091건 → ('21. 잠정) 334,836건
 - ▶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20.) 4,117명 → ('21.6.) 2,098명
 - ▶ 피해자 의료비 지원 : ('20.) 9,374명 → ('21.6.) 3,632명
-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4개 사업수행기관)
 -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 소송지원, 법률상담, 법률 계몽사업 등
 - ▶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 ('20.) 10,514건 → ('21.6월) 5,591건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인력 확충*, 관련 예산 증액 편성** 등 공적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여성·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가 원만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보호체계 구축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18.) 31개→('21.) 35개

** 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 : ('18.) 27,018백만원→('21.) 32,366백만원 (19.8% ↑)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성폭력 피해자 응급키트 간소화를 통해 증거 채취 과정의 수치심을 줄이는 유의미한 기여를 하였음.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이 다각화된 점이 긍정적 조치에 해당함. 다만, 예산 및 국비지원 상담소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1개소당 1명에 대한 인건비만이 지원되고 보호시설의 특성상 야간 근무 등이 많은데 종사 인력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노동권이 보호되고 있는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피해자 지원시 수반되는 서류가 성폭력 및 가정폭력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지나친 증빙을 요구하는지, 과도한 행정적 처리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지 점검이 요구됨.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명칭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 시혜적 대상화 우려 있으며, 피해회복과 자립에 대해 소극적으로 이어지는 문제 있음. 최소한 개인 공간이 제공되는 수준의 환경 개선 및 자립 지원의 현실화 시급함.
- 예방교육과 관련하여서는 NAP 안에 가정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사업의 이행 실적이 반복되기도 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 운영을 중심으로 본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 예산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데 예방교육 관련 사업만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 확충 사업은 기금으로만 편성되어 있음. 일반회계 편성으로 예산의 안정성 확보 시급

□ 향후 과제

- 장애,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성폭력 피해의 경우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도적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아 향후 지속적 정책 개발이 필요함.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최소한 개인 공간이 제공되는 수준의 환경 개선과 자립지원금 현실화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과제 VI	1.여성 분야	③ 학교 내 여성 폭력 방지
추진부처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과제목표	-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발생 보고 의무화 -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지원체계 활성화		
주요 내용	-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발생 보고 의무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 -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지원체계 활성화 117신고전화 상담 시 상담 결과에 따른 관계기관 연결 체계화 -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치유 지원 및 폭력예방 활동 활성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발생 보고 의무화 -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시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보고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상시 운영 및 상담사 역량 강화 -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상담·치유 지원 활성화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신학기 학교폭력 집중 관리 기간 운영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해당사항 없음

❸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사업명은 ‘학교 내 여성폭력 방지’이지만 사업내용은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보고 및 지원에 대한 내용임. 사업명 또는 사업 내용에 대한 변경 검토 필요함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시 학교라는 범주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 상황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함. 상담사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상담사의 역량강화와 고용안정을 통해 상담대응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필요함

□ 향후 과제

학교폭력 중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해야 함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과제 VI	1.여성 분야	④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과제목표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복귀 도모		
주요 내용	- 성매매 예방 시민의식개선 및 건전한 성문화 조성 - 탈성매매 여성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추진 - 성매매피해자 보호 강화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21.4월)

□ 정책·관행의 변화

- 여성폭력방지위원회('21.6월)를 개최하여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방안」 마련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성매매피해자에게 상담, 의료·법률, 직업훈련·진학교육 및 자립·자활 등 지원
 - * 피해자 지원실적(건수) : ('18.) 128,871건, ('19.) 127,553건, ('20.) 148,427건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전담 지원체계 신규 구축·운영*(17개소)
 - * 온라인 상담, 긴급구조, 보호, 치료·회복, 자립·자활 : (3,964명 / 22,927건)
- 지자체 합동점검, 지자체 등 민관협력을 통한 집결지 폐쇄 후 도시재생 등 지역사회 활성화
 - * 집결지 현황 : ('10.) 27개 → ('15.) 22개 → ('20.) 15개 → ('21.) 14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성매매 여성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등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진학교육을 통해 자립 및 자활 지원으로 성매매 여성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성매매 지원기관의 노동환경에 대한 점검 필요함
- 성매매 집결지를 통하지 않은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한 성매매가 활성화 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함

□ 향후 과제

-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성매매 여성이 청소년이거나 강요 등에 의해 성매매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피해자’에 해당되고 있음. 국제적으로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성 매수자 및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이 성매매 억제효과 있다고 입증.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채택 국가 증가하고 있음.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과제 VI	1.여성 분야	⑤ 여성 건강증진 강화
추진부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과제목표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은 현재 유일하게 직접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적기에 접종함으로써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고자 함		
주요 내용	• (HPV 예방접종) 여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백신 국가예방접종 무료 시행 • (건강상담) 만 12세 사춘기 여성청소년의 초경, 성장발달 관련 교육·상담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전문의를 통한 전문교육 및 상담으로 여성건강 증진 토대 마련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미접종자 관리 강화 -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추가) 사업내용 적극 홍보를 통한 사업인지 제고 효과와 미접종자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기능 강화 - (중학교 입학생 확인사업 시행) '18년부터 중학교 입학생 대상 예방접종 확인사업 시행으로 시행 전 보호자 및 교사 대상 안내자료 제공을 통해 접종 독려 - 접종 대상자 필수예방접종 사전 안내문자 발송 ('18년 약 161천건, '19년 약 81천건, '20년 약 54천건, '21년 약 49천건) - 접종 안내 우편물 제작 및 개별 발송('18년 약 104천건, '19년 약 251천건, '20년 약 84천건, '21년 약 73천건)) - 방학 전 접종독려 보도참고자료 배포('18년 1회, '19년 2회, '20년 1회) • 사업홍보 및 안전성 이슈 대응 - HPV 백신 안전성 문제 등 관련 이슈 대응을 위한 카드뉴스 제작·배포('18년 2회, '19년 1회) - HPV 예방접종 관련 이슈 해소 및 사업 내용 안내 유튜브 협력 콘텐츠 제작·게시('18. 9월) - 예방접종 정보 제공 및 여성 건강 상식 전달 등 HPV 예방접종 독려 목적의 미디어 채널 셰어하우스 협업 영상 콘텐츠 제작·게시('18. 9월, 12월) - '05~'07년생 여성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HPV 예방접종 주제 토크콘서트 진행('18. 12월) - 초·중학교 어머니를 대상으로 상담 전문가 성교육 프로그램 연계 홍보('19. 11~12월, 4회)

- HPV 예방접종 안내 리플렛, 포스터 제작·배포('19. 12월)
- ('21년) HPV 출생년도 및 차수에 따른 접종률 확인
- 2005~2008년생의 1차 접종률은 80% 이상으로 확인됨

(단위: 명, 건, %)

구분	대상자수1)	1차접종		2차접종	
		접종건수	접종률	접종건수	접종률
2003년생	237,053	148,137	62.5	129,459	54.6
2004년생	228,133	167,095	73.2	148,448	65.1
2005년생	210,147	184,180	87.6	163,768	77.9
2006년생2)	216,955	193,254	89.1	169,179	78.0
2007년생2)	240,587	215,717	89.7	191,024	79.4
2008년생2)	227,196	199,075	87.6	149,306	65.7
2009년생2)	217,000	120,188	55.4	33,807	15.6

※ 2021. 12. 31. 기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된 자료로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1) 대상자 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여성청소년

2) 2006~2007년생의 1차 접종자에 대한 2차 접종 지원기간이 남아있어 접종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2008년생의 경우 2차 접종 지원기간이 2023년까지, 2009년생의 경우 2024년까지임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HPV 예방접종률(2021년 기준)
- '08년생 1차 접종률 87.6%, '09년생 1차 접종률* 55.4%
- * 2009년생의 경우 2021~2022년까지 1차 접종 가능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미접종군은 HPV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백신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이상반응 신고 현황 공개 등으로 2005~2008년생의 1차 접종률은 80% 이상으로 확인됨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HPV 백신 지원 뿐 아니라 만12세 여성청소년의 신체발달에 따른 상담 및 교육 등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사업의 내용은 백신지원에 한정되어 있음. 사업 계획과 이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여성건강증진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백신 사업이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사업이 선정된 것인지 의문. 사업명에 대한 변경 또는 사업 내용을 포괄하는 사업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과제

- HPV 예방접종을 포함하여 여성건강 증진 강화 사업 발굴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과제 VI	1.여성 분야	⑥ 여성농어업인 지위 및 권익 향상
추진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과제목표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향상과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및 여성농업인 교육과정 내실화		
주요 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인정을 위한 제도개선,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지원 - 전문성·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강화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농촌 지역 보육여건 개선 -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주말 돌봄방 등 농촌 특화형 보육서비스 확대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20)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18) - 경영주 동의절차 없이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 '21년 여성농업인육성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전담부서 추진근거를 마련, 농식품부 표준조례안 제공 등 지자체 여성농업인 추진체계 구축 지원 추진 *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수 : ('19.) 115개 → ('21.) 127개 확대 -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담부서 설치현황을 지속 점검 및 설치 독려 *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지자체(기초, 광역) : ('19.) 2개, 4명 → ('21.) 7개, 20명 확대

□ 정책·관행의 변화

- 복지부와 협업하여 농촌특성을 반영한 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 - 아동수가 줄어들어 영아와 유아의 별도반 운영이 어려운 농촌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혼합반 운영이 가능토록 개선('18.1.) - 매월 여성농업인단체 간담회 및 실무회의 개최를 통해('20년 16회, '21년 20회) 현장 여성농업인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 신규 추진 - 여성농업인단체, 농특위 등 다양한 주체가 협업하여 '20년, '21년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여 여성농업인의 자긍심 및 사기를 고취시키고, 직업적 지위 향상에 노력. 2회 행사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날의 중요성을 BH·국회·관계부처 등으로 인정받아 특정 여성직업군에 대한 국내 최초 법정기념일로 지정됨('21.11.30.)

- 여성농업인 정책자료집 발간(25천부), 농사비법 경진대회, 농식품부 내 성평등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5건시상) 등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 교육도우미 지원조건 완화(3일 이상 교육→1일)로 수혜대상자 확대, 도우미 지원단가 인상(6만원/일→7)('18)
 - 마을에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농작업 편의장비 교육 및 정책 컨설팅을 실시하는 여성농업인 영농 여건개선교육 지원('20.)
 - * 여성농업인영농여건개선교육('20.~) : ('20.) 2,622명 → ('21.) 9,098명
 - 성별격차 해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농촌형 성평등강사 양성과정교육 운영('20.)
 - *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18명) 및 양성평등 교육확대('19: 25백명 → '20: 36백명 → '21: 50백명)
- 농촌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 확대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 * 지원개소: ('19.) 57개소 → ('20.) 84개소 → ('21.) 183개소
 - * 제도개선: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대상(국공립→+사회복지법인),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 확대(4개월→4~6),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 대상 확대: 만2세~만5세 → 만2세~초2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향상하고 정책추진체계 확립 필요
 - 경영주 중 여성비율이 확대되는 등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
 - 명목상 지위에 머무르는 공동경영주 제도 등 미비점을 발굴하여 개선 필요
- 지역까지 일관되고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활성화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직업 활동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농촌의 거주인구의 인구특성에 대한 분석 속에서 다양한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검토가 필요함
- 직업적 지위를 향상하는 것은 직업적인 성취 이후, 여성으로서 노동이 농업에서 부차적인 노동으로 머물러 있을 때 지위 향상은 어려움. 직업적인 성취를 위한 직접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등이 필요함.

□ 향후 과제

- 농촌의 지역환경에 대한 분석 속에서 다양한 정책 발굴 필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과제 VI	1.여성 분야	⑥ 여성농어업인 지위 및 권익 향상
추진부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제목표	여성어업인의 지위 및 권리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등 실질적 지원 추진으로 여성어업인의 권익향상 추진		
주요 내용	-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도입안 마련 - 어작업으로 기인한 질병 등에 대해 국가에서 특화건강검진비용 지원 * 여성의 경우 유병률이 남성어업인보다 높으며, 건강검진 수검률도 상대적으로 낮음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령 개정('19.) '21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21.4.)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21.11.)

□ 정책·관행의 변화

여성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및 특화 건강검진 도입 관련 연구용역 완료('19.~'20.)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예산 반영('22년 예산 371백만원) 50~69세 여성어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국비 90%, 자담 10%) - 어업활동, 어촌생활돌봄 지원사업 수혜자 수 확대('18년 16백여 명 → '20년 41여 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여성어업인의 질환 현황 조사 및 특화 건강검진 도입 연구용역을 통해 여성어업인 대상의 건강검진 도입
- 어촌의 거주인구의 인구특성에 대한 분석 속에서 다양한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검토가 필요함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하고 여성어업인의 날을 지정 등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다만, 직업적 지위를 향상하는 것은 직업적인 성취가 있는 이후 일 것임. 여성으로서 노동이 농어업에서 부차적인 노동으로 머물러 있을 때 지위 향상은 어려움. 직업적인 성취를 위한 직접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등이 필요함.

□ 향후 과제

- 어촌의 지역환경에 대한 분석 속에서 다양한 정책 발굴 필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과제 VI	1.여성 분야	⑦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
추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예술정책과
과제목표	•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을 통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사회 구현		
주요 내용	• 여성문화인 창작 환경 조성 • 여성문화예술인의 경력단절 해소 및 가사·육아 부담경감 방안 연구 • 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센터 및 반디돌봄센터 지속 운영 및 추가개소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여성문화인 창작 환경 조성 - 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 개최('18~'20년 12회, '20년 2회), 성평등문화정책 실무협의회('19~'20년 7회) 개최 - 양성평등 문화상 시상식 개최 및 양성평등 주간 문화프로그램 행사 -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추진('19년 영상·디자인·문예 3개 부문 37점 선정) - 양성평등 문화콘텐츠 제작('20년 웹드라마, 웹툰 등 42편) - 문화 분야 종사자 및 일반시민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2021 백텔데이 행사 개최 - 양성평등 문화확산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관계자 대상 포럼(10회) 개최 - 문화분야 근현대 여성인물 발굴 및 홍보사업 추진(자료집 제작, 특별기획전 개최 등) - 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센터 및 반디돌봄센터 개소 및 지속 운영 - 예술인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주말·야간에도 운영하는 예술인 자녀보육지원센터 2개소 운영 (대학로, 마포/'18~'20년 13,682명, '21년 3,340명 이용)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센터 및 반디돌봄센터 개소 및 지속 운영 -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추진('19년 영상·디자인·문예 3개 부문 37점 선정) - 양성평등 문화콘텐츠 제작('20년 웹드라마, 웹툰 등 42편) - 문화 분야 종사자 및 일반시민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2021 백텔데이 행사 개최 - 양성평등 문화확산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관계자 대상 포럼(10회) 개최 - 문화분야 근현대 여성인물 발굴 및 홍보사업 추진(자료집 제작, 특별기획전 개최 등)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양성평등한 문화 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 구현
- 예술인에게 육아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창작활동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해당사업은 여성문화예술인의 평등한 창작 활동 참여를 위해 대시민 인식개선을 통해 시민 양성평등 문화 역량 증진에 기여함.
- 여성문화예술인을 역사적으로 가시화하고, 창작 지원을 위한 보육지원 시설 개소 및 운영으로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 예술인들의 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말·야간에도 운영하는 자녀보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보육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예술인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아이돌봄이 직장이나 집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학로와 마포만 운영하고 있는 점이 아쉬움.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적으로 확대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양성평등 문화상, 양성평등 문화콘텐츠 제작 등에 대한 지원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나 여성문화인의 창작활동의 범위를 한정 짓게 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양성평등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검토해야 함
- 시민 대상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여성 예술인 직접 지원 사업이 미흡함.
- 여성문화 문화예술인의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며 육아지원 뿐 아니라 문화예술 업계에 대한 환경 조사가 필요함

□ 향후 과제

- 제3차 인권기본계획 상에 제시된 여성문화예술인 대상 연구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지원 외에 여성 예술인에 대한 정책 다각화 필요. 여성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육아 외에 새로운 정책 개발 필요
-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확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예술인 복지 등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계가 가능한 사회적 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과제 VI	1.여성 분야	⑧ 모·부성권 강화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과제목표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선도적인 기업·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수여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		
주요 내용	- 가족친화경영제도를 위한 인증기업 지속 확대 - 인증기업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직장교육 및 인센티브 지원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가족친화경영 인증 전·후 컨설팅 실시 및 온라인 자체관리 시스템 구축('19.12월)
 - * 인증 후 컨설팅 : ('18.) 150개사 → ('19.) 200개사 → ('20.) 299개
- 가족친화인증제 신뢰 제고를 위한 인증기준 개정 및 사후관리 강화
 - * 사회적 물의 야기 기업 인증 제외 등 고시 개정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속 확대
 - * ('18.) 3,328개 → ('19.) 3,833개 → ('20.) 4,340개 → ('21.) 4,918개(대기업 520, 중소기업 3,317, 공공기관 1,081)
-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인센티브 발굴·지원
 - * 인센티브 : ('18.) 186개 → ('19.) 211개 → ('20.) 200개 → ('21.) 229개
-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운영확대 추진
 - * 지역 유관기관 간 '가족친화문화 확산 협의회' 운영 확대 : ('20.) 12개 → ('21.) 14개 기관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한다는 목표 속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 운영하고 있음. 인증제도를 유지 관리하는 것을 넘어 가족친화 문화 형성에 기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인증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운영에 대한 실적 뿐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나 문화의 변화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설정이 필요함

□ 향후 과제

- 가족친화인증 기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 모부성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필요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과제 VI	1.여성 분야	⑧ 모·부성권 강화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제목표	출산 및 육아제도 활용 기업문화 개선,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제도 활용 및 남성 육아 휴직 확대 등을 통해 모성보호 제도 활성화 및 모·부성권 강화		
주요 내용	-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 - 부성권 보장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임신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허용('21.11월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허용('21.11월 시행) -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계속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육아 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도록 개정('20.3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확대하여 유연한 사용 지원('20.12월)

□ 정책·관행의 변화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맞돌봄 문화 정착 -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지원 강화(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150만→200만→25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기간 확대(3→10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중소기업 5일분) 신설('19.10월) -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및 육아휴직급여 동시 지급('20.2월) - 한부모 근로자의 돌봄부담 해소 및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 -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보장 -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해 육아휴직 활용 기업문화 개선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도 도입 촉진('21.1월 시행) - 기 영아기 육아휴직 도입을 촉진하고자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설*하고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22.1월 시행)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맞돌봄 문화 정착
 -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지원 강화(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150만→200만→25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기간 확대(3→10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중소기업 5일분) 신설('19.10월)
 -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및 육아휴직급여 동시 지급('20.2월)
 - 초기 영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맞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22.1월 시행)
 -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강화
 -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금 인상('19.1월)을 통해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사업주 부담 완화
 -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월 20→30만원) 인상('19.1)
 -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위한 근속요건 완화(1년→6개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
-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육아 부담 완화
 - '19년 선정한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10개소 개원 추진
 - * '21년 8개소 개원, '22.3월 2개소 추가 개원 예정
 - 대기업이 주도하여 설치하고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출산 및 육아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개정과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보장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인상 등 육아휴직을 저해하는 요소를 보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의 기준에 못 미침.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 육아제도 이용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음.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관심을 통한 지원 노력 필요
- 남성육아휴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계획 마련 필요

□ 향후 과제

- 고용형태등을 고려하여 출산 및 육아제도 설계 필요
- 사각지대 발굴 및 대상 확장에 대한 개선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2. 아동·청소년 분야	① 학교 체벌의 금지
추진부처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과제목표	• 체벌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 교육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 확충		
주요 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체벌 금지 추진현황 점검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학교체육 진흥법」, '20. 10. 20. 개정,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21. 4. 20. 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 폭력 등 인권침해 발생 시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 실시
- 시·도교육청별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10개 교육청)
 - 학생 체벌 금지, 학생선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 학생선수 폭력 전수조사,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학생선수 인권보호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 등을 규정한 조례 제정
-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제정(인천광역시조례 제5928호, 2018. 1. 2., 제정)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제정(충청북도조례 제4195호, 2018. 11. 9., 제정)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제정(충청남도조례 제4550호, 2019. 7. 30., 제정)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제정(울산광역시조례 제2111호, 2020. 2. 27., 제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제정(광주광역시조례 제5371호, 2020. 3. 1., 제정)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충청남도조례 제4780호, 2020. 7. 10., 제정)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제정(부산광역시조례 제6296호, 2021. 1. 6.,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755호, 2021. 1. 8., 제정)
- 「강원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제정(강원도조례 제4666호, 2021. 3. 12. 제정)
-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조례」 제정(전라남도조례 제5297호, 2021. 4. 8., 제정)

□ 정책·관행의 변화

-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화 방향 및 이슈 탐색” 정책연구* 추진
 -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및 학생 인권보장 관련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 개정발의안을 분석하여, 학생인권 관련 법률 제정안(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 인권보장 법제화 방안 제시

* 연구기간 : '18.7.2. ~ 12.21. / 연구책임 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2011. 3. 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학교 체벌이 금지되었음(제31조 제8항).³³⁾ 개정 당시 직접적 체벌을 금지할 뿐이며 간접체벌은 허용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가이드라인 발표³⁴⁾가 있는 등 논란이 있었으나, 모든 환경에서의 체벌금지를 권고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³⁵⁾와 더불어 각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제정, 영유아보육법(제18조의2 제1항), 유아교육법(제21조의 제2항), 아동복지법(제5조 제2항), 민법(제915조 징계권 폐지) 개정 등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본 정책과제에 따른 학교 교육활동 지원 정책은 체벌금지 실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학생인권조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조례 등은 일부 지역에만 제정되어 있어, 보다 명시적으로 교내 체벌 근절을 위한 규범적 효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에 따라 지역별 편차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³⁶⁾ 아동복지법과 민법 개정으로 실질화된 모든 환경에서의 체벌금지 규범의 수범력을 높이고, 학교 관계자의 인식 강화를 실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의 핵심으로써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함

□ 향후 과제

- 학교의 장이 체벌 없이 학생지도를 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교육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시 시·도교육청 적극 지원
- 체벌금지 법제화에 대한 홍보 지속

33)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05093>

35) CRC/C/KOR/CO/5-6, para. 27(c)

36)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R1T1A0J2H9U1S3X4J0D2E8K9C4E5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2. 아동·청소년 분야	② 아동·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과제목표	청소년들이 자립적·종합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특기를 계발·체험하고 인성·사회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		
주요 내용	- 청소년 주도의 청소년 동아리 활동 활성화 - 자기 주도적 학생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추진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 추진과제별 주요 이행내용 및 이행방안 점검

- 지자체와 연계하여 청소년동아리 2,500개 선정 지원 - 민주시민, 사회정서, 창의융합, 진로·직업 등 중점 육성 동아리 발굴 권장 ‘지역 청소년동아리연합회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동아리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 - 사업지침 변경을 통해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 운영의 비대면 방식 허용 2020년, 2021년도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온라인 축제 개최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사업지침 변경을 통해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 운영의 비대면 방식 허용

□ 정책·관행의 변화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면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소규모 방식으로 전환 - 동아리 형태를 통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지원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전체 시군구에 청소년어울림마당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 증액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은 2018년 이후 변동없이 1,250백만 원으로, 동아리 활동 주제나 방식의 특수성, 지역 여건, 비대면 활동 실질화 등에 따른 충분한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 현실을 유추할 수 있음. 특히 정부의 주요 추진 성과로 제시된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추진과제 141의 “청소년주도 문화활동 확대”와 같은 내용으로서, 특화된 정책의 목표와 영향을 확인할 수 없음. 동아리를 통한 ‘청소년 주도’의 관점이 다양한 활동 내용에 필요한 예산 수립과 지역사회 정책 참여의 기회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사업 세부내용의 점검과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함.
- 지원 대상 동아리 선정기준의 투명성과 적절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부재함. 시혜적 관점의 ‘기회 제공’이 아닌, 아동·청소년 참여의 관점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이 이행과제의 한 내용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아동·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주로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결과, 학교밖 청소년, 가정밖청소년의 참여율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지역사회 모든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과 홍보 방법이 추진계획에 고려되어야 함
- 장애아동, 학교밖청소년, 가정밖아동·청소년, 빈곤가정 아동·청소년 및 보호대상아동 등 소수자 아동·청소년의 참여 정도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이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고려가 섬세하게 마련되어야 함

□ 향후 과제

- 청소년동아리 지속 지원(’22년 2,500개)
-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추진
 - － 우수 청소년동아리 운영 사례 발굴 및 홍보 추진
- 청소년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자기주도적 재능나눔 봉사활동’ 개발 · 확대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2. 아동·청소년 분야	③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추진부처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과제목표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학생자치활동 내실화 방안 마련 및 시·도별 우수사례 발굴·보급		
주요 내용	-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의 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내실화 방안 마련 - 시·도별 학생자치활동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사례 선정·보급을 통하여 다양한 자치활동 모델 발굴 및 확산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 추진과제별 주요 이행내용 및 이행방안 점검

- 시·도교육청 자체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사업 예산 지원 - 학생자치회실 환경 구축, 학생 주관·참여 프로그램 지원 등('19년 2,432백만원)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교육청 담당자 교류 및 우수사례 공유 - 학생자치활동 우수사례집 개발·보급('18.12.) - 시·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인권담당자 워크숍('19. 7. 11.) -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 담당자 협의회('19. 9. 4.) - 전국 학생자치 컨퍼런스('19. 8. 30.) -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 담당자 워크숍('19. 9. 4.) - 학생자치활동 컨설팅 및 자료 개발 협의회('19. 9. 11.) - 민주시민교육 포럼 및 민주학교 공유회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20. 10.~12., 8회) - 원격교육 상황에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추진('20. 10.)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시·도교육청별 다양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 「학생 시민성장 안내서」 보급 등 학생자치활동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교육청 담당자 교류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학생자치회실 환경 구축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교육부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과제는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면서, ‘완료된 과제’로 보고됨. 그러나 교육자치의 범위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비차별과 참여권 보장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함
- 학생참여 등 학생인권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³⁷⁾ 시행 추진과 더불어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교육부의 역할이 검토되어야 함
- 장애아동, 학교밖청소년, 가정밖아동·청소년, 빈곤가정 아동·청소년 및 보호대상아동 등 소수자 아동·청소년의 참여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태 파악, 이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고려가 섬세하게 마련되어야 함

□ 향후 과제

- 시·도교육청으로 사업이 이양되었으며(’20), 교육청별 학생자치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추진
- 향후 학교 단위별 과제 이행내용이나 추진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실시 필요

37)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R1T1A0J2H9U1S3X4J0D2E8K9C4E5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2. 아동·청소년 분야	④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개선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과제목표	방과후 돌봄(활동)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및 양육부담 경감		
주요 내용	- 저소득층, 한부모, 다문화, 장애, 조손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상담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성장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배양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우선순위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완화 및 '2자녀 이상 가정' 확대 추진 * 우선순위 지원대상 : ('18년) 소득기준 100%이하, 3자녀 이상 가정 → ('19년) 소득기준 150%이하, 2자녀 이상 가정 -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역량 제고 및 모니터링 추진 * 2021년 운영기관 컨설팅(83개소), 종사자 교육(1,613명), 종합평가(188개소) - 청소년 주도 창의융합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전국 확대 및 '진로체험형 방과후아카데미' 시범운영(9개 기관) 실시 - 비대면 활동프로그램 선도기관 양성 및 사례 보급(10개 시도 11개소) * 사업설명회('21.5.) 및 전문가 컨설팅(전문 멘토와 기관 간 매칭) 운영('21.6.~12. 3회) * 비대면 활동 프로그램 우수 운영기관 선정('21.11.) 및 사례 보급('21.12.)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방과후아카데미 확충을 통한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방과후 활동 활성화 및 참여인원 증가 - 운영 기관 및 참여인원 수 : ('18.) 260개소, 10,742명 → ('19.) 280개소, 11,584명 → ('20.) 304개소, 12,341명 → ('21.) 332개소, 13,145명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돌봄 취약계층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긴급 돌봄서비스 지원
 - 긴급돌봄지원('21.11.): 돌봄 41.5만명, 급식제공 67.7만명, 학습지원 27.1만명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시간 연장: 기존 방과후 ~ 21:00 → 변경 9:00~21:00
 - 코로나19 현장 대응을 위한 물품 지원: K-방역세트(마스크, 손소독제) 지원 등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한계
 - ※ 참여 청소년 및 학부모의 전체만족도가 전년에 비해 하락('20.) 82.79 → ('21.) 82.5
- 성장기 청소년의 수준에 맞는 식단 제공을 위한 급·간식비 현실화 지속 요구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단가('19.) 4천원,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단가('16.) 6천원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정부는 이행실적의 한 내용으로 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수혜'청소년으로 보고하는데, 돌봄취약 상황에 있는 청소년의 돌봄·교육 지원정책은 권리 보장을 위한 의무이행으로서, 정부의 시혜적 정책이 아님. 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점검체계가 부족하거나 부재한 실태를 뒷받침하며, 정책추진의 차별적인 시각은 정책과제 수행에 제한점이 될 수 있음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 교육부·교육청의 교육복지 정책과 분절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충분한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지는지 검토되어야 함
- 돌봄취약 계층에 대한 방과후아카데미의 목적이 청소년의 가정지원을 통한 발달·교육권 보장인지,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인지 모호함. 청소년활동진흥과에서 해당 사업을 점검한 결과를 참고하면, 위기청소년 예방 및 지원 목적도 후차적으로 고려될 우려가 있음. 반면, 청소년 참여권의 관점에서 이 사업을 바라본다면, 아동·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학생자치활동 지원의 추진 과정에 돌봄취약 상황의 아동·청소년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을 설계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임. 정책목표를 명료히 하고, 담당부서 지정 및 사업내용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과제

- (인프라 확충) 방과후 활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속 확충
 - * ('21.) 332개소 → ('22.) 350개소
- (운영내실화 추진) 현장 컨설팅(5~10월), 종사자 교육(4~11월), 종합 평가(100여개소, 5~11월) 실시
- (긴급돌봄 지원) 코로나19 대응, 돌봄 취약청소년의 대한 급식제공, 온라인 학습지원 등 긴급돌봄 지원 지속 실시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2. 아동·청소년 분야	⑤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풍토 조성
추진부처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과제목표	•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풍토 조성		
주요 내용	• 개개인의 성장을 중시하는 과정중심 평가 확대 • 학생 평가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교육 구성원 역량 강화 • 지식위주의 경쟁적 교육 개선을 통한 학생 존중 교육풍토 조성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개정
 - 학생 성장 중심 평가를 위한 수행평가 활성화 등 기반 마련('18.1.)
 - 수업-평가 연계 강화를 위한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중학교 자유학기 교사별평가 근거 마련 등('19.12.)
 - 중학교 표준편차 삭제, 고교 교과세특 기재 단계적 확대, 과제형 평가 금지('20.1.)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19.11.28.)'에 따라 2021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정규동아리 외 '청소년단체활동'을 미기재함을 명시, '교원지위법' 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신설('19.4.16.)된 '출석 정지'의 출결 처리 방안 명시,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종료 시점(학년도 종료 시) 및 졸업생의 정정업무 처리주체, 정정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명료화('21.1.)
- 학생평가·학생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 정비
 - ※ 시험지 보안시스템 및 관련자 징계 강화, 성적처리 절차 개선을 통한 평가 공정성 제고, 교사 평가 전문성 강화 및 관련 지침 정비('18.12.)

□ 정책·관행의 변화

- 학생평가지원포털 기능 개선을 통한 현장교원의 만족도 제고(목표치 74, 만족도 79.5)
- 교육부-시도교육청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학생평가 담당자 정책협의 정례화(연중, 총10회 개최)
- 교원·학부모 등 인식 개선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 개발·보급('20.)
- 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체 초·중 교원 대상 실습·사례 중심 학생평가 연수 운영('18.~ '22.)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과정중심평가 및 성취평가제 안착을 위한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운영
※ 중앙지원단 106명, 지역지원단 985명
- 교실수업 및 학생평가 내실화 지원을 위한 연수 및 콘텐츠 개발·보급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과정중심 평가, 성취평가제는 교육에 대한 아동권리 보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모든 과정에 인권에 기반한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본 정책과제는 ‘교수법’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학생인권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 학생평가 정책 개발, 추진 과정에 학생의 의견청취를 강화하고, 그 의견을 토대로 지속적인 보완방안을 검토하는 계획도 필요
-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아동기를 사실상 박탈하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환경’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교육과정 다양화, 대학입시제도 재검토, 진로상담 강화 등을 포함하여 경쟁 완화라는 목표하에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호(2001)에 부합하게 공교육 제도를 개선할 것,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학교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고 근절할 것. 차별혐의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다룰 것,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적 안정과 관련된 훈련을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함.³⁸⁾ 즉, 평가에 앞서 발달의 모든 시간 속에 학습과 배움을 갖춰나갈 수 있는 학교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학생은 오롯이 주체로 존중되어야 함. 본 과제의 이행 내용이 ‘다양한 평가 방법 개발’에 앞서,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에 초점을 둘 필요를 강조하며, 이는 학생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가장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임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보완, 과정중심 평가체계 개편 사항 등은 학생의 권리보장과 증진보다 객관성 확보에 초점을 두는 행정편의적 관점이 더 크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임. 근본적으로 교육과정에 국한된 시각을 넘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폭넓은 추진과제 설계 및 이행이 필요함
- 과정중심평가, 성취평가제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도 부재함

□ 향후 과제

-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계속)
- 교원의 학생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계속)
- 현장적합성 높은 수행평가 및 서논술형 평가도구 발굴 및 확산
- 학생평가 정책을 반영한 학생평가 관련 안내 자료 개발 및 보급
- 근본적으로, 입시 위주 사회를 탈피하고, 학생의 성장과 적성에 맞는 진로개발 등 개성 존중에 집중할 수 있는 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수립

38) CRC/C/KOR/CO/5-6, paras. 41-42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2. 아동·청소년 분야	⑥ 위기 아동 지원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추진부처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과제목표	위기아동 지원을 위해 위(Wee) 프로젝트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상담교사 지속 확충		
주요 내용	- 학교 단위 위(Wee) 클래스 및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내 전문상담(순회)교사를 지속 확충 - 위(Wee) 센터 정신과 자문의 지정을 통한 고위기 학생 선별 및 정신의학적 지원 강화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선진화된 우수운영 모델 구축·운영으로 학생상담의 차별화된 고품질 서비스 구현 및 사업 고도화 -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위(Wee) 프로젝트 설치·운영 근거 및 행정·재정적 지원 명시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병원치료 병행이 필요한 고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병원형 위(Wee) 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19.1.)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20.3.2.)
 -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은 학교·교육청이 상담과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자치의 책무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지역의 여건과 특색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기존에 교육부의 성과관리 근거가 되는 제14조제2항을 삭제하여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역의 위(Wee) 프로젝트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운영의 계획과 성과관리 등을 실시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함

□ 정책·관행의 변화

- 위(Wee) 프로젝트를 통한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
 - ※ '21년 이용 전후 학교생활만족도: 위(Wee) 클래스 (이용 전) 5.66 → (이용 후) 8.28 / 위(Wee) 센터 (이용 전) 5.31 → (이용 후) 7.96
- 위(Wee) 센터 정신과 자문의 운영 및 학교 단위 위(Wee) 클래스까지 원격화상자문서비스 실시
-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의 비언어적인 태도 관찰을 통한 효과적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상담 교사·전문상담사와 학생 간의 1:1 화상상담(랜선 위(Wee) 클래스) 시범운영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기관 및 교사 확충
 - ※ 위(Wee) 클래스: ('20.) 7,631교 → ('21.) 8,059교 / 위(Wee) 센터: ('20.) 233개소 → ('21.) 240개소
 - ※ 공립 전문상담(순회)교사 정원 현황 : ('18.) 2,231명 → ('19.) 2,715명 → ('20.) 3,336명 → ('21.) 3,936명(+600명 증원)
-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연수 실시
 - ※ 연수 내용: 공감 상담, 감정조절, 갈등해결 등
 - ※ ('21.) 고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문제유형별(우울, 불안 등)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대상 온라인연수 (총 39차시, 총 3,579명),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온라인 연수(총 3개 연수, 63개 과정) 등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해당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위기아동 지원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으로,³⁹⁾ 국가 아동보호체계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음. 즉, 학생의 원가정에 대한 개입 및 부모지원, 학생의 회복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을 중심에 둔 부처협력이 실천되어야 함
- 지역의 여건과 특색을 고려한 실효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목표로, 교육부훈련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제14조 제2항 삭제) 교육감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지역격차 해소 및 실효적인 정보연계 등을 위한 중앙정부 단위의 통합적 모니터링도 필수적으로 요청됨
- 위(Wee) 프로젝트 이용 학생의 차별과 낙인 예방을 위한 비밀유지(사생활보호)에 대한 권리 존중을 전제로 매뉴얼상의 예외상황 판단과 그 후속조치가 전문성을 갖춰 이뤄질 수 있도록, 아동권리에 기반한 사업운영의 목적과 추진방안이 사업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되고 교육·훈련되어야 함. 특히 전문 상담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정 확보, 이들의 역량강화와 업무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실적을 넘어선 영향평가 보완도 필요함

□ 향후 과제

- 위(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및 민간 협력 사업 확대
- 위기학생 상담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지속 확충
- 위(Wee) 프로젝트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39) https://www.wee.go.kr/home/cms/cmsCont.do?cntnts_sn=1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2. 아동·청소년 분야	⑦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추진부처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과제목표	• 또래활동 활성화를 통해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한 또래문화 형성(여성가족부 협업) • 다양한 학생 안전망 구축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117 학교폭력 신고체제 정비 및 피해청소년 보호조치 강화 •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및 청소년의 인권보호		
주요 내용	• 건전한 관계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원 • 국립부설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지원 • 117 학교폭력 신고체제 정비로 24시간 신고 및 상담 전화 운영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운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및 청소년의 인권보호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에서 학교폭력 외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성매매, 법률상담 접수 처리건을 아울러 접수하도록 양식 변경

□ 정책·관행의 변화

•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원 및 온라인 컨설팅 콘텐츠 제작·보급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의 상처 치유 지원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117 신고·상담센터(상담사 180명) 상담사 역량 강화 연수 •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 CCTV 설치(99.85%) 및 고화소(100만 화소 이상) 비율 제고 ※ 학교CCTV(고화소 비율) : ('20.) 264,027대(96.2%) • 국립부설학교 고화질 CCTV 설치·교체(19개교), 지능형 CCTV 시범운영(3개교)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해당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의 상시 운영, 상담사 역량 강화 연수 지속 등은 긍정적임. 이와 함께 상담사의 처우 개선 등 업무여건의 적절성 보장을 통해 학교폭력 사례에 대응하는 전문성 확보도 계속하여 검토되어야 함
- 학교폭력 대응체계 전반에서 당사자 아동·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청취를 보장하고,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둔 프로그램 운영을 모티빙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어야 함
- 학교폭력 신고 및 대응 과정이 가해,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 및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 경찰 및 위(Wee) 프로젝트의 회복적 프로그램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지침 마련, 자원 활용이 추가적으로 요청됨
- CCTV 설치의 필요성과 의미를 학교 구성원에서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예방적 의미를 상기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학교문화 조성에 유념할 것을 제안함

□ 향후 과제

- 117상담사의 상담기법과 적절한 조치 등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실시('22.9.)
- 건전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원(여성가족부 협업)
- '22년 지능형 CCTV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지속 추진
-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교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2. 아동·청소년 분야	⑧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피해 아동 보호·지원 강화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제목표	- 아동학대 근절을 통한 아동행복 보장 - 내실 있고 선진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주요 내용	- 아동학대 인식 개선 노력 및 예방교육 강화 - 위기 아동 발굴 강화 - 아동학대 인프라 확충 및 보호지원 강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예방·인식개선) 신고의무자 직군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교육 실시(학교, 어린이집 등)
- (발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21년 104,195명 가정방문, 135명 학대 신고), '21년 4분기 만3세 아동 약 2.6만명 전수조사 실시하여 아동 안전 확인
- (정보공유) 위기아동 정보공유 및 보호·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시군구별 정보연계협의체 구성·운영('21.10월 기준 222개 시군구, 연간 총 638회 운영)
- (분리보호) 즉각분리제도 도입('21.3.), 학대피해아동쉼터(29개소), 일시보호시설(7개소) 확충, 위기 아동가정보호 신설(200가정)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초기대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국 시군구 배치('20년 292명→'21년 747명)
 - 현장 협업방안을 구체화 한 아동학대 유관기관(복지부-경찰-아보전) 공동업무수행지침 시행('21.4.)
- (회복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강제력 부여('21.6.), 전담의료기관 지정 활성화('21년 285개소), 시도별 거점 심리지원팀 설치 및 전문인력(3인) 배치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아동학대 대응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정부의 면밀한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중대사건 발생으로 인해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외부 지적 발생
 - 마련된 대책의 충실한 이행 및 현장에서의 원활한 작동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협력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형사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업무체계와 절차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및 협력이 필요함(국가인권위원회, 2022: 176)
- 학대신고 횟수와 정도에 대한 아동 중심적 판단과 개입을 통해 아동의 원가정 보호 강화 및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법과 제도에서 ‘즉각분리’를 정당화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가 아닌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아동의 가정 외 분리 보호를 결정하는 법제 일원화 조치도 검토되어야 함(국가인권위원회, 2022: 176)
-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둔 즉각분리 제도 뿐만 아니라,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확충을 정책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며, 원가정 지원과 원가정 보호를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움. 부득이한 경우, 일시보호를 위한 쉼터 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아동의 탈시설화(deinstitutionalisation)를 도모하는 중장기 로드맵 구축⁴⁰⁾과 시설보호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아동권리협약 제25조)하는 규정 마련 등의 개선이 필요함(국가인권위원회, 2022: 176)
- 아동학대 중대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며, 마련된 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시작점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혁신적인 시스템 전환이 필수적임. 개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시적·단발적으로 추가된 정책이 아닌, 궁극적 변화를 위한 명확한 근거로서 진상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함
- 만 3세 미만 아동 전수조사, 취약이 유예된 학생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학대피해아동, 위기아동 조기 발굴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출생신고’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음. 즉, 한국에서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이주아동이나 여하한 사유로 출생이 신고되지 않은 아동을 현행 발굴 시스템에서 누락될 수 밖에 없음. 모든 아동을 아우르는 아동학대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향후 과제

- (예방 및 인식개선) 신고활성화를 위한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공정양육 129원칙’ 등 긍정 양육 문화 확산
-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선과 함께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 업무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단계적 전환하여 효과성 제고
- (초기대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추가 보강 및 대응인력 간 효율적인 협업모델 구체화하는 연구용역 추진(’22.~)
- (분리보호) 아동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프라 확대*
 - *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속 확충(’21년 105개소→’22년 141개소),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6개소 신설(’22)
- (회복지원) 가족회복 기능 강화* 및 치료지원 내실화**
 - * 가족의 기능회복을 지원하는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 시범 운영(’22. 1,000가구)
 -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치료 및 회복지원을 위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원’ 시범사업 실시(’22.8개소)
-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안 제정을 통한 아동학대 조사·대응체계 전면조사 및 종합적 아동정책 추진체계 재정비

40) CRC/C/KOR/CO/5-6, para. 32(a)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2. 아동·청소년 분야	⑨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증진
추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과제목표	학생 선수의 인권보호 증진		
주요 내용	- 스포츠 인권교육 확대 -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학부모 대상 양질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스포츠 인권 교육 확대 - 스포츠윤리센터 및 운영·스포츠 인권 인식개선 - 선수(성)폭력 등 인권침해 신고·상담 및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및 관련정보 제공 - 선수(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국가대표 스포츠인권 교육 의무제 시행 - 체육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상담 및 교육 실시 - 체육계(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 - 스포츠인권 시범교육 운영을 통해 교육콘텐츠 개발 및 교육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 체계 구축 기반 마련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스포츠윤리센터 개소('20.9.) - 인권교육 진행 - 국가대표 스포츠인권 교육 의무제 시행('18년 1,211명 교육, '19년 1,662명 교육). - 전체 등록선수 대상, 온라인 스포츠인권 교육 의무제 시행('18년 155,602명 교육, '19년 147,140명 교육) - 선수, 지도자,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스포츠인권교육('18년 44,463명, '19년 41,411명) -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이후('20. 9.) 총5회 시범교육 실시 140명 수료 - 심!명!나!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18년 연간 30여개 단체 대상 프로그램 운영, '19년 1,821명 교육) -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권교육 진행

학교운동부지도자	2018	2019	2020	2021
인권교육 참여자	1,302명	1,181	1,082	3,234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가이드라인식의 교육이 교육참여자의 자력화를 증진시키는 방법인지 고민이 필요하고, 이러한 방식은 지도자와 학생,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와 갈등구도를 짓는 것이 인권교육의 목표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함⁴¹⁾. 덧붙여 학생 선수의 경우 학교라는 주 공간과 성인과 아동·청소년 사이의 관계, 또래집단의 긴밀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리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 내용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2010년부터 2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예방적 조치를 취함. 또한,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상담을 지원하여 구제절차를 마련함. 그러나 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적폭력/수치심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이 초등의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가 39.3%로 가장 높고, 중·고등의 경우 25.0%로 두 번째로 높음(스포츠윤리센터, 2021).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였으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제절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인권침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에 대해 ‘보복이나 불이익 등으로 오히려 피해를 더 볼 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가 초등의 경우 두 번째로 높았고, 중·고등의 경우 동일 응답이 1, 2순위, 성인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남(스포츠윤리센터, 2021). 이는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구제절차가 진행되어도 스포츠계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 향후 과제

- 인권교육 내용에서 가이드라인식의 교육은 지양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구조와 맥락, 서사에 대한 설명으로 전환과 학생 선수의 경우 학교라는 주 공간과 성인과 아동·청소년 사이의 관계, 또래집단의 긴밀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리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 내용으로 설계
- 인권 침해 구제절차에 대한 홍보 확대
- 스포츠계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구조적 원인 분석과 대안 필요
 - 국가의 스포츠관이 스포츠계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구조를 지속시키는지에 대한 연구 분석, 해외 사례 수집 및 인권적 스포츠 문화를 만들기 위한 장기 로드맵 필요

41) 조효제.(2018.08.28.). [조효제의 인권 오디세이] 사회복지사와 인권.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859632.html>. 최종접속일: 2022.08.23.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2. 아동·청소년 분야	⑩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
추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과제목표	대중문화예술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등을 통한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 인권 보호 강화		
주요 내용	-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 청소년 연예인 인권 보장(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및 자유선택권 등) 조치 강화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연습생 표준계약서('18.12 제정 예정) 內 인권에 대한 세부 조항(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및 자유선택권 등)을 규정 및 명문화 하여 청소년 인권 보호 강화 - 업계 자율 노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유도 -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 법정교육 시 청소년 인권 관련 교육 운영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소양교육, 심리상담 지원 - 성윤리의식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K-Pop의 위상 제고와 본인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의식 고양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 인권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시간 허용 기준 마련(연령별 용역 제공시간 및 허용조건 등) '18년 12월 제정 예정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관련 조항 반영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2019. 09. 29. 제정)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2019. 03. 04. 제정)
 - 용역 제공시간 제한 및 예외규정 마련

□ 정책·관행의 변화

- 청소년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정기교육 실시
 - * 2018년 17회 교육(1,903개 업체) / 2019년 16회 교육(1,876개 업체) / 2020년 8회 교육 및 온라인 병행(1,950개 업체) / 2021년 전면 온라인 교육(9~11월, 2,289개 업체)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소양교육, 심리상담 지원
 - 소양교육 : '18년 155회(1,272명), '19년 151회(1,361명), '20년 143회(1,429명), '21년 142회(807명) 실시
 - 심리상담 : '18년 146회(73명), '19년 329회(111명), '20년 699회(146명), '21년 899회(175명) 실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코로나19로 인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집합교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21년부터 전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 청소년 지망생이 단체로 집합교육에 참여하는 소양교육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해 '20년에 비해 '21년의 참가인원 감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현재 정부의 청소년 연예인 인권보호 정책과제는 업계의 자율 노력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만큼 노동권 및 학습권, 휴식권 침해가 더 쉽게 발생하며, 그 영향은 훨씬 더 크고 중대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규제와 기업의 책무 강화를 명시하는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청소년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소양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권리구제 절차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유명 무실할 수밖에 없음. 업계 내 아동·청소년 인권보호관 지정,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의 상시적인 모니터링, 더욱 촘촘한 용역계약 표준안 마련 등 구조적 변화가 시급한 과제임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심리상담은 권리침해에 따른 부수적인 조치일 뿐인데, 기본적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회복 지원을 위한 정책내용은 부재함. 아동·청소년의 노동자성 인정과 발달적 특수성을 종합하여 고려하는 세부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청소년 연예인 인권보호 정책은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로 집행되고 있는데, 해당 센터 내 아동·청소년 영역을 전담하는 전문가 지정, 이들의 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확보 등도 필요함. 이때, 아동·청소년의 폭넓은 연령대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과 특히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자기보호에 취약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외적 자원이 제대로 연계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과제

- 업계 자율 노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유도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기교육 시 청소년 보호 관련 내용 포함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소양교육, 심리상담 지원
 - '22년 소양교육 245회, 심리상담 2,200회 예정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과제 VI	2.아동·청소년 분야	⑪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제목표	-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치료·재활교육과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로 - 성매매 재유입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		
주요 내용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피해 발생 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서비스 제공 - 사이버 상에서 성매매 노출 위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상담 등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실적 — (교육 지원) 810명, (사례관리 지원) 5,260명 - 청소년 사이버 성매매 예방활동 실적 ('20년 상담 3,611명, 지원연계 4,571명, 방심위 신고 954건 등) -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 신고포상금 지급 ('20년 8건, 520만원)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개소(중앙1, 지방17) — (교육지원) 315명, 심리진단, 성주체성향상, 성착취 예방교육 등 — (상담·사례관리 지원) 1,809명, 진학·학업 지원, 법률·의료지원, 청소년시설 연계 등 - 청소년 사이버 성매매 예방활동 실적 (상담 4,396명, 지원연계 5,920명, 방심위 신고 993건 등) *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홍보활동 미 실시로 상담인원 감소(4,284명('19)→3,611명('20)) -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 신고포상금 지급 ('21년 17건, 1,220만원) - 랜덤채팅앱 주기적 점검 및 단속('20.12~'21.12, 8차례 점검) — 점검결과 : 시정 요구 124건 및 형사고발 19건(국내 채팅앱), 상품 판매 중단 요청 156건(국외 채팅앱)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실적
 - (교육 지원) 810명, (사례관리 지원) 5,260명
- 청소년 사이버 성매매 예방활동 실적 ('20년 상담 3,611명, 지원연계 4,571명, 방심위 신고 954건 등)
-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 신고포상금 지급 ('20년 8건, 520만 원)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개소(중앙 1개소, 지방 17개소)
 - (교육지원) 315명, 심리진단, 성주체성향상, 성착취 예방교육 등
 - (상담·사례관리 지원) 1,809명, 진학·학업 지원, 법률·의료지원, 청소년시설 연계 등
- 청소년 사이버 성매매 예방활동 실적 (상담 4,396명, 지원연계 5,920명, 방심위 신고 993건 등)
 - *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홍보활동 미 실시로 상담인원 감소(4,284명('19년) → 3,611명('20년))
-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 신고포상금 지급 ('21년 17건, 1,220만 원)
- 랜덤채팅앱 주기적 점검 및 단속('20년 12월 ~ '21년 12월, 8차례 점검)
 - 점검결과 : 시정 요구 124건 및 형사고발 19건(국내 채팅앱), 상품 판매 중단 요청 156건(국외 채팅앱)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매매 재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함으로 교육, 상담, 재발방지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초 유입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동시에 검토·마련해야 할 것임
- 재발방지교육 등 실시하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청소년 성 보호 활동 지원 사업' 명칭은 사업의 주체인 청소년을 대상화 할 우려가 있음. '청소년의 성 권리 증진 지원 사업'처럼 청소년의 주체성, 권리를 사회적으로 의무부여 할 수 있는 명칭 고민 필요함. 같은 취지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명칭 개정 필요함
- 피해 청소년 지원 시 서약서 제출 요구 등 훈육적, 권위적 태도 지양해야 함

□ 향후 과제

- 오픈 채팅, 랜던 채팅 등 기술 발전을 악용 한 기술 기반 성 착취는 기술 발전 속도와 비례하기 때문에 신종 기반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발빠른 대응을 통한 차단, 윤리적 기술 활용에 대한 인식 교육 등을 전담하는 부서 및 인력 양성 필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2. 아동·청소년 분야	⑫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과제목표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		
주요 내용	-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 청소년 전용상담전화, 온라인·모바일상담 등의 청소년상담1388 상담채널 구축·운영 -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 관리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21년 3월 23일 개정, '21년 9월 24일 시행) - 가출 이후 "가정 밖"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출청소년"의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며(제2조 제5호),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체의 장이 교육·상담·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원 내용을 구체화(제16조)함 ('21년 3월 23일 개정, '21년 9월 24일 시행)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위기 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제9조의2)함

□ 정책·관행의 변화

- 연 1회 지자체를 통해 센터 현장점검 실시(대상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내실화 및 사업 효과성 증진을 위한 컨설팅 실시(총 16개소)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21년 신규 청소년안전망 2개소 확대 구축 - 청소년안전망 구축 현황 : ('20년) 236개소 → ('21년) 238개소 - 위기청소년 조기발굴을 위하여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청소년상담1388 운영 - 청소년상담 1388 실적 : ('21년) 85만건 - 찾아가는 온라인상담(사이버아웃리치) 실시 : 26,608건 상담, 유관기관 1,016건 연계

- 청소년 안전망 운영 강화 및 찾아가는 사례관리 확대를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 ('20년)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실시(9개소) → ('21년) 청소년안전망팀 14개소, 고위기청소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16개소
 - 청소년 안전망 통합지원서비스 실적 : ('21년) 328만건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는 “예방”과 “조기개입”, 사후개입에 따른 안정적인 “사후관리”가 주요한 과제임. 이를 위해서는 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전문성 뿐만 아니라, 이들의 효과적인 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그러나 해당 사업의 예산은 정해진 인건비와 운영비 외 교육 및 수퍼비전, 모니터링, 구조적 인프라 확충 등이 고려되지 않았음.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이 결코 일회성으로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예방과 지속적 개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할당해야 함⁴²⁾
- 교육부·교육청, 법무부, 보건복지부의 학교밖, 보호대상아동 지원 시스템을 통한 업무연계와 신속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매뉴얼, 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는 권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제고하는 방안도 될 수 있음
- 특히 코로나19 상황은 미약하게 추진되던 정부 주도의 아웃리치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결과로 나타났음.⁴³⁾ 각종 복지시설과 교육기관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가정 내 갈등과 위기는 더 커졌으며, 기존의 거리 청소년과 거리로 탈가정한 청소년들을 더욱 취약한 상황에 내몰았는데, 사이버아웃리치 외 별도의 대책은 찾아볼 수 없음. 온라인 시스템 활성화와 더불어 오프라인 아웃리치 활동에 대한 평가와 개선조치가 논의되어야 함

□ 향후 과제

- 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역 확대 및 연계 강화를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서비스 강화
- 다양한 상담채널(전화, 문자, 사이버 등)의 상시 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지원 강화
 - 청소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상담채널 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청소년동반자 확충을 통해 고위험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심층 상담 지원 강화
 - 자살 및 우울 경험, 가출, 학업 중단 등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특화된 상담 서비스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컨설팅 실시
 - 신규센터 2개소 및 '20년 종합평가 주요지표 미흡/부진센터 2개소 및 희망센터 11개소 대상
- 누락 없는 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구축의 관점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근거법률이 되는 아동기본법(안) 제정
 -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청소년(young people)을 아우르는 정책조정, 예산, 권리교육, 권리구제 및 통계 등을 법안 내용에 반영
 - 아동기본법 제정에 따른 부처 개편 및 정책 연계 제도화 도모

42) CRC/C/KOR/CO/5-6, para. 10(c)

4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2099.html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2. 아동·청소년 분야	⑬ 가출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과제목표	•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대상 인권·권리교육 실시를 통한 가정 밖 청소년 인권 보호		
주요 내용	• 가정 밖 청소년 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대상 인권·권리교육 실시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대상 인권·권리교육 실시 (교육실적) ('18년) 73개 쉼터, 청소년 3,562명 대상 → ('19년) 80개 쉼터, 청소년 3,829명 대상 → ('20년) 118개 쉼터, 청소년 4,976명 대상 → ('21년) 102개 쉼터, 청소년 5,696명 대상 (교육내용) 학교폭력, 근로권익(최저임금·청소년근로권 등), 국제인권(세계인권선언문·유엔아동권리협약), 장애인 인권, 양성평등,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등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해당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본 과제는 “가출 청소년 인권보호”에 목적을 두면서, 과제 내용은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대상 인권·권리교육”만 밝히고 있음. 그러나 당사자의 인권의식 향상뿐만 아니라, 이들의 권리보장을 조력하는 관계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도 특별히 중요하며, 따라서 효과적인 과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이 병행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임. 한편, 가정밖청소년의 상당수는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며(국가인권위원회, 2017. 1. 24.),⁴⁴⁾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원가정 복귀, 주거지원 등 아동·청소년의 개별적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이 검토되어야 함.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은 아동의 포괄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지식전달이 포함될 필요도 있음

- 현행 예산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만 있을 뿐, 인권교육에 배정된 별도 예산은 없음. 그러나 청소년 인권교육은 비단 일회성, 단기성 교육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컴퓨터 생활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인권에 대한 지식습득과 내재화, 실천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본 과제는 “가정 밖 청소년” 중에서도 컴퓨터에 입소한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여, 더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음.⁴⁴⁾ 실제로 청소년 성소수자는 지정성별에 따른 컴퓨터입소를 거부당하는 결과, 컴퓨터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됨. 정책명과 목표에 부합하여, 컴퓨터를 매개하는 청소년 권리보호조치가 폭넓게 고려되어야 함

☐ 향후 과제

- 청소년컴퓨터 입소 청소년 대상 인권·권리교육 실시(계속)
- 대상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인권·권리교육 마련
- 컴퓨터에 입소한 경우 외 다양한 맥락의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계획 마련

44)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boardtypeid=24&boardid=616529>

45)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10212133005>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2. 아동·청소년 분야	⑭ 위기청소년 비행예방 강화
추진부처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과제목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능 및 비행예방교육 역량강화를 통한 위기·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선도 효과성 제고 및 건강한 성장 지원		
주요 내용	-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비행예방 특별교육 및 비행진단 등 운영 활성화 - 비행예방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 학교·검찰·법원 등 의뢰 청소년·보호자 등 대상 비행예방교육 : '18년(313,430명) → '19년(335,772명, '20년(121,730명) → '21년(176,967명) -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 초기단계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활동 (2021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생 교육만족도 93.08점으로, 목표(90점) 대비 103.42% 달성) -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프로그램 개발('18년 조선대 권해수 교수), 가족문제 해결중심 보호자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18년 숭실사이버대 손진희 교수), 청소년 절도예방 통합 프로그램('20년 건양대 송원영 교수),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20년 한국법교육센터), 인문학 기반 참여형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21년 조선대 권해수 교수) '21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규개발 교육프로그램(절도예방 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추진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노후시설 정비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등 교육환경 개선 -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사 신축(공사 기간 : '18년 1월 ~ '19년 12월), 천안·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20년 9월 업무 개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20년부터 계속된 COVID-19 확산 등으로 인해 학교·검찰·법원 등 유관기관 교육의뢰 감소 등 비행 예방교육 활성화 부진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2007년 7월 23일 일부개정 및 시행된 「소년원 등의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은 "특별히 필요한 법률·행정적 행위를 제외하고는 학교 및 청소년꿈키움센터 등을 대내외 공식 명칭으로 사용한다 (제3조)"고 정하여, 기관명에 따른 차별과 낙인감을 해소하고, 예방적 교육 목적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취지를 알 수 있음. 그렇다면 법무부 직제에 따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대내외공식명칭을 활용하며, 범죄 예방 및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각 지역별 센터의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으로 정책과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나, 본 과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라는 내부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비행예방교육의 참여인원만 실적으로 평가하는 등 정책 담당자의 부족한 관점이 아쉬움
- 매년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데, 지금껏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한 범국가적 단위의 통일된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각 지역 기관별 개별화된 프로그램 특화 등의 전략이 부재함. 위기청소년 지원의 관점에서 현상의 근본원인을 탐색하는 연구 시행, 위기가정·학대가정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상시적으로 연계하는 정책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폭넓은 관점의 위기예방 교육이 실천될 것으로 기대됨
- 전국 16개 꿈키움센터·솔로몬파크의 교육환경 점검 과정에 장애, 성소수자 청소년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실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 과정에 이용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청취 절차도 필수적임. 나아가 꿈키움센터·솔로몬파크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과 직무역량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 수립도 필요함

□ 향후 과제

- 초기비행단계 청소년 관리 강화
 -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전문인력 등 민간자원 등을 조직화하고, 민간자원과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교육생을 멘토링 연계하여 비행예방을 위한 지속적 개입 실시 예정
 - * 「상담전문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초기비행예방 강화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성과분석을 통해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확대 실시방안 검토 예정
- 위기청소년, 가정밖청소년 등으로 분절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정의 규정을 명료하게 개정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원가정 지원 우선 원칙과 더불어 각 청소년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위기청소년 지원센터의 각 권역별·지역별 센터 설립 및 정보연계를 통해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과 인적 자원 확보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2. 아동·청소년 분야	⑮ 인터넷중독 청소년 치료·재활 체계 구축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제목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단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 지원		
주요 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화상담(1388), 1:1상담, 사이버 상담, 문자 상담(#1388) 실시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조기 발굴 및 위험단계별 예방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학령전환기(초4, 중1, 고1) 청소년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험단계에 따른 예방교육, 상담, 치료서비스 제공 ※ 가족치유캠프, 인터넷치유캠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상설 인터넷 치유학교) 등 집중 치유프로그램 운영 - 공존질환 보유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고위험청소년 대상 병원치료비 지원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진단·발굴) 매년 학령전환기 청소년(초4·중1·고1)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를 통한 과의존 청소년 발굴 (사후지원) 과의존 위험수준별 청소년상담,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인터넷치유캠프, 가족치유캠프), 의료기관 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위험사용자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접 개인상담 지원 ■ 주의사용자군 : 학교별로 찾아가는 집단상담 지원 ■ 공존질환보유군 : 종합심리검사 지원, 치료협력병원 연계 및 치료 지원 ※ 치료지원 : 일반계층 최대 40만원, 저소득 계층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치유캠프) 인터넷 차단 환경에서의 기숙형 치유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치유캠프 : 중고생 대상(11박 12일 등), 가족치유캠프 : 초등생 및 부모 대상(2박 3일)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온라인 도박문제 대응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시설운영)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설립·운영('14년 8월~) (인력양성) 상담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청소년 미디어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확대를 통해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피해 해소를 위한 상담 및 치료연계 서비스 등을 적기에 지원
* ('19년) 시·도 31명 → ('20년) 시·도 및 시·군·구 54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과의존 저연령화 및 다양한 매체 등장에 대응 필요
-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 확대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매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아동·청소년은 늘어나고 있는 실태를 고려할 때(여성가족부, 2021.05.20.), 이들에 대한 전문 상담인력의 업무여건과 인프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제3차 NAP 수립 당시 본 과제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셋다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실효적 운영을 위한 홍보 추진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이러한 셋다운제는 2022년 1월 「청소년보호법」 개정(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에 따라 폐지됨. 그간 다수의 연구보고서는 셋다운제가 청소년의 수면시간 증가나 게임중독 저감에 별다른 효과가 없으며(조문주 외, 2021), 지난 10년간 셋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PC 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크게 변화했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 유튜브 등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셋다운제의 실효성 검토가 계속 논의되어 온 결과임.⁴⁶⁾ 셋다운제 폐지는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놀이 및 여가·문화에 대한 권리, 사생활의 자유를 존중하며, 그에 따라 게임 이용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강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변화라 할 것임
- 청소년 온라인 도박도 매년 심화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21), 도박죄에 대한 형사적 접근에 앞서 예방교육, 재범예방교육, 다이버전의 적극적 실천이 필요함
- 치유크amp의 경우, 대상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받는 과정, 자가진단에 따른 입소와 퇴소 결정, 기숙시설의 자유권 보장 실태 등을 점검하여, '치료'를 명목으로 하는 자유박탈 처분을 예방해야 함(UNGA, 2019)⁴⁷⁾
- 이주아동·청소년의 치료·재활 체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외국인 번역자료, 통역 등의 인프라 구축도 중요한 과제로 검토되어야 함
- 과몰입 조기진단과 치료적 개입 외에, 긍정적인 미디어 이용 습관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이 부재함. 과의존 저연령화 현상에서 유추할 수 있듯 디지털환경이 아동·청소년의 일상이 된 현재(국가인권위원회, 2022a: 178), 디지털을 매개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아동권리 실태에 따른 기업의 책무 강화와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예방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

□ 향후 과제

- 저연령 청소년 과의존 대응 및 온라인 도박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가족치유크amp 확대 운영, 치유크amp ICT 진로교육 실시
- 코로나 19 대응 비대면 상담 운영 지속

4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7555>

47) 본 연구를 통한 조사 및 전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서 독립전문가의 직접적인 경험은 아동이 돌봄, 보호, 교육, 사회복지 또는 치료를 이유로 기관에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A/74/136, para. 65).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2. 아동·청소년 분야	⑩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추진부처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과제목표	-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운영을 통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인 예방문화 조성 -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험·활동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통해 비폭력 학교문화 정착		
주요 내용	-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사이버어울림) 운영 지원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등 지원 - 학교, 지역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활용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24종)
 - ※ ('21년) 중·고등학교 교과(기술·가정, 영어, 체육) 연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사이버어울림' 원격연수 콘텐츠 추가 개발(12종)
- 학생 참여·활동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등 학교폭력예방 홍보 및 캠페인 다양화
 - ※ ('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서포터즈단* 시범 운영(총 21개)
 - * 학생자치회, 자율동아리 등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캠페인 추진 등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단위학교 대상 교원연수 및 컨설팅 지원 확대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학교급과 수준을 고려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
 - ※ ('18년) 3,785개교 → ('19년) 4,506개교 → ('20년 ~) 모든 학교
 - ※ 어울림 프로그램('21년 2월 기준) : 총 134종(어울림 86종, 사이버어울림 48종)
-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지원단(핵심강사, 컨설팅단) 확대 운영
 - ※ 핵심강사 : ('20년) 168명 → ('21년) 247명, 컨설팅단 : ('20년) 511명 → ('21년) 598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본 정책과제는 특정 대상이 아닌 교육 공동체 모두의 역할을 고려한 학교폭력 예방정책을 과제로 설정하고, 각 대상별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성에 높은 비중을 두는 결과, 학교 관리자, 지역자원에 따라 예방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교육청, 교육부의 세부적인 매뉴얼 마련과 지원절차 등으로 보완될 필요를 제안함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울림 프로그램의 보완과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는 교육 참여자와 이용자의 의견청취가 필수적임
- 한편, 스마트폰 보급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수업 일상화 등으로 디지털을 기반한 학교폭력 유형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됨(국가인권위원회, 2022a: 178). 디지털 환경을 매개하여 더욱 다양하게 발생하는 학교폭력 예방과 침해 대응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도 필요함

□ 향후 과제

-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사이버어울림) 운영 지속 지원
-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기획하고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학생 중심 예방활동 지원
- 메타버스 기반 학교폭력 예방 관련 다양한 체험과 의사소통, 놀이형 활동이 가능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교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2. 아동·청소년 분야	⑰ 학생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추진부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제목표	• 학생정서·학생특성검사 및 관리체계 내실화 • 종합적·선제적 학생자살예방 대책 수립·추진 • 학생자살예방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심도 제고		
주요 내용	• 학생정서·학생특성검사 및 관리체계 내실화 － 학생정서·학생특성검사를 통한 자살위험 등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 학생정서·학생특성검사 및 학교 내 상담 등을 통해 발견된 관심군 학생에 대한 학교 내외 전문기관 연계·치료 지원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 '20년 4월 ~ 8월, 초1·초4·중1·고1 1,801,993명 조사 참여 － '21년 4월 ~ 5월, 초1·초4·중1·고1 1,749,144명 조사 참여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학교 내 상담을 통해 발견된 관심군에 대해 학교 내외 전문기관 연계치료 지원 실시('20년 56,954명, '21년 56,698명) • 학생자살예방대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20년 및 '21년) •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위기문자 상담망 운영('18년 9월 ~ '21년 12월 누적 총255,036건) • 학생자살예방 교육주간 운영 및 공모전·캠페인 운영 • 자살·자해 조장 음원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요청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고시 • 학생 정신건강 문제 및 자살·자해 등에 대한 교사용 뉴스레터 발행 12회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사전 검사를 통해 자살·자해의 위험성이 높은 학생을 발굴, 조기에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생명권 실현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함
- 다만 자살은 정신건강의 문제라는 프레임은 자살의 원인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예방 정책에 한계가 있음. 학생이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는 원인은 다양하고, 이는 예컨대,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빈곤 등 사회적 환경에 기인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선제적·종합적 예방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자살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으로 더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민간 기관, 단체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예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생명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적 소수에 대한 포용과 다양성 존중 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함

□ 향후 과제

- 학생자살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그에 따른 다차원적 대책 마련
-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
- 사회적 소수에 대한 포용 및 다양성 교육 확대 실시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2. 아동·청소년 분야	⑮ 아동유기, 불법입양 대책 강화 (아동 출생·사망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
추진부처	통계청		인구동향과
과제목표	• 아동 출생·사망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		
주요 내용	• 출생통계, 사망통계의 정확한 구축 및 대시민 서비스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정확한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통계 작성 및 서비스
 - 영아 및 모성 사망 발생 병원 대상 사망원인 보완조사 추진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5개 기관 21종 행정자료 활용으로 사망통계 자료 보완
 - 화장장 행정자료 활용으로 누락된 출생신고 자료 보완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부처 자체 점검결과)

- 영아사망의 경우 보완조사나 화장장 자료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외에 출생신고 자체가 누락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통계작성 대상에 포함하기 어려움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현행 법·제도는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에게 일임한 결과, 출생신고가 없을 경우 아동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음. 아동학대의 개념상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상황 자체로 아동의 복리가 침해된 학대피해 상황이나, 출생미등록 아동은 국가의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굴 정책에서도 누락되기 쉬우며, 각 기관 별로 정보가 분절적으로 관리되어 통합지원에 제한이 있음.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남겨진 모든 아동에 대한 정보를 아울러 관리하며, 공적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이 필요함
- 출생통보제 도입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2022. 3. 4. 정부 발의안)⁴⁸⁾을 통해, 최소한 출생아의 99%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출생 관련 통계⁴⁹⁾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출생 순간부터 모든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국가인권위원회, 2022a: 173)
- 현행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6항에 따른 직권 출생신고를 실무에 적극 활용하고(국가인권위원회, 2022a: 173), 베이비박스 금지 및 실효적인 위기임신·출산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출생신고 제도 구축을 도모해야 함

□ 향후 과제

- 정확한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통계 작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련 서비스 지속
- 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

48)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I2N2C0K3K0U4T1R5P3T1I4K9N2C4H849)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02&conn_path=I3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2. 아동·청소년 분야	⑱ 아동유기, 불법입양대책 강화
추진부처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제목표	출생신고할 수 없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외국인 아동의 인권 보호		
주요 내용	- 출생신고제도 관련법(가칭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 국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시민이 아닌 자의 출생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아동의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외국인아동(이주아동)의 출생등록제 필요성 인식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입법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의 필요

❸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출생등록은 그 자체로 아동의 권리 보장이자, 아동의 교육권, 주거권, 보육권, 의료접근권 등 모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위한 출발점임을 유념하며(CRC, 2005), 출생등록에 따른 후속정책이 확장적으로 검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특히 2022년 6월 법무부 제안으로 의원입법 발의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시군구 및 출입국관서를 통한 출생등록 신청, 출생등록증 교부 등을 절차를 명시하고 있어, 출입국관서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정보접근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할 것인지, 법무부 내의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 마련이 중대하게 요구됨.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신청 과정에 제공된 미등록 체류와 관련 신상정보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령 개정도 필요함(국가인권위원회, 2022a: 173)
- 또한, 출생통보제 도입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22년 3월 4일 발의)⁵⁰⁾은 외국인등록번호나 의료급여 관리번호 등을 갖추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제 도입 과정에 출생통보제 적용대상 확장에 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병행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진행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에 대한 홍보 및 반대 여론에 대한 대책 마련

5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02&conn_path=I3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2. 아동·청소년 분야	①9 아동 양육 및 보호의 국가책임 강화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제목표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및 공적책임 강화 - 아동이 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요 내용	-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 전국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및 교육 -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아동복지법」 개정안 시행 (2020년 4월 7일, 일부개정, 2020년 10월 1일 시행)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후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 「아동복지법」 개정안 시행 (2020년 12월 29일 일부개정, 2021년 3월 30일 시행)
 -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아동보호업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인력(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예측하는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함(제15조의2 신설)
 - 학대 고위험군 아동 조기 발굴: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이 없거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정보 등을 토대로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복지서비스의 제공,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15조의4 신설)
 - 교육부 정보 공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공유하도록 정보 공유 규정을 신설함(제22조의2제3항 신설)
- 기초(시·군·구)를 중심으로 하되, 광역(시·도)의 보완역할 규정한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매뉴얼 마련('21년 6월)
- 2020년 아동보호서비스 매뉴얼 개정: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 방안 마련

□ 정책·관행의 변화

- (보호조치 사전심사 비중) 그간 보호조치 사후에 형식적으로 서류로만 결정되었던 아동의 운명이 변호사·의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아동의 상황을 반영했는지 등 보호조치 사전에 적절성을 심의

- * 보호조치 사전심사 비중 : 8.5%(‘19년 4월) → 85.6%(‘21년 11월)
- (양육상황점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분기별로 시설 보호중인 아동의 적응상태를 확인
- * 양육상황점검 실적 : 점검체계 부재(‘20년 10월 이전) → 49,662건(‘21년 11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21년까지 전국에 아동보호전담요원 524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747명 배치
- *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실적: (‘20년) 334명(순증) → (‘21년) 524명(+190명) → (‘22년) 715명(+191명) 채용 완료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아동보호전담요원 처우개선 및 아동보호 업무 수행 지원 필요
 -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 외 타 업무*가 부여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 * ex)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 및 드림스타트 업무 또는 기타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와 무관한 행정보조업무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빠르게 확충되었으나, 아동 보호전담요원의 과도한 업무내용, 취약계층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드림스타트팀 업무와의 중복, 시설중심의 사례관리 등이 한계로 확인되고 있음(국회입법조사처, 2020).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지원과 일시보호 원칙이 현장에 실천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처우 개선 및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무교육 프로그램 실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보완 등의 조치가 병행하여 지속되어야 함(국가인권위원회, 2022a: 176)
- 현재 아동이 원가정에서 분리된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례관리 대상 아동은 기존 주소지가 아닌 ‘분리된 거주지’에 따라 결정되는데(보건복지부, 2021), 이 경우 원가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적용이 어려운 제한점이 있음. 이와 관련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또는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적용 등 아동을 중심에 둔 보완정책이 검토되어야 함
- 사례결정 및 보호조치 과정에 아동 당사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연구·개발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보급되어야 함

□ 향후 과제

- 국제인권규범, 아동복지법 및 동법 지침에 명시된 원가정 보호와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
-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욕구 및 의사 파악을 반영한 “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 미신고아동 실태조사 및 시설 폐쇄와 전환을 위한 단계적 계획 수립
- 원가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그에 적합한 인적·재정적·물적 자원 투입
- 주거우선원칙을 고려한 청소년 주거권 정책 다각화를 통해 시설 중심의 보호체계 전환 (예: 영미권의 emancipation)
- 미성년 후견제도에 관한 민법, 아동복지법 개정 및 시설미성년후견법 폐지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3. 장애인 분야	① 보호시설 내 수용인의 인권보호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제목표	장애인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 강화		
주요 내용	- 장애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인권지킴이단의 활성화로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인권침해를 예방 - 시설장애인 인권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 시설장애인의 학대 등 인권침해 의심사례에 대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조사 실시 '18년 ~ '19년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마치고, '22년 인권실태조사 예정 (※ '20년은 COVID-19로 인해 미 실시)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생활인(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실시
- 인권지킴이단의 활성화로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
- 시설장애인 인권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생활인(장애인당사자) 인권교육 실시
 - 온라인, 총 11회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완료
 - 10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대상으로 실시, 26개소, 거주인 41백 명, 종사자 22백 명('21년 7월 ~ 12월)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시설생활인(‘보호시설 내 수용인’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아 시설생활인으로 수정함)의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시설에서 인권지킴이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건의함을 제외하면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임. 그러나 인권지킴이단은 구성, 운영, 활동에 있어서도 독립성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인권침해예방을 위해 그 내용을 충실히 하여 정기적으로 잘 실시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장애인당사자 인권교육은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과 침해구제 상황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자기 역량강화 과정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조치의 과정에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향후 과제

-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점검 시(상·하반기 지자체 점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이행여부, 인권지킴이단 운영 실태 등 점검
- 인권지킴이단 제도의 개선 - 장애인 인권침해 구제제도 강화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3. 장애인 분야	②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제목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출산 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주요 내용	- 시도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43개소)를 통해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 여성장애인 출산시(4개월 이상 태아 유·사산 포함) 태아 1인당 100만 원 지원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등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에게 태아 1인당 1백만 원 지원
 - 신청자 총 3,554명에 대해 전원 지급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17개 시·도, 42개 교육수행기관에서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여성장애인 44천명 지원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오프라인 프로그램 진행 어려움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모성권 보호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방식으로 인해 의도치않게 이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여성장애인이 있을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신청주의로 진행된다는 조건하에서는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홍보와 신청방법에 있어 접근성을 높일수 있는 사업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여성장애인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등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여성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연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과 지속적인 운영으로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COVID-19 확진자 증가,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거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소규모 인원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등 교육프로그램 지속 운영 추진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자체, 장애인단체, 의료기관 등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3. 장애인 분야	③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 개선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제목표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 개선		
주요 내용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안정적인 장애아동복지지원서비스 제공 - 의료비·보조기구·발달재활서비스·보육(보육료, 양육수당)·가족(가족상담·교육)돌봄 및 일시적 휴식·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 취약가정에 대한 복지지원 우선적 제공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 추진 -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 설치 운영 확대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 - 발달재활서비스 및 양육 지원사업 확대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중앙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1곳,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곳 운영
- 발달재활서비스 '20년 지원 대상자 확대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및 연간 제공시간 확대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발달재활서비스 '20년 지원 대상자 확대
 - ('18년) 52,684명, 76,288백만 원 → ('19년) 57,094명, 82,970백만 원 → ('20년) 61,094명, 88,999백만 원 → ('21년) 65,094명, 94,968백만 원(지원대상 + 4,000명)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및 연간 제공시간 확대
 - ('18년) 3,725명/연 528시간, 11,277백만 원 → ('19년) 4,005명/연 600시간, 17,186백만 원 → ('20년) 4,005명/연 720시간, 20,873백만 원

-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자체 재원 활용을 통해 장애아가족양육지원(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및 연간 제공시간 확대(8월~12월, 5개월간)
 - '21년 기정예산 활용(3,775백만원)하여 지원인원(+1천명) 및 돌봄시간(+120시간) 확대 (지원인원) 4,005명 → 5,005명, (돌봄시간) 연 720시간 → 연 840시간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을 위한 가족휴식지원사업 및 부모상담지원사업 실시 중('15년~)
 - 가족휴식지원 ('18년) 10,556명, 1,210백만 원 → ('19년) 12,311명, 1,478백만 원 → ('20년) 7,371명, 1,478백만 원 → ('21년) 11,778명, 1,478만 원
 - 부모상담지원 ('18년) 731명, 601백만 원 → ('19년) 790명, 730백만 원 → ('20년) 783명, 730백만 원 → ('21) 812명, 730백만 원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특성 및 복지 욕구에 맞는 지원과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기여함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매년 발달재활서비스 및 양육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및 돌봄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함. 신청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배제될 수 있는 대상자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홍보 등 사업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함.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위주로 되어 있으나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등 지원하는 가정에서 부담이 최대한 없도록 방법을 다양화하고 신청절차를 쉽게 그리고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및 부모상담 지원 사업 이용자 지속 확대 추진
-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양육지원 지속 확대 추진
 - (발달재활서비스) 서비스 대기수요 해소를 위한 예산확보 추진
 - (장애아양육지원)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도 일부 본인부담 하에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고, 서비스 지원인원과 돌봄시간도 확대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3. 장애인 분야	④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및 급여 내실화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제목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		
주요 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특성·서비스요구·환경에 기초한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활동지원제도의 활동지원 대상 확대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 중 65세 이후 사회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1년 1월시행) 65세 이후 장기요양으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년 12월)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19년 7월)을 통해 개개인의 욕구·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하도록 제도 개선 - 모든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활동지원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긴급활동지원 요건 정비 - 향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염병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요건을 명확히 규정

□ 정책·관행의 변화

- 수요자 중심체계로 전환 - 신청대상을 종전의 중증장애인(중전 장애등급 1~3급)에서 경증장애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요건 확대 - 급여시간 세분화를 통한 장애인의 상태·환경·욕구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기존 4구간 체계를 15구간 체계로 조정 - 기존 인정조사 평가지표와 비교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 조정 -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기능제한이 심한 장애인, 발달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가산급여를 확대
- 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개선
- 활동지원사 교육교재 개선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활동지원기관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 활동지원기관 413개소 대상 기관평가 실시 및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 평가점수 상위 35개소 및 성과향상 우수기관 10개소
- 65세 이후 장기요양전환자 지원
 - 65세 이후 장기요양으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를 지원하기 한 예산('21년 71억 원) 반영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지원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에서의 자립생활 및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한 것은 성과적임.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신청대상을 경증장애인까지 확대하고 급여구간을 15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활동지원 급여 산정을 위한 종합조사와 관련해서는 배제되는 장애유형이 없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종합조사표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COVID-19 확산에 따라 긴급활동 지원 등 적극행정을 통해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활동지원사의 수급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급여의 현실화로 활동지원사의 수급이 원활해져야 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이 활동지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장이 다양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65세 이후 장기요양 전환자는 활동지원과 비교하여 급여량의 감소폭이 큰 경우 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세부적인 기준을 현실화하여 65세 이후 장기요양전환자의 활동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함

□ 향후 과제

- 최저임금·물가상승률 인상 등을 반영한 활동지원서비스단가 지속 추진
- 활동지원사제도의 개선
 -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수급자 등에 대한 활동지원사 연계촉진 및 돌봄난이도가 높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산급여 확대
- 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경우 활동지원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3. 장애인 분야	⑤ 장애인 교육권 보장
추진부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과제목표	특수교육교원 및 일반학교 교직원 대상 전문 연수과정 운영을 통한 교원의 특수(통합) 교육 관련 역량강화		
주요 내용	- 특수교육교원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연수과정 개발 운영 - 일반학교 교직원(통합학급 담당교사 및 관리자) 대상 장애인식 개선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특수교육교원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실시 - 특수교육교원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실시 -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집합대면 연수 외에 원격연수(온라인)로의 연수 방법 다양화 - 일반학교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 개선교육 강화 -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및 통합학교 관리자 대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교육 실시 - 집합대면 연수 외에 원격연수(온라인)로의 연수 방법 다양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특수교육교원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실시 - 집합연수 : ('18년) 12개 과정, 547명 이수 → ('19년) 15개 과정, 985명 이수 → ('20년)* 15개 과정, 2,982명 이수 → ('21년) 26개 과정, 4,147명 이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원격연수 병행 운영) - 원격연수 : ('18년) 11개 과정, 4,972명 이수 → ('19년) 16개 과정, 6,604명 이수 → ('20년) 27개 과정, 6,519명 이수 → ('21년) 27개 과정 6,519명 이수

- 일반학교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 개선교육 강화

- 통합학급 담당교사 : ('18년) 45,102명 이수 → ('19년) 45,422명 이수 → ('20년) 원격연수 과정에 포함
→ ('21년) 17개 과정, 6113명
- 통합학급 관리자 : ('18년) 9,388명 이수 → ('19년) 9,705명 이수 → ('20년) 원격연수 과정에 포함
→ ('21년) 8개 과정, 8,215명 이수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참여라는 '인권'으로 장애의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 현재에 특수교육 교원대상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교사들에 대한 연수 등 역량강화 과정은 매우 중요함. 특수교육 교원 대상 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관련 직무연수로 특수교육의 질의 향상이 기대됨.
- 유치원 및 일반학교 관리자(원장, 교장)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 대상 특수교육 연수 강화를 역량강화 과정으로 운영한 것은 통합교육의 성과를 제고함. 특수학교와 통합학급처럼 장애인 특수교육의 분리가 아니라 일반학급에서 장애학생들이 함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향후 이런 시스템의 준비를 위해 일반학교의 선생님들까지 확대하여 특수교육 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향후 과제

- 특수교육교원 대상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역량 강화 직무연수 연중 실시
- 일반학교 교직원(통합학급 담당교사 및 관리자) 대상 장애인식 개선교육 매년 지속 추진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3. 장애인 분야	⑥ 장애인 시설이용편의 및 사법접근권 보장
추진부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과제목표	-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술조력인을 지원, 장애인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상 진술권을 보장 - 형사소송절차에서 성폭력·아동학대범죄 장애인 피해자 및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장애인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 형사사법절차상 참여권을 보장		
주요 내용	- 장애인 피해자가 낮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을 지원, 의사소통을 보조·중개하여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 - 장애인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지원, 법률조력을 제공하여 장애인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18년, '21년 10월)
- 지원대상 확대로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사 선정, 지원('21년 6월 장애인복지법 개정)

□ 정책·관행의 변화

-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확대 및 비상근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및 자격 부여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확대 배치 및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의 현실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진술조력인
 -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확대('19년 4명, '20년 1명 증원')
 - 장애인 피해자 지원 실적('19년 ~ '21년 4,494건)

- 피해자 국선변호사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확대 배치('19년 4명, '20년 2명 등 총 6명 증원)
 - 장애인 피해자 지원 실적('20년 ~ '21년 2,139건)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학대 피해 장애인 등에게도 진술조력인을 지원할 필요 있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장애인 시설이용편의 및 사법접근권 보장의 국제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 3조(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제7조(법 앞의 평등과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누릴 권리) 제8조(기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사법구제권), 제10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과 보장의 촉진 의무), 제13조 제1항(장애인의 법적 절차 참여 촉진을 위하여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평등하게 사법에의 효과적 접근 보장 의무), 제13조제2항(장애인의 효과적 사법 접근 보장을 위해 사법행정 분야 종사자를 위한 훈련 장려) 등이 있음
-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 '21년 6월)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사 선정이 가능하게 되어 장애인 전문가 위주로 신규 진술조력인 양성 등 장애인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상 진술권 및 사법접근성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향상됨. 진술조력인에 대한 교육과 국선변호사의 교육 내용 등에 따라 장애인의 진술권 및 사법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술조력인의 규모 확대는 물론 장애인 학대 및 폭력 피해자의 장애유형별 특성 및 개인별 특수성의 이해에 기반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진술조력인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향후 과제

-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22년 1월) 관련 대비책 마련
 - 「장애인복지법」 제59조16항 신설로 모든 범죄 피해자 장애인 (학대 피해 장애인 포함) 의 진술조력이 가능, 관련 내용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 제작 후 감·경·찰청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송부 및 장애인 진술조력 관련 업무매뉴얼 개선 검토
- 관련 기관에 상근 진술 조력인의 배치 필요
- 장애인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증원과 보수기준의 상향 필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3. 장애인 분야	⑦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제목표	-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장애인 권리에 관한 홍보와 교육 확대 -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주요 내용	- 장애인 권리에 관한 홍보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 탈시설화, 지역사회 자립생활 및 통합 지원정책 강화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방안 연구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장애인식개선교육 질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의 우수강의안 동영상 제작 보급
 - 성인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이버교육용 동영상 제작
 - 유아 대상 애니메이션 및 활용가이드, 관광종사자 대상 장애인식개선 매뉴얼 제작
 -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러닝(e-learning) 사이트 구축
 - 교육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활용도 높은 교육 콘텐츠 개발·발굴
 - 대시민 대상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장애공감주간 운영
- 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
 - 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 및 시범사업 운영
 - 전문과정, 맞춤과정, 특별과정을 통해 총 110명 전문강사 양성
 -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을 통한 안정된 교육환경 제공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전문과정*, 맞춤과정**, 특별과정***을 통해 총 110명 전문강사 양성
 - * 복지 분야 전문가 대상으로 동 교육에 비전이 있는 자를 위한 과정(누적 75명)
 - ** 문화·예술·체육을 접목한 교육을 통한 장애당사자 강사 양성(20명)
 - *** 기 활동 중인 민간 강사 흡수 및 파급력을 겸비한 다양한 분야의 강사 양성(15명)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 성인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이버교육용 동영상 제작
 - 유아 대상 애니메이션 및 활용가이드, 관광종사자 대상 장애인식개선 매뉴얼 제작
 -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러닝(e-learning) 사이트 구축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장애공감주간 운영을 통한 대시민 홍보로 장애인인식개선에 기여함
- 장애인식개선교육 질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안정된 교육환경과 강사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안착화함. 일방적인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틀로 진행되다 보니 장애당사자가 대상화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그런 면에서 교육의 질도 보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향후 당사자와 공감하며 인식이 변화되어가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향후 과제

- 장애인식개선교육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 실적점검, 부진기관지정에 따른 관리자 특별교육 등 후속조치* 실시
 - *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 등 공표, 각종 평가반영 등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 표준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대상자별 표준교안 개발, 추천콘텐츠(160종) 매뉴얼 개발
- 효과적인 교육 연계를 위한 강사양성 및 역량개발 사업 실시
 - 강사양성(전문, 특별) 과정 운영, 강사 및 기관관리시스템 구축, 맞춤과정 보조교사 지원 사업 등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3. 장애인 분야	⑧ 장애인 건강권 보장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제목표	- 장애인 건강권법의 제도 운영을 통해 보건·의료에 대한 비장애인과 동등한 보장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 장애인과 재활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복귀 지원 및 건강격차 해소 -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주요 내용	- 하위법령 시행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기관의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 마련하고 운영비용 등 지원방안 검토 - 신규제도 도입 및 운영(장애인 건강주치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개소 지정('18년 3월~4월, 중앙 1, 지역 3)과 사업지침 제정('18년 8월), 보건소 사업지침 개정('18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20년 6월)을 통한 장애인검진기관 폐암검진 시행 - 검진항목 확대 -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 예방·관리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 제공 위해 불소도포·치석제거 등 구강건강 관리 및 보건교육 수가 신설('20년 6월) - 전화상담료를 폐지하고 환자관리료로 전환(비대면 환자 관리 강화) - 의료기관 참여유인 제고를 위해 지정기준(시설 기준 및 인력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관련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21년 4월 28일) (수가 개선) 교육·상담료 시간별 세분화 및 방문진료료 도입

□ 정책·관행의 변화

-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사업 간 연계강화 - 보건소장 정기교육, 중증장애인 대상자를 위한 매뉴얼 발간 및 배포,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 공모를 통한 16개소 지정, 탈의실 기준 제정,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공모를 통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수행기관 3개소 지정, 검진 정보 편의증진(관련 자료를 접자문서로 변환 및 배포)

-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지원
 -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거점으로 의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장애친화 산부인과 표준운영 매뉴얼 개발, 공모를 통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수행 기관 8개소 지정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신설, 비대면 환자 관리 강화, 서비스 제공 확대 등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확대*하고 관련 사업 추진 (* 시·도별 설치, ('19년) 6개소 → ('20년) 10개소 ('20년 설치 목표 100% 달성))
- '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 지정 및 지원 예산 15.5억 원 신규 확보
- 공모를 통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수행기관 3개소 지정
- 장애인 예방의료서비스 지원위해 시설기준 충족, 수어통역 지원 등 장애인 접근성이 높은 '장애친화 검진기관' 19개소 지정(7개소 운영)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실무기관인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확대를 위해 사업 운영비 증액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로서 부산시, 인천시, 경기도, 제주도에 지역센터 4개소를 지정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및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보장의 향상에 기여함. 이 과제가 실효성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의 실무기관인 보건소의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 2018년부터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등록 주치의수는 물론 장애인 이용 신청 규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주치의제도는 이후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이 아니라 정규과제로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접근성과 인적 자원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향후 과제

- 장애인 건강주치의,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 장애인의 필수적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 및 만성질환·2차 장애 관리율 제고에 따른 장애인 건강지표 개선
 - 건강문제의 예방적 관리 강화로 합병증2차장애로의 이환을 방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을 사전 예방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시범사업 개선방안 마련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3. 장애인 분야	⑨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과제목표	장애인연금 급여 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		
주요 내용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18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1년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 강구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급여 현실화('22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개정('18년 3월, '18년 12월) 등 제도 개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19년 3월, '19년 12월) - 장애인연금 미수급자 등 권리구제 대상자 일제정비(연2회),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 수급가능 여부 조사·안내(2월), 선정기준액 인상(1월) 등 대상자 확대 노력으로 장애인연금 법정 수급률(70%) 유지(12월)

□ 정책·관행의 변화

- 장애인 복지 미수급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및 제도의 내실화 추진 - 장애인복지 미수급자 권리구제 가능자 및 연령도래자 일제정비*(연2회), 수급희망자 조사·안내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 수급(* 미수급자 22,208명, 연령도래자 2,735명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독려) -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에 따른 장애인 소득·고용서비스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22년 시범사업 시행 준비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각 연도별 예산 확보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25만 원('18년 9월), 30만 원('19년 4월)으로 인상 30만원 인상의 경우 당초 '21년 예정이었던 계획을 단계적으로 조기 추진

- * (기준) 월 20만 원 → ('18년 9월) 월 25만 원 → ('19년 4월) 월 30만 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0년 1월) 월 30만 원(차상위계층) → ('21년 1월) 월 30만 원(전체수급자)
- 장애인연금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지급 완료
- * 기초급여 단계적 인상(25만 원→ 30만 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9년 4월),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년 1월), 전체수급자('21년 1월)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한 측면이 있으나 연금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
 - 사각지대 해소 노력으로 중증장애인(52만명) 중 37.1만명이 장애인연금을 지원받아 법정수급률(70%)을 상회하는 71.6% 수급률 달성
-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에 있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한 정부 임금 보조제도 도입의 검토 필요함

□ 향후 과제

- 기초급여 전체수급자(소득하위 70%)에게 월 307,500원 지급('22년 1월 ~)
-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 및 신청안내 지속 수행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한 정부 임금 보조 제도를 도입하거나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호를 삭제하는 것을 신규 정책과제로 채택할 필요가 있음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3. 장애인 분야	⑩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제목표	• 숙박시설의 편의시설 확충 및 문화관광지 접근성 강화		
주요 내용	- 전체 대상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18년 실시 후 매 5년 마다 실시) - 편의시설 미설치 또는 부적정 설치된 편의시설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편의시설 적정설치 유도 -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숙박시설 설계 마련 및 관련법규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 등의 숙박시설 접근·이용 활성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비교> 지자체 등 협조기관 처리 지연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정책·관행의 변화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후조치 및 모니터링 지속 실시 - 유니버설디자인(UD) 환경 관련 교육 실시 - 보건복지부·문체부·국토교통부 편의시설 점자 표기 마련 간담회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유니버설디자인(UD) 환경 관련 교육실시 - 편의증진 공무원 전문교육(총 3회 41명 수료) - 건축사 실무교육(총 2회 151명 수료) - 편의증진 민간교육(온라인강의 2편 제작)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㉓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사후조치 추진 및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숙박시설 설계 마련 및 일부 관련법규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 등의 숙박시설 접근성을 강화함
- 전체 대상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 실시와 그에 대한 사후조치가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수준에서 편의시설 적정설치 유도를 하고 있는데 강제와 처벌보다는 편의시설의 설치 의의 등을 대상 시설의 관계자들의 교육, 홍보, 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편의시설설치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유니버설디자인(UD) 환경 관련 교육실시에 있어서도 대상 규모 확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포괄적으로 정책설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향후 과제

-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후조치(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후조치 모니터링 진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대응 시행령 개정 추진
- 편의증진 공무원 전문역량 교육 개최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3. 장애인 분야	⑪ 학대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제목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사후 지원		
주요 내용	- 장애인에 대한 학대, 폭력 및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교육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및 시도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17.~)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내실화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및 사후관리 등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장애인복지법 개정』(‘20년 12월 29일 공포)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피해장애인 변호사 선임 특례, 학대범죄자의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한 피해장애인 보호 강화(‘20.) - 장애인학대관련 장애인복지법 등 주요 법률 개정(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피해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 배제 특례 규정, 장애인학대 행위자 상담 및 교육 등 지원 의무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성과평가 시행령 개정착수(‘21.12.)

□ 정책·관행의 변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및 내실화(업무수행지침 작성, 학대사건 판례집 발간 등)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수행지침 작성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종사자 교육, 사례 워크숍 등) -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2019년 ~ 2021년)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문자신고시스템(‘21년 4월) 개통

- 학대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 학대정보시스템과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 연계 기능 개발
- 2020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및 배포
 - (주요내용) 신고건수 4,208건 중 학대사례 1,008건, 피해장애인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65.3%로 가장 높으며, 가해자는 지인(20.1%), 사회복지시설종사자(19.3%)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8개소 및 학대피해장애인쉼터 19개소 운영
 - '21년 11월까지 총 4,284건 접수, 학대 판정 997건/23.3%
 - '22년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1개소) 및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6개소) 신규 설치를 위한 예산안 반영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학대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의 과제는 특히 장애유형 중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잘 고려해야 사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
- 예컨대 학대사례 발생 시, 장애인학대 신고전화(1644-8295)를 통해 신속한 조사 및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학대 및 폭력에 처한 위급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정확한 당사자의 학대피해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해 C의원은 “장애인 학대 사건은 특성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학대 피해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협조와 지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장애인의 학대와 폭력피해 초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⁵¹⁾
- 장애인 학대 예방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물 개발 및 배포를 통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학대 및 폭력예방에 대한 관심 유도

☐ 향후 과제

- 학대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과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 연계 및 안정화, 학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통합신고망* 및 학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 보수 및 관리
 - * 카카오톡 채널, 문자발송(1644-8299)을 통한 학대 신고
- 2020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및 배포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 추가 설치

51) 사회초점뉴스. 학대 피해 장애인 지키려면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해야...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54>. 최종검색일 : 2022.08.24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4. 노인 분야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과제목표	• 장기요양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및 질적 향상을 통한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주요 내용	•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물적 인프라 지속 조성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반 선진화 • 장기요양기관 품질 관리 강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개정
 - 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에 대한 환수 근거 마련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심사 시 검토대상인 행정처분 내용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
 -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정청구 시 벌칙 규정 신설

□ 정책·관행의 변화

- 치매전담형 공립장기요양시설 확대 추진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 수시방문형 서비스, 이동지원 서비스, 통합 재가 서비스 등의 시범사업 실시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 참여기관 1차 30개소 → 2차 88개소 → 3차 200여개소
-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 교육인원 확대 및 온라인 교육 도입
 - 교육이수자 ('18년) 30천명 → ('19년) 41천명
- 요양보호사 및 장기 미종사자 보수교육과정 의무화
-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 평가 및 양성체계 확대 개편

-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 제도 도입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경로 확대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치매전담형 공립노인요양시설 누적 115개소 확충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COVID-19로 인해 이동지원 시범사업 등 각종 시범사업 실시에 제약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지역 사회에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
-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 서비스, 수시방문형 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통합 재가 서비스 등 장기요양 서비스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큰 틀 하에 지역 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치매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의 강화와 ‘웰다잉’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장기요양급여는 국가가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급여로서 시혜적 성격 보다는 의무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급여의 내용을 고도화하고 지원에서 배제되는 노인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 또한 시설 혹은 요양보호사에 의한 돌봄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예방 및 사후 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살핍으로써 노인, 요양보호사, 시설종사자 등 관련자의 인권이 존중·보호되고 이를 통해 돌봄의 사회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향후 과제

- 공립요양시설의 설치 확대
- 장기요양서비스의 양적 및 질적 향상 방안 마련
-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 및 사후 구제 시스템의 상시 점검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4. 노인 분야	② 노인학대 예방 및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개발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과제목표	- 노인학대예방사업 추진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노인인식개선 및 권익보호 - 학대피해노인 및 행위자 대상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정서적 안정 및 학대 유발요인 감소 도모		
주요 내용	- 노인학대예방사업 추진 및 인프라 확충 - 노인학대인식개선 홍보사업 실시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노인인권교육 실시 -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권실태조사, 인권침해사례 발굴 및 정책 제언 등 -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추진 -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 학대피해노인에 대해 정서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 제공 - 학대행위자에 대해 교육 및 심리치료를 위한 커리큘럼 제공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노인인권교육 실시 ('20년) 6,203명 → ('21년) 15,971명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20년) 89,970명 → ('21년) 152,222명 '21년 노인인권강사양성 79명 및 보수교육 118명 - 노인학대 신고앱을 통한 신고 채널의 확대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개발 오픈('21년 6월 15일) - 다운로드 건수 총 2,777건, 신고 건수 총 19건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22년 3월 22일부터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 포함) - 노인인식개선 홍보 방법의 다양화 -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한 '생활경제지킴이' 시범 사업 실시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노인보호전문기관 7개소(서울동부, 서울서부, 경기도, 인천서부, 서귀포, 경기북서부, 경북남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개소(경북서북부) 증설
- 노인학대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건수 지속적 증가
 - 최근 5년간 84.8% 증가('16년 98,932건 → '20년 182,849건)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부처 자체 점검결과)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노인학대 사후관리 지원, 거부시 과태료 부과 등 노인복지법 개정사항 시행 관련 인력 미충원으로 인한 사업 수행의 어려움
-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관리하는 지역범위와 노인인구수가 너무 많아 신속 대응 및 사업 수행의 어려움
-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집합 교육의 어려움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노인복지법령이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및 가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됨
- 노인학대는 학대피해자인 노인이 스스로 학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사회적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고, 그 구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에 의한 상시 감시체계가 필요함
- 또한 다양한 방법에 의한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은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보임. 다만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노인의 경우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볼 때 인권의식이 낮은 편임. 본인이 학대를 당하더라도 학대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음. 이는 학대피해자인 노인에 의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정서적 학대 또는 경제적 학대를 증가시키는 배경이 되며, 특히 가족에 의한 학대의 경우 학대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노인 스스로 인권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노인학대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실제 활용되는 프로그램은 단편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상자가 주로 저소득층으로 생계를 위해 치료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참여자들의 참여가 낮은 편임. 이는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임

□ 향후 과제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관련 인력의 지속적 확충
-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감시 체계 구축
- 노인인권교육의 질적 담보 장치 마련
- 노인에 대한 인권교육의 강화
- 노인학대 치유프로그램의 개선 및 저소득층의 참여 보장 방안 마련
- 신고채널의 확대 및 강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4. 노인 분야	③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과제목표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강화		
주요 내용	- 시설 학대피해 노인보호 대책 마련 - 인권보호교육 등 인권보호 제고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노인복지법('18년 4월)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18년 9월)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무화 근거 마련

□ 정책·관행의 변화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 798,489명 교육 이수('18.~'21.)
 - '20년부터 교육비 지원 : ('20년) 94백만 원 → ('21년) 154백만 원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과제명은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이고, 과제목표는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강화'인데, 이행 내용은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뿐임. 이행 내용이 사업의 목표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함.
- 시설에서의 노인학대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만으로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와 함께 학대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등 신고자 보호, 불시점검, 분리 공간 마련, 노인학대매뉴얼 배포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 우려로 가족에 의한 면회가 제한되는 등 시설 내 노인학대가 드러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부에 의한 모니터링 강화 등 보다 적극적 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비대면 방식에 의해서라도 가족면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시설 내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학대의 동기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종사자들이 존중 받는 환경에서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시설 내 노인의 인권은 비단 노인학대에 국한되지 않고 시설정보에 대한 접근, 의사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시설 공간과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정보의 제공,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의사존중,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의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므로, 각 분야에서 노인인권의 보호 실태를 점검하여 그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함

□ 향후 과제

- 시설 내 노인학대의 예방 및 구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체계 수립
- 시설 내 노인학대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의 강화 및 COVID-19 대비 가족 면회 활성화 방안 마련
- 시설 내 종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시설 내 전 분야에 걸친 노인 인권 보호 실태의 점검 및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4. 노인 분야	④ 노인 건강권 보장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치매정책과
과제목표	•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일차의료서비스 모형 개발을 통해 예방·관리 중심의 보건 의료체계 기반 마련		
주요 내용	• 기존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통합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 -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의 장점을 연계한 통합모형 마련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
- 저소득 노인 대상 의료비 지원 확대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 109개 지역, 선정의원 3,768개소, 등록환자 45만명('21년 11월 기준)
- 저소득 노인 대상 의료비 지원
 - 노인무릎수술비 : ('18년) 1,087명(1,659건) / ('19년) 1,722명(2,549건) / ('20년) 1,735명(2,537건) / ('21년) 1,705명(2,484건)
 - 노인개안수술비 : ('18년) 4,889명(7,718안) / ('19년) 5,429명(8,321안) / ('20년) 5,458명(8,334안) / ('21년) 4,968명(7,564안)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환자관리 지원을 위한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 인력 부족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노인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인데, 동네 병원 등에서 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은 국가가 노인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저소득 노인에게 수술비를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한 부분도 고무적임
- 향후 제도를 보완하여 본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비 지원의 지급대상 또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제도 정착
- 환자관리 지원을 위한 인력 확충
- 저소득 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4. 노인 분야	⑤ 단체·문화 활동, 사회공헌 활동 참여 강화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과제목표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 문화 등 노인복지 증진		
주요 내용	노인이용시설 대상, 지역유형·대상자·기능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를 통한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 (‘18년) 235개 노인복지관, 316개 반, 159명 예술강사, 6,276명 참여노인 (‘19년) 252개 노인복지관, 314개 프로그램, 6,199명 참여노인 (‘20년) 245개 노인복지관, 274개 프로그램, 5,200명 참여노인 (‘21년) 263개 노인복지관, 272개 프로그램, 4,781명 참여노인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통한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 (‘18년) 6,073개소, (‘19년) 6,030개소, (‘20년) 6,467개소, (‘21년) 6,608개소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인간다운 삶을 위해 여가는 필수적인 조건인바, 문화예술 소외계층인 노인 대상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임 - 다만 개인적 사정으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 또는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그 이용을 꺼리는 노인도 존재하므로, 소외되는 노인이 없도록 프로그램의 제공 방법을 좀 더 다양화하여 참여 노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에도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문화적 삶을 누릴 기회가 부족할 수 있음. 따라서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 과제명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공헌활동 참여’에 해당하는 사항이 이행내용에는 누락되어 있는데, 사회공헌 활동은 노인의 자존감, 사회참여 욕구 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해당 부분을 보완해야 함

□ 향후 과제

-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제공 방법의 다양화
- 사전 수요 조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제공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4. 노인 분야	⑥ 노인 소득 보장 대책 마련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시민취업지원기획팀
과제목표	노인 소득 보장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주요 내용	시민취업제도를 통해 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시민취업지원제도 근거 마련

□ 정책·관행의 변화

- 취업성공패키지 프로세스 개선 - 취업역량평가 결과가 C등급 이상인 경우 1단계 상담기간 단축(최소 3주 → 1주)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범위 확대(Ⅱ유형 중장년층) - 시민취업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유형 소득 및 재산 요건 확대(소득 50 → 60%, 재산 3억 → 4억 원) - 선발형 청년 취업경험요건 폐지 - 자립준비청년, 구직단념청년 참여요건 확대 -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종사자로 지원 근거 마련 -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확대(매출액 1.5억 원 → 3억 원 이하)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60세 이상 장년층 ('18년) 10,904명, ('19년) 16,243명, ('20년) 13,231명 - 시민취업지원 참여 60세 이상 장년층 31,486명(전년 대비 137.9% 증가)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취업상담·직업능력 향상·취업알선 등 개인별 특성 및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비를 지원 함으로써 구직자에 대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시민취업지원제도의 목적은 타당함.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세스 개선, 지원대상 확대 등은 고무적이며, 전년 대비 시민 취업지원 참여 대상자가 증가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임
- 그러나 동 제도는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 일반을 위한 제도인바, 노인에 특화된 소득 보장 대책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임. 또한 실질적으로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소득 보장 대책이 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지원 수당이나 활동비용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노후를 인간답게 보내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임
- 국가가 노인 인권 실현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노인빈곤에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고 노인이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공공일자리 제공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4차 산업 대비 직업훈련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현실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는 어려우므로, 노인의 소득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사회임금방식의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근로의 제공이 아닌 자원봉사활동이나 시민사회활동 등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참여소득 등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이 존재함

□ 향후 과제

- 공공일자리 외 다양한 일자리 제공 방안 마련
- 4차 산업 대비 직업훈련 분야 다양화 방안 마련
- 노인에 대한 시민취업지원 요건 완화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상향
-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소득보장 대책 마련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4. 노인 분야	⑦ 농지연금 활성화
추진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건강정책과 치매정책과
과제목표	• 농지연금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고령농업인 노후생활안정 보장성 강화		
주요 내용	• 농지연금 가입률 제고방안 마련 • 해지율 감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추진 •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 강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으로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 도입 근거 마련

□ 정책·관행의 변화

- 농지연금제도 악용 방지 위해 '20년 1월 1일(경·공매 농지는 '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한 보유기간 및 통작거리 제한
- 저소득층 및 장기영농인 월지급금 우대상품 도입
- 중도상환제 도입으로 약정 변동 없이 농지연금 채무 일부 또는 전부 상환 허용
- 가입 후 3년 이내 1회에 한해 지급방식 변경 가능하도록 상품 변경 허용
- 수급전용계좌 도입
- 담보농지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감정평가율 상향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따른 월지급액 상향
 - 신규가입자 월지급액: ('18년) 820천 원 → ('19년) 901천 원 → ('20년) 1,078천 원 → ('21년) 1,122천 원
- '21년 12월 31일 기준 수급전용계좌 개설 수급인 255명(누적보호액 33.5억 원)
- 담보농지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6억 원 이하 '21년말 → '24년 말)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월지급액 상향, 농지연금에 대한 압류금지, 저소득층 및 장기영농인 월지급금 우대상품 도입, 중도해지 방지 및 채무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 농지연금제도의 개선은 노후 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농지연금제도는 농지의 교환적 가치를 고려하여 연금액이 책정되는 탓에 농지의 위치가 수도권과 멀수록 농지의 가격이 떨어져 연금액이 낮아지는 현상(제주도 제외), 즉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완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⁵²⁾
- 또한 자녀에 농지를 상속하기 위해 연금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연금제도 자체의 홍보와 더불어 고령 농업인의 노후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지방 거주 고령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보완
- 고령 농업인의 노후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52) 한국영농신문 2022. 1. 17.자 보도 “농지연금, 실질적인 농민 노후대책이 되려면”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34> (최종검색일 : 2022. 8. 21)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① 방문취업 동포 지원·관리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과제목표	-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은 수준에서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취업지원 - 방문취업 동포의 취업관련 절차 준수		
주요 내용	-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방문취업제 시행 -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근로 개시 신고안내 및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 중심으로 불법 고용이나 고용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동포의 체류한도 설정 후, 10년간 유지하던 체류규모(303천명)를 동포의 고령화추세 및 체류인원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
 - * 외국국적 동포(H-2) 체류현황 : '19년 226,322명 → '20년 154,537명 → '21년 11월 128,640명
-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결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여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대응
- 외국국적 동포의 불법 고용 또는 고용절차 미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동포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에 기여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시민의 기피업종에 대한 노동력 요구에 따라 방문취업 동포 등 이주민의 노동력이 크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나, 방문취업 동포를 비롯한 이주민에 대한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불가, 산업재해의 사각지대, 임금체불 등 시민이 아닌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함
- 2021년 외국국적 동포 고용사업장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나 점검대상기관, 점검횟수, 적발 내용 등 자료가 부족하여 주무부처의 인권적 노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향후 과제

- 방문취업 동포를 포함한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법적·정책적 기반 마련
- 불법고용 방지 및 고용절차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지속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② 중국 및 구소련 동포지원
추진부처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	체류관리과
과제목표	• 동포 간의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여 안정적인 국내 체류 지원 및 자긍심 고취 • 소외받는 동포의 법적지위 향상과 자유로운 출입국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켜 동포사회와의 동반성장 도모		
주요 내용	• 동포 간 차별해소를 위한 중국·구소련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 • 동포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체류제도 개선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재외동포의 인정 범위 확대('19년 7월)
 -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개정하여 3세대까지 인정되던 재외동포범위를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

□ 정책·관행의 변화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확대
 - 뿌리산업 업체 근무 동포 재외동포(F-4) 자격변경 허용('18년 6월)
 - 국내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사람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19년 9월)
 - 동포들의 취업 수요가 많은 29개 건설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 종목으로 추가('20년 5월)
 -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중증 장애·장기 질병치료 등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동포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자격부여('21년 12월)
-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체류제도 개선
 - 영주자격 제한 화교, 가족관계등록부 등 대한민국 공적장부에 한글성명이 확인되거나 중국 등 국적국 공적장부나 신분증에 한글명 또는 동포임이 확인되는 외국국적동포의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 병기('19년 4월)

- 동포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 서류 제출 의무화('19년 9월)
- 고려인 동포를 위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인정범위 확대('20년 6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충해소를 위해 방문취업(H-2) 동포가 만기출국 후 재입국할 때까지 동반가족 국내체류 허용('20년 11월)
- 취업 외 목적으로 국내 체류를 원하는 체류기간 만료 방문취업(H-2) 동포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 허용('20년 12월)
- 동포 영주 '생계유지능력' 가족합산요건의 범위 완화('21년 1월)
- 방문취업(H-2) 자격 동포의 취업 허용 업종에 "택배상하차 등" 7개 업종 추가('21년 6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동포 체류 고충해소
 - 코로나19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동포가 '한시적 계절근로'에 60일 이상 참여할 경우 국내 자격변경 또는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21년 2월/'21년 4월)
 -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방문취업(H-2) 동포의 체류기간 직권연장 시행('21년 4월/'21년 12월)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의 대상임에도 중국 및 구소련 동포는 제한적으로 재외동포(F-4) 자격이 부여되고 있어,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를 적극 시행할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한국사회에서 혐오차별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중국 및 구소련 동포의 인정범위 및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하여 안정적 체류를 지원하고자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정책 및 관행의 변화를 추진함
- 또한 COVID-19 장기화에 따른 고충해소 차원의 정책적 노력도 지속
- 다만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 대한 인정범위, 자격부여 확대 등 노력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혐오 차별금지 및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은 확인되지 않음

□ 향후 과제

- 중국 및 구소련 동포를 포함한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법적·정책적 기반 마련
-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 대한 혐오차별 금지를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방안 과제발굴 및 추진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③ 재외동포 사회통합 지원
추진부처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과제목표	-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 지원 - 외국국적동포의 영주·국적을 위한 사회통합기반 마련 ※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소양교육 체계 구축 - 외국국적동포의 입국초기 사회적응 지원		
주요 내용	- 귀화·영주자격 취득 시 기본소양 평가를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체계로 일원화 - 기존 귀화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일원화하여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의 한국사회 기본소양 교육 등 체계 구축 -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 영주자격 취득 시 기본소양 평가를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일원화하여 기본소양 평가체계를 일원화하고 한국사회 이해 등 교육과정 운영 -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 -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입국초기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조기적응 교육과정 운영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귀화·영주자격 취득 시 기본소양 평가를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체계로 일원화 - 기존 귀화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일원화하는 개정 「국적법 시행령」 시행('18년 3월 1일) -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 영주자격 취득 시 기본소양 평가를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일원화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18년 9월 21일)

□ 정책·관행의 변화

- 재한동포의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 - 입국 초기 원활한 정착지원을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한국사회 장기체류에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교육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 -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조기적응·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 법무부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출범 - 외국국적동포 등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 - 동포, 유학생 등 체류유형을 고려한 (교육)중급 맞춤형 4단계 과정 운영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COVID-19 상황으로 인한 교육·평가 제한
 - COVID-19 로 인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진입을 위한 평가가 일정기간 취소,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평가제한과 이로인한 교육 제한 상황 발생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사회통합을 지원하여 국가에 대한 소속감 등 개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주무부처의 노력이 돋보이나, 재외동포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정책이 대부분 당사자 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며, 코로나19로 교육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함

☐ 향후 과제

- 재외동포 사회통합 지원 정책 추진 시, 당사자 교육 외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
- 재외동포에 대한 대시민의 인식개선 또한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④ 재외동포 인권 개선
추진부처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과제목표	시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주요 내용	- 외국국적동포 등 재한외국인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 세계인의 날(5월 20일), 한마음 걷기축제 등 문화행사 주관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시민과 재한외국인 간 상호 이해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매년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통해 재외동포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주무부처의 노력이 돋보이나, 재외동포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정책수립을 통한 인권증진이 아닌, 단순 행사에 그치고 있음

□ 향후 과제

- 재외동포 인권실태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인권보호 및 증진 계획 수립
- 재외동포의 인권개선은 과거 역사적 문제로 폄박받던 재외동포들의 현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과거의 과오 등을 바로잡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재외동포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⑤ 국외입양인 인권 개선과 지원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
과제목표	입양인 뿌리찾기 등 사후서비스 지원을 통해 입양인의 알권리 보장 및 정체성 확립 지원		
주요 내용	- 국외입양인에 대한 기록 DB 구축 및 뿌리찾기 - 국외입양인 입양 기록 전산화 추진 계속 - 입양정보 공개 청구제도(뿌리찾기) 시행 지속 * 공개 청구대상 정보: 친생부모에 관한 사항(친생부모의 동의 필요), 입양 배경(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입양 사유 등), 입양인의 입양 전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입양기관 보유 입양기록 59천여 건 전산화 완료
- '19년 외교부-복지부-경찰청 합동으로 14개국 34개 재외공관에서 해외입양인(무연고 아동) 유전자 채취·등록 절차 마련
- '21년 경찰청·재외공관 협력체계 활용 등 무연고 입양인 유전자 등록 지원 132건(79.9%)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입양기록 지속 발굴 및 가족찾기 협력체계 지속 구축 필요

❸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입양기록의 전산화, 입양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국외입양인의 권리보장의 토대를 마련
- 향후 지속적 홍보를 통하여 국외입양인의 권리보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지원체제 마련 필요

□ 향후 과제

-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 및 입양정보공개청구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
- 입양기록 전산화 및 입양정보공개청구 시행 지속

212	VI-5-(1)-⑥
222	VI-5-(2)-⑩

방문취업 해외동포 자녀에 대한 교육권 보장 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5. 이주민 지원과 사회통합	⑥ 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
추진부처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과제목표	- 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 - 이민배경아동이 공교육에 진입하여 적절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주요 내용	- 국적 및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공교육 진입 지원 - 제도 개선 및 공교육 진입 안내를 통한 공교육 진입 확대 - 입국 초기 학교 조기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 - 입국 초기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을 위한 한국어학급(예비학교) 설치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부처협업을 통한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등 공교육 진입 안내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한국어학급을 통한 입국 초기 이민배경아동의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 ('18년) 223학급 → ('19년) 326학급 → ('20년) 372학급 → ('21년) 404학급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해당 없음

❸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이민배경아동의 교육 지원을 통한 한국 적응 지원은 이들의 이주배경을 존중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함.

즉, 교육과정 전반에 종교, 식습관, 의복적 특성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는 교육시설 구성원(학생, 교원 등)의 참여와 변화가 필수적임. 비단 학교 입학과 한국어 교육의 측면을 넘어, 포용적 학교문화 조성의 관점에서 본 정책이 추진·점검되어야 할 것임(CRC, 2017)

- 법무부 출입국 정보연계를 통해 관련 정보가 제공되는 만큼, 부모의 미등록체류 중 출생한 아동, 체류 중 미등록 상황이 된 아동 등은 해당 정책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음. 미등록 이주아동의 초·중등학교 입학이 가능한 만큼(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교육부 자체 정보를 활용하여 모든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교육권 보장 조치가 제공되도록 정책 보완도 필요함

□ 향후 과제

- 법무부 연계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연 2회) 실시
- 입국 초기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을 위한 한국어학급 확대
-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문화 조성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평가
추진부처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	외국인정책과
과제목표	- 연도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제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등 평가		
주요 내용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별·연도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개선점 도출 및 우수 정책 사례 확산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매년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따른 우수정책 사례 확산 등 정책 환류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외국인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에 대한 인권정책의 실효적인 이행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해당과제에 대한 법무부 제출 자료만으로 과제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

□ 향후 과제

- 기본계획 수립 시 외국인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결과에 대한 환류 철저
 - ‘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외국인정책 추진 과정상 발생한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미흡한 과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년 ~ ‘27년) 수립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② 이주민 실태조사 및 정책수요 반영
추진부처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	외국인정책과
과제목표	- 연구용역 발주 시 실태조사 및 수요자 욕구조사 병행 실시 - 각종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주요 내용	- 이민자 실태조사 시 욕구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이를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책에 반영 - 조기적응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교육내용, 콘텐츠 등 개선 시 적극 반영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이민자 실태 파악을 통해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실시를 통하여 이주민 인권보호의 효과성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나, 이민자 체류실태의 경우 조사결과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정책제안으로 나타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

□ 향후 과제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실시 - 이민자 실태조사 설문지에 이민자 욕구조사 항목 추가를 위한 통계청과의 협업 강화 - 이민자 체류실태 결과가 반영된 이민정책개발 추진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③ 이주민 사회통합 지원제도 활성화
추진부처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과제목표	-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 등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 활성화 -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외국인에 대한 외국어서비스 등 제공		
주요 내용	-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내실화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대상 확대, 귀화·영주 신청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강화 등 - 재정착난민 특성 고려 지원 제공 - 외국인 대상 서비스 제공 - 외국인 사회통합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국적법 시행령」 개정('18년 3월 1일)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8년 9월 21일) 시행으로 국적·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체계적인 학습기회와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정책·관행의 변화

- 재정착난민*에 대한 맞춤형 정착지원 제공(연중)
 - 가족별 멘토제를 통한 사회통합 촉진 및 맞춤형 정착지원 제공
 - * '18년 미얀마 26명(8가족) 수용, '19년 미얀마 등 37명(15가족), '20년 미얀마 17명(5가족)
- 20개국 언어로 출입국 업무상담 및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운영('19년 약 253만 건의 상담서비스 제공)
- 법률사각지대에 처한 이민자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18년 총 1,030건의 상담 제공)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
 - '21년 총 269만건의 외국인 관련 민원상담 실시, 질병관리본부(1339) 등 20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 대상 COVID-19 관련 상담 및 3자통역 지원('21년 3,753건)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내실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 사회통합교실 등을 운영하여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
- 그러나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데 음식, 주거, 종교,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차별로 인해 사회통합교육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음
- 또한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문화를 강요하기보다는 상대의 문화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지역사회에서는 다른 문화와 함께 어울려 사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반차별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

□ 향후 과제

-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지속 운영
-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체류단계별 사회통합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대응
- 시민교육, 지자체 연계교육 등 사회 참여형 교육 확대로 교육 구성 다양화
-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자립 등 정착을 위한 맞춤형 과정 운영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운영기관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 맞춤형 온라인(화상) 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사회통합교육 지속 실시
- 재정착난민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강화
 - 재정착난민 중 학령기 아동에게 방학 중 학습지원
 - 지역사회 정착시 법 무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 실시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
 - 재한외국인에게 출입국, 체류 서비스 등 민원 상담
 - 질병관리본부(1339) 등 20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 대상 코로나19 관련 상담 및 3자통역, 민원 관련 번역 지원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5. 이주민 지원과 사회통합 (2) 외국인·이주민	④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장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과제목표	- 이주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 외국인근로자 언어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		
주요 내용	- 고용허가제 대상 이주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노력 -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이주 노동자의 인권보장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언어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 - 이주 노동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사업장변경 고시 개정 : 사업장변경 허용범위 확대 「외국인고용법」 개정 : 위임된 기숙사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정 -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 지침 강화 및 기숙사 정보 제공 고시 개정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21년 12월 16일) - 외국인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관련 제도,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 등을 교육*(6시간)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년 10월 14일 시행)

□ 정책·관행의 변화

'21년 1월부터 농축산·어업의 가설건축물 등 열악한 숙소의 경우 고용허가 불허 지침 마련·시행('21년 1월 1일 ~)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 ('18년) 농축산업 1092개소, 어업 356개소, 건설업 226개소 - ('19년) 농축산업 1,041개소, 어업 298개소, 건설업 149개소 - ('20년) 농축산업 501개소, 어업 178개소, 건설업 56개소 - ('21년) 2,310개소(제조업 : 741개소, 농축산업 : 955개소, 어업 : 335개소, 건설업 : 109개소, 서비스업 : 170개소) * 적발 4,750건(시정지시 : 4,597건, 사법처리 3건, 과태료 47건, 고용제한 등 58건, 관계기관 통보 45건)

- COVID-19 관련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지원
 -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취업활동 기간('21년 4월 13일 ~ '21년 12월 31일) 만료자를 위해 취업활동기간 1년 연장(65,440명, '22년 1월 7일 기준)
- 외국인 고용사업주 대상 고용허가제 등 인권교육(6시간 이상 이수)
 - 교육실적: ('17년) 8,423명, ('18년) 5,782명, ('19년) 5,091명, ('20년) 2,448명, ('21년) 3,826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이주노동자 인권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업장변경 허가제도'가 이주노동자의 자유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는 부족
-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이주민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 그러나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의 내용 중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개선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전문가 등 의견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후 감염 및 외부차단을 위한 CCTV가 이주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등의 인권침해가 지속 발생
- 그리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접근권 보장과 이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여 이주노동자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에 불리한 구조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설립의 법적근거가 미흡하고 직원 처우도 열악한 가운데 예산이 감소되었음. 적극적인 활동 및 전문성을 갖도록 법령에 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원 등 직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 지원 필요

□ 향후 과제

- 사업장변경 허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폐지 및 대안마련)
-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확대(외국인노동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침해 요소 점검 확대)
-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시 외국인 노동자 당사자에 대한 조사 및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전문통역상담원과 동행하거나 관련 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신규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 사업장 전반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방안 마련
-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숙사 등의 장소에 대하여 그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정책을 수립
- 기숙사 관련 규정 위반 시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고용허가를 취소 또는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조치 필요
-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외국인 홀로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단체 등 조력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대지급 제도의 대상으로 법인이 아닌 농축산업 및 5인 미만의 농축산업 노동자를 포함 법률 개정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⑤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제도 개선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과
과제목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		
주요 내용	- 다문화가족 정보 제공,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문제 개선, 다누리콜 센터를 통한 이주여성 지원 강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결혼중개업 사업장 표시·광고 시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 게재 금지)
 -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성차별적 광고행위 규제 및 중개업자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광고 일제점검을 추진하여 피해 예방 강화

□ 정책·관행의 변화

- 관계부처 협력으로 입국 전후의 결혼이민자 정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초기 밀착 지원하는 정보연계 확대 및 사례관리 확대를 통해 다양한 문제 해결 및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마련하여 총괄기능 강화
- 결혼이민자의 다문화 친화활동(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을 통해 일반 시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선주민과 이주민 간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친화활동가로 양성하여 학교 등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온라인(유튜브, 블로그 등)상 국제결혼중개 상시모니터링 실시 후 성차별·인권침해적 광고 삭제 조치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포털다누리(www.liveinkorea.kr), 한국생활가이드북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 정책 및 생활정보를 다국어(13개 언어)로 제공

- 민간단체·학교 등 찾아가는 교육 활성화, 온라인 다문화이해교육 사이트 운영, 지역특화교육기관 운영 확대 등 실시 * 다문화이해교육 참여인원 : ('18년) 12만명 → ('19년) 14만명 → ('20년) 15만명
-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프로그램 이용자 : ('18년) 96,321명 → ('20년) 107,431명
 -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07년) 38개소 → ('14년) 214개소 → ('15 ~ '17년) 217개소 → ('18년 ~ '19년) 218개소 → ('20년) 228개소
-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생활 및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 지원 * 방문교육지도사 이용자수 : 13,324('21년 9월, 실인원)
- 결혼이민자 대상 1:1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체류불안 등 복합적 위기 해소 : 상담건수('20년 161,466건 → '21년 194,802건) , 3자통화('20년 35,032건 → '21년 72,951건)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음식, 주거, 종교,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편견(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과 혐오차별로 인해 사회통합교육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음
- 또한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문화를 강요하기보다는 상대의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지역사회의 반차별 교육과 다른 문화와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병행될 필요
- 결혼중개업에서 키, 몸무게, 얼굴사진을 게시하고 결혼상대를 고르는 방식을 취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격하게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

□ 향후 과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정착단계별 종합지원 서비스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 찾아가는 교육 활성화, 온라인 교육 사이트 운영 등으로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추진
- 불법 결혼중개·인권침해 실태 감시와 예방 강화를 위한 국외 국제결혼이민관 역할 강화 및 국내 지자체 합동 점검 실시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⑥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추진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
과제목표	농촌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역주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		
주요 내용	- 다문화여성 대상으로 농촌문화 및 생활교육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농촌정착을 지원 - 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정착단계별로 ‘기초농업교육’ 및 전문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한 ‘1:1 맞춤형 농업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문화 체험 등을 통한 자긍심 고취, 우리 농업·농촌 및 가족간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교육 실시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교육성과 분석 및 교육프로그램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 실시(‘20)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현장과정) COVID-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 집합교육보다 많은 교육생이 참여하여 상담 및 가족역량강화 교육운영 (청소년캠프)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차세대 미래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캠프 확대 운영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결혼이민여성의 농촌정착 지원 및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을 위한 교육실시 * (교육인원) (‘18년) 1,059명 → (‘19년) 1,569명 → (‘20년) 1,784명 → (‘21년) 1,700명 - 다문화가족의 가족 간 이해도 증진 및 역량강화, 농촌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교육실시 * (교육인원) (‘18년) 1,008명 → (‘19년) 1,003명 → (‘20년) 1,277명 → (‘21년) 1,200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COVID-19 확산으로 인해 결혼이민여성 대상 농업교육에 차질, 다국어 교육교재 개발 및 지원 필요
- COVID-19 확산으로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관련 2박3일 장기간 집합교육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비대면 교육운영에 대한 사전준비 및 콘텐츠 개발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농촌의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캠프 개최 등 여러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그러나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음식, 주거, 종교,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편견(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과 혐오차별로 인해 사회통합교육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음
- 또한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문화를 강요하기보다는 상대의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지역사회와의 반차별 교육과 다른 문화와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병행될 필요

□ 향후 과제

- 지역사회 일반주민(다문화가정이 아닌 주민)대상 인식 개선 교육 병행
-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배포를 통해 비대면 교육지원
- 교육내용 및 교육생 요구를 반영하여 다개국어교재 번역제공 추진
- 결혼이민여성 리더경진대회 및 연말 워크숍을 통해 우수 교육생의 교류기회 확대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⑦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 강화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기반과
과제목표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운영 내실화		
주요 내용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숙식제공 및 귀국지원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19년) 외국인 지원시설(1개소) 운영을 통한 긴급보호 및 안전한 귀국 지원
 - (지원실적) 의료 102건, 법률 155건, 치료회복프로그램 124건, 귀국지원 37건
 - (지원성과) 취업 31명
- ('20년) 외국인 지원시설(1개소) 운영을 통한 긴급보호 및 안전한 귀국 지원
 - (지원실적) 의료 89건, 법률 211건, 치료회복프로그램 166건, 귀국지원 7건
 - (지원성과) 취업 29명
- ('21년) 외국인 지원시설(1개소) 운영을 통한 긴급보호 및 안전한 귀국 지원
 - (지원실적) 의료 97건, 법률 116건, 치료회복프로그램 197건, 귀국지원 6건
 - (지원성과) 취업 25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강화 필요
 - 성희롱·성폭력문제 대응 및 양성평등 추진의 지속성 및 전문성 확보

❸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운영을 통해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분야 종사 인원, 근무 형태 등 기초적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하여 우선적으로 현실의 상황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

□ 향후 과제

- 외국인 성매매피해 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
- 성매매피해자 외국인지원시설 지속 운영 및 내실화
 - 외국인 피해여성에게 무료 숙식 제공 및 안전한 귀국 지원
 - 법률소송 진행 중인 외국인 피해여성 자활참여지원사업(공동작업장,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⑧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권익증진국	다문화가족과, 권익기반과
과제목표	- 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기여 - 이주여성 인식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실시		
주요 내용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운영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보호, 상담, 주거 지원 및 자립 지원 - 이주여성 폭력피해 재발 방지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및 보호지원 시설 인프라 확대 (이주여성 상담소 2018년 2개, 2019년 5개, 2020년 4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2021년 1개)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설(1인당 500백만 원) - 전국 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보수교육 실시 (2018년 56명, 2019년 96명(시설장 포함), 2020년 148명, 2021년 137명(시설장 포함))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서비스 제공 (2018년 77천건, 2019년 상담 10천건, 보호지원 75천건, 2020년 80천건, 2021년 97천건)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다누리콜센터(1577-1366) 7개소 운영(중앙1개소, 지역6개소) * 상담건수 '20년 161,466건→'21년 194,802건, 3자통화 '20년 35,032건→'21년 72,951건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이주여성 상담소, 이주여성쉼터, 그룹홈을 신설하는 정책은 국가의 인권보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임
- 다만 가정폭력 주체로부터의 분리 이후 결혼이민자의 자립을 돕거나, 법률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인권증진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다문화관계기관 실무자 인권감수성 향상 및 촘촘한 지원망 연계 기반 강화
- 다누리콜센터 운영을 통한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확대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통해 피해자에게 맞춤형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강화
-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5. 이주민 지원과 사회통합 (2) 외국인·이주민	⑨ 이주민 문화교류 지원
추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문화정책과
과제목표	다양한 문화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이주민 문화교류 지원 및 문화다양성 확산		
주요 내용	- 무지개다리 사업으로 소수문화-지역주민 간 교류지원,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능동적 문화주체로서의 소수자 역할 제고 - 이주민의 문화예술 자조모임, 풀뿌리 단체 발굴·지원 및 지역주민과의 문화예술을 통한 교류 지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화예술 활동 지원강화 - 무지개다리 사업 전국 확대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 공모를 통한 지역 문화재단 선정 및 지원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역문화기관 - 추진절차 : 지역문화기관 대상 공모·선정 → 사업 수행 → 종합평가 - 지역문화기관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 등 교류 네트워크 구축, 주요활동 추적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지역문화기관의 안정적인 문화다양성 사업 추진 체계 마련
 - 사업 3년 연속 지원으로 개선함에 따라 각 지역문화기관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문화주체 특성에 맞는 문화다양성 사업 기획·운영하여 지역민 간 소통 활성화에 기여(문화다양성 인식 2018년 14.8%, 2019년 15.2%, 2020년 13.1%, 2021년 18% 각각 상승)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전국 26개 내외 지역에서만 사업 추진 중으로 향후 전국적 확대 통해 사회 저변에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도모 필요

❸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다양한 문화 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문화다양성을 확산하고자 무지개다리 사업을 기반으로 참여자의 인식을 변화해 나가고 있는 점은 인권실현 측면에서 성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무지개다리 사업의 규모가 해당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매우 부족

□ 향후 과제

- 사업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 추진지역 및 예산 확대로 문화다양성 인식의 지역사회 내 확산 가속화 도모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⑪ 외국인 입국규제제도의 합리적 운영
추진부처	법무부	출입국정책단	출입국심사과
과제목표	외국인 입국규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		
주요 내용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개정 -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입국금지 특별해제 기준 완화 방안 마련 - 중요 법익 침해 사범에 대하여 처분 또는 판결의 경중에 따라 차등 규제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에 대한 입국규제 특례 마련 및 입국규제 유예·해제 사유 확대
- 중요 법익 침해 사범에 대하여 처분 또는 판결의 경중에 따라 차등 규제
- 외국국적동포에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규제 면제 정책 및 일정규제기간 경과에 따른 특별해제 적극 검토를 통한 동포 입국기회 확대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외국인 입국에 대하여 범죄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주민 지원과 사회통합을 도모
- 다만 해당정책 추진에 있어서 시민의 반발이나 편견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홍보)이 필요

□ 향후 과제

- 외국국적동포 신원불일치자, 장기(규제기간 5년 이상) 입국규제자 대상 규제 완화 정책 지속 운영 및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5. 이주민 지원과 사회통합 (3) 외국인·이주민	① 난민심사 제도기반 개선
추진부처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	난민정책과, 난민심의과
과제목표	- 난민심사 인프라 확충 - 국가정황 자문조직 운영		
주요 내용	- 난민심사 인력 및 조직 확충, 주기적 직무교육 실시를 통한 전문성 강화 - 국가정황조사 전문인력 확보 및 국가별 박해정황 조사·연구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난민 이의신청 심의 지원 전담부서 신설('20년 2월) - 난민위원회의 심의 지원과 이의신청 제도 운영을 전담하는 부서('난민심의과')를 분리·신설 - 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20년 2월) - 분과위원회(3개 → 4개)를 확대하고 분과위원장을 전원 위촉직(민간) 위원으로 위촉 -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구성('20년 4월) - 민간 난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35명)을 구성하여 이의신청 심의 안전에 관한 자문 청취 활성화 「난민전담공무원 전문성 향상 방안 연구」 용역 실시('21년 12월) - 난민전담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실시 결과, 주요 국가의 사례 검토 등을 통해 공동심사체계 운영, 난민전담공무원의 업무영역 재설정, 본부 교육팀 운영 등 정책 제언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UNHCR 및 외부 전문가 초빙을 통한 난민심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18년 6회, '19년 7회, '20년 5회, '21년 8회, 369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소수언어 등 유능한 통역인 인재풀 확보 노력 지속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난민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난민위원회와 자문단을 구성하고, 난민전담공무원 전문성 향상 방안 용역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함
- 그러나 난민심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여 일부 난민이 공항 화장실에서 씻고, 공항 의자에서 숙식을 하는 등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함
- 또한 심사과정에서 난민의 알권리와 참여(본인 및 통역인 또는 조력자 등)가 충분하게 보장되고 있지 못함

□ 향후 과제

- 난민인정제도는 난민신청, 심사, 구제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과 구제제도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 많으므로 굳이 ‘심사’ 제도에 한정하거나 ‘기반’에 한정할 필요 없이 ‘난민인정제도 개선’으로 확대할 필요
- 난민인정여부에 관한 확정 전이라도 접수 전 안내, 접수단계의 스크리닝 인터뷰, 접수, 적격성심사, 면담, 심사, 1차결정, 이의신청, 이의심사, 1심, 2심, 3심, 재신청 등 절차진행의 단계를 세분화하고 각 절차진행의 단계에서 난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보호의 필요가 비교적 명백한 사건과 명백히 근거 없는 신청에 대하여는 심사기간을 파격적으로 단축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5. 이주민 지원과 사회통합 (3) 난민	② 난민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
추진부처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	난민정책과
과제목표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난민지원체계 구축 및 난민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주요 내용	- 난민특성에 맞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이수한 경우 영주권 또는 국적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한 혜택 제공 - 난민의 영주권 취득요건(거주기간 등)을 완화하거나 귀화요건(생계능력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우리사회 영구적 구성원으로 정착 유도 - 민관 협력 난민지원 체계 구축 -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난민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및 난민에 대한 대시민 인식 개선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한 난민신청자 초기 정착 지원 지속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난민의 특수성을 반영한 난민인정자의 영주자격 허가 기준(기본소양 및 소득 요건) 정비('18년 9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소자에 대한 사례관리 프로그램 시범실시('18년 5 ~ 11월) - 난민인정자를 위한 한국생활 안내책자 발간('19년 7월)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소자에 대한 주거지원 및 한국어 수업 등 정착 지원(연중) ※ 지원센터 일평균 입주 인원 : ('18년) 66명, ('19년) 37명, ('20년) 25명 - UNHCR과 '난민의 날' 기념 포럼 개최('18년 6월) - 강원대 난민연구센터, IOM이민정책연구원과 난민의 날 기념 학술포럼 개최('19년 6월) -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및 시·군·구 외국인복지센터 담당자 대상으로 현행 난민제도 이해도 제고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난민정책 설명회' 개최('20년 11월)

- 서울의료원 및 외국인의료지원 유관기관간 업무협의를 통해 난민신청자 등의 의료지원 강화
- '난민 체류 정책 해외사례 등 연구'('21년 12월)를 통해 난민인정자 등의 취업지원 등 지원시스템 연구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난민인식 개선을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 지속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해당 정책과제가 '지원 중심'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난민들의 의존과 시민의 부담을 전제해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야기하여 개선이 어려우므로 자립, 권리, 책임 중심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
- 난민의 사회통합과 처우 개선을 위해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주거지원, 정착을 위한 한국어 수업 제공, 외국인복지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수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이 돋보임
- 다만 국가의 이러한 노력에도 난민사회통합 강화 시 난민 당사자의 의견(자기결정권)을 수렴하거나 반영하는 절차는 확인되지 않으며, 사회통합을 이유로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배제함으로써 또 다른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 또한 난민의 사회통합의 절차에서 난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할 수 있는 편견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

□ 향후 과제

- 난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예방적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난민신청 후 6개월 이전의 취업금지기간이나 절차상 최종적으로 난민불인정 되었지만 귀환하지 못하고 있는 불인정난민들에 대한 생계 또는 귀환 대책이 필요
- 난민인정자의 실질적 권리 향유를 위한 매뉴얼 제작 및 일선행정 체계와의 연계방안 마련
-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자의 귀화 및 영주권 신청 절차상 요건 완화 검토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법제 개선
추진부처	통일부		정착지원과
과제목표	일자리: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핵심사항인 만큼, 일자리 창출로 탈북민의 자립·자활 지원을 통해 탈북민 삶의 질을 개선		
주요 내용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 탈북민의 자산형성을 지원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법률 개정 4회('21년 1월 5일, '21년 4월 20일, '21년 8월 17일, '21년 12월 21일), 시행령 개정 2회('21년 5월 25일, '21년 10월 19일)
 -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규정을 구체화하고, 임시보호시설의 근거를 마련
 - 보호결정 제외 요건 완화, 보호범위, 보호신청 기간을 확대하여 보호대상자 범위를 확대
 -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주거 지원을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 우선구매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확대 도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운영규정을 법률로 마련하여 임시보호 등 보호 범위를 확대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적응을 위한 지자체 책무 규정 법 신설하여 지자체의 보호의 책임과 역할을 재확인
 - 성폭력, 가정폭력, 지역적응 교육,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 규정
 - 신변보호에 위협이 있을 경우 주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일자리, 창업 등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 자산형성 지원할 수 있는 지침 마련
 - 북한이탈주민 세대 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 출생자녀 양육가산금, 정착자산 형성 지원금 등 거주지 정착 이후 정착금 신청을 일원화하여 하나재단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 만 24세 이하의 무연고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 후견인을 선정하여 보호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시행령을 개정하여 조사 내용, 방법, 임시보호조치의 내용,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규정, 신변보호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보호시설 및 조치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함

□ 정책·관행의 변화

- 북한이탈주민 임시보호, 조사 등 보호센터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탈북민 인권 강화
- 보호 대상자 인정 범위 및 비보호대상자 주거 지원 확대
- 보호신청 기간 연장(1년 → 3년), 비보호 탈북민에 대한 주거지원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법제 관련 미비점 지속 개선 노력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탈북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기조로 바람직함. 다만, 제3국 출생 탈북민이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북한이탈주민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영역이 다르다는 사실로 인해 사회와 단절·고립되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지원하고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선이 필요함. 한 전문가는 가족/가구 단위로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것이 방법이라 제시함.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족 단위의 지원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개인 단위의 복지 시스템으로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가족 단위의 지원이 바람직한지는 검토가 필요함
- 법률 개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력화를 함께 목표로하여 설계한 것은 긍정적임

□ 향후 과제

- 모든 시민의 권리 보장이라는 방향성에서 제3국 출생 탈북민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②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강화
추진부처	통일부		정착지원과
과제목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법령 개선을 통해 포용적 정착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체계화		
주요 내용	정책추진 환경 변화를 고려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 정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탈북민 직업교육관 개관 등을 통해 생애설계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취업보호담당관 확대 - 탈북민 자립·자활능력 제고 및 영농 정착지원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창업 지원

구분 연도	기창업자 경영개선 지원금	홍보관 운영 및 판로지원	신규창업지원				경영 컨설팅	창업교육
			매칭 적금	생활 밀착형	아산상회	창업 사업회		
'20	251	21	4	4	3	9	156회	272
'21	258	21	6	3	5	11	362회	250

- 취업 지원

구분 연도	구직등록	구인등록	취업	알선	동행면접	대면상담	전화상담
'20	1,960	2,348	1,402	2,134	528	6,779	16,969
'21	1,871	2,260	1,506	1,892	452	6,900	18,154

• 교육 훈련 지원

구분 연도	제조업	생산직	사무직	서비스직	전문직	기술업	단순노무	합계
'20	52명	27명	26명	19명	18명	6명	2명	150명
'21	67명		18명	18명	42명	16명	8명	166명

• 미래행복통장 만기 수혜자 증가를 통한 탈북민의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 기여

* 만기 수혜자 수 : '18년 17명 → '19년 49명 → '20년 169명 → '21년 398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미래행복통장 가입대상 확대를 위한 가입조건 완화 등 검토 필요
-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일자리 감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은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이라는 정책목표에 적합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을 지원하고, 선호 업종에 대한 심화교육을 함과 동시에 의료·변호사 등 전문분야 일자리를 확대 발굴하여 한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미래행복통장 제도를 통해 자산을 형성에 기여함
- 향후 과제는 특정 직종에 북한이탈주민이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로 넓힐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임. 당장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특정 직종에 집중하여 역량을 도모하는 것은 과도기적인 방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낙인 효과를 낼 수 있음

□ 향후 과제

- 직업의 자유 보장,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자활을 위해 직종을 다양하게 열어두고 북한 이탈주민 당사자가 직접 선택하여 배울 수 있는 방안 마련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③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
추진부처	통일부		정착지원과
과제목표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적인 우리사회 환경 조성		
주요 내용	- 거주지 초기 정착지원 및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취약 북한이탈주민 보호체계 확충 및 생활안정 지원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0년 이상 해외거주 탈북민 비보호 법 근거 규정 삭제, 탈북민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20년 12월)

□ 정책·관행의 변화

- 하나센터 체계 개선
 - 제5기 하나센터 출범에 따른 재지정 및 신규 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규」 제정, 업무매뉴얼 개편, 사례관리 매뉴얼 개편 등 체계 정비
- 하나센터 위촉변호사 제도 운영
- 하나센터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도록 복지부 지침 개정
- 하나센터 전담인력의 근무경력을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시설 관리지침」 개정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간 연계 강화 및 탈북민 취약계층 대상 전수조사 실시 등
- 유관부처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공동대책」 수립 및 추진
- 탈북민 지원번호인 심화제도 시범운영, 수도권 11개센터에서 1:1법률상담 개시('20년 7월)
- 거주지 적응 지원 및 지자체 협력체계 강화
 -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집중사례관리대상자 지원 강화 및 지역협의회 활성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경기중부, 서북부 지역적응센터 증설
-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센터 내 상담실, 심리치유실 등 마련, 문화·소통 프로그램 운영)
- 종사자 처우개선 등 예산 확대(2.9%)
- '20년 탈북모자 사망사건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20년 4~6월), 위기 의심자 총 829명을 발굴 및 지원
- '21년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9,099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위기 의심자 1,693명에 대하여 1,935건 지원
- '21년 취업, 주택, 건강, 교육, 심리·정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73,735건의 상담 및 사회서비스 지원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교육, 훈련, 취창업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주민 역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주민으로서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쌍방향적 노력이 있어야 함.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평등한 주민으로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일방향적인 노력으로는 권리보장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혜적인 태도로 귀착되므로 한계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이 세대를 이어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한 명의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시민으로서 자력화되어야 함. 인식개선 프로그램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착한 사람'의 이미지로 굳히고, 사상·양심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는 당사자와 공동체에 건강하지 못함. 따라서 '착한 시민'과 남한의 사상을 강조하는 식의 방향은 지양하고 존재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어 토의하고 논의하여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전환해야 함
- 제3국 출생 탈북민에 대한 지원은 현재까지 부재한 상황임. 탈북하여 한국으로 입국하기까지 과정에서 출생지가 제3국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의 보편성과도 대치되고, 지원의 부재로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정착이 실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가족을 단위로 한 지원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음. 다만,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족 단위의 지원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개인단위의 한 복지 시스템으로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가족 단위의 지원이 바람직한지는 검토가 필요함

□ 향후 과제

- 교육, 취·창업 지원 등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역에 기반한 지원 방안 구체화
-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소통·통합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을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대상화하거나 북한이탈주민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점검 및 시정 필요
-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소통·통합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북한이탈주민을 동등한 시민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역 주민에 대한 인식 사업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권교육 진행
- 제3국 출생 탈북민에 대한 지원 대책 강구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④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의 탈북민 인권보호 강화
추진부처	국가정보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과제목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의 탈북민 인권보호 강화		
주요 내용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친화적 태도 함양 「서울UN인권사무소」 등 인권기관의 북한이탈주민 면담 지원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보호센터 시설기준, 북한이탈주민 임시보호·조사 절차 및 내용을 국가정보원 내부 지침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령」 상향하는 법 개정(법 개정안 2018년 12월 28일 국회 통과, 2019년 7월 16일 시행)
- 보호센터 설치 및 북한이탈주민 조사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시행령에 조사 및 임시보호의 내용 방법을 규정
- 외부 변호사인 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직무권한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한 강화

□ 정책·관행의 변화

- 인권보호관의 직권 면담을 강화하여 탈북민이 변호사로부터 상시적으로 인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국가인권위·UN인권사무소 의 탈북민 정례 면담 협력
- 인권보호관 전수면담제 시행으로 기존 건의함 등 신청에 의한 상담시보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관 법률적, 개인적 상담 사례가 증가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탈북민 조사·임시보호기간 단축('17년 평균 61일 → '18년 평균 58일)
- 인권보호관 인권교육, 상담 등

- '19년 직원대상 인권교육(6회) 실시, 탈북민 상담(65회) 및 민원 처리 (56회) 등
- '21년 보호센터 및 유관기관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간담회 실시(9회)
- 국내외 인권기구 면담 활성화
 - '19년 「서울UN인권사무소」 대상 총 12회(24명)의 면담을 지원
- 조사 공간과 외부가족 면회 공간 리모델링
- 취미생활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컴퓨터교육실과 음악실 신설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조사 종료자 하나원 이송대기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통일부 소속 하나원의 인력 및 시설 확충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 탈북민 이송대기 기간 단축 시 이송빈도 증가(現 月1회 → 月2, 3회) 초래
- 현행 보호센터 인권보호관이 직권 또는 신청자에 한해 북한이탈주민을 면담하고 있으나 보호센터 내 북한이탈주민 전원에 대해 인권보호관 면담을 실시하여 법률적 조력을 강화할 필요
- 인권보호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보호 및 강화는 지속 개선되는 점을 고려시 인권보호관과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자간 소통기회는 다소 부족
- 코로나 수시 재확산에 따른 외부기관 면담의 중단·재개 반복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임시보호 기간 동안 조사를 집중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호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은 바람직함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시설이 성별로 나누어져, 남성은 1~2인실이나 여성은 4~6인이 배정됨. 예산 부족의 문제가 있겠으나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황으로 보아 여성의 숙소도 다인원실이 아닌 소인원실로 확보함으로써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해야 함. 고위급 인사 탈북민의 숙소를 특별생활실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재고 필요
- 북한이탈주민에게 인권보호관, 변호사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또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탈북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신변 보호를 비밀과 밀폐로 간주하지 않고, 신변 보호와 동시에 외부와의 소통을 증진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임시보호 기간 단축에 대한 노력 지속
- 성별, 신분에 따른 시설 차등에 대한 고민과 변화 필요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탈북민의 변호사, 인권보호관에 대한 이해 제고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탈북민의 신변 보호와 외부와 소통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⑤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추진부처	통일부		정착지원과
과제목표	일반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의 교육지원을 통한 사회 적응능력 제고		
주요 내용	- 탈북청소년 부적응 해소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예비대학 및 탈북청소년 학교 지원 - 일반학교 학업중단율이 높은 점을 고려, 학교적응을 높이는데 노력(통일전담교육사 등) - 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 증가에 대응, 특성화·대안학교 지원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탈북무연고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나 보호자·후견인 선정절차 및 관련 원칙 법제화('21년 12월 21일)

□ 정책·관행의 변화

- 학습 적응을 위한 방과후공부방, 방문학습지, 화상영어교육 지원과 대학 진학을 위한 박람회, 상담 지원, 자료 제공 및 확대
- 대학 학비 지원
- 북한이탈 청소년 보호·교육 시설 지원
- 한국어 교재를 포함한 맞춤형 학습 교재 제공
- 탈북무연고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락체계 재정비, 생활 실태조사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대안학교 운영지원 강화
-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통일전담교육사 배치
 - ‘18년 초·중 22개교, 22명 배치 → ‘19년 28개교, 23명 배치 → ‘20년 27개교, 22명 배치 → ‘21년 26개교, 22명
- 탈북대학생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지속, 디딤돌대학(예비대학) 과정 확대
 - (‘18년) 6개 → (‘19년) 8개 → (‘20년) 6개 → (‘21년) 6개
- 대학 신입생 등록금 지원
 - (‘18년) 10명/25백만 원 → (‘20년) 39명/76백만 원 → (‘21년) 38명/76백만 원
- 제3국 출생 대상 양육가산금 증액
 - 1인 400만 원 → 450만 원

- 탈북학생의 '초중고 학업중단율'이 1.2%로 완화, 일반청소년과 격차 지속적으로 감소
 - (탈북학생) '20년 4월 2.9% → '21년 4월 1.2%
 - (일반학생) '20년 4월 1.2% → '21년 4월 0.6%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탈북청소년과 지원내역에 차이가 있음
- 제3국 출생 청소년들의 국내정착 지원 및 교육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부분에서 정책적 지원범위 확대 노력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본 정책과제는 북한이탈청소년 중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2020년 기준 북한이탈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이 2.9%로 적지 않은 수가 학교 밖 청소년임⁵³⁾. 따라서 학교 밖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보완하여야 함
- 같은 해 북한이탈청소년 외 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은 0.6%로 북한이탈청소년의 중단율이 4배 이상의 수치를 보임⁵⁴⁾. 특히, 북한이탈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이 2020년 기준 초등학교 1.5%, 중학교 2.7%, 고등학교 4.8%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시정할 수 있어야 함. 통일전담교육사 운영과 방과후 공부방, 방문학습지, 대학 진학 지원 등의 프로그램은 지속되어야 함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국가 정책은 북한이탈청소년이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소수자성을 지닌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편적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서 보편적 시민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소수자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북한뿐 아니라 해외의 교육 시스템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이 북한이탈청소년, 이주청소년, 해외에서 교육을 경험한 이들과 한국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교육 전반의 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북한이탈청소년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특성에 맞는 적응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또한 기존의 교육 체계에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통합을 위한 장기 로드맵 설계가 필요함

□ 향후 과제

- 학교 밖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북한이탈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이 높은 원인 파악하고 지원 정책 발굴 및 개선 필요
-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이 북한이탈주청소년이 한국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는 역량을 지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낙인 효과를 남겨나 한국사회에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함
- 교육부와 협력하여 남한의 청소년들과 상호작용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전환 로드맵 구축

53) 시사저널.(2021.10.07.) [단독] 교육 사각지대 내몰린 탈북청소년...학업중단율 최대 3배 육박.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530>. 최종검색일: 2022.08.20.

54) 교육부.(2021). 2021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	5.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⑤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추진부처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과제목표	• 탈북학생을 우리 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성장시키고 통일미래 맞춤형 인재로 육성		
주요 내용	• 학습, 언어, 심리상담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강화 •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학교·교원 교육력 제고 및 관계기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탈북학생 초기정착 매뉴얼 개발·보급 • 맞춤형 한국어 학습 자료 개발·보급 • 탈북학생 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 • 탈북학생 담당(담임)교사의 교육활동 상시 지원을 위한 지도교사용 매뉴얼 등 보급 •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긴급 교육지원이 필요한 탈북학생을 위한 돌봄지원팀 구성·운영 • 탈북학생 대상 '찾아가는 진로상담단' 운영을 통해 개별화된 진로진학 상담 지원 강화 • 심리상담 지원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및 안정적 정착 – 추진교육경로별 체계적 지원, 1:1 맞춤형 멘토링 등으로 탈북학생 학업중단을 및 학교 부적응 사유 학업중단을 감소 ※ 탈북학생 학업중단율 : '08년 10.8% → '13년 3.5% → '18년 2.5% → '19년 3.0% → '20년 2.9% → '21년 1.2% ※ 학교 부적응 사유 학업중단율 : '17년 0.48% → '18년 0.46% • 탈북학생의 안정적 적응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탈북학생의 학습지도, 심리적 안정, 교우관계 증진 등 학교생활 만족도 제고 ※ 맞춤형 멘토링 만족도: '18년 87.5% → '19 88.8%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부처 자체 점검결과)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탈북청소년과 지원내역에 차이가 있음. 제3국 출생 청소년들의 국내정착 지원 및 교육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부분에서 정책적 지원범위 확대 노력 필요
- 제3국 출생 탈북학생 수 지속 증가*로 개별 학생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필요
* 전체 탈북학생 중 제3국 출생 탈북학생 수 : '17년 56.6% → '18년 60.3% → '19년 61.2% → '20년 62.8% → '21년 65.5%
-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라 체험활동 등 대면 교육을 대체하는 비대면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필요
※ 맞춤형 멘토링 학생 만족도 다소 하락 : ('19년) 88.8% → ('20년) 88.1%
※ '22년 도움 필요분야 : 체험활동(83.7점), 교우활동(78.5점) 등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담당 교사들의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 제공 및 매뉴얼 제작·보급은 북한이탈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노력이자 관련자들의 역량 증진을 돕는 노력으로 긍정적임
- 모든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만이 아닌 이주 청소년,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을 포괄하여 다양한 시민의 소통과 상호 이해를 이끌어내는 관점으로 지원해야 함.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멘토링 내용이 그들이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적응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함
- 한국과 북한의 문화, 교육체제가 현저히 다르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청소년에게만 노력을 요구하며 기존의 한국 제도에 편입하라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함. 북한뿐 아니라 해외의 교육 시스템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이 북한이탈청소년, 이주청소년, 해외에서 교육을 경험한 이들과 한국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교육 전반의 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북한이탈청소년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특성에 맞는 적응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가 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학교로 통합되어야 하지만, 기존의 교육 체계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학교 운영을 중단하는 것은 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에 조심스러움. 따라서 기존의 교육 체계에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통합을 위한 장기 로드맵 설계가 필요함

□ 향후 과제

- 교육 프로그램과 멘토링 사업 등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화하고 시혜적으로 대하는 시각, 한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여 당사자 주체성과 자력화, 권리 보장,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통한 적응의 내용으로 전환 필요
- 통일부와 협력하여 남한의 청소년들과 상호작용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전환 로드맵 구축

VII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관련 국내외 협력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 이행상황 총괄

< 총괄표 >

구 분	계	과제완료	정상추진	추진지연	기타
합 계	32	2	29	-	1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관련 국내외 협력	14	1	12	-	1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18	1	17	-	-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진과제	추진상황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관련 국내외 협력】			
231	VII-1-(1)-①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비준	정상추진
232	VII-1-(1)-②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과제완료('21.)
233	VII-1-(1)-③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정상추진
234	VII-1-(1)-④	국제인권조약상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	정상추진
235	VII-1-(1)-⑤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강화	기타
236	VII-1-(1)-⑥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조치	정상추진
237	VII-1-(2)-①	국제사회 인권협력 및 역할 강화	정상추진
238	VII-1-(2)-②	국제인권기구와 교류 협력 강화	정상추진
239	VII-1-(2)-③	인권기반 공적개발협력 추진	정상추진
240	VII-1-(2)-④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정상추진
241	VII-1-(2)-⑤	인권시민단체 및 사업 지원	정상추진
242	VII-1-(3)-①	북한인권 증진 방안 추진	정상추진
243	VII-1-(3)-②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정상추진
244	VII-1-(3)-③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정상추진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245	VII-2-(1)-①	인권교육 진흥 추진	정상추진
246	VII-2-(1)-②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정상추진
247	VII-2-(2)-①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정상추진
248	VII-2-(2)-②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정상추진
249	VII-2-(2)-③	일반학교의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강화	정상추진

250	VII-2-(2)-④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과제완료("20.)
251	VII-2-(2)-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정상추진
252	VII-2-(3)-①	사회적 소수자 인권 교육 지속	정상추진
253	VII-2-(3)-②	국가·지방 공무원 인권교육	정상추진
254	VII-2-(3)-③	법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정상추진
255	VII-2-(3)-④	군 장병 인권교육	정상추진
256	VII-2-(3)-⑤	변호사 인권교육	정상추진
257	VII-2-(3)-⑥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인권교육	정상추진
258	VII-2-(3)-⑦	사회적 약자 및 보호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	정상추진
259	VII-2-(4)-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정상추진
260	VII-2-(5)-①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정상추진
261	VII-2-(5)-②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정상추진
262	VII-2-(5)-③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정상추진

□ 과제별 이행평가

231	VII-1-(1)-①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 · 비준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협력	①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비준
추진부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국제인권조약의 추가 가입, 비준		
주요 내용	유엔의 9대 핵심 인권협약 중 하나인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법무부,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 마련 ‘법무부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입법위원회’ 운영을 통해, 협약의 국내 이행법률 「권고안」 마련

□ 정책·관행의 변화

‘법무부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입법위원회’ 운영(’20년 11월 ~ ’21년 9월)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협약 가입 대비 조속한 국내 이행입법 추진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협약 가입의 필요성 및 시민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통해 가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을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

□ 향후 과제

「협약 가입동의안」 국회 제출·통과 지원 -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미가입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유보조항 철회 검토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협력	②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과제목표	-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관련 국내외협력		
주요 내용	-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협약) 비준 추진 (결사의 자유 협약) 사회적 대화,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한 현행 법제와 국제노동기준 간 비교·검토, 국내법 개정 및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추진 (강제노동 협약)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국내 법·제도와 협약 간 상충 부분 검토, 국내법 개정 및 강제노동 협약 비준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2022년 4월 20일 발효)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2022년 4월 20일 발효)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022년 4월 20일 발효)

□ 정책·관행의 변화

ILO 가입('91년) 30년 만에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 및 강제노동(제29호)에 관한 핵심협약 비준 완료를 통한 국제적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ILO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법원으로 작용함에도 국내법과 상충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ILO 가입('91년) 30년 만에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 및 강제노동(제29호)에 관한 핵심협약 비준을 완료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 정부는 “ILO 핵심협약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에 법원이 개별 사안에서 협약의 취지와 법률의 규정을 연계해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ILO 2006년 고용관계 권고에서 형식이 아닌 사실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석함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국 대법원 우버 기사의 노동자성에서 판단 기준으로 적용한 선례가 있음. 그러나 국내 법원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을 한 바가 있으므로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및 노사의 ILO협약에 대한 이해 증진 방안 모색 절실

□ 향후 과제

- ILO 핵심협약 발효('22년 4월 20일) 이후 정부 이행보고서 등 ILO 모니터링 절차 대응
- 단체교섭권 관련 노동계가 2022.5. 한국 정부를 ILO 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위반으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가 협약 98호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는바 경영평가 지침을 통한 노사관계 개입에 대한 재고 등 ILO 핵심협약과 국내법령간 면밀한 재검토 필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협력	③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실
과제목표	•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를 통한 인권 보호·증진		
주요 내용	•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g)호(가족의 성에 대한 부부의 동일한 권리)에 대한 유보철회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g)호 유보 철회를 위한 관계부처 의견 조화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협약 가입 대비 조속한 국내 이행입법 추진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차별철폐협약 유보 철회를 위한 이행 내용 및 방안은 매우 미흡
- 여성차별철폐협약 외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협약의 유보 조항에 대한 철회를 검토

□ 향후 과제

- 협약 가입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협약 가입 후 국내 입법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의회에 대한 설명과 홍보 필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협력	④ 국제인권조약상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
추진부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 국제인권조약상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 대응 개선		
주요 내용	• 국제인권조약 등 인권 메커니즘에 따른 이행보고서 작성 •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방문조사 대응 • 국제인권조약 관련 국가보고서 작성, 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마련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심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노력과 활동을 소개하는 등 국제협력 강화
- 다양한 관계부처의 참여로 협약위원회의 광범위한 이슈 관련 질의에 우리 정부 입장 적극 개진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특별보고관)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정책 현황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국제인권조약기구 위원회의 권고 중 수용 가능한 사안에 대한 이행을 통해, 차기 심의 준비 필요
- '20년 ~ '21년 COVID-19 상황으로 인해 국가보고서 심의 지연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특별보고관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답변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 인권정책 의지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
- 국제인권조약상 국가보고서 제출 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정례화하여 보고서의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내 인권규범 및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

□ 향후 과제

-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대비
- 「인권정책 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 논의 지원 지속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관련 국내외협력	⑥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조치
추진부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와 국내 인권정책 간의 연계 향상		
주요 내용	- 국가보고서 작성 전후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와 협의 절차 정례화 -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권고 이행 관련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와 협의 강화 -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한 권고 이행점검 강화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한 공식 번역본 발간 및 관보 게재 - 개인진정에 대한 국내 이행방안 검토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인권정책 기본법안」 국회 제출

□ 정책·관행의 변화

국가보고서 작성 전·후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단체와의 소통·협의 절차 정례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다수 협약기구 및 특별절차의 권고사항인 “기업과 인권” 국제규범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발간 -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 관련 학술회의 개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COVID-19 영향으로 시민사회·정부 부처 간의 간담회 등의 개최는 화상회의 또는 서면으로 대체되어 상호 대화를 통한 이행점검 및 협조의 정례화에 어려움이 있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인권정책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국가보고서 작성 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협의절차를 정례화한 것은 해당 부처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다만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국내에서 이행되고 있지 못한 사안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권보장 요구에도 정부는 별다른 입장과 대안을 내어놓고 있지 않음
- 이에 대해 주무부처는 불수용했거나 답변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한 학술연구와 시민사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국제인권기구 권고 중 불이행이나 불수용된 권고들을 별도로 정리하여 관리·점검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향후 과제

- 국제인권기구 권고 중 불이행이나 불수용 권고에 대한 연구·관리 방안 마련
- 개별 인권 영역별 혹은 주제별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분류 및 이행점검 체계 마련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협력	① 국제사회 인권협력 및 역할 강화
추진부처	외교부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
과제목표	- 전 세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상정되는 주제별·국별 결의 참여를 통해 전 세계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통해 타 회원국의 인권증진을 위한 건설적 권고 제시 - 유엔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와 인권’, ‘신기술과 인권’ 등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이슈 적극 추진		
주요 내용	-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적극 참여 - 유엔 총회 3위원회 논의에 지속 적극 참여 -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실무그룹 회의, 여타 부대행사 등에 참여 - 유엔 인권협약 당사국 회의에 성실히 참여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UPR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건설적 역할 수행
- 인권이사회, 총회의 각종 결의에 지속적으로 적극 참여하여 인권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 기반 강화
- ‘신기술과 인권’, ‘지방정부와 인권’ 이슈의 국제사회내 담론 형성 주도
- 분쟁하 성폭력 관련 우리 정부 주도의 ‘여성·평화·안보’ 관련 국제 정례 논의의 장 마련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유엔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와 인권’, ‘신기술과 인권’ 등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이슈를 적극 추진하고 결의를 이끌어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인권정책의 협력을 선도함
- 지속적으로 국내 현안사항과 맞물려 있는 인권정책의 아젠다를 제시하여 국내의 인권상황을 개선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

□ 향후 과제

- 우리 정부 주도로 채택된 ‘지방정부와 인권’, ‘신기술과 인권’ 결의의 국내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 관계부처의 협조하에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 등에서 국제 인권 증진 논의에 지속 참여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협력	② 국제사회 인권협력 및 역할 강화
추진부처	외교부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
과제목표	인권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재정 기여 지속 확대를 통해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증진에 기여		
주요 내용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 협력 강화 및 재정 기여 확대 - 특히 여성, 장애인, 난민, 아동 등 취약계층 인권 증진에 기여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인권, 민주주의 관련 협의회,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협력 기반 강화 - 국제 인권기구에 대한 재정 기여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인권 증진에 기여 - 우리 시민 및 정부의 국제 인권기구 진출을 통해 국제사회 인권 증진에 기여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인권 관련 국제기구의 예산 소요 및 재정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재정 기여를 단기간에 대폭 확대하는 데에는 일정부분 어려움 존재 2020년 이래 COVID-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대면 방식의 협력·협약에 제한

❸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인권정책 의제를 주도하고, 이를 통해 국내의 인권상황을 개선

□ 향후 과제

- 인권기구에 대한 재정 기여 확대를 위한 노력 지속 - 인권, 민주주의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방안 모색 지속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협력	③ 인권기반 공적개발협력 추진
추진부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전략파트너십 본부(현재)	개발의제정책과 사업전략기획실
과제목표	• 인권기반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 환경 조성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인권위험 관리체계 수립		
주요 내용	• 인권 기반 국제개발협력 이행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전략 수립, 사업 심사, 성과평가 등 사업 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을 주요 요소로 검토 • 사업 인권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체계 마련 • 개발협력 차원의 인권 가치 논의 제고를 위한 행사 개최 지원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인권분야 중기 전략('21년 - '25년) 수립하여 3대 인권 프로그램 정의 도출
 - 인권기반 사업발굴 가이드라인을 통해 3대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추진
- 신규 국별협력사업 67개 대상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사업별 인권위험 관리 노력 착수
- 민관협력 파트너 46개 사 대상 인권영향평가 워크숍 실시 ('20년 대비 27개 사 증대)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인권기반 사업 발굴 확대를 위한 현지 정부 및 시민사회 인권인식 개선 및 역량강화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 수립 및 인권영향평가를 통하여 국제개발이 인권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지속적인 정책 확대를 통해 시민사회와 민간 기업 및 타 부처에 전파하는 것이 필요

□ 향후 과제

- 현지 인권기반 사업 발굴 확대를 위해 현지 정부, 국제기구 등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 방안 모색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① 북한인권 증진 방안 추진
추진부처	통일부		북한인권과 북한인권기록센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과제목표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		
주요 내용	-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연도별 집행계획 수립 및 대내·외 협력 추진 - 북한인권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민·관 간 협력 및 UN 등과의 국제협력 지속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북한인권자료 보존기간 관리절차에 관한 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법무부훈령, '20년 10월) 제정

□ 정책·관행의 변화

- 제2차(2020년 ~ 2022년)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년 4월) - 실태조사 및 연구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기반한 사회권 관련 북한인권 연구」 - 국제인권규약에 비추어 본 북한인권 관련 법제연구 - 북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조사 - 북한 발전권의 주요 논의와 과제 - 북한인권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완료('18년 11월) - 북한인권 실무자료집 발간('18년 1월) - 북한인권침해 사건카드 작성매뉴얼 발간('18년 2월)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북한과 남한의 관계는 한반도 내의 민족적·정치적 상황, 국제사회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서로 다른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음.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인정을 받은 바 있고,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로 북한지역에 있는 주민들 역시 한국인으로 인권보장의 책무가 한국 정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제3세계 거주자를 포함한 북한지역의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인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서, 분단 상황이라는 현실 속 북한 지역의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을 설계해야 함. 첫째로 북한주민의 인권보장을 최우선에 둔다면 그 방법은 정치적 논쟁을 떠나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 등 모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가야 함. 북한의 북한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하나, 지원과 협력 역시 동반되어야 북한 지역의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할 수 있을 것임⁵⁵⁾

□ 향후 과제

-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제정된 만큼 현재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력기구, NGO, 교육 협력 등에 참여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 협력
- 남북이산가족(탈북 과정에서 이산가족은 계속 나타나고 있음)이 재회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

55)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2021). 2021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중 서보혁 발제.

<https://www.youtube.com/watch?v=AnMWtL7yqko>. 최종검색일: 2022.8.21.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① 북한인권 증진 방안 추진
추진부처	외교부		인권사회과 대북정책협력과
과제목표	•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에 기여		
주요 내용	•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에 기여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북한 인권 결의 컨센서스 채택 동참 • 북한 3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참여 - 우리 권고사항 : 장애인권리 보호 강화, 미비준 인권협약 비준, 건강권 등 SDGs 달성을 위한 유엔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와의 협력 지속,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북한은 이중 납북자 국군포로 관련 권고를 제외한 4개 권고 수용) •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협력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 협력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북한은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및 여성, 아동, 장애인 등 분야에서 선별적으로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하고 있으나, 북한인권 결의·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 견지 • 2020년 이래 COVID-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대면 방식의 협력·협약에 제한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대화를 기반으로 한 협력 노력은 계속되어야 함. 특히, 이산가족 만남과 교류, 납북자·국군포로, 억류자 등의 문제를 시급함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북한과 한국의 관계, 국제사회에서 특정한 맥락 속에서 북한지역 내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제기구 등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과 협력을 하는 외교부의 역할은 막중함. 이러한 과정은 평화, 통일, 공존에 있어 한국과 북한 주민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통일부, 법무부 등 범 부처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진행되어야 함

□ 향후 과제

- 북한이 협력하고 신뢰하고 있는 국제협력기구, NGO, 교육 협력 등에 참여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 노력
- 남북이산가족(탈북 과정에서 이산가족은 계속 나타나고 있음)이 재회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②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추진부처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 이산가족과
과제목표	-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개발협력을 통한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 이산가족의 지속적인 생사확인, 상봉정례화, 교류제도화 등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의 남북관계 차원의 해결 노력 및 국제사회 공조 강화		
주요 내용	- 민간, 국제사회와 협력하되, 시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을 추진하여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지속으로 상봉행사 개최 및 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 -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노력 및 납북피해자·관련단체 지원을 통한 납북자 문제 해결 도모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19년 10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 기금 지원 횟수 및 규모 확대 * △ 지원횟수 年 1회 → 3회 △ 자체 재원 부담비율 1/2 → 1/3 축소 -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해 「인도지원 처리규정(통일부 고시)」 개정('21년 9월) - 전 지자체 대북지원사업자 일괄 지정, 지방자치단체 기금 지원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 편성 등 - 개정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9년 3월) 피해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 등 납북피해자 가족 지원 확대

□ 정책·관행의 변화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출범('21년 11월) '한반도 보건의료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공동 발표, 감염성·비감염성 질환 대응 협력 등 남북 합의사항 관련 분야별 협력 계획 구체화,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 의결·시행('21년 9월) -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등을 위한 2019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계획 수립('19년 3월)

- 유관국과의 정책공조 및 UN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제재면제 가이드라인 개편('20년 12월)
- 국제학술회의 지원 및 남북 공동참가를 통해 남북한 국제사회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대북지원 관련 반출·방북승인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 인도협력 전담부서 신설,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기능 확대
- 제3차 이산가족 법정 실태조사 실시('21년 4월 ~ 10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WFP 영유아 여성 지원사업 1,000만불 공여
- 대북지원 관련 반출·방북승인,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 등 민간단체 활동 지원
- 대북인도협력사업에서 민간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영상편지 제작('18년 1,500편, '19년 1,010편, '21년 1,004편), 유전자검사('18년 11,245건, '19년 17,390건, '21년 1,020명), 이산가족 기록물 수집·전시('18년 5,500여건), 초청·위로행사('18년 11건), 디지털박물관 운영, 명절 계기 가정방문 및 단체 간담회('19년 6회), 연말 계기 서신발송('19년 1,430여명)등 시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 및 교류 인프라 구축 지속
- 고령·독거·불우 등 이산가족 취약계층 중심 방역물품 집중 지원('20년 3,000명, '21년 2.2천명)
- 국내 화상상봉장 신규 증설(7개소) 및 전체 상봉장(20개소) 기술점검·네트워크 연동 실시
- 이산가족단체 국고보조(연 1억 원) 및 활동 지원
- '20년 전후납북자 피해위로금 미수령자 추가 발굴·지급(7건)
- '21년 전후납북자 보상금 지급 결정(1건), 무주택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3건), 귀환 납북자 사회적응 지원(7명), 납북자단체 국고보조(전시 1억 원, 전후 1.85억 원)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이산가족 사망자 증가 및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대면상봉과 함께 이산가족 교류 방식 다각화 할 필요
- COVID-19 대유행에 따른 인도협력 제약

㉓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산가족 교류·소통 및 상봉에 대한 의지는 계속되어야 함
-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은 강화되어야 함

□ 향후 과제

- 대북정책이 변화되어도 가족이 함께 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을 최우선으로 노력을 지속해야 함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②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추진부처	외교부		대북정책협력과
과제목표	•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 및 지지 확보		
주요 내용	• 정상외교,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 주요 공여국 대상 대북 인도적 지원 외교적 노력 지속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한미 정상회담('21월 5일)에서 양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지속 촉진을 약속, 이후 한미간 각급 협의를 통해 양국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 방안 마련
- 통일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 실효성 제고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유엔아동기금(UNICEF) 및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아동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영양지원 및 의료지원사업 8백만불 공여 과정 참여
-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 및 여성 지원 사업 1,000만불 공여 과정 참여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부처 자체 점검결과)

- 2020-21년 COVID-19 상황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로 국제기구 및 NGOs 국제직원 철수, 인도적 물자 반입 제한 등 대북 인도적 협력 진전에 제약 지속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국제사회와 북한과 협력을 강조하여 북한 지역 내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함
- 통일부와 협력 등 범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외교 정책은 지속되어야 함

□ 향후 과제

- 북한이 신뢰를 가지고 협력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적극적 가담하여 대화 시도, 국제사회의 협력에 있어 선도할 수 있는 한국의 역할 제고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②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과제목표	• 남북 간 보건복지 협력을 통한 한반도 건강공동체 달성		
주요 내용	• 감염병 유입·확산 방지 – 상호 정보교환, 감염병공동대응체계 구축, 기술 협력 등 • 결핵·말라리아 등 주요 감염병 진단·예방치료 협력 강화 • 모자보건 등 보건의료 협력 사업 적극 협의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남북 간 감염병 대응 등 실무적 이행 방안 논의를 위해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 개최
 - 전염병 정보 교환 시범 실시를 포함해 전염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대응체계 구축, 기술협력 등 필요한 대책 수립 추진
 -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 진단·예방치료 협력 강화 → 구체적 협력 방안은 문서 교환 등 통해 협의 추진
 - 포괄적·중장기적 방역·보건의료 협력사업 적극 협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정례 협의
-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 합의에 따라 남측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정보 제공
- 질병청이 통일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감염병 대응분야 남북 합의사항 관련 계획 구체화 및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사전승인 검토 실시
- 남북 간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홍역메르스 등) 발생시 수시 통보 협의, 정보교환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진행
- 동남아 방역·보건 협력체 출범('20년 12월 29일)와 COVID-19 공동대응 역량강화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부처 자체 점검결과)

- 남북·북미관계, 비핵화 등 국제정세 회복 필요
-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18년 11월 7일, 개성) 합의에 따라 남측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정보를 제공 (총 6회)했으나, 북측에서는 정보 제공 無
- 북미 회담('19년 2월 28일) 결렬 및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20년 6월 16일) 이후, 남북 당국 간 협력 답보 상태
- 특히, COVID-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북측의 국경 봉쇄로 인해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추진하던 보건 의료지원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개발 지속과 기후위기로 심화로 인해 COVID-19 외 감염병 확산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감염병 문제는 생명권, 건강권뿐만 아니라, 이동·거주의 자유, 노동권 등 핵심적인 권리와 연결되어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 동북아 국가들과 협력을 통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함.
-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이 COVID-19 방역에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공공의료체계 덕분임. 그럼에도 의료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났음.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난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동북아 지역의 감염병 위기를 대응하는 체계에 있어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여 협력하는 주체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향후 과제

- 북한 및 국제사회에서 소통·협력을 통해 감염병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대응 지속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②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추진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과제목표	•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인도적 지원 추진		
주요 내용	• 북한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 녹화 추진 • 북한의 농업 생산성을 높여 식량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협력 등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한 산림협력 전진기지로 '남북산림협력센터' 공사완료 • 북한 식량난 완화를 위한 농업기술개발 등 추진으로 북한지역 재배 적응 품종 선발 •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한 산림협력 전진기지로 '남북산림협력센터' 조성(고성·과주 완료, 철원 추진 중) – ('19년 7월)양묘장현대화 10개소 UN안보리 제재면제(북 수용 시 즉각 사업추진 가능) • 북한 식량난 완화를 위한 농업기술개발 등 추진으로 북한지역 재배 적응 품종 선발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지점에 산림협력 전진기지 조성 완료 및 특화 대응 가능 – 과주(양묘·조립)·철원(산림병해충·임농복합경영)·고성(산불·산림복원) • 북한기후대에 적합한 벼 품종 선발 등 농업협력을 위한 최적 품종, 재배기술 자료 확보 – (벼) 지역별 적응 품종 선정 : ('20년) 강계 등 6지역 → ('21년) 평양·신의주 등 6지역

□ 정책·관행의 변화

• 2차례 남북산림협력 분과 회담 개최로 남북산림협력 기반 마련 – 제1차 남북 산림협력 분과 회담('18년 7월 4일) 합의 : 양묘장 현대화, 산불공동대응 등 산림조성 보호협력, 접경지역 병해충 공동방제, 산림과학기술협력 등 추진 – 제2차 남북 산림협력 분과 회담('18년 10월 22일) 합의 : 11월에 소나무재선충 방제 약제 제공, 양묘장 현대화, 산불방지 공동 대응, 산사태 예방사업 등 추진 •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한 산림협력 전진기지로 '남북산림협력센터' 조성(고성·과주 완료, 철원 추진 중)

- 양묘·산림병해충 남북공통기술서 개발('20년 10월 31일)
- 북한 산림관련 정보수집 및 반기별 자료집 발간('20년 1월, 7월)
- 북한 산림정보의 수집·분석(1,070건) 및 데이터 축적·공유
- 남북 산림과학 기술체계 정립을 위해 남북공통 기술서 개발('21년 산불, 산사태)
- 북한 기후대 적응 주요 작물(벼, 콩, 옥수수, 맥류) 품종기술보급서 발간
- 북방지역 식량작물의 생산-가공 적합 품종 선발 및 가공기술 개발
- 잡곡의 안정생산기술개발 및 북한 접경지역 주요 해충, 병, 잡초 발생 모니터링
- 남북 간 농업협력을 위한 기초자료 생성을 목적으로 북한의 농업환경에 맞는 작목별 적합 품종 선정과 최적 재배 조건 등 관련 연구사업을 추진
- 북한 기후대 적응 벼 적합 품종 선정(평양 등 6지역) 및 옥수수 저온피해 극복 기술 개발
- 북한지역의 농경지 변화 양상, 작물별 가공적성(벼, 콩, 밀 등) 구명 및 품종별 수량 특성 조사
- 북한농업의 경제성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분석
- * 남북 농업협력 유망품목 채소, 버섯, 풋거름, 견과류 등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약제(50톤) 제공
- 고성·과주 남북협력센터를 통한 인적·물적·기술적 자원 비축 및 철원 센터 신규 조성
- * 종자(36톤)·묘목(3백만본) 비축, 임농복합 시험림 조성(1개소),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 설치(48억 원)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ASF가 발생한 직후 북한에 2차례 협력의사를 전달했으나 현재까지 반응이 없음
-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 추진('19년 6월 ~)하였으나 북측의 무반응으로 사업 종료('20년 12월 1일)
-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 따라 협력 장애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북한에 인도적 접근으로서 식량난 문제를 자력화 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함
- 인도적 접근 방식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여 지원할 수 있는 노력 필요
- 북한이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이하 WFP)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WFP와 협력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 향후 과제

- 북한이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력화 지원 기조 유지
- WFP와 협력하여 북한의 식량 문제 지원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III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① 인권교육 진흥 추진
추진부처	법무부	인권정책국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인권교육을 통해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하고, 보편적인 인권 문화의 형성과 증진에 기여하도록 지식, 기술 및 이해를 제공하고 태도나 행동을 발전시킴으로써 인권침해 예방에 기여		
주요 내용	- 인권교육 관련 국내 법·제도 연구 및 개선 방안 마련 - 인권교육 진흥을 위한 협의 점검 기능 강화 지속 추진 -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자료에 국제인권기준 반영 노력 - 인권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기반 조성 - 지역 단위 인권교육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국회 제출

□ 정책·관행의 변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협의 및 국회 제출 등 절차 진행으로 법안상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단위 내 인권교육의 필요성 등 인식 확산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인권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이 담긴 법안을 국회에 제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자료에 국제인권기준 반영 노력> 이행을 위한 기준 마련과 이에 기반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동이 필요(관련 예산 확보도 필요)
- 지역 단위 인권교육센터의 경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정도가 전부

□ 향후 과제

- 법무부를 비롯하여 이후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 등에서 이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준비하도록 법무부 인권정책국 등에서 지침을 마련해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진행할 필요
- 이를 위하여는 인권교육에 대한 법률적 근거 기반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관련 법안 적극 추진
-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인권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급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현재 개발 중인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결과물 활용
- 지역 단위 인권교육센터, 역량 있는 지자체나 기관의 경우 별도의 인권교육센터 운영도 가능하겠지만 평생학습 관련 체계와 연계해 인권교육을 활성화할 방안을 고려해야 함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①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추진부처	법무부	인권정책국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하고, 인권 존중 문화의 형성과 증진에 기여		
주요 내용	-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교육 강화 -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 번역본 발간 등을 통해 일반 시민의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인식 증진 - 사회적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개최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인권정책기본법안에 기업, 학교 등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근거 포함

□ 정책·관행의 변화

- 국제인권 뉴스레터 발간 정례화 - 뉴스레터 발간을 통하여 일반 시민의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인식 제고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의 경우 대회 참가인원 저조, 종래 대회를 주최하였던 민간단체의 내부 사정 등으로 2018년 이후 개최가 사실상 중단되었고, 사업 재개가 어려운 상황 - 지속되는 COVID-19 상황으로 국제인권조약 심의, 특별보고관 방문 등이 지연되어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내용 미흡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국제인권 뉴스레터 발간 정례화 등을 통하여 일반 시민의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인권 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었음. 다만 현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원인을 분석해 업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인권정책기본법 추진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 인권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근거 확보 - 기업, 아동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연계지점 발굴 필요 - 지자체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주민 인권교육 포함 가이드라인 제공 등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②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추진부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연수과, 스마트교육팀
과제목표	- 원내 통일교육 과정 내 북한 인권 관련 과목을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 인권에 관한 이해도 제고 -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이버 교육을 통해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운영		
주요 내용	- 원내 교육과정에 북한 인권 관련 교육 커리큘럼 포함 - 교육대상자에 맞는 북한 인권 관련 강의,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및 현장견학 등을 통하여 체험적 실상 교육 실시 - 북한이탈주민 전문강사 양성 및 활용을 통해 북한 실상에 대한 정보 전달 ‘북한인권문제’를 주제로 사이버 통일교육 콘텐츠 운영 「북한 인권문제와 향후 과제」 과목 운영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 교육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기존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2년마다 재교육 의무 부과(훈령 개정, '19년 7월)

□ 정책·관행의 변화

- 통일 교육을 통해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부처 제출 성과) - 특히, 북한 실상을 그대로 이해하면서 북한을 경계의 대상이지만 통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의 상대로 인식하는 ‘균형 있는 북한관’이라는 통일 교육의 목표 설정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COVID-19 상황 대응 온·오프라인 병행수업 및 비대면 교육 실시로 교육인원 수 회복 * '18년 원내 통일교육 : 교원, 공직자, 사회단체 등 대상 6,203명 교육 * '19년 원내 통일교육 : 교원, 공직자, 사회단체 등 대상 6,976명 교육

- * '20년 원내 통일교육 : '20년 2,678명 교육(코로나로 인한 교육수요 감소)
- * '21년 원내 통일교육 : '21년 5,016명 교육(온·오프라인 병행수업 및 비대면 교육 실시)
- 사이버 통일교육 운영 및 북한인권 관련 과목 콘텐츠 개선(2020년)
- * 2018년 2월~12월(총 11기 운영) / 2019년 2월~12월(총 11기 운영) / 2020년 2월~8월(총 11기 운영) / 2021년 2월~12월(총 11기 운영)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에 한계
- 사이버 통일교육 운영 특성상, 주요 교육생이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직원 등이며, 일반인 사이버교육 이수자 수는 적은 실정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인권교육으로서 의미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권의 가치와 원칙 안에서 북한인권과 통일을 바라볼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필요

☐ 향후 과제

- 북한이탈주민을 도움이 필요한 시민으로 구분 짓는 방식의 교육 콘텐츠는 없는지 등 교육콘텐츠에 대한 인권적 점검과 개선 필요
- 지역사회에서의 관계망 부족의 문제를 도울 수 있도록 기존 주민과의 관계 형성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도 고려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①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추진부처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과제목표	인권 친화적 교과용도서 개발 및 수정 보완 체제 구축 운영 ⇒ 인권 친화적 교과용도서 개발 및 교과서 질 관리 강화(2019년 변경)		
주요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수정요청 의견('17년 ~ '18년)*에 관한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추진 * 인권관점으로 본 표현·사진 삽화의 인권친화성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대조표 등 승인 사항 안내* 등 대시민 시스템 체제 정비 ⇒ (2021년 수정) 인권·양성평등분야 적정성, 학년·교과 간 연계성, 표기·표현 오류 등 교과용도서 점검 및 수정 권고 *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및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시스템 연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 인권친화적인 교과용도서 개발 완료, 교과용도서 품질 관리를 위한 인권위·여가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및 수정·보완 체제 구축 완료(2018년)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인권친화적인 교과용도서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인권위-여가부-교육부 협력체계 구축 - 교과용도서 개발-사용 단계에서의 인권친화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재 마련 및 운영 * 개발단계에서 인권관련 편찬준거 마련, 개발·수정보완 단계에서 인권 검토 요소 마련 및 현장교원 중심의 교과서모니터링, 수정·보완 온라인시스템(www.textbook.or.kr) 구축 등

□ 정책·관행의 변화

- 교과용도서 개발-사용에 있어 최소한의 인권적 기준 확산 - 인권친화적 교과용 도서 개발 및 관리를 통한 양성평등·인권 대시민 인식 제고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교과용도서 수정 보완 승인 사항 대시민 안내 시스템 구축
-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을 위한 편찬준거 및 지침 마련
- 인권 친화적인 교과서 수정·보완 추진
 - － (개요) 교과서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교과서 수정·보완
 - － (모니터링 대상) 2015개정 교과용도서 총 533권('18년 143권, '19년 178권, '20년 181권, '21년 131권)
 - － (모니터링 내용) '양성평등·인권분야 교과서 검토 기준'에 따른 교과서 내용, 사진·삽화
 - － (수정·보완 권고) 총 6,570건 수정·보완 권고('18년 1,743건, '19년 2,713건, '20년 1,222건, '21년 892건)
 - － (수정·보완 반영) 총 448건 반영('18년 173건, '19년 238건, '20년 37건)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개선 추진 등의 성과
- 기초적인 콘텐츠 점검의 단계가 적실하게 이행됨
-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 함께 나타남

□ 향후 과제

- 다음 단계로 지금까지와 같은 단편적인 요소 외에 인권의 가치와 원칙을 왜곡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점검(예를 들어 사람을 쓸모와 연결한거나, 모든 인권의 문제를 개인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등의 내용) 추가 필요
- 나아가 적극적으로 인권 보장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②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추진
추진부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과제목표	- 교(원)장 자격연수 시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내용 포함 - 교원·예비교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주요 내용	- 교(원)장 자격연수 시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내용 포함 - 시·도교육청에 자격연수교육과정 및 직무연수과정에 인권교육 관련 내용 포함 요청 - 교원·예비교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 교원에 대한 양성평등 의식 교육 강화 및 성인지 교육 의무화 -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예비교원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매년 시행되는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수립 및 안내 - 교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과정에 인권교육 관련 내용 포함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1년 2월)을 통해 교원자격 취득 시 성인지 교육 의무화

□ 정책·관행의 변화

- 매년 시행되는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수립에 인권교육 관련 사항 포함 - 교원 및 예비교원에 대한 인권, 성인지 교육 등 확산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인권교육 내용 포함된 교원 연수과정 이수 인원 ('18년) 자료 없음 ('19년) 이수인원 총 2,466명(교원대 2,151명, 서울대 176명, 서울교대 139명) ('20년) 이수인원 총 2,494명(교원대 2,155명, 서울대 164명, 서울교대 175명)

- ('21년)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장 연수 참여인원 2,769명
- 교원양성기관 인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실시
 - ('19년) 교원양성기관(294개교 3,089개 학과)의 98.9%(291개교)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20년) 교원양성기관의 76.45%(198개교)가 양성평등, 인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18.5%(48개교)가 해당 교육 실시 계획 수립
 - ('21년)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1년 2월)을 통해 교원자격 취득 시 성인지교육 의무화 및 성인지 교육자료 보급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20년까지는 예비 교원에 대한 점검 중심으로 제시되는 한계가 있음 : 물론 예비교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함. 특히 신규 교사들의 경우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도 적지 않음
- 이미 별도의 법률상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다른 교육에 인권교육을 묶어 이행하거나 점검하면서 인권교육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당초 이 과제를 설정한 배경이 이러한 과제 내용을 염두에 둔 것이었는지 다소 의문임. 전체 인권보장체계 구조에서 볼 때 이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학생인권 보장 현실화)등의 목표를 뒷받침하는 과제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과업내용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었다고 보임

□ 향후 과제

- 현재 교육부에서 개발하여 각 교육청 단위로 배포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수과정이 적극적으로 운영,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 민주시민교육과와 협업 필요
- 예비교원, 교원(장)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모두 점검할 필요 : 예비교원의 경우 신입교사 전반이 인권교육 과정을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인권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학교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 상황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원하는 등 교권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
- 인권정책기본법 통과 등 인권교육 법제화에 대응한 인권교육 실질화 준비 필요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③ 일반학교의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강화
추진부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과제목표	장애이해(인권)교육 추진 강화를 통한 일반학교 장애공감문화 조성		
주요 내용	- 일반학교 장애이해(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식 개선 및 인권 감수성 향상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영역별 특성, 에티켓, 교우관계 형성 등을 포함한 장애이해(인권)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장애체험활동, 관련 행사 참여 등 체험중심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실시 확대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 학교(급)별 교육과정, 발달단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관련 교육과 행사의 연례화 정착 - 이를 통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 기대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학교(급)별 교육과정, 발달 단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장애공감문화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18년) 초등학교 → (‘19년) 중학교 → (‘20년) 고등학교 → (‘21년) 유치원 - 유·초·중·고등학교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이행률 증가 (‘17년) 83.1% → (‘18년) 89.1% → (‘19년) 90.4% → (‘20년) 91.7% → (‘21년) 91.7%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해당 없음

㉓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3차 NAP상 과제 내용 –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장애 유형별 이해, 에티켓, 교우관계 형성 등을 내용으로 장애이해교육/‘장애인의 날’ 장애이해 ‘대한민국 1교시’ 수업/장애이해 드라마 활용 장애인식 개선 교육
- 계획했던 내용의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
- 다만 장애 유형별 이해에 대하여는 현장 콘텐츠를 모두 확인할 수 없어 평가 불가
⇒ 이후에는 교육 기획 시(교육 전)와 교육 진행 후 관련 항목을 체크하면서 진행하는 방법 검토

□ 향후 과제

-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교육 콘텐츠는 아닌지에 대한 점검 필요
- 위 내용과 장애 유형별 이해 항목 등을 담은 장애인권교육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장애 유형의 경우 학생 중심으로 차시별로는 다양한 장애 유형 전반을 접할 수 있는 설계 필요)
- 학생 참여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홍보하는 후속 프로그램 제안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④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추진부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과제목표	• 인권관련 교육과정 운영을 유도함으로써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주요 내용	• 인권관련 교육과정 운영 유도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대학에 안내하여 대학 내 인권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설 유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비고	• 대학의 교육과정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대학 내에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제19조의3, '21년 6월 23일 시행)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학생대상 연1회 1시간 이상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의무실시 및 학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시행

□ 정책·관행의 변화

• 각 대학에서 소속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법이 정한 한계 내에서 대학에서 학칙으로 규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항이므로, 대학의 자발적인 협조 유도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3차 NAP상 과제 내용 - 1) 인권관련 학과개설 유도(‘대학알리미’ 시스템, 책자 배부 등을 통해 전국 대학에 대한 학과, 학생정원 정보 제공 /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을 통한 인권관련 학과개설 유도) 2) 인권관련 교육과정 운영 유도(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대학에 안내하여 대학 내 인권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설 유도)
- 이와 같은 과제 내용으로 보건대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로 본 과제가 완료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대학마다의 사정에 따라 센터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예산과 교육 참여자 모집 등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인권교육 실시가 순탄하지 않은 상황임(국가인권위원회, 2020).

□ 향후 과제

- 예산과 적정한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인권교육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대학 등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2022년 추진된 대학인권센터 시범사업 지원 프로그램 중 인권교육 관련 부분 결과물을 전체 대학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인권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
- 나아가 2023년 대학인권센터 지원사업 선정 시 전체 대학 인권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 단계에서부터 설계할 필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추진부처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과제목표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활성화		
주요 내용	- 인권 관련 교육과정 강화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기반 조성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 개정 추진 : 용모,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 등 예시 규정을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개정('20년 2월)
-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 개정('22년 예정)

□ 정책·관행의 변화

- 교원 인권 연수 과정 정착을 위한 토대 마련(프로그램 개발)
- 기숙사 운영 인권실태 점검으로 기숙사 운영에 있어 인권적 관점 필요성 환기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17개 시도교육청 공동 학교구성원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17개 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에 배포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학교 내 인권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먼저 교사들이 인권을 익히고 내재화하여 학생들과의

생활 자체가 인권적으로 개선되도록 지원할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교사들이 교과과정 등을 통하여 녹여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 학생지도를 위한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운영 지침이 핵심적인 만큼 이에 대한 정책 추진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학교규칙은 학생에 대한 통제규범이 아닌 헌법과 법률 등(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등)에 의하여 보장된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들을 실현해 나가는 절차와 방법, 학교 구성원으로서 사명(duty) 등을 규정하는 것이라는 학교규칙의 역할과 의미를 담은 매뉴얼 개정이 필요함.
-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인권교육 시수나 확대 및 인권교과 마련 등의 과제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는 학교라는 공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학생의 성장 지원이라는 점에서 그 주체인 학생들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학생자치권의 보장이 필수적임. 교육부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학생자치와 관련한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평가됨. 이에 그 정책적 기반이 현장에서 형식화되어 운영되지 않도록 실질적 확산을 위한 법제화 등 다음 단계의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시점임
- 학교 현장에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이는 학생 자치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관련 법제의 부실에도 기인함. 이에 학생자치권 보장의 실질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교육부의 적극적 노력 필요함

□ 향후 과제

-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학생 인권보호 및 권리신장 중장기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에 기반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이 세부과제로 제시될 필요
- 학생자치를 통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위해 학생자치회 등을 통한 결정이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지역 구분 없이 학생의 자치활동 최대 보장 원칙이 일반화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학생 자치활동 지원과 보장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세부사업 추진 필요
 - 1) 교육부가 진행 중인 학교규칙(학교생활규정) 운영 매뉴얼 개정 결과물이 전국 교육청을 통하여 위와 같은 매뉴얼과 기본 원칙의 일부로 작동할 수 있는 확산 전략 수립 필요
 - 2) 학생인권법 또는 아동·청소년 인권법의 제정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
- 학생의 학교 내 정치활동 및 의사표현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선정과 추진 필요 :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2조 등에 의해 학교 교육은 민주시민 양성에 그 기본적 목표가 있음.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 1)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 교육 활성화 2) 학생 모의선거 제도 운영을 통한 민주주의 시민성 강화 등의 정책사업을 추진할 필요
- 교원 인권연수 과정의 체계화, 지속화 필요(기존 연수과정의 일회성, 체계성 부족의 한계 극복)
-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보장되는 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자와 보호자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추진 필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① 사회적 소수자 인권 교육 지속
추진부처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과제목표	경찰 활동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차별이나 부적절한 언행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사전 예방		
주요 내용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의 활성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경찰인권행동강령 제작과 이에 대한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및 운영

□ 정책·관행의 변화

- 경찰인권행동강령 제작과 이에 대한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및 운영 -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인권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운영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소수자 관련 사이버 인권교육 이수자 확대 ‘감염인의 이해’ : (‘18년 ~ ‘19년) 6만명, (‘20년) 6만명, (‘21년) 6만 2천명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基소수자의 이해) : (‘18년 ~ ‘19년) 10만명, (‘20년) 5만명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 (‘18년 ~ ‘19년) 12만명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 (‘18년 ~ ‘19년) 8만명 ‘인권의식 경찰정신 함양을 위한 인성, 소양’ : (‘21년) 6강좌-합 13만여명 이수 - 여성,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 주제 경찰관서별 직장 인권교육 확대 : (‘18년) 30회 이상, (‘19년) 90회 이상, (‘20년) 100회 이상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과제 추진 후 다양한 여론 및 사회적 기관 등 의견에 대한 대응 어려움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인된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의 표준교재 부재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3차 NAP 과업 내용 - 교육 콘텐츠 및 강의 인력풀 확보 :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해 교육 기반 마련 지속 노력 / ‘성소수자의 이해’를 주제로 사이버 강좌 제작(’17년 12월), ‘병력자(감염인)의 이해’를 주제로 추가 강좌 제작 예정 / 각종 직무 매뉴얼과 지침 등에 사회적 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례, 언론보도 사례 등을 교육자료로 제작·배포 / 각 지역별로 강의 가능한 인력풀을 구성, 경찰관서별 인권교육 시간 등을 통해 활용하도록 안내
※ 강좌 이수율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수강 유도
-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이 모두 진행됨. 특히 경찰관 인권행동강령과 그 해설서 제작과 배포, 경찰관을 위한 인권교육 기본서, 포켓북 제작 등 자체 기본적인 인권업무 매뉴얼과 관련한 경찰 맞춤형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짐

□ 향후 과제

- 지속적인 경찰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내용의 인권교육으로서의 적합성 점검과 업데이트 작업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 중인 공무원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② 국가·지방 공무원 인권교육
추진부처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과제목표	- 국가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사회 내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 지방공무원 인권교육을 통해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 및 인권 의식 제고		
주요 내용	- 국가 공무원 인권교육 - 매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 작성·통보 시 인권교육 관련 내용 포함 - 각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 실시 -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 종합평가 시 인권교육 실시 여부 평가 - 지방공무원 인권교육 - 연도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계획」 수립 시 인권 교육 실시 권고 - 인권 감수성 및 인권의식 제고 교육, 다문화 이해 등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권의식 함양 - 연도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평가」 시 인권 관련 교육 실시 실적 평가 - 국정과제 및 주요시책 교육 일환으로 인권교육 과정 개설 및 교과목 반영 여부 평가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인권기본조례에 소속 직원 인권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 인권정책기본법안의 내용에도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를 규정함.

□ 정책·관행의 변화

- 최일선 민원 응대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통한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 외국인주민 증가 등에 따른 다문화사회 인권 이해 향상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증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인권 관련 자체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어려움
- ※ 관계부서의 교육 가이드 및 표준자료 제공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과업 내용 중 대부분이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지침과 평가로 진행됨
- 하지만 『행정 분야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적지 않은 국가기관에서 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20)
-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의하면 광역지자체별 공무원 인권교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국가인권위원회, 2021)
- 당초 과업내용 중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교육이수 의무화시간 상향 조정에 대한 내용은 부처 제출 자료만으로는 진행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 향후 과제

- 인권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분석과 필요한 지원체계 마련
- 인권교육에 대한 법률적 근거 규정 확보 필요 : 인권교육기본법 또는 인권정책기본법 등 개정 추진 필요
- 공직자 인권교육으로서 부합하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견인할 체계 마련 필요 : 2022년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결과물을 참조하여 공무원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 부처와 지자체에 공유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사전 체크리스트 역할 및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 1) 매해 실시하는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 작성·통보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계획 통보 시 공직자 인권교육 가이드라인을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
 - 2)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평가 시 기존의 개별 법률상 의무교육 이외 직무에 필요한 인권교육 과정 운영 여부가 평가되도록 평가지표 설정할 필요
- 각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할 필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③ 법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추진부처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과제목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 확립과 실시로 경찰관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시민으로부터 공감받는 경찰상 정립과 기본적 인권의 보호 수준 향상		
주요 내용	- 체계적 교육 진행을 위한 교육기반 마련 확대 - 경찰관의 업무 특성에 맞는 인권 교육의 실시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경찰 인권보호 규칙」 개정, 경찰 인권교육 기본계획과 수립과 이행
- 법무 행정공무원 인권강사단 구성 및 운영

□ 정책·관행의 변화

-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은 각각 고용노동부, 경찰청에서 지정 운영하는 사항으로, 동 보호담당관 대상 인권교육은 관계부처의 협조 체계 구축
- 법무행정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시행으로 법집행 공무원의 인권의식 제고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지역별 경찰관 인권교육 확산
 - 지방청 교육학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18년) 43회/1,055명, ('19년)47회/1,064명)
 - 경찰인재개발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18년 - '19년) 14회/약 350명), '인권역량 강화과정'('18년 - '19년) 6회/약 120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예산,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 및 양적 확대의 한계/인권교육 전담 보직의 부재로 인한 중장기적 경찰 인권교육 기획의 어려움 / 한정된 교육시간에 비해 추가로 요구되는 다양한 교육(법무지식, 무도, 직무교육 등)이 많아 인권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
- COVID-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교육 제한적 시행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현장에서 인권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현장 경찰관의 인권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경찰청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2021년 8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있었고, 경찰청에서는 2022년 2월 9일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인권교육 의무화 및 강화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임. 경찰인권보호규칙에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대상과 시간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도 담을 계획임. 특히 외부 전문기관을 포함해 경찰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교육체계와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강사 양성 및 교육 결과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임. 피해자 인권 포털인 ‘케어’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 인권교육 계획·결과를 등록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권고를 수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⁵⁶⁾
- 이후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경찰청에 2022년 6월 22일 경찰 인권교육 실질화를 위하여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인권교육의 근거규정 마련 2) 「경찰 교육·훈련계획」에 인권교육 필수적 반영 3) 총괄 조정하는 인권교육 전담부서 설치, 교육운영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인권교육 예산의 획기적인 확충 4) 경찰 인권교육 설계·운영·평가 전반에 외부 인권 전문가의 연구 및 자문 확대 등을 권고함⁵⁷⁾
- 위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조직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 맞춰 그 인권의식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기인하는 것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마련되어 이행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경찰 인권교육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 계획 이행
- 수사권 조정 이후 사회 기대 수준과 내부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경찰 인권교육의 내실화 필요,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에 이어 도출된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 이행 필요
 -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인권교육의 근거규정 마련
 - 2) 「경찰 교육·훈련계획」에 인권교육 필수적 반영
 - 3) 총괄 조정하는 인권교육 전담부서를 설치와 교육운영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 4) 적절한 인권교육 예산 확충
 - 5) 경찰 인권교육 설계·운영·평가 전반에 외부 인권 전문가의 연구 및 자문 확대 : 경찰 인권교육협의회
- 인권교육 운영 사항 점검(교육 내용과 방법 등 모니터링 필요) - 공직자 인권교육 가이드라인과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 개발 중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활용

56)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2.2.9.) “경찰청,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제도개선 권고 수용”

<https://vo.la/rPyjRL> 최종검색일 2022. 8. 23.

57) “경찰 인권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경찰청 홈페이지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105&q_bbscttSn=20220622133141926&q_tab=4
최종검색일 2022. 8. 23.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③ 법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추진부처	통일부		정착지원과
과제목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보호담당관 대상 인권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의식 함양 및 인식개선 제고		
주요 내용	-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 및 인권교육 지속 추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보호담당관 인권교육 실시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은 각각 고용노동부, 경찰청에서 지정 운영하는 사항으로, 동 보호담당관 대상 인권교육은 관계부처의 협조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보임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연간 신변보호담당관인 경찰관 900명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 2022년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 과정 운영(인권교육 내용 포함)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의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 대상 인권교육은 관계부처의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하여 실효적 인권교육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다만 관련 콘텐츠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적 관점을 훈련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 점검하여 인권교육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에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목표에 기여해야 함

□ 향후 과제

- 교육콘텐츠에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에 접근할 필요
 - 위 교육프로그램의 콘텐츠 구성 시 ‘도움을 받는/도움을 주는’ 구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본다거나, 보호의 명목으로 수동적이고 ‘착한’ 시민으로 다가간 나머지 북한이탈주민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잠재력을 제한할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③ 법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추진부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
과제목표	• 법무행정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침해 사전예방		
주요 내용	• 법무행정 공무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편성 - 직렬 특성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권교육 지원체계 수립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법무 행정공무원 인권 강사단 구성 및 운영

□ 정책·관행의 변화

• 법무행정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시행으로 법집행 공무원의 인권의식 제고 • 내부 인권강사단 운영 • 『법무 행정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진행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총 54명의 내부 강사단 배출 • 인권감수성 훈련 과정 참여인원 : '18년 (22회/570명), '19년 (23회/566명), '21년 (7회/128명) • 외부 인권강사에 의한 기관방문 인권교육(찾아가는 인권교육) 참여인원 : '18년 (58회, 3,327명), '19년 (49회, 2591명), '20년 (22회/832명), '21년(6회/247명) • 1:1 맞춤형 · 체험형 인권프로그램 : '18년 (24회, 343명) → '19년(24회, 295명) → '20년 미시행 →(14회, 139명) • 보호직, 교정직 인권심리상담과정('21년) : 보호 4회/81명, 출입국 2회/166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COVID-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교육 제한적 시행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법무행정공무원의 경우 각각의 직무가 가지는 인권적 의미에 맞는 인권교육 콘텐츠 준비를 통하여 기존 내부강사단의 역량증진과 인권교육 현장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직무 인권교육으로 적합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 단계로 『법무 행정 공무원 대상 인권 교육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진행
- 현재 이행점검 자료에 검찰청 내부 인권교육 실행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음. 향후 검찰청 자체 인권교육 실행 결과도 함께 점검될 수 있도록 검찰청 협조 필요
- 전체 법무행정 공무원 규모와 그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현재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예산이 지나치게 적은 규모임. 이는 교육운영을 요식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임.
- 현재 내부 강사단의 강의활동에 대한 사례 지급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에서 직원의 인권 강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있는 등의 어려움이 있음(법무부, 2021)

□ 향후 과제

- 전체 직원 인권교육에 필요한 적절한 인권교육 예산 확보
- 기존 법무행정 공무원 인권교육 내실화 및 교육수요자 적극 참여 유도형 교육콘텐츠 개발
- 직무별 공직자 인권교육 가이드라인과 프로그램 개발해 활용 : 국가인권위원회 개발 중인 공무원 인권 교육 프로그램 활용
- 직무자별 상황과 조건에 맞는 인권교육 추진을 통한 교육의 내실화 확보
 - 1) 감염병 상황이라는 제한적 상황이 극복되는 대로 전폭적인 대면교육 지원체계가 자리잡을 필요
 - 2) 사이버강좌로 지원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그 콘텐츠의 적절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점검체계의 마련과 운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업무와 병행하면서 형식적으로 수강해 교육 효과가 저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필요
- 인권의 가치와 원칙을 현장에 맞게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인권전문가에 의한 교육과 더불어 동료 강사에 의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교육이 효과적인 만큼, 내부 강사단의 인권강의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법무부, 2021)
- 검찰청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직원 인권교육에 대한 이행점검 협조체계 구축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④ 군 장병 인권교육
추진부처	국방부		인권과
과제목표	- 지휘관 및 간부의 인권 친화적인 리더십 함양을 통한 장병 인권이 존중받는 병영문화 조성 - 인권교관 교수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장병 인권교육 내실화 - 군 인권업무 종사자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권 감수성 향상 - 군간부 및 국방부 공무원 대상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을 통한 군 인권 공감대 확산 - 다양한 맞춤형 교육용 교보재 제작을 통한 군 인권에 대한 관심 유발		
주요내용	- 장군단 및 장군진급 선발자 등 지휘관 인권교육과정 운영 - 부대 인권교관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수사, 의료, 상담, 교정, 인권모니터단, 법무 등 군 인권업무 종사자 교육과정 운영 - 국방부 공무원 및 군 간부 대상 온라인플랫폼 운영 - 밀레니얼 세대 장병 취향을 고려한 인권 교육용 동영상, 책자 등 제작·배포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군 인권교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화한 「군 인권업무 훈령」을 제정 및 개정

□ 정책·관행의 변화

- 장군(진급자) 및 연·대대장 등 지휘관 인권교육 실시
- 외부 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
- 코로나19 상황 고려 소집교육 제한에 따른 비대면 사이버교육 활성화
- 부대 인권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인권교관의 인권 관련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교재·교안 등 제작
- 군 인권교육 발전방안 도출을 위하여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및 각 군과의 협업강화
- 시민사회 의견 수렴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국방 인권교육 간담회」 및 국방 인권교육 협의회 개최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지휘관급 간부 인권의식 향상으로 부대 내 인권교육 분위기 조성 : '18년 수료자 1,340명(연15회), '19년 수료자 760명(연15회), '20년 수료자 934명(연7회), '21년 수료자 3145명(연35회)
- 인권교관 역량강화 교육 중점 추진
 - '18년 수료자 698명(연11회), '19년 수료자 687명(연14회), '20년 수료자 98명(연3회), '21년 수료자 580명(연15회)
- 인권업무 종사자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실시
 - '18년 수료자 220명(연6회), '19년 수료자 242명(연8회), '20년 수료자 22명(연1회), '21년 수료자 239명(연9회-훈육업무 종사자 교육과정 최초 시범운영(2회/23명) 등 총 9회 시행)
- 군 간부 대상 사이버 인권교육 활성화
 - '18년 수료자 6,268명, '19년 수료자 6,878명, '20년 수료자 20,744명, '21년 59,878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COVID-19 장기화에 따른 외부강사 초빙교육 등 부대 인권교육 실시 횟수 축소
 - 소집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교육 콘텐츠 제공 추진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장군(진급자) 및 연·대대장 등 지휘관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 친화적인 리더십 함양, 부대 인권교관, 군 인권업무 종사자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인권 보호 의식 강화
- 연도별 이행점검 진행 경과를 보면 과정의 미비, 교육 수료 증대 등의 어려움이나 상황 변화에 맞춘 인권교육 체계 마련과 인프라 확대 등이 진행되는 발전 방향이 드러남

□ 향후 과제

- 군 내 전면적인 인권교육을 위하여 마련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기 위해선 적절한 인권 교육 콘텐츠와 이를 현장에서 펼쳐낼 수 있는 인적 역량 모두가 필요
- 이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 중인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결과물을 기반으로 인권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할 필요(영상으로 제작해 직간접 교육자료로 활용 등)
- 현재 진행 중인 군 인권교관 역량강화 과정 내용 자체가 정확한 인권의 가치와 원칙을 적절히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과정의 설계와 운영의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기적인 역량강화 지원 체계를 운영할 필요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⑤ 변호사 인권교육
추진부처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과제목표	• 변호사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 제고		
주요 내용	• 변호사 연수과정에서 윤리교육 강화 - 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과정, 변호사 의무연수과정에서 윤리교육 지원 •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변호사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 방안 검토 *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운영위원회」, 「법조윤리협의회」 등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 과정 ‘변호사의 역할과 윤리’ 과목 1학점 부여

□ 정책·관행의 변화

-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 과정 ‘변호사의 역할과 윤리’ 과목 운영
- 변호사 법조윤리 교육 및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현재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과정에서 법조윤리과목을 법조윤리시험과의 중복 및 연수 변호사들로부터의 낮은 선호도를 이유로 축소하자는 의견임

❸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3차 NAP 과업 내용 - 「변호사법」개정으로 변호사에 대한 인권교육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정비 및 대한변협과 협의하여 인권교육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 현재 점검된 결과에 의하면 변호사에 대한 윤리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3차 NAP에서 계획한 인권의 가치와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향후 과제

- 현재 사회 전반 분야에 인권의 제도와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 인권 관련 주요 전문가로 변호사들이 소환되고 있는 실정임
- 변호사들이 인권의 문제를 법적 테두리 내에 가두어 사회 내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호사들의 인권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임
- 현재 윤리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인권교육의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⑥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 인권교육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지역인권과 아동권리과
과제목표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복지 대상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 방지		
주요 내용	-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권교육 실시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및 시설보호아동의 진정권 보장 강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및 시설보호아동의 진정권 보장 강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집합교육 : 1,778명 교육수료, 사이버교육 : 432,818명 교육수료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COVID-19 상황으로 인한 집합교육 횟수 감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다양한 사회적 약자별 인권교육 콘텐츠와 강좌 마련을 통해 다각적인 인권교육 사업을 전개함
- 사이버 강좌 콘텐츠 내용 강화 및 사이버 교육 수강 환경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사이버 강좌를 통한 교육 수강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 인권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이버 강좌 콘텐츠의 다양화와 더불어 인권과의 적합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함
 - 나아가 업무를 병행하면서 틀어놓기만 하는 식의 교육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원인을 파악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국가인권위원회, 2020)

□ 향후 과제

- 분야별 콘텐츠의 다양화 및 인권적 적합성 점검과 제고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2년 추진 중인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사회복지 공무원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어 있음. 그 결과물을 활용한 콘텐츠 구성 및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사이버 교육 수강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을 통해 실질적 교육 이수 견인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⑦ 사회적 약자 및 보호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권익보호과
과제목표	사회적 약자 및 보호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의식 및 전문성 확보		
주요내용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이전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 차원의 사업이 2019년부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됨

□ 정책·관행의 변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보수교육 실시
-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대상 상담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관련 기관 종사자 중 다음과 같은 인원이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음
(18년) 2회, 총 56명/ (19년) 1회, 1박 2일, 총 96명/ (20년) 1일, 5차, 148명/ (21년) 5회, 137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 제시한 과업 내용 -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대상 상담을 위한 인권교육,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원 교육 훈련 이수 지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대상 경력별·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종사자의 인권의식 및 전문성 제고
- 현재 이행 상황을 보면 당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 제시했던 내용과 관련한 교육이 진행된 것으로 보임. 다만 다른 시스템에서 진행되는 교육(예들 들어 윤리교육 등)과 변별화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1) 인권교육이라고 보기 어려운 교육에 인권교육을 결합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2) 이주민의 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이에 대응한 미시적, 거시적 대안을 제시하는 인권교육으로 구성되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관련 기관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해당 업무자에 필요한 인권교육 내용 관련 가이드라인과 지침 등 구성해 제공할 필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⑦ 사회적 약자 및 보호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노인정책과 아동권리과
과제목표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 대상별 맞춤형 노인인권교육 강화 - 시군구 드림스타트 실무자 교육		
주요내용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인식개선 및 학대 신고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보급 -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노인복지법」 개정('18년 4월 25일시행)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18년 9월 14일 시행)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진행 - 아동관련 종사자 대상 아동 권리 교육 지속적 실시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장애인복지법 개정 - 장애인복지법 개정('20년 12월 29일 공포)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결과 제출 의무화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한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노인복지법」 개정('18년 4월 25일시행)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18년 9월 14일 시행)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무화 이후 교육 지속 추진

□ 정책·관행의 변화

- 연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및 배포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노인인권교육 실시 -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대상 강사양성 기초 및 보수 교육 과정을 통한 인권교육 인프라 확대, 전문성

향상 도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플랫폼(15771389.or.kr) 운영
- 드림스타트 종사자 아동 권리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병행 실시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노인인권교육 실시 : 86,702명('19년 1 ~ 12월), 6,203명('20년 1 ~ 12월)
- 노인인권교육 강사양성 기초교육 및 보수교육 운영 : 기초교육 총 5회, 221명 양성('19년 3월 ~ '20년 12월), 보수교육 총 3회, 168명 수료('19년 12월 ~ '20년 12월)
- 드림스타트 종사자 직무교육 시 아동 인권(권리) 교육 실시 : 드림스타트 실무자 신규 교육 : 총 12차 460명 교육 실시('18년 2 ~ 12월), 드림스타트 실무자 전문화 교육 : 총 36차 1,222명 교육 실시('18년 2 ~ 12월), 드림스타트 경력 팀장 및 경력 전담공무원 교육 : 총 7차 226명 교육 실시('19년 4 ~ 10월),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전문화 교육 : 총 10차 411명 교육 실시('19년 3 ~ 12월),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기본교육 : 총 5차 221명 교육 실시('20년 9 ~ 11월)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부처 자체 점검결과)

- COVID-19 로 인한 관련 인권교육 등 진행이 어려워 교육 이수율 감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연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및 배포, 장애인학대지표 개발 연구 및 활용방안 모색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노인 인권 보호 제고
-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대상 강사양성 기초 및 보수 교육 과정을 통한 인권교육 인프라 확대, 전문성 향상 도모 : 인권교육이 제도화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것임. 반면 제도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권교육 체계와 교육 역량이 함께 준비되어야 인권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관련 분야 인권강사 양성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는 점은 고무적임
 - 다만 단순히 학대예방이나 인권침해예방 가이드라인을 전달하다 보면 당사자인 노인을 인권의 주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시혜나 동정의 대상 심지어는 불편한 동료시민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양성과정 내에서 인권의 가치와 원칙을 철저하게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플랫폼(15771389.or.kr) 운영으로 신고의무자 및 대시민 인식개선 도모
- 아동 권리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병행 실시에 따른 아동 인권보호 제고

□ 향후 과제

- 각 분야 인권교육 콘텐츠 등의 내용적 적합성 등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 추진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사회복지(아동, 장애, 노인) 공무원 및 해당 교육 교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될 예정이므로, 1) 각 분야 인권교육 적합성 점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2) 해당 분야 인권교육 콘텐츠 구성에 참조 3) 관련 인권강사 양성 프로그램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임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추진부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제목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등 대상 인권교육 및 권리포럼 개최를 통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적극적 이행		
주요내용	- 아동권리포럼(유엔아동권리협약 30주년 기념포럼)개최를 통한 권리인식 개선 및 교육 - 국회, 정부, 아동인권관련 민간기관이 함께 개최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적극적 이행을 위한 포럼을 통하여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아동에 대한 권리 인식 확산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심의 진행

□ 정책·관행의 변화

- 아동권리교육·포럼개최, 아동 관련 NGO 협력 등을 통한 아동권리 홍보 추진 - 아동관련 업무자 대상 아동권리교육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심의 진행 및 제7차 국가보고서 작성 준비 등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아동의 관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의 양·질적 확대 및 개선 필요 : 아동, 양육자(부모 등)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할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당초 제3차 NAP상 과제 내용을 보면,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헌장을 담은 아동권리 교재개발과 아동 관련 NGO 등을 통한 아동권리교육 실시를 그 내용으로 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미취학 아동 대상 교육을 설정하고 있음
- 제시된 주요 이행 사항을 보면 관련 업무자에 대한 아동권리 교육 실시를 위해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권리교육), 관계자 정책 토론회(권리포럼), 아동권리헌장 홍보 및 옹호캠페인 후원(권리 홍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됨
- 관련 분야 민관 관계자의 협업 체계 구성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 등의 진행과정이 의미 있는 성과로 보이며, 다만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아동의 참여 구조를 확보하고 정책에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드러나지 않는 점이 아쉬움
- 아동 관련 업무자에 대한 아동권리교육 실시 지원, 아동수당 신청 부모교육 영상 제작 등 필수적인 아동인권교육 대상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향후 추가적인 정책 마련과 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반면 당초 설계된 과제 내용상 중요한 부분인 아동 당사자에 대한 교육 이행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아동관련 NGO를 통한 아동권리교육 실시 지원의 확대와 각 지자체의 아동친화도시 추진 내용에 포함된 인권교육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가할 필요

□ 향후 과제

- 지속적인 다양한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과 확산 방안 마련 필요
 - 아동 관련 업무자나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영상뿐만 아니라 아동 당사자를 위한 인권교육 콘텐츠에 대한 지원도 함께 점검될 필요가 있음. 특히 각 교육청이나 관련 NGO 등에서 제작한 콘텐츠 중 적합한 콘텐츠를 목록화 하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역할인 만큼 아동수당 신청 시 영상 시청과 같은 효과적인 연계방안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아동권리포럼, 아동권리협약 심의와 국가보고서 등에 아동 참여권과 의견 반영권 보장 필요
 - 현재 다양한 아동·청소년 참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하는 정책적 시도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당사자의 주체성 보장과 이를 통한 실질적 결과물 도출이라는 두 성과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프로그램 등을 통한 관련 업무자와 당사자 인권교육 지원 추진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교육혁신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제목표	• 학교 초·중·고등학생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한 ‘성 인권 교육’ 실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근로권익 침해사례 예방 및 근로청소년 보호의식 제고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 실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 인권 감수성과 폭력예방을 위한 성 인권 교재 개발 –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학교 성 인권 교육 실시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대상별·내용별 추천 콘텐츠 발굴 및 보급 •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대상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운영 • 청소년 고용 사업주 대상 청소년 근로보호 교육 및 홍보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실시 • 생애주기별, 직급별, 직종별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학교, 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운영 •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사업장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및 아르바이트 길잡이 안내서 배포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 ('21년) 성 인권 교육 참여자수 : 17,316명(목표 대비 101.3%) • 학교, 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운영 : ('18년) 총 1,549회, 50,479명 → ('19년) 총 2,680회, 101,215명 → ('20년) 총 4,457회 151,694명 → ('21년) 총 1,085회 41,964명 대상 실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초·중·고 학생 및 자기보호능력이 취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인식 함양을 지원함
- 대상별, 생애주기별, 직급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한 폭력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
-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운영 및 홍보 캠페인 실시 등으로 청소년 스스로 의식을 제고하고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는 등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

□ 향후 과제

- 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에 기반한 성 인권 교육 지속 실시
- 다양한 노동 형태가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 노동의 유입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교육 내용 필요
- 청소년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과 배경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와 내용 필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추진부처	통일부		정착지원과, 교육기획과
과제목표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함양 제고를 위한 교과목 개편 등 인권교육 활성화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시설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 인권의식 함양 제고를 위한 교과목 개편 등 인권교육 활성화 - 하나센터에 거주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 신설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지역적응프로그램 필수분야에 ‘인권교육’을 명시하고 ‘19년 지역적응센터 운영매뉴얼에 반영(‘18년 12월) - 사회적응교육 정규 프로그램에 인권교육 과목 운영 - 탈북민 인권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입소 북한이탈주민(교육생) 2,594명 인권교육 실시 : (‘18년) 1,034명, (‘19년) 1,050명, (‘20년) 437명, (‘21년) 73명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해당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여성인권 교육과목 운영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인권피해에 대한 방어력을 갖출 수 있는 법률교재나 교육을 운영함.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원하는 등 당사자의 인권역량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구상하여 진행함
 -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권익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부분임. 다만 권익의 보장을 위한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이 국내외 인권규범에 의하여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인권이라는 관점을 놓치지 않도록 콘텐츠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의 유의가 필요함

□ 향후 과제

- 새로운 사회에서 적응함에 있어 이질적 사회구조와 이에 기반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만큼, '22년 계획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 등을 활용한 쉬운 교육 콘텐츠 제작과 활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 지역사회에서의 관계망 부족의 문제를 도울 수 있도록 기존 주민과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도 고려할 수 있음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	2.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① 사회적 약자·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외국인력담당관
과제목표	외국인 및 청소년 근로자 노동관계법 등 근로조건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노력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등 근로조건 교육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 청소년 대상 권리교육 지속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입국 후 취업교육 과목 개편('18년 6월 1일 ~)에 따라 노동관계법 등 근로조건 교육시간 확대

□ 정책·관행의 변화

- 입국 후 취업교육 시간 확대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교육을 통한 근로조건 권리구제 강화
 - '18년) 입국후 취업교육 78,886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수시교육(노동법령교육) 14,146건 실시
 - '19년) 입국후 취업교육 85,145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수시교육(노동법령교육) 18,630건 실시
 - '20년) 입국후 취업교육 20,742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수시교육(노동법령교육) 10,799건 실시
 - '21년) 입국 후 취업교육 6,889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수시교육(노동법령교육) 16,018명건 실시
-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충분한 제도 안내, 교육 및 계도를 통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 '18년) 찾아가는 근로권익교육 실적 : 534회, 36,798명 대상 교육 실시
 - '19년) 찾아가는 근로권익교육 실적 : 624회, 47,187명 대상 교육 실시
 - '20년) 찾아가는 근로권익교육 실적 : 693회, 69,351명 대상 교육 실시
 - '21년) 찾아가는 근로권익교육 실적 : 724회, 40,220명 대상 교육 실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인식 제고를 통한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므로, 다양화되는 청소년 근로유형 등 실태를 반영하여 근로권익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이에 관련 연구를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나 이후 교육에의 반영은 확인하지 못함)
- 여전히 근로조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주 인식 제고도 필요
- 대규모 강의식보다는 소규모 실습형·참여형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교육 사업이라고 명명하기에는 노동관련 콘텐츠 중심으로 채워진 점이 아쉬우나, 교육시간을 여유 있게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우선순위를 판단한 결과로 보임. 다만 향후 교육 시간이나 시수의 확대를 통하여 보편적인 인권의 내용 및 차별금지 등에 대한 일반 인권교육이 수행되길 기대함
- 입국 후 취업교육,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교육 등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보임
 - 다만 각국 언어로 제작된 교재를 현장 교육에서 활용하도록 건인할 필요가 있으며, 높은 산재발생률에 비해 산업안전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업장 배치 후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
 - 근로조건 위반 시 이주노동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임을 감안해 입증 자료 등 권리구제를 위한 준비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입국 전후의 취업교육만으로는 충분한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나 비대면 교육 진행으로 인한 한계도 분명히 존재함
- 제도 안내, 교육 및 계도를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과업명 자체를 ‘근로권익’보다는 ‘노동인권’으로 전환하는 것이 인권 인식 제고에 적합할 것이며, 위촉직이라는 점과 인지도 부족이라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알리미’ 사업의 경우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향후 과제

- 교육 시간이나 시수의 확대를 통하여 보편적인 인권의 내용 및 차별금지 등에 대한 일반 인권교육이 확보되길 기대
- 산재 발생률이 높은 업무에 대해 지역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추가적 산업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방안 필요
- 사업장 배치 후 일정 기간 내에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권리구제, 산업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정책이 필요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주 인식 제고 정책 확대 및 강화 필요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과제 VI	2. 아동·청소년 분야	①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②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권익기반과
과제목표	• 문화를 통한 사회 전반의 자연스러운 성인지 감수성 제고		
주요 내용	-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확산 - 폭력예방 및 성평등 관련 동영상(웹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웹툰, 카드뉴스 제작 지원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성평등 문화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미술 전시회 연계 토크 퍼포먼스 개최, 영화제 연계 토크콘서트 개최, 성평등 음원 제작 및 배포('18년) - 성평등 영화 제작 지원('19년) -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웹드라마 등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일상 속 성차별 언어표현 관련 연구, 초·중·고·대학생 집담회, 대시민 온라인 캠페인, 언어 개선 관련 홍보 영상 제작·확산('18년) - 청년이 주도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직접 문화개선을 추진하는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운영('19년 ~) ('21년)9개분야 22개팀 참여, 영상·팟캐스트·서적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캠페인 추진 등 - 성인지적 관점이 강화된 젠더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등을 위한 성인지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일반시민 대상 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 등 개발 - 대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와 사례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 고위직 및 중·고등학생 대상 성인지관점이 강화된 젠더기반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5종), 초중고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15종)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 성평등 문화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미술 전시회 연계 토크 퍼포먼스 개최, 영화제 연계 토크콘서트 개최, 성평등 음원 제작 및 배포('18년)
 - 성평등 영화 제작 지원('19년)
 -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웹드라마 등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일상 속 성차별 언어표현 관련 연구, 초·중·고·대학생 집담회, 대시민 온라인 캠페인, 언어 개선 관련 홍보 영상 제작·확산
- 청년이 주도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직접 문화개선을 추진 청년 성평등문화 추진단 운영
- 성인지적 관점이 강화된 젠더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 대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와 사례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성평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성평등 영화제작, 음원 제작 및 배포, 토크콘서트 개최 등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며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함
-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을 운영하며 인식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민관거버넌스 사업으로 관 주도의 사업의 한계를 넘어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 기대됨

□ 향후 과제

- 성평등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거버넌스 통한 지속적인 정책 개발 필요
 - 예) 청년이 직접 미래 비전을 만드는 소통 창구인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버터나이프크루)'을 통해 청년 주도의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추진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과제 VI	2. 아동·청소년 분야	②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추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과제목표	•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공공언어 사용 지원		
주요 내용	•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 표현 점검 • 성평등한 공공언어 사용 지원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성평등한 공공언어 사용 지원

- ('18년 ~ '19년) 차별적 표현 사용 여부를 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소통성 평가 기준으로 활용(연 4회 평가)
- ('18년 ~ '19년) 차별적 표현 사용 여부를 공공언어 감수에서 지속적으로 점검
- ('21년) 공공언어 감수 시 차별적 표현 사용 여부 점검(2건)
 - * 불세출의 소녀 서예가→뛰어난 서예가/불세출의 서예가(관광 안내판)
 - * 여성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강건하고 웅대한 서품을 자랑한→강건하고 웅대한 서품을 선보였던(관광 안내판)
- ('21년) 차별적 표현 사용 여부를 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소통성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여 평가 진행(8회)

	소통성 평가 기준
1	권위적·차별적 표현 없이 공공성을 갖춘 언어를 사용하였다.
2	핵심 정보를 적절한 양으로 제공하고 있다.
3	보도자료의 전체 구성이 잘되었다.
4	각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짧지 않고 적당하다.
5	쉽고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다.
6	글씨체와 크기, 여백이 적절하여 보기에 편리하다.

•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 실태 연구 및 개선('19년)

- 현대사회에 맞는 배려와 소통의 호칭·지칭 방안 연구 및 안내서 발간
 - * '도련님, 아가씨' 등의 호칭을 '○○ 씨, ○○ 삼촌/고모' 등으로도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차별적 호칭·지칭어 개선안 제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㉓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평가 등을 통해 공공언어를 평가하여 소통성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성차별적 언어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
- 향후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공공언어 점검 및 개선 권고도 필요하지만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향후 과제

- 공공언어에서 차별적 표현을 쓰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 권고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과제 VI	2.아동·청소년 분야	③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추진부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과제목표	•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가족 관련 캠페인 추진)		
주요 내용	• 작은결혼 문화확산 및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캠페인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중심)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점검(평가)

• TV광고, 시민인식조사, 사진전 등 캠페인 행사 등을 통해 가족의 다양성에 대해서 알려 수용성 증가시킴 * 가족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66.2% → 68.1%) 및 개인적 수용도 증가(68.2% → 70.1%) ('19년 8월 대비 '21년 7월)
• 하지만 과제 목표가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중점으로 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가족 내 평등한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과제

• 해당사업의 주요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

Ⅷ	인권 친화적 기업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1. 기업과 인권	

□ 이행상황 총괄

< 총괄표 >

구 분	계	과제완료	정상추진	추진지연	기타
합 계	10	-	9	-	1
1. 기업과 인권	10	-	9	-	1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진과제	추진상황
【기업과 인권】			
263	VIII-1-(1)-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정상추진
264	VIII-1-(1)-②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	정상추진
265	VIII-1-(1)-③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정상추진
266	VIII-1-(1)-④	생활제품 소비자안전 확보	정상추진
267	VIII-1-(1)-⑤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기타
268	VIII-1-(1)-⑥	다자 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	정상추진
269	VIII-1-(1)-⑦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노력	정상추진
270	VIII-1-(2)-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정상추진
271	VIII-1-(2)-②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영	정상추진
272	VIII-1-(2)-③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정상추진

□ 과제별 이행평가

263-1

VIII-1-(1)-①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확보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I	1. 기업과 인권 (1) 인권경영의 제도화	①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확보
추진부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개발의제정책과, 사회적가치경영실
과제목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하여, 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의 인권존중 책임 강화		
주요 내용	-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강화 - 사회적 책임 조달 시스템 구축 - 조달계약 체결 시 인권경영 실천 서약 의무화 - 입찰 참여 기업의 계약서 정비, 교육 지원 등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KOICA 인권경영 체계 구축 - KOICA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20년 - '23년) 수립 - 개발협력 현장에서의 다양한 인권위험 방지 및 현지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83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국영문 체크리스트 개발, 사업부서 대상 사업 추진 전 활용 안내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국내외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존중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 사회(S) 부문(인권) 수상 - 내부직원 응답 인권경영 체감도 21.4% 상승('19년 54% → '21년 75.4%) - 직원 인권교육 주제 다각화로 만족도 및 이수인원 모두 확대 (만족도) '20년 4.25 → '21년 4.33 (이수인원) '20년 571명 → '21년 678명 - 사례 및 실습 중심의 구성으로 파트너 인권영향평가 워크숍 참여기관 확대('20년 19개社 → '21년 46개社)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기관 활동 전체의 공급망 내 인권 위험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인력 부족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의 인권준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을 중심으로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 수립, 현지 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해왔음. 그러나 이는 코이카의 이행 결과로, 추진부서인 외교부가 해당 정책과제를 이행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음
- 개발협력사업의 인권준중 책임의 확산에 있어서 인권영향평가 워크숍 참여한 기관이 '20년 19개, '21년 46개 회사에 그쳐 현재까지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됨
- 모든 개발협력사업 수행 기관이 현지 주민 인권보호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등 인권보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폭넓은 참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 향후 과제

- 신규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현지 언어로 공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 해당 개발협력사업의 산업군, 환경, 이해관계자 특징 등에 맞추어 주요한 인권위험에 대하여 교육하고, 현지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
- 민간기업의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인권위험의 식별, 완화, 환류, 구제 전 단계에 걸쳐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구하고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대하여 인권실사 의무화 법안(mHRDD) 추진 검토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I	1. 기업과 인권 (1) 인권경영의 제도화	①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확보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여성고용정책과
과제목표	- 기업의 인권보호 인식개선 확산 - 기업 성별 임금격차 해소 - 공정임금체제 확립을 통한 차별 개화		
주요 내용	- 체계적·전문적 노동인권교육 추진체계 구축, 노동인권교육 확대 - 유사업무에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 및 개선 지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 사업장 확대(지방공기업 등 추가) 및 임금분포공시제와 연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추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발간('20년 8월) '20년부터 AA 전체사업장에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등 제출 의무 부과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개선 - AA 대상 사업장 지속 확대 * ('18년) 2,146개소 → ('19년) 2,442개소 → ('20년) 2,486개소 → ('21년) 2,553개소 - 부진사업장에 대한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 통합지원서비스(31개사), AA기초컨설팅(44개사) - AA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실시('21년 5월, 30개소) * ('18년) 42개소 → ('19년) 50개소 → ('20년) 51개소 → ('21년) 30개소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국내외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존중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 사회(S) 부문(인권) 수상 - 내부직원 응답 인권경영 체감도 21.4% 상승('19년 54% → '21년 75.4%)

- 직원 인권교육 주제 다각화로 만족도 및 이수인원 모두 확대
 - (만족도) '20년 4.25 → '21년 4.33 / (이수인원) '20년 571명 → '21년 678명
-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18년 659개소 → '19년 700개 → '20년 400개 → '21년 868개
 - * '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지도·점검 건수가 축소됨
- 노동인권교육의 전문·허브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설립('20년 10월 5일)
- '18년부터 중·고등학교 1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헌법상 보호된 근로자의 권리 등의 노동권 내용 반영, 학교에서 노동교육 실시(※ 중학교 '사회' 검정교과서 8종, 고등학교 '통합사회' 검정교과서 5종)
- 청소년·소규모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지속 실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노동 인권 교육의 전문화를 위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설립,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발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강화 등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확보를 위한 밑거름으로 보임
- 다만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과 근로기준법의 준수 사이에 내용상 큰 차이점을 확인하기 어렵고,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은 근로기준법 준수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양자 간 정책적 보완, 협력 및 조정이 필요
- 노동 인권교육을 교과 과정상 단편적인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을 넘어, 실제 사례와 협상 방식 등 실무적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주(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 미달) 명단 공표 이외에 평등한 고용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존재하지 않음

□ 향후 과제

-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은 성평등과 같은 개별 문제에 대한 대응보다는 기업 활동을 둘러싼 인권위험 전반을 평가(실사)하여 이를 예방·제거·완화하는 과정인데, 개별 문제 위주로 정책과제가 꾸려졌다는 문제점 있어 과제목표 및 내용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한 것 자체는 매우 바람직하나, UNGP에 따른 조치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강화를 위한 인식 개선 등의 교육이 병행될 필요
-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AA)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연구 및 홍보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I	1. 기업과 인권 (1) 인권경영의 제도화	②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
추진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과제목표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이행		
주요 내용	-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 기업의 인권경영, 윤리경영 등의 이행 유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발표('20년 12월)
- 지속가능경영유공 포상 평가요소에 인권, 윤리경영 등 포함 완료
- K-ESG 가이드라인 발표(인권 항목 포함 완료)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주무부처는 K-ESG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발표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전문가 서면평가 결과에서는 해당 정책과제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과제로서 정책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 '지속가능한 경영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이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필요한지를 해당 과제의 목표와 주요 내용에서 확인하기 어려움
- K-ESG 가이드라인 또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 향후 과제

- UNGP, OECD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해외 민간 이니셔티브(특히 S&P의 CSA 중 S분야 평가 항목, GRI의 공시표준 중 인권 관련 공시 표준) 등을 참고하여, K-ESG 가이드라인 중 S(사회)분야 내용을 대폭 강화할 필요
- K-ESG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계부처(금융위원회(상장회사 공시 감독 등), 환경부, 법무부(상법, 인권정책기본법 등), 기획재정부(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와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Ⅷ	1. 기업과 인권	③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추진부처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제목표	공공조달부분에 참여하는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여 기업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활동이 인권친화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는 조문을 마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조달청 지침 등 제도정비 - 조달청 지침인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의 제도에 공공조달부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고 강화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또는 계속 유지하여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에 가점 부여
 -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18년 8월 1일/'19년 1월 1일/'20년 10월 1일 시행)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18년 4월 1일/'19년 4월 1일/'20년 7월 15일 시행)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18년 4월 1일/'19년 4월 1일/'20년 10월 15일 시행)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18년 7월 16일/'19년 3월 5일/'20년 5월 27일 시행)
-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20년도에 개정 시행하거나 계속 유지한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항목
 -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여성·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인증업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노동시간 '조기단축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등에 대하여 신인도 가점 부여('21년 4월 1일 시행)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여성·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 인증 업체,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령자 친화기업 등에 대하여 신인도 가점 부여('21년 1월 7일 시행)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여성, 사회적 기업 인증업체,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및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등에 대하여 신인도 가점을 부여('20년 10월 15일 시행 후 계속 유지)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의 참여 시공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가산평가('21년 9월 1일 시행)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여성기업 지원실적

년도	2018	2019	2020	2021
금액(억원)	35,783	43,966	48,967	53,494

• 장애인기업 지원실적

년도	2018	2019	2020	2021
금액(억원)	7,517	9,583	10,213	11,610

• 사회적기업 지원실적

년도	2018	2019	2020	2021
금액(억원)	2,161	3,474	4,558	5,166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공공조달 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와의 공존을 위해서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며,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외 신규 분야(환경, ESG 등)를 발굴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로 확대가 필요

□ 향후 과제

- 조달청은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지원 실적이 매년 증가 추세
- 향후 공공조달 부문의 인권 개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기준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필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I	1. 기업과 인권	④ 생활제품 소비자 안전 확보
추진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과제목표	소비생활 밀접 분야 제품안전 확보		
주요 내용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정착 - 제품안전시스템 확보와 선진 제품관리 체계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 - 제품안전 법정 의무 점검 강화 및 인증 신뢰성 제고 - 어린이제품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체험형 교육 추진 - 어린이제품안전 정보의 통합적인 제공 및 통계기반 확충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어린이제품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21년 12월, 신규가소제 DIBP 추가 지정) - 폼알데하이드 등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시험방법 개선을 위한 안전기준(완구 등) 개정('21년 12월)

□ 정책·관행의 변화

- 어린이제품 관련 사업자 역량강화 추진(어린이제품 제조기업 방문교육(법률, 안전기준 등), 맞춤형 컨설팅 및 시험비 일부 지원, 현장자문 등) - 제품관리 가이드라인, 어린이제품 품목별 안전기준 검사지침서 개발 및 배포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대상 품목의 비대면 공장심사를 도입하여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21년 5월)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교재 및 동영상 개발 - 제3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22년 1월 발표)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선도학교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 ('18년) 3,783명 → ('19년) 4,965명 → ('20년) 6,069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및 제품안전 체험시설 구축
 - 진천, 부천, 대구, 울산체험관 내 5개 테마 제품안전 체험시설, 태백 내 제품안전체험시설 구축 등 총 7개소 구축 및 운영
- 어린이제품 제조 중소기업 시험비용 확대 지원('18년 18곳 → '19년 25곳 → '20년 115곳)
- 어린이제품 안전성평가 역량강화 사업 신규 예산 확보('22년 11.5억 원)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비관리영역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
 - 어린이제품법에 따라 만13세 이하 모든 어린이제품을 안전관리대상으로 포함하여 관리 중이나 일부 제품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생활제품 소비자 안전 확보의 과제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함. 특히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저감'을 목표로 수립된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2015년 6월부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이후 프탈레이트 가소제 신규 가소제 추가 및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 등) 시험방법 개선 등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부적합 제품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성과적임. 반면 물리적 요인에 의한 안전사고와 유통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⁵⁸⁾
- 지속적인 어린이제품 관련 안전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안전 문화를 확산함
 - 유치원·초등학교 대상 '선도학교'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 운영 및 확대,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시설' 구축 확대, 기업지원, 안전교육 교재·동영상 개발 등으로 어린이제품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향후 과제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강화 : 어린이용 키보드, 비관리영역 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제품 인프라 구축 :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시험장비 구축 및 개정안 마련 등
- 어린이제품 기업지원 확대 : 영세 제조·수입기업 시험인증 컨설팅, 비용지원, 융복합제품 신속인증 활성화
-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 :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교육 전문성 강화, 대시민 소통·홍보 활동 강화
- 제3차('22년 ~ '24년)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법정계획)에 따른 과제 추진

58) 대한급식신문.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촘촘히 막는다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66>. 최종검색일 : 2022.08.25.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Ⅷ	1. 기업과 인권	⑥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
추진부처	외교부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
과제목표	• 다자간 국제기구의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		
주요 내용	• UN 등 국제기구의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입장 개선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유엔 기업과 인권 지도원칙(UNGPs) 이행 증진 등 기업과 인권 관련 유엔 차원의 노력에 적극 동참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관련 논의에 참여하여 UNGPs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해 나가도록 지속 독려 필요
- 2020년 이래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관련 회의·논의에 제약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한국의 국내인권상황과 국제인권의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

□ 향후 과제

-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에 지속 참여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I	1. 기업과 인권	⑥ 다자 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
추진부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 UN 등 다자간 국제기구 참여 및 기업 관련 인권 문제 고려		
주요 내용	• 기업 관련 인권 제고에 필요한 결의안 적극 참여, 정부 발언에서 다자간 국제기구의 기업인권 증진 노력의 중요성 강조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내 인식 확산
- 국제사회에 ‘기업과 인권’ 증진 노력 의사 적극 표현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국제인권기구의 ‘기업과 인권’ 관련 권고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에 지속 참여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한국의 국내인권 상황과 국제 인권의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과 홍보가 필요

□ 향후 과제

- 법무부 발간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활용 방안 검토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요청 및 ‘신기술과 인권’ 결의 관련 OHCHR 전문가 협의 등 적극 협력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I	1. 기업과 인권	⑥ 다자 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 개발협력지원팀
과제목표	다자 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		
주요 내용	- UN, WTO, ILO, OECD 등 다자간 국제기구 참여 및 기업관련 인권문제 고려 - 기업 관련 인권 제고에 필요한 논의 및 결의(안) 채택 시 적극 참여 - 우리 정부 발언 시 다자간 국제기구의 기업인권 증진 노력의 중요성 강조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국제기구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노동 존중을 위한 노력과 COVID-19의 여파로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노동 정책을 알림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에 지속 참여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한국의 국내인권 상황과 국제 인권의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과 홍보가 필요

□ 향후 과제

- 기업 인권과는 별개로 국제인권협약 및 다자간 국제인권기구에서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
- 국제기구 회의 의제 발굴 시, 적극적 대응
- 수석대표 등 정부발언 시 국제규범에 따른 인권증진 노력의 중요성 강조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Ⅷ	1. 기업과 인권 (1) 인권경영의 제도화	⑦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노력
추진부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개발협력지원팀
과제목표	• 해외 노사관계 인프라 구축, 노무관리 지원반 파견 및 진출국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등 해외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		
주요 내용	• 국내외 관계기관과 주요 상황 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현지 설명회 및 진출 예정기업 국내 설명회 개최 • 진출국가별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및 제공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동남아시아 진출기업 노무관리 및 인권경영 개선방안 수립, 관계부처합동('19년 12월)
- 해외 공관에 노무관리 고충처리 전담반 설치('20년 5월)
- 동남아시아 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 매뉴얼 배포('20년 7월)
- 남아 등 8개국*의 현지 노동시장 현황, 노동법·제도 등에 대한 노무관리 종합안내서('21년 11월) 및 뉴스레터('21년 7월·10월) 발간
- *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러시아, 터키, 동유럽3국(체코·폴란드·헝가리)
- 인도네시아 최신 법령('20년 11월 노동법 전면 개정)을 반영한 2021년 인도네시아 개정 노동 법령집 국문본 발간('21년 6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해외 공관에 노무관리 고충처리 전담반 설치('20년 5월)
- 노무관리·인권경영 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을 위한 진출(예정)기업 대상 현지·국내 세미나·간담회('19년 ~ '20년 17회)·포럼(매년 2회) 개최 및 종합안내서('19년 2개국, '20년 8개국) 발간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해외진출기업이 상주하는 국가에 대해 노무관리 및 인권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고충처리 전담반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현지 노동자 인권침해를 방지 및 예방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다만 해외진출기업 현지 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노력이라는 과제 목표가 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현지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를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체계가 요구됨

□ 향후 과제

- 정책 과제 목표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도록 재설정 필요
- 해외 진출 중소 중견기업이 국가별 노동법 및 관련 제도를 준수하도록 지원하여 NAP 이행 노력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내연락사무소(NCP) 강화
- NCP 위원 구성에 있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실질적 기능 강화
- 해외진출기업 현지 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노무관 파견 등 협력체계 구축 확대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Ⅷ	1. 기업과 인권	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추진부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제목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주요 내용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질환 확대 및 피해자 건강모니터링 등 지원 추진 - 일정 수준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으로 최대한 폭넓게 지원 - 피해자 및 노출확인자까지 건강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건강상태 확인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017년 2월 8일 제정, 2017년 8월 9일 시행) (2018년 8월 14일 일부개정, 2019년 2월 15일 시행) 피해자 범위에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 추가, 피해자단체 지원 근거 마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기간 연장(20년 → 30년) (2020년 3월 24일 일부개정, 2020년 3월 24일 시행) 포괄적 건강피해 인정, 구제급여-특별구제계정 구분 폐지 및 피해구제자금으로 재원 통합, 소송에서의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장해급여 신설 등 지원 확대, 사업자분담금 추가징수 규정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2020년 9월 25일 일부개정) - 건강피해 조사판정체계 개편,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 확대 및 지급액 상향, 피해지원 유효기간 연장(5년 → 10년) 등

□ 정책·관행의 변화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추진 - 피해신청자 7,642명 중 4,274명 피해 인정, 의료·장의비, 생활수당 등 지원(3,104명, 1,121억 원)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질환 확대 - 구제급여* 및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 질환을 지속적으로 추가확대 * (기존) 폐질환, 태아피해, 천식, (추가) 독성간염('19년 7월), 아동간질성폐질환('19년 11월)

** (기존) 폐질환(상당지원), 기관지확장증, (추가) 아동간질성폐질환('18년 5월), 성인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18년 11월), 폐렴·천식(상당지원)('18년 12월), 천식 지원범위 확대('19년 10월, 천식 J45, J46→호흡기질환 전체), 긴급의료지원 대상질환 추가('19년 11월)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건강피해 평가서 작성양식 간소화, 조사기관 확대(8개소 → 10개소), 신속심사 병행 등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 피해자 범위에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 추가, 피해자단체 지원 근거 마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기간 연장(20년 → 30년)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18년 8월) 및 하위법령('19년 2월) 개정
 - 포괄적 건강피해 인정, 구제급여-특별구제계정 구분 폐지 및 피해구제자금으로 재원 통합, 소송에서의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장애급여 신설 등 지원 확대, 사업자분담금 추가징수 규정 등 특별법 개정('20년 3월)
 - 건강피해 조사판정체계 개편,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 확대 및 지급액 상향, 피해지원 유효기간 연장(5년 → 10년) 등 하위법령 개정('20년 9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피해 인정자수/금액 : ('17년 8월) 280명, 42억 원 → ('19년) 2,793명, 506억 원 → ('20년) 4,114명, 780억원 → ('21년) 4,274명, 1,121억 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건강모니터링 지원 확대('21년 2,740명), 의무기록 발급대행 등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20년 452건 → '21년 567건), 법률구조서비스 지원(145명), 지정의료기관 확대('20 37개소 → '21년 40개소)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특별법 개정으로 건강피해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한 불인정자 및 미판정자를 신속·공정하게 구제 필요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22년 3월 피해대책조정위원회가 9개 주요 가해기업과 7000여 명의 피해신청자를 대상으로 일괄 타결하는 조정안을 내놓음. 가해기업 중 7개 기업은 이에 동의했지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옥시와 애경은 동의하지 않아 조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함.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의 책임을 지적한바 있음. 따라서 정부가 더 적극적인 직접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소통 강화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I	1. 기업과 인권	②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영
추진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과제목표	리콜제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비자 제품안전 향상 도모		
주요 내용	- 리콜 이행을 제고,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신속 퇴출 - 리콜제품 유통 차단 강화 및 리콜정보 홍보 강화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연계매장 확대 및 시스템 개선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리콜 이행을 제고,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신속 퇴출 - 리콜정보 홍보 강화 및 소비자 맞춤형 리콜정보 전달체계 확립 - 리콜공표문 개선 - 리콜관련 문의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위한 리콜이행 Help desk 운영 -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온라인 리콜제품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소비자들이 리콜에 적극 참여하도록 알림장 앱 등을 통한 소비자 맞춤형 홍보 강화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리콜이행점검 확대를 통한 리콜 이행을 제고('20년 975건 → '21년 1,156건) - 리콜제품 차단을 위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매장 확대('20년 180,891개 → '21년 222,481개)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매장 확대와 온라인 리콜제품 모니터링단의 구성과 운영을 통한 리콜 제품의 유통 차단은 소비자 제품안전 향상을 도모하는 기반을 마련함. 현재는 국가가 강제로 수거하고 파기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사업자 스스로가 시민(소비자)의 건강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제품의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나가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리콜제품 후속조치 강화 및 헬프 데스크(Help desk) 운영, 알림장 앱 등 소비자 맞춤형 홍보를 추진 함으로써 리콜 참여 유도 및 리콜 이행을 제고함
- 리콜공표문 개선을 통한 소비자의 리콜 인지도를 제고함

□ 향후 과제

- 리콜제품의 시장 유통 차단을 위해 리콜제품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강화
- 리콜 이행을 제고를 위해 리콜이행점검 강화 방안 마련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매장의 지속적 확대 추진

①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VIII	1. 기업과 인권	②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영
추진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제목표	- 자동차 리콜제도 및 운영개선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 - 소비자 친화적 자동차리콜제도 운영으로 리콜활성화 및 시정률 제고		
주요 내용	- 리콜 제도 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 - 리콜정보 접근성 향상을 통한 신속한 시정조치 유도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②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 결함 은폐, 축소 및 누장리콜 시 처벌강화, 리콜 적정성 조사 의무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0년 2월 4일, 시행 '21년 2월 5일)
- 「자동차관리법」 개정('20년 2월 4일, 시행 '21년 2월 5일)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시행령 '21년 2월 2일 개정, '21년 2월 5일 시행, 시행규칙 '21년 2월 5일 개정·시행)
- 자관법 하위법령 위임사항 반영 및 소비자 친화적 결함정보 제공을 위해 리콜 통지문에 그림 또는 사진 등을 포함토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21년 4월 6일)
- 판매 전 리콜 대상차량의 시정조치 후 판매 및 구매자에게 고지 의무화(자관법 개정 '21.4.13, 시행 '21년 10월 14일, 시행령 '21년 10월 14일 개정·시행)

□ 정책·관행의 변화

- 민간기업과의 협업
- 자동차리콜정보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공정위)과 연계하여 리콜정보의 소비자 접근성 강화
- 자동차 특성에 맞는 리콜정보제공 표준양식을 개발
- 선제적 제작결함조사를 위한 제작사 제출자료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리콜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 시설, 예산, 보장 인원 등 실질적 개선사항

- 민간 기업과 협업을 통한 리콜 알람서비스 확대 추진(1개사→9개사)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자동차관리법』 개정('20년 2월 4일, 시행 '21년 2월 5일)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시행령 '21년 2월 2일 개정, '21년 2월 5일 시행, 시행규칙 '21년 2월 5일 개정·시행)을 통한 제작사 책임 대폭 강화 등으로 소비자 권익의 보호 기반을 마련함
- 자동차 리콜 정보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연동(공정위원회)하는 등 리콜 알람서비스 확대를 통해 대시민 리콜 정보 접근성을 향상함

☐ 향후 과제

- 신속한 시정 조치 유도를 위해 민간 협업 리콜 알람 서비스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❶ 추진 과제별 개요

□ 과제목표 및 주요 내용

과제분류	정책목표 Ⅷ	1. 기업과 인권	③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추진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해외투자과
과제목표	OECD 동료평가를 통해 NCP 운영개선, NCP 기능 등 지속적인 홍보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인권 교육 등 실시		
주요 내용	- OECD 동료평가를 통한 한국NCP 운영 개선 - NCP위원 구성다양화, 이의제기사건 우수사례 공유 등 NCP운영 개선 - NCP 기능 등 지속적인 홍보 강화 -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인권 교육 등		
추진현황	☐ 과제완료 ☒ 정상추진 ☐ 추진지연 ☐ 기타		

❷ 주요 추진 성과(2018. ~ 2021.12.31.)

□ 정책·관행의 변화

- OECD 동료평가를 통해 한국 NCP는 개선점을 확인하고 해외진출기업에 의한 인권 등의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한국 NCP 운영개선의 기회로 활용
- 이의제기사건 분쟁사례집, OECD 발간물의 번역·발간을 통해 다국적기업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책임경영에 관한 자발적 원칙과 기준 전파에 기여
- 시민사회단체, 사용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을 통하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정착에 기여
- 세미나, 포럼, 언론사 광고 등을 통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NCP 기능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행동과 일반대중의 국제적 기준 인식 제고
- 해외진출기업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한 인권 인식 제고

□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미흡한 사항 (부처 자체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❸ 종합점검(평가) 및 향후 과제

□ 종합 점검(평가)

- 다국적 기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해외진출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는 한국 NCP(National Contact Point)의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활동 내용 또한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인권 경영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향후 과제

- 해외진출기업에 대하여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
-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가 계속 유행 중이므로 비대면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
- OECD 동료평가 권고사항에 대해 한국NCP 운영 개선 등을 위한 방안 마련